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일관계 국제심포지움

한일관계를 되묻는다

해방인가 분리인가 / 가지무라 히데키와 한반도

일시: 2012년 9월 13일 (목) 09:30-18:3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 사업단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JSPS 경제협력의 기원 연구프로젝트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연구재단

심포지움 일정

개회 0930-0935: 이내영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제1세션 0935-1200: 해방/분리의 원점

사회: 이종원 (早稲田大学)

1. 식민지주의의 공범-두 개의 강화조약에서 초기한일교섭으로
: 太田修 (同志社大学)
2. 일본 패전 후 한일 '분리'와 한반도의 주권(主權)- 신탁통치안 및 한국 포기 조항에 대한 논리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長澤裕子 (二松学舎大学)
3. 해방의 이론과 실제: 병합조약에 대한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과 행동
: 이동준 (아세아문제연구소)
4. 한일 과거 청산의 기본구조: 김창록 (경북대)

토론: 현대송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정용욱 (서울대), 石川健治 (東京大学),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점심시간 1200-1320

제2세션 1320-1530: 해방/분리의 청산과정

사회: 박상수(아세아문제연구소)

1. 제국 청산과정으로서의 일한교섭-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관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浅野豊美 (中京大学)
2. 전후 한국의 대일배상요구의 변용- 미국의 대일배상정책에 대한 대응과 청구권으로의 수렴: 장박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3. 전후 일본 노동 운동의 출발과 재일조선인: 外村大 (東京大学)

토론: 박정현 (아세아문제연구소), 이종원 (早稲田大学), 김태기 (호남대), 송병권 (아세아문제연구소)

휴식: 1530-1540

제3세션 1540-1800: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역사학과 한반도

사회: 송규진 (아세아문제연구소)

1. 「일한(日韓) 체제」 하의 민중과 「의미로서의 역사」: 가지무라 히데키의 한국 인식과 역사인식: 姜元鳳 (東京外国語大学)
2. 가지무라 히데키의 한국 자본주의론: 내재적 발전론으로서의 「종속발전」론
: 洪宗郁 (同志社大学)
3. 일본 「전후 역사학」의 전개와 미완의 가지무라 사학: 국가와 민중은 어떻게 (재)발견되었는가?: 戸邊秀明 (東京經濟大学)

토론: 宮嶋博史 (성균관대), 木宮正史 (東京大学),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종합토론 1800-1830

사회: 이종원 (早稲田大学)

목 차

제1세션: 해방/분리의 원점

1. 식민지주의의 공범-두개의 강화조약에서 초기한일교섭으로
: 太田修 (同志社大学) 9
2. 일본 패전 후 한일 '분리'와 한반도의 주권: 신탁통치안 및 한국포기 조항에 대한 논리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 長澤裕子 (二松学舎大学) 29
3. 해방의 이론과 실제: 병합조약에 대한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과 행동
: 이동준 (아세아문제연구소)..... 47
4. 한일 과거 청산의 기본구조
: 김창록 (경북대)..... 92

제2세션: 해방/분리의 청산과정

1. 제국 청산 과정으로서의 한일교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관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浅野豊美 (中京大学)105
2. 전후 한국의 대일배상요구의 변용: 미국의 대일배상정책에 대한 대응과 청구권으로서의 수렴
: 장박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143
3. 전후 일본 노동 운동의 출발과 재일조선인
: 外村大 (東京大学)166

제3세션: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역사학과 한반도

1. 일한 체제 하의 민중과 의미로서의 역사: 가지무라 히데키의 한국인식과 역사인식
: 姜元鳳 (東京外国語大学) 191
2. 가지무라 히데키의 한국 자본주의론 - 내재적 발전론으로서의 종속 발전론
: 洪宗郁 (同志社大学)200
3. 일본 전후 역사학의 전개와 미완의 가지무라 사학 - 국가와 민중은 어떻게 (재)발견되었는가?
: 戸邊秀明 (東京經濟大学)219

제1세션: 해방/분리의 원점

1. 식민지주의의 '공범'-두 개의 강화조약에서 초기한일교섭으로¹⁾

오오타 오사무 (太田修, 同志社大学)

머리말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교정상화 교섭(이하, 한일교섭으로 줄임)의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식민지배 처리의 관점에서 검토해 왔다.²⁾ 대체로 그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조약이 식민지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어떠한 경위에서, 왜 식민지배가 청산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반드시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1950년 전후의 세계사를 시야에 넣으면서 논급하고자 한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두 강화조약, 즉 전후 최초의 강화조약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배경이 된 이탈리아 강화조약과, 한일교섭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있어서의 식민지배 인식 및 처리에 대해서 검토하고³⁾, 그것이 일본정부의 식민지배 인식,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있는 '청구권' 인식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즉 이른바 한일교섭의 세계사적 배경으로서의 구미 여러 나라의 식민지배 인식과 일본의 식민지배 인식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이다.

또한 1950년대의 초기 한일교섭(예비교섭에서 제3차교섭까지)에 대해 조선식민지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특히 '한국병합조약'의 역사평가를 둘러싼 논의와 청구권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나타난 일본정부의 식민지배 인식과 대응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한다.

1. 두 강화조약과 식민지 문제

(1) 이탈리아강화조약과 구식민지 처리 문제

1947년 2월 10일 이탈리아는 파리에서 연합국 20개국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강화조약은 전문(前文)과 11편의 본문, 17개 부속서(附屬書)로 이루어져 있다(*Treaty of Peace with Italy*, 1947)⁴⁾. 우선, 전문에는 “파시스트 체제 하의 이탈리아는 독일 및 일본과 맺은 삼국 동맹의 당사국으로, 침략전쟁을 도모하고, 그로 인해 모든 동맹 및 기타 연합국과의 전쟁 상태를 야기하고,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분유(分有)하는” 것,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이 1943년 7월 25일에 무너지고, 이탈리아가 무조건으로 항복”하면서 강화조약 체결에 합의한 것 등이 명기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전문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탈리아의 영토, 전쟁범죄인의 재판을 위한 체포 및 인도(引渡), 군대의 제한 및 공격용(攻撃用) 병기(兵器)의 보유, 건조(建造), 실험의 금지, 전쟁으로 생긴 배상의 의무 및 청구권의 포기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대체로 강화조약은

1) 본고는 필자의 일본어 논문(太田修, 2011)과 보고(2012)의 일부를 가필, 수정한 것이다.

2) '식민지배책임의 추궁'이라는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는 吉澤文寿(2006a)를 참조. 한일교섭과 식민지배의 청산에 대해 논한 연구로 吉澤文寿(2006b), 太田修(2008), 한일교섭의 배경에 대해 논한 최근에 연구로 浅野豊美(2004)가 있다.

3) 이탈리아강화조약에 대해서는 佐々木隆爾(1993, 121), 海野福寿(2000, 12-1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는 金民樹(2000, 12-13), 太田修(2003, 78)가 각각 언급하고 있다.

4) 이하의 이탈리아 강화조약의 조문은 이 문헌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 시에 外務省條約局 譯(1947)을 참고했다.

연합국 측이 이탈리아에 침략전쟁의 책임을 묻고, 파시즘화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강화조약이 식민지 지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본문 제2편 ‘정치조항’에 제4관 “이탈리아국의 식민지”가 마련되어, 제23조에는 “이탈리아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이탈리아국의 속지(屬地), 다시 말해 리비아, 에리트레아·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⁵⁾, 그 최종처분은 ‘제11 부속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제11 부속서’에 따르면, 소련·연합왕국·미국·프랑스가 1947년 2월 10일의 강화조약 제23조에 의거하여, “아프리카에서의 그 속지의 최종적 처분”을 강화조약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연합 총회에 권고를 받기 위해서 위임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탈리아 식민지처리 문제는 이 규정에 따라 1948년 9월에 시작된 파리회의에서 토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Dulles, p.63)⁶⁾. 결국, 다음해인 1949년 11월의 유엔 총회에서 ① 리비아는 1952년 1월 1일까지 독립시키며, 그때까지는 영국·이탈리아·파키스탄·이집트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아래 유엔 통치 하여 놓인다(51년 12월에 독립해서 리비아 왕국이 된다), ② 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는 10년 이내에 독립시키며, 그때까지는 이탈리아의 신탁통치 하에 놓인다(60년에 북부의 영국령과 합쳐서 소말리아공화국이 된다), ③ 에리트레아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할 것이 승인되었다(海野福寿 2000, 13; 高橋進 1995, 17; Dulles, 1950, 63, 64).

리비아·에리트레아·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 등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된 지역인데, 그 지역의 처리 과정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이탈리아가 자문위원회에 참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신탁통치를 행하고 있었던 점이다(高橋進 1995, 17).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파시즘 정권기에 점령·통치하고 있던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⁷⁾에 대해서는 각각 제2편 ‘정치조항’의 제6관, 제7관으로 독립된 규정이 마련되었다. 우선 알바니아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32조까지의 조문이 마련되어,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의 “주권 및 독립을 승인하고, 또한 이를 존중한다”, 알바니아에 있는 일체의 재산·권리·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등이 규정되었다.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제37조,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의 “일체의 미술품, 종교적 물건, 기록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1935년 10월 3일 이후에 에티오피아에서 이탈리아에 반출된 것을 반환해야 하다”는 규정이 주목된다.

또, 제6편 ‘전쟁으로 발생한 청구권’의 제1관 ‘배상’ 제74조에서는 이탈리아가 파시즘 체제기에 침략한 제국(諸國)에 대한 배상 지불의 의무가 규정되어, 소비에트연방에 1억 달러, 그리스에 1억 500만 달러, 유고슬라비아에 1억 2,500만 달러,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에도 각각 500만 달러, 2,5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 명시되었다.

이처럼 리비아 등의 구식민지와는 달리,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독립 규정이 설정되어 배상 지불이나 문화재 반환 등이 인정을 받은 것은 두 나라 다 연합국군의 지원을

5) 영문은 다음과 같다. Italy renounces all right and title to the Italian territorial possessions in Africa, i. e. Libya, Eritrea and Italian Somaliland.(*Treaty of Peace with Italy*, 1947, 13).

6) 이하의 번역에서는 藤崎万里 譯(1950)을 참조했다.

7) 이탈리아는 1935년 10월에 에티오피아 침략을 개시하여 이듬해 5월에는 이탈리아령 에티오피아제국의 성립을 선언했다. 또 1939년 4월, 알바니아를 침략하여 병합했다(北原敦 2008, 501).

받아서 해방·독립을 달성한데다가, 이탈리아의 파시즘 정권이 침략한 국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배상 지불은 침략전쟁에 대한 것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즉 이탈리아 강화조약에서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처리 방침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탈리아 강화조약에는 제14 부속문서 「할양(割讓) 지역에 관한 경제적 및 재정적 규정」이 첨부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할양지역’이란 이탈리아가 침략전쟁을 통해 획득한 지역으로 프랑스·오스트리아·유고슬라비아·그리스 등 ‘원래의 소관국가(所管國家)’에 ‘양도’된 지역이다. 이 문서에는 ‘계승국’으로의 ‘국유 및 준국유(準國有) 재산’의 ‘무상’ 수령, ‘이탈리아국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재산’의 반환, ‘미술품,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반환, 문관(文官) 또는 군인의 은급(恩給)⁸⁾ 지불의 책임 등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서 제19항에는 “이 부속서의 규정은 구 이탈리아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즉,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리비아·에리트레아·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 등의 구식민지가 이와 같은 규정에서 제외되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연합국 측은 강화조약 체결에 앞선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우선 알바니아·에티오피아의 배상 요구에 대하여 이탈리아 측은 “식민지체제 아래에서 이탈리아가 투자한 금액은 수탈한 금액보다도 크다”(佐々木隆爾 1993, 121)고 주장하여 거부했다. 또 이탈리아는 리비아 등의 구식민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데 그치지 않고, 이탈리아 국민이 “파시즘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 “위신을 위해서도 식민지를 통치할 권리와 능력이 국제적으로 승인 받을” 것을 요구했다(Dulles 1950, 60). 미국에 망명해 있던 전 외무장관 카를로 스포르짜(Carlo Sforza)도 모든 이탈리아 식민지가 이탈리아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조약 체결 직전인 1947년 1월, 알치데 데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 수상도 방미 시에 제1 협상 의제로 식민지문제를 올리고, 구식민지를 이탈리아의 위임통치령으로 삼는 계획에 미국이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FRUS 1947 Vol. III, 837; 石田憲 2009, 21). 좌우를 불문하고 이탈리아의 정치가 중 대부분은 구식민지의 반환, 또는 식민지 지배의 유지를 집요하게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연합국 측인 프랑스는 리비아의 트리폴리타니아가 이탈리아의 식민지통치로 복귀하기를 바랐다. 초기(早期) 독립이라는 생각이 트리폴리타니아의 주민들 사이에 고취되는 것을 염려했으며, 그것이 인접한 프랑스 식민지인 튀니지 및 알제리의 주민에게로 감염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Dulles 1950, 60, 61).

미국은 1945년 9월경에는 이탈리아의 구식민지는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하에 이탈리아의 통치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존·F·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말을 빌리면, “대국(大國) 간의 질투와 전략적 고려, 이탈리아의 열망, 그리고 원주민의 독립 요구” 등의 힘이 서로 부딪친 결과(Dulles 1950, 64), 유엔의 직접신탁통치라는 ‘새로운 계획’을 채용하는 방향에 진행되었다고 한다(Dulles 1950, 61).

이처럼 강화조약을 체결한 이탈리아와 프랑스·미국 등의 연합국 측은 구식민지 처리 문제에 대하여 이탈리아에 의한 어떠한 통치의 계속 혹은 유엔의 신탁통치를 상정하고 있었다. 결국, 이탈리아 강화조약은 이탈리아의 전쟁책임은 물었지만, 식민지 지배의 죄를 물어 그것을 청산하겠다는 생각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8) 퇴직 또는 사망한 관공리(官公吏) 또는 그 유족에 대해 국가에서 주어진 금전.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구식민지 처리 문제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탈리아 강화조약 '제4관 이탈리아국의 식민지' 제23조와 같은 식민지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조선에 대해서는 제21조에서 조선이 이익을 얻는 조항에 대해서 언급되었고, 제2조에서는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었다. 또, 제4조 (a)항에서는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국과 이 당국들 간의 특별협정의 주체로 한다", (b)항에 "일본국은 [중략] 합중국 정부에 의해, 또는 그 지령을 따라 행해진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규정되었다(『官報』 號外, 1952.4.28). 그 이외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조약의 초안 과정에서 식민지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을 주도한 미국의 조선 식민지 지배 인식과 그 대처에 대해서 한국의 강화조약 참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주목하면서 생각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 측은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위치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일까? 1947년 8월 4일자 SCAPIN 1757⁹⁾에서는 연합국·중립국·적성국가의 세 범주 외에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지위의 국가'(Special Status Nations)가 신설되었고, 조선은 오스트리아·이탈리아·타이 등과 함께 '특수지위의 국가'로 분류되었다(竹前榮治監修 1993a). 그것은 조선이 일본의 구식민지이며, 그 시점에서는 연합국의 점령 하에 있는 비독립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미국은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한국을 어떻게 취급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1949년 11월 미국 국무성은 존 무초(John Muccio) 주한대사에게 한국의 강화회의 참가의 시비(是非)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더니, 무초는 미군정부로부터 한국 측에 인도된 '제한(在韓) 일본 재산을 일본의 전배상(全賠償)으로서 받아들일' 것을 조건으로 강화회의 참가를 인정하도록 권고했다(FRUS 1949 Vol.VII, 904, 911; 塚本孝 1992, 95-96).

한편, 같은 해 12월 미 국무성 극동조사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참가』라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¹⁰⁾, 「I. 대한민국의 참가 요구」, 「II. 강화조약에 있어서의 한국의 이해(利害)의 본질」, 「III. 강화조약회의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참가 또는 불참가의 결과」에 대해서 검토했다.

우선 I에서 "합중국은 한국의 참가를 지원하는 명확한 서약은 주지 않았으며, 한국에 대한 배상은 한국의 직접적인 청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중국 또는 다른 극동위원회 소속의 나라에 할당된 배상에서 수여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라고 하여, 한국이 강화회의에 참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II에서는 한국 측의 참가 요구는 1910년 '한국병합' 이래 일본에 대하여 계속해서 '교전 국가'로 있어 왔다는 지위에 근거하지만, "1910년의 조약에 의한 일본의 한국병합은 합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모든 국가에게 승인되어, 조선의 국가나 정부로서의 전체적인 승인은 1948년이 될 때까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 내에서의 일본 통치에 대한 저항은 '지방'에서의 '단기간의 소요'에 한정되었고, 사람들은 대체로 총독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조선 외의 민족주의 조직은 공식

9) 1948년 6월의 SCAPIN 1912(21 June 1948)도 마찬가지였다(竹前榮治監修 1993b).

10) "DRF 163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Japanese Peace Settlement", December 12, 1949, Record Group 59, Records of the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Lot File:58D245, Box4.

적으로 승인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조선 내에 기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한국 측의 주장에 반론했다.

국무성이 강조한 것은 강화회의에서의 한국의 이해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교전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에 거의 전적으로 유래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한국병합’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통치에 대한 한국의 배상 요구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III에서 한국 측의 “반환, 배상 청구가 과도”하며, 극동위원회가 한국의 배상 청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청구권이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오는 등 강화회의에 참가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 보고는 강화회의에 참가 여부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피하고, 한국을 읍저버로서 참가시켜서 ‘어느 정도’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타협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 미국 국무성이 작성한 강화조약 초안에는 한국도 조약서명국으로 추가되어 있었는데, 1951년 봄의 미영협약에서 한국 참가에 반대한 영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한국의 대일강화조약 서명은 좌절되게 되었다. 그것은 그 후의 한일교섭으로 한국 측에 불리한 틀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강화조약 서명 문제의 근저에 있던 ‘한국병합’은 합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모든 국가에게 승인되었다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다.

강화조약의 최종 초안이 확정되어 가던 1951년 7월 3일의 국무성 작성 파일에는 “일본의 조선 통치와 지배로 발생한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반환(restitution)청구권, 또는 배상(reparations) 청구권’은 과도하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약 3억 달러라고 평가되는 이 청구권은 1909년부터 1945년 8월 9일까지 조선에서 약탈되었다고 신고된 지금(地金)·지은(地銀), 미술품·특수한 출판물, 전시 중에 살해된 조선인에 대한 보상, 전시 중에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 미불 임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중략] 조선은 1948년 7월 29일에 열린 약탈당한 재산의 반환에 관한 극동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이 주어지는 대상이라고는 간주되지 않았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 의해 점령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¹¹⁾.

즉, 1948년의 극동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일본의 조선 지배와 통제로 발생한 청구권’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앞의 1949년 12월 보고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그에 더하여 한국 측의 ‘청구권’은 “상호 협정의 특별한 기초 위에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선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고, 일본의 조선 점령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인의 청구권을 위한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보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되지만, 그것은 “유엔 한국부흥기관에 대하여 일본이 자발적으로 공헌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강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특별협정’을 부연 설명한 것이며, 일본의 ‘보상’을 ‘유엔 한국부흥기관’에 대한 경제원조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처 방침은 어떠한 인식에서 도출된 것일까? 강화회의의 준비와 강화조약의 작성을 주도한 존·F·딜레스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그 단서를 제공한다. 딜레스는 1950

11) “State Department Comments on JAPQ D 2/7, July 3, 1951, Korean Claims Under Korean Vesting Decrees to Property in Japan”, Record Group 59,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Legal Adviser Japanese Peace Treaty Files, Box5.

년에 출판한 저서 『*War or Peace*』에서 구미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다음과 같이 그렸다.

과거 수세기 동안 서구 여러 나라가 “물질적, 지적, 정신적으로 활발함”을 유지한 결과, ‘미개발지역’에 대하여 차관이 주어져 “철도, 항만, 관개 사업, 기타의 형태로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나 통화(通貨)의 교환성”에 관해서 충분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서구 여러 나라들은 “무역이나 투자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를 행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는 서구 여러 나라에 의한 “화려한 정치활동의 무대”였다(Dulles 1950, 74).

서구 여러 나라의 지배가 확대된 것은 이러한 “서구 여러 나라의 정치적 우월성” 때문이며, 그것은 “원래 서구가 타국이 바라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에서 생겨난 것으로 “군인의 공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외교관, 상인, 선교사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Dulles 1950, 74-75)

결국, 텔레스에게 있어서 ‘서구 여러 나라의 식민지개발’에는 전체적으로 ‘자기청산적’ 요소가 있었고, ‘서구의 식민지주의(Western colonialism)’는 “처음부터 해방적 성질을 띠도록, 인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어 “서구 여러 나라의 정치적 지배가 평화적으로 퇴각하고, 자치가 이를 대신하도록 추진했다”. 따라서 전후 5년간의 식민지의 자치와 독립을 향한 ‘큰 움직임’은 “예로부터의 것을 일거에 뒤엎은 것이 아니라, 이를 성취했다”는 것이다(Dulles 1950, 77, 87).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 사회에서는 프랑스나 영국의 식민지처럼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존속한 지역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는 종언했고, 구식민지는 독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탈리아 강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구식민지에 대한 권리와 권한의 포기, 구식민지의 독립 승인 조항은 그러한 조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탈리아 강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식민지 지배의 처리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자면, 식민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에 한해서 배상과 문화재의 반환 등이 명기되었던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강화조약이 식민지 지배 처리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양자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불문에 부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해방적 성질을 띠도록, 인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서구의 식민지주의는 전후(戰後)의 구식민지의 자치와 독립을 통해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두 강화조약에 관철되고 있었던 것이다.

2.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과 강화조약 제4조의 ‘청구권’

(1)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

패전부터 한일교섭에 이르는 시기의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관견으로는, 외무성이 1949년 12월에 작성한 「할양지(割讓地)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과 다음해인 1950년 5월 작성된 개정판 「대일평화조약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서」의 「3. 할양지에 관한 경제재정 사정의 처리」이다. 둘 다 강화조약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규정」, 즉 구식민지 처리

규정이 일본 측에 유리하도록 연합국 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서다. 거기에 나타난 식민지 지배 인식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구식민지는 국제법에 의해 “정당하게 취득”되었다는 ‘식민지 지배 정당·적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이다. 패전 직후 일본정부는 제국의 식민지를 “이번 전쟁과 관계없이 제국이 정당하게 취득하고, 동시에 제국의 주권 행사에서 종래 분쟁이 없던 영토”라고 하며, 조선은 “일한합병조약, 한국병합 선언에 대해 오늘날까지 미, 영, 소 어느 쪽으로부터도 이의가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연합국 측의 조선 ‘할양’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¹²⁾. 그러므로 “조선에 관한 주권은 독립 문제를 규정하는 강화조약 비준일까지 법률상 우리쪽에 계 있”는데, 연합국군의 점령 등의 사정으로 인해 “우리쪽의 주권은 사실상 휴지(休止) 상태에 빠진다”고 해석하고 있었다¹³⁾.

식민지 조선을 “제국이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인식은 그 후에도 일본정부의 기본인식으로 존속했다. 1949년 3월 외무성이 작성한 「조선에 있어서의 채무의 처리에 대해서」에는 “조선의 병합은 일본과 당시의 조선 정부 사이의 병합조약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다. 같은 해 12월의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에서도 “당시로서는 국제법, 국제관례상 보통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방식에 따라 취득 되었으며, 세계 각국들도 오랫동안 일본령으로서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며, “과거의 이들 지역의 취득, 보유에 대해서 국제적 범죄시 하고, 징벌적 의도를 배경으로 하여, 이들 지역의 분리에 관련되는 여러 문제해결의 지도 원칙으로 삼는 것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⁴⁾.

그런데, 다음해인 1950년 5월의 개정판 「대일평화조약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서」의 「3. 할양지에 관한 경제재정 사정의 처리」에서는 ‘식민지 지배 정당·적법’을 주장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왜 삭제되었는지, 연합국 측과 어떠한 협상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식민지 지배 정당·적법’론이 연합국 측에 승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식민지통치는 ‘착취정치’가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과 근대화”에 “공헌”했다고 하는 ‘시혜론(施惠論)’ 내지는 ‘근대화론’이다. 패전 직후에 그러한 주장을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전 경성제국대학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였다¹⁵⁾. 스즈키는 잡지 『세카이(世界)』 1946년 5월호에 실린 「조선 통치에 대한 반성」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의 조선 통치에 대한 근본방침 ‘일시동인(一視同仁)’ ‘내선일체(內鮮一體)’의 한 단면으로서의 ‘황민화운동’은 “지나친 동화정책의 강행”이라고 반성해야 마땅하지만, 그 제2면으로서 “일선인(日鮮人)을 완전히 평등시 하고, 일본인의 우월적 차별대우 혹은 차별감정을 극복하고, 소위 식민지관계를 지양하고자 한 이상 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일한합방의 대전제는 뒤집을 수 없다”고 해도, “문명인이 야만인을 지배하는” 종래의 “공식적인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과 반항”이 있어 “같은 아시아인동지”로서의 “동포애적인 새로운 외령통치(外領統治)의 이념”이 있었다

12) “連合國ノ對日要求ノ内容ト其ノ限界(研究素材)(昭, 20, 10, 29, 條約局).” 『ポツダム宣言受諾關係一件 善後措置および各地狀況關係(一般及ひ雜件) 第1卷』, 일본외무성공개문서, 제3회공개, 외교사료관 소장.

13) “電報案ノ朝鮮, 政務總監(昭和20年8月24日).” 『ポツダム宣言受諾關係一件 善後措置および各地狀況關係(一般及ひ雜件)第2卷』, 일본외무성공개문서, 제3회공개, 외교사료관 소장.

14) “割讓地に関する經濟的財政的事項の處理に関する陳述(24, 12, 3).” 外務省編(2006, 443-445).

15) 스즈키 다케오는 중앙관청(외무성·대장성), 조선과 관련된 민간기업, 관료 출신·학식 있는 사람 등 조선 관계자 그룹에 전부 접점을 갖고 있었으며, 그 삼자를 하나로 묶는 인물이었다(宮本正明 2006, 129).

고 한다(鈴木武雄 1946, 42-44). 이것은 총력전체제기(總力戰体制期)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스즈키 나름대로 평가한 것인데, 오늘날의 연구 수준으로 보면 자의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그 후에 스즈키는 재외재산조사회¹⁶⁾에서 1947년에 편찬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의 조선편 전10권의 총론적 성격을 가지는 「부록·조선 통치의 성격과 실적-반성과 반비판(反批判)-」을 집필했다(並木真人 1997a, 1997b). ‘일본의 조선 영유’에는 구미 열강의 식민지배정책과는 다른 ‘특이성’이 있었다면서, “병합 이전의 낡은 조선 경제의 정지적(靜止的) 정체, 아니 축소재생산(縮小再生産)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미제라블한 상태”로부터 “병합 후 불과 삼십 몇 년 동안에 오늘날 보이는 바와 같은 일대발전을 이룩하기에 이른 것은 확실히 일본의 지도의 결과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鈴木武雄 1951, 122-123).

1949년 12월 외무성이 작성한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는데, 일본 정부의 인식도 스즈키의 인식과 거의 같았다.

일본의 이들 지역에 대한 시정(施政)은 결코 소위 식민지에 대한 착취정치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들 지역은 일본 영유로 되었을 당시에는 전보다 가장 언더 디벨롭트한 지역이었으며, 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과 근대화는 오로지 일본 측의 공헌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이미 공평한 세계의 식자(識者)-원주민을 포함해서-가 인식하는 바이다¹⁷⁾.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를 개발할 때에는 국고에서 거액의 보조금이나 민간자금을 투입하고, 일본의 통치이래 조선인의 소득 및 생활수준은 상승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 관한 한 “일본의 식민지 착취 운운하는 설은 정치적 선전 내지 실정을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상상론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에 따르면, ‘시혜론’ 같은 식민지배 인식의 기본적인 요소는 패전 직후부터 중앙관청·관계기업·식민지 경험이 있는 지식인 등으로부터 단발적으로 표출되었으며, 그러한 주장들은 각 방면의 조사 활동과 상호 교류 속에서 일정한 인식을 형성하였고, 그 집대성으로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가 편찬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짜여진 식민지인식은 중앙관청을 포함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정착·계승”되어 간 것이다(宮本正明 2006, 130).

이상과 같이 스즈키와 일본정부의 인식은 일본의 식민지통치의 ‘특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스즈키에 따르면, “‘일시동인’ 정책은 식민정책학 상의 술어에 대입해서 말하자면, ‘동인정책(同仁政策, Assimilation policy)’의 범주에 속하고”, ‘동화정책’의 개념으로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영국의 자치령 경제’, 즉 식민지에 “본국경제의 축소판 같은 산업구조”를 수립해 “제2의 본국경제”를 실현하려고 한 ‘앵글로색슨의 이민경제인 자치령경제’와 유사하고, 그 밖의 “이민족 지배를 본질로 하는 식민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鈴木武雄 1946b, 1, 15).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통치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과 근대화”에 공헌했다는 스즈

16) 재외조사회는 대장대신 및 외무대신의 관리 하에서 ‘재외재산의 조사’를 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체로 보면 대장성의 주도성이 강한 조직이었다(宮本正明 2006, 123).

17) “割讓地に関する經濟的財政的事項の處理に関する陳述(24, 12, 3).” 外務省編(2006, 443-445).

키와 일본 정부의 '특이성'론은 결코 특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이탈리아 강화조약, 델레스의 인식에 나타난 '持ち出し論'이나 식민지 지배가 자치와 독립을 "성취"했다고 보는 구미 식민지주의,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에는 당시의 세계상황에 있어서의 공통성이 발견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공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은 두 강화조약에 나타난 식민지 지배 인식에 접목되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의 '청구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본 정부의 식민지주의의 관계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구식민지의 '재산' 및 '청구권'은 쌍방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삼는다고 규정된 제4조를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4조의 '청구권' 인식의 내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청구권'이 훗날의 한일 재산 및 청구권 교섭과 1965년의 한일재산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규정하고, 한일조약 체결 후의 전후보상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정부의 '청구권' 인식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최근에 공개된 일본 외교문서에 따르면, 1948년 5월에 외무성은 「할양지역에 있는 양도국의 공유, 사유의 재산, 권리, 이익의 취급」, 즉 구식민지에 있는 일본 재산의 처리에 대해서 이탈리아 강화조약을 중심으로 제1차 대전 후의 베르사유조약, 생제르맹조약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강화조약에서는 리비아 등 구식민지에 적용되는 "경제적 및 재정적 처분은 제14 부속서 제19항 및 제23조에 의해 앞으로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어" 있고,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 영토[예를 들면 조선, 가라후토(樺太), 대만 등]의 할양이 식민지 할양의 취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탈리아 평화조약은 그대로 선례로 취급할 수 없다"¹⁸⁾고 하였다. 1948년 5월 시점에서는 조선이나 대만의 해방을 '일본 영토'의 '할양', 또는 '식민지의 할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49년 3월에 외무성이 작성한 문서 「조선에 있어서의 채무의 처리에 대해서」에서는 '조선의 독립'이 다음과 같이 인식되고 있었다.

일본의 조선 병합은 일본과 당시의 조선 정부의 사이의 병합조약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선의 독립은 국제법상에서 말하는 분리의 경우다. 분리의 경우, 상속에 관한 국제법상의 규정은 아직 확립된 바가 적어 그때 상황에 맞춰 조약 등을 통해 정해야 한다¹⁹⁾.

'조선의 병합'은 '병합조약'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1948년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에 따른 '조선의 독립'은 "국제법상에서 말하는 분리"라는 인식이다. 외무성에 배상 문제의 이론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국제법학자 야마시타 야스오(山下康雄, 나고야대학 교수)는 "조선은 독립국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할양지가 아니다. [중략] 할양지라기보다도 분리지역(detached territory)"이라고 하면서, '국제법상에서 말하는

18) "割讓地域にある讓渡国の財産、権利、利益の取扱について(1948.5.25)." 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谈文書, 6차공개, 1151-1560.

19) "朝鮮における債務の処理について(1949.3)."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6차공개, 1151-1559.

분리'론에 의거해서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²⁰⁾.

이렇게 해서 '국제법상에서 말하는 분리'론을 바탕으로 '청구권' 개념의 틀이 설정되게 된다. 1952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한청구권 문제에 관한 분할 처리의 한계」에서는 “이번의 샌프란시스코조약을 통한 조선의 독립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은 일본과는 전쟁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리 시의 국가의 재산 및 채무의 계승 관계로서 취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²¹⁾.

즉 강화조약 제4조의 '청구권'이란 일본과 조선 사이의 “단순한 영토 분리 시의 국가의 재산 및 채무의 계승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장차 '특별협정'의 대상으로 한다고 여겨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제4조의 '청구권'은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청구권' 개념은 구미 여러 나라가 주도한 '국제법'의 한 학설에 의해 도출된 것에 더하여, 일본 정부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50년 전후에 일본 정부는 식민지주의 비판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다. 스즈키 다케오가 「조선 통치의 성격과 실적-반성과 반비판-」에서 “일본의 조선 통치가 오로지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와 착취로 일관했다는 견해가 내외에 지배적인” 것은 유감이라고 쓴 것은 그러한 점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또 일본 정부도 1951년 10월에 작성한 「일한 양국의 기본관계에 관한 방침(안)」에서 협상에 임한 한국 측의 기본적 태도로서 “일본의 40년간의 조선 통치가 착취적 식민정치였다는 원칙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정했었다.

우리쪽으로서 원천론으로서 이러한 태도를 논파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한국 측 및 세계의 곡해 내지 오해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의 조선 통치 하에서의 한국인의 경제생활, 문화생활 향상의 실제 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적당한 많은 점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의 컬러니얼리즘과 비교해 보일 필요도 있을 것이다²²⁾.

'다른 외국의 컬러니얼리즘'과 비교해도 “조선 통치 하에서의 한국인의 경제생활, 문화생활”은 “향상”되었다는 사고방식은 한일교섭에서 일본 측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강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식민지주의와 그것을 방패로 삼은 일본의 식민지주의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1950년대 초의 한일교섭이 전개되게 된다. 그렇다면 한일교섭에서 일본의 식민지주의는 어떻게 표면화되어 기능해 왔는지 기본조약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 山下康雄. “平和條約第四條について(上)(未定稿)(平和條約研究 第三號)(1951.9, 條約局法規課).” 일본외무성 공개 한일회담문서, 6차공개, 1151-1562.

21) “日韓請求權問題に関する分割処理の限界(1952).”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5차공개, 1042-1300.

22) “日韓兩國の基本關係に関する方針(案)(1951.10.31).”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6차공개, 1186-1835. 이 방침은 같은 해 작성된 문서“日韓基本關係調整交渉について留意すべき事項(1951.11.25).”에도 기재되었고, 기본방침으로 확정되었던 것 같다(“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6차공개, 909-1124).

3. 식민지 지배 비판으로서 ‘한국병합조약 무효론’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 제2조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정부는 다른 해석을 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제 2조의 일본어 문장은 「千九百十年八月二十二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인데 그 문말에 ‘한국어’로는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영문’으론 ‘are already null and void’라 되어 있다. 조약체결 당시의 한국정부는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력히 표시하는 문구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소급(遡及)하여 무효’라 하였다(대한민국정부 1965, 11). 한편 일본정부는 ‘한국병합조약’은 1948년 8월 대한민국성립 시에 효력을 잃었다고 해석했다²³⁾.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가능케 한 것은 ‘もはや (이미, already)’라는 문구이며 1965년 제7차교섭에서 일본 측이 ‘are already null and void. (もはや無効である)’를 제안해 이것을 한국 측이 받아들임으로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 것을 밝히고 있다(吉澤文寿 2005, 226-227; 장박진 2008, 30). 하지만 원래 이 제2조의 ‘무효’ 조항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52년 제1차교섭 ‘기본관계위원회’에서의 한국 측 안 ‘대한민국 일본국간 기본조약(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도 이 과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지만(이원덕 1996, 58-62; 太田修 2003, 82-88)²⁴⁾, ‘기본관계위원회’ 의사록 미공개로 인해 충분히 분석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여기서는 새롭게 공개된 일본외무성 문서 ‘기본관계위원회’ 의사록에 주목하여 식민지 지배 인식, 처리라는 관점에서 제1차 교섭에서의 ‘무효’ 조항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1952년 2월 15일에 시작된 제1차 교섭에서 ‘외교관계를 포함한 양국 기본관계 수립에 대해 토론허기 위한 분과위원회’(기본관계위원회) 설치가 결정되어 22일에 제1회 기본관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일본 측은 이 위원회에서 ‘일한우호조약안(日韓友好条約案)’을 제시했지만 과거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2월 27일 제2회 위원회에서 유진후(兪鎭午) 대표는 일본 측의 ‘우호조약’이라는 명칭을 비판하며 한국정부는 ‘1910년부터 36년간 있었던 여러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양국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²⁵⁾.

한편 한국 측은 3월 5일 제4회 기본관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일본간 기본조약(안)’을 제시하였다. 명칭을 ‘기본조약’으로 하며 다음의 제3조가 삽입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大韓民国日本国間基本条約 (案) / 第三条 / 大韓民國과 日本國은 千九百十年八月二十二日以前에 旧大韓帝國과 日本國間에 締結된 모든 条約이 無効임을 確認한다.²⁶⁾

게다가 동시에 영문안도 제출되어 문말에 ‘are null and void.’라 표기되었다. 이 제3조는

23) 日本国外務省 1965, 3-4. 외무성의 해석으로는 ‘한국병합조약’이전의 제조약, 협정은 정해진 조약의 성취 또는 ‘한국병합조약’ 발효와 더불어 실효했다고 한다.

24) 최신의 연구인 장박진(2008, 9-13)은 한국측의사요록(summary record)를 사용해서 분석했지만, 자세한 논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또한 2005년에 공개된 한국측 외교문서에는 한국측 의사록이나 훈령, 보고 등의 내부자료가 없다.

25) “日韓會談第2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2.27).”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5차공개, 892-974.

26) “日韓會談第4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3.5).”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5차공개, 892-976.

1965년 기본조약 제2조 원형이라 할 수 있는데 ‘무효이다 (are null and void)’가 처음 사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 측은 이 문구를 어떻게 고안해냈는지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분명하지만, ‘are null and void’를 사용하였던 이탈리아 강화조약 제31조에 주목하고 싶다. 제31조는 이탈리아에 의한 알바니아 지배가 “1939년 4월 7일 침략의 결과”(제29조)라 여겨진 것에 의거해 “1939년 4월 7일부터 1943년 9월 3일까지 이탈리아와 이탈리아에 의해 알바니아에 설치된 권력 그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협정 및 약정이 무효임(are null and void)을 승인한다”라는 조문(條文)이다²⁷⁾. 추측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한국 측은 이탈리아 파시즘 정권의 침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 알바니아의 사례를 상정하고 ‘무효’조항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한국 측 초안에 대해 3월 12일 제5회 기본관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되었다. 일본 측 오오노 카즈미(大野勝巳)대표가 한국 측 초안 제3조, 즉 ‘한국합병조약’ ‘무효’의 해석에 대해 문자 유진오대표는 ‘중대한 질문’이라 말하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1910년 이전 조약은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소급하여 무효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법이론을 관철할 때에는 실제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론은 차치하고 여하튼 무효로 하고 싶다(중략). 한국 측에서는 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중략] 이 규정에서는 한국 측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며 또 포츠담선언 수락 시부터 실효하다는 설도 피해, 여하튼 막연하게라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²⁸⁾

한국 측이 강조한 점은 “1910년 이전 조약은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라고 한 것이다. 단지 ‘법이론’을 관철할 시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여하튼 막연하게라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보충하였던 것이다.

이 ‘법이론’ 상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기본관계위원회 의사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개의 모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주일대표부’가 1950년에 작성한 ‘한일합방조약무효론(초)’를 보면 “결론”은 “한일합방조약은 무효”이지만 “국제질서유지(時効의 精神) 혹은 無理 [無權-오오타] 대리행동의 追認으로서 무효를 주장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²⁹⁾. 즉 “원칙”은 “1910.8.29에 소급하여 무효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로서 “c. 朝鮮總督의 一般行政” “가. 純然한 行政面”의 “I. 朝鮮銀行券” “II. 税金” “III. 公債” 등은 “默認 혹은 追認에 의해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유효”로 처리한다고 한다(주29와 같은 자료, 12). 게다가 이 문서에 첨부된 “설명서”(1951년1월25일, 대한민국주일대표부정무부)는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유효론”이 병존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 즉 “舊朝鮮總督의 ‘無權代理’라는 이론” 하에 총독부에 의한 통치를 “원칙적으로 否認하면서도 사회질서유지 상에 필요한 總督府行政에 한해 追認한다는 입론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적 질서론을 인정”하게 되며 “논리적 모순”이라 한 것이다(주29

27) 영문은 다음과 같다. Italy recognizes that al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made between Italy and the authorities installed in Albania by Italy from April 7, 1939, to September 3, 1943, are null and void(1947, *Treaty of Peace with Italy*, 15).

28) “日韓會談第5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3.12).”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5차공개, 892-977.

29) 對日講和調査準備委員會. “對日講和條約에 關한 基本態도와 그 法的근거 (駐日代表部案).” 대한민국외무부의 교문서, 76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10.20-12.4) 자료집: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 11.

와 같은 자료, 7).

또 한국정부가 1951년 7월에 내놓은 기본방침에서는, 일본은 포츠담선언에 의해 “한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국민은 한국의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국병합조약’은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³⁰⁾. 같은 해 10월에 시작된 ‘재일한교법적지위분과위원회’에서도, 유진오대표는 “한국인의 한국적 취득은 서기 1945년 8월 9일부터 일본국적을 이탈했다”고 서술하고 있다³¹⁾.

이러한 한국정부의 “무효론”은, ‘한국병합조약’은 원칙적으로는 “무효”이지만 “법이론” 상은 “유효”라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이론적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전술한 유진오대표에 의한 “법이론” 상의 “복잡한 문제” “여하튼 막연하게라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등의 발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오오노대표는 “구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continuity(연속성)”에 대해 질문하고 유진오대표는 “계승한 것이지만 이것도 감춰져 있고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답하였다(주 28과 같은 자료, 892-977). 이에 대해 오오노는 “병합조약의 성립과 함께 대한제국은 소멸하여 국제법 상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된 결과, “그 이전 조약은 실효되어 병합조약자체도 병합의 성립과 동시에 한쪽 상대방이 소멸하였으므로 당연히 그때 실효되었다”, 그리고 “구대한제국이 국제법 상의 주체인 국가로서 소멸된 이상, 그것과 대한민국은 별개이므로 그 사이에 계속성은 없다”, 따라서 “소멸해 사라진 조약의 무효를 새삼스럽게 문제시 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 “평지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피하면 어떨까”, “쌍방에 과거를 기억시킨다면 적어도 일본 측에는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제3조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법이론”을 방패로 논박하는 오오노대표에 유진오대표는 “제3조는 평지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파문을 진정시키는 규정이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1910년 이전 조약은 국민적으로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하다는 강한 신념과 국민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강력히 주장하면 이 회의가 결말이 나지 않는다. 일본 측의 입장도 있지만 또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점을 피하면 이 규정에 의해 한국의 국민감정을 수습할 수 있지만 일본 측에 있어서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주 28과 같은 자료, 892-977).

김동조대표도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에 계승되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국제법 상은 어쨌든, 당시 사정은 민족의 총의(總意)에 반하는 병합”였다 하고, 제3조를 넣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양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오노는, 한국 측의 주장이 “정치적 견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한국병합조약’ 체결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개인간 계약의 경우는 당사자에 대해 사기협박(강요)이 있었을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만, 조약체결의 경우는 국가간의 관계도 있고 이

30) “재일동포중 일부 약질분자 강제송환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1951.7.19.)” 대한민국외무부외교문서, 78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10.20-12.4)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 사전교섭, 1951.5-9』, 40-41.

31) “제3차재일한교법적지위분과위원회(1951.11.2.)” 대한민국외무부외교문서, 81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10.30-1952.4.1』, 93.

경우 협박(강요)이 가해져 성립되었다 해도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오오노는 사실 “협박” 당하였는지 어떤지 그 사실관계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병합이 “국제적으로 유효적법 조약이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현재 일본인은 적법 병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이 의거한 것은 식민지 지배를 용인하는 “국제법”이었던 것이다.

3월 22일 제6회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유효조약(안)’이 제시되었다. 그 전문(前文) 제3항에서는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후략)”이라는 문장을 삽입하였다. 한국 측은 한국 측 안 제3조의 내용을 전문에 넣은 점에 이의가 없다고 했지만 ‘한국병합조약’의 “무효확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뒤이어 3월 28일 제7회 기본관계위원회에서도 일본 측의 유효조약안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는 1965년 기본조약 제2조의 내용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회의였다. 유진오는 제6회 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초안의 전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저는 (병합조약 등이) 처음부터 무효라 주장하면 조약이 타결되지 못 할 것이라 여겨 논의되는 점, 예를 들자면 ‘언제부터’ 라든지도 일체 덮어 두고 어찌 되었든 무효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표현이라면 일본 측은 일본으로서 일단은 설명되며 한국 측은 다른 내용이 될지도 모르지만 설명된다. [중략] 문구는 달라도 되지만 반드시 무효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로는 일시적 효력 정지로도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불충분하다³³⁾.

여기에서 유진오대표가 “논의되는 점, 예를들자면 ‘언제부터’ 라든지도 일체 덮어 두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5회 위원회에서 오오노대표가 “무효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일본 측도 한국 측도 각각 입장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조약이 성립할 경우 각국의 의회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주 28과 같은 자료, 892-977) 이론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즉 유진후는 쌍방 의회에서 따로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에 대해 히라가 켄타(平賀健太) 수행원은 “일본의 법률용어로서 무효라는 문구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 여기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어서 오오노대표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무효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언제부터 무효였는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미(もはや)’라는 문구를 첨가하고 싶다. 영어의 ‘now’ 정도의 심정이다. [중략] now 나 no longer라는 말을 넣지 않는다면 무효라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주 33과 같은 자료, 892-977).

결국 타결에는 미치지 못 하였지만, 제1차 교섭의 제7회 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중요하다. 종래 한국 측이 제시한 ‘무효다(are null and void)’에 ‘이미(もはや)’라는 문구를 첨가해 ‘무효’의 시기는 한일 쌍방이 제각기 해석 설명한다는 타결안은 제7차회담에 있어서 고안되었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미 1952년 제1차 교섭에서 제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4월 2일 최종회의 제8회 기본관계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이 작성한 ‘공동시안草案(한일우호

32) “日韓會談第6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3.22).” 일본의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5차공개, 892-978.

33) “日韓會談第7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3.28).” 일본의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5차공개, 892-979.

조약안)’이 심의되어 ①조약명칭은 “기본관계를 설정하는 조약” 으로 한다 ②전문 제3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³⁴⁾. 하지만 제1차 교섭이 청구권문제로 결렬됨에 따라 이 합의는 결실을 맺지 못 하고 논의는 1960년대 교섭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한데 필자는 『한일교섭-청구권 문제 연구』에서 “한국 측은 ‘구조약무효확인조항’ 삽입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한국국민의 의지 희망 가정 이해를 ‘흡수’한 것이었지만 직접적으로는 한일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정치적 대항장치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따라서 ‘구조약무효확인조항’을 둘러싼 한일 양정부의 논쟁은 “관료주의적 대립이며 식민지배·전쟁의 본질과 그에 의한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다”라고 논하였다(太田修 2003, 87, 338).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이해는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며 식민주주의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진다. 즉 결론을 미리 말해 두자면 ‘구조약무효확인조항’ 삽입론의 “정치적 대항장치로서의 성격”보다도 일본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조선·한국인의 사상과 희망이 반영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 첫번째 이유로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이후의 역사적 경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가 지적해 왔듯이 1905년부터 10년에 걸쳐 일본 측이 모든 협정과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강제로 했고 식민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 황제나 지식인, 의병에 의한 여러 저항과 운동이 있었다³⁵⁾.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김규식이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임시정부 한국독립승인청원서’에서는 ‘합병조약의 폐기’가 주장되어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로 알려진 1941년 작성된 ‘대일정부성명서’에서는 ‘합방조약 및 일정의 불평등 조약의 무효’가 선언되었다(海野福寿 2000, 3-9). 무엇보다도 조선 중국 일본 등에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민족의 독립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폐기’론, ‘무효’론의 표명이나 여러 저항과 운동은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한국정부의 ‘한국병합조약무효론’으로 표현되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측이 ‘한국병합조약무효론’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던 1950년대 초 식민지 지배 인식을 둘러싼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1949년에 작성된 『대일 배상 요구조서』 서문 “對日賠償要求의 根據와 要綱”의 “기본정신”에서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日本의 韓國支配는 韓國國民의 自由意思에 反한 日本單獨의 強制的 行為로서 正義, 公平, 互惠의 原則에 立脚치 않고 暴力과 貪慾의 支配”였다고 하면서도 “對日賠償要求의 基本精神은 日本을 懲罰하기 爲한 報復의 賦課가 아니고 犠牲과 恢復을 爲한 公正한 權利의 理性的要求”이며 “乙巳條約의 無効性을 國際法的으로 辯明”하여 “비합법통치”로서 “歴大하고도 無限한 損失에 對하여 賠償을 要求할 수도 있다”지만 “此는 茲에 全然不問에 부치”고 “中日戰爭 및 太平洋戰爭”의 “人的物的被害”에 한해 “배상”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大韓民国外務部政務局 발행년불명1949?, 1-2). 즉 1949년 당시의 한국정부는 “乙巳條約의 無効性”은 주장하지 않고 강화조약 서명국이 되어 “犠牲과 恢復을 한 公正な權利”의 “배상”을 요구하는 방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연합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을 못 하여 ‘배

34) “日韓會談第8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4.2).”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5차공개, 892-980.

35) 이태진, 강성은, 이종현 등의 연구를 참조할 것(笹川紀勝, 李泰鎮編 2008).

상'을 요구하지 못 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탈리아·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지배가 사실상 용인되어 일본정부는 그에 의거하여 식민지 지배가 “적법”적으로 행해져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향상”을 가져 왔다고 주장하였다. 1950년대 초에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지 않는 ‘제국의 논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한국 측은 “법 이론적 모순”이 포함됨을 알면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비합법적통치’였다고 하는 ‘한국병합조약무효론’을 전개함으로써 ‘대일배상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해 가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보다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 제1차 교섭 기본관계위원회에서의 ‘한국병합조약’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 측의 “착취적 식민정치” 비판을 논파하고 “일본의 조선통치 하에 있어서 한국인의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향상”을 “교시”하려 한 일본의 식민주의와, 한국 측이 무효론의 근거로 주장한 “민족의 총의에 반하는 병합”론, 즉 한구 측의 식민지 지배 비판이 대항하는 장(場)이 되었다는 점이다. ‘무효론’의 밑바닥에 흐르는 한국 측의 식민지 지배 비판은 역사로서 재조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상호포기 내지 상쇄(相殺)방식’의 확정

1956년에 외무성이 정리한 ‘조선문제(對조선정책)’³⁶⁾ 속에는 1951년 한일예비교섭 개최 전야 방침에 대해 서술한 자료가 있다. 그 안에 ‘對韓 정책의 大綱’ 및 ‘對韓 구체적 방침’에서는 미국 측과의 ‘협의’ ‘양해’ 하에 한국의 “경제부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상품차관의 공여를 약속”하고 “문화적,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여 한국이 “공산주의세력의 침투를 막는 기반”을 만들도록 지원해 가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청구권 문제’에서는, 한국 측은 일본의 조선통치가 “착취적 식민정치”였다는 인식에서 “범백(凡百)사에 걸친 거액의 대일청구”를 제사하는 것이 예견되었기에 일본 측은 이것에 대해 “훨씬 방대”한 재한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측은 그에 응할 가능성은 없으며 일본 측도 “교섭도구(bargaining tool)”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하와 같은 단계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 (1) 일본인 소유에 관계되는 재산권에 대해 그 정당성 및 유익성을 감별하여 우리 측이 이후 부여해야 할 기술적, 경영적 원조와 결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 혹은 앞의 재산권에 기반한 경영을 일본인에 맡기는 편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일본인에 반환하는 것이 양국의 합작 대의에 일치함을 제안한다.
- (2) 상대방이 (1)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쌍방의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여 양국 국교의 재출발이 원활해지도록 제안한다.
- (3) (2)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양국 혼합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약속하며 문제해결에 이월한다.

(1)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의 “쌍방의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안이 모색되었다고 여겨진다. 결국 (3) “문제해결을 이월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상호포기론”이 제기된 것이 주목을 끈다.

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씨에 의하면, 재외자산 배상처리와 현지 주민 측으로부터의 모든 청구권을 상쇄한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은 적어도 1947년 여름경에는 제안되었다고 한다(淺

36) “朝鮮問題(對朝鮮政策)(1956.2.21, Ⅲ五課).”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3차공개, 2201-67.

野豊美 2008, 609). 외무성이 1949년 말에 작성한 문서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산적 사항 처리에 관한 진술’에서는 특히 조선이나 대만 등의 구식민지와 사이에 ‘상호포기론’이 논의되었다. 그에 따르면 강화조약에 구식민지의 “일본의 공사유 재산 전면적 포기”를 규정한다면 그것들은 “할양지에 관한 모든 대일 청구를 배상하여도 훨씬 남기” 때문에 “각개의 공사 책무”를 포함한 대일 청구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싶다”. 그것은 “결코 공평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단명쾌하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며 후일에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한국 측의 “막대한 청구”는 “일본의 負擔능력을 넘어서 그 경제 자립화를 심히 저해한다”고 하여(주14과 같은 자료, 445), 청구권의 ‘상호포기론’을 전개하였다. 이듬해 5월에 작성된 ‘평화조약의 경제적 의의(우리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서술 변화가 보이지만 같은 주장이 펼쳐졌다³⁷⁾.

이러한 ‘상호포기론’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한달 반 전에 작성된 문서 ‘제4조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 설명’으로 보다 선명해졌다³⁸⁾. “할양 지역(특히 조선을 염두로 생각하기 바란다)에는 거액의 일본 공유 및 사유재산이 있”지만, 그러한 재산은 “모두 현지에 남겨져(중략) 무책임하게 처리되었다”. “남은 일본의 재산”도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다. 결국 “재산이나 청구권 관계가 너무도 복잡”하여 패전 후의 “6년간에 완전히 파괴돼버려(중략)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청구권 처리는 “실행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각 지역내에서 종결하여 상호에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해결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1951년 12월에 작성된 ‘재산, 청구권 처리에 관한 건’³⁹⁾에서는 “한국 측이 방대한 재조일본자산을 수중에 넣으며 더욱이 일본 측에 대해 모든 종류의 청구권을 제기 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한” 것이며, 청구권처리문제를 항목별로 절충한다면 “매우 복잡하며 가열한 논쟁”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호 일괄 포기”하기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재한일본재산청구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1차 교섭에서 일본 측이 재한일본인재산 청구권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상호일괄포기’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립이 격화되어 교섭이 결렬되었다. 그 밖에 외무성은 재한일본인재산 청구권 주장에 근거한 ‘상호포기론’이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조건의 ‘상호포기 내지 상쇄방식’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⁴⁰⁾.

하지만 실제 교섭에서는 일본 측은 ‘상호포기 내지 상쇄방식’뿐만 아니라 재한일본인재산 청구권도 여전히 주장했다. 제4차 교섭에서 이 주장이 철회되었다고는 하나 제5차, 제6차 교섭에서 ‘청구권’ 금액을 조정할 때에도 재한일본인재산 청구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그것은 ‘상호포기 내지 상쇄방식’에 의해 처리된다면 일본의 “청구권자에 대한 국내보상 문제가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성(大藏省)은 귀국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이유로 ‘상호포기 내지 상쇄방식’에 반대했다⁴¹⁾. 하지만 적어도 제3차 교섭 직전에는 대장성도 외무성의 방침에 접근하여⁴²⁾,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은 ‘상호포기 내지 상쇄방

37) “平和條約の經濟的意義(われらの立場)(1950, 5, 31).” 外務省編(2006, 496-497).

38) “第四條に關する日本政府の所見の説明(26, 7, 24).” 外務省編(2007, 576-577).

39) “財産, 請求權處理に關する件(1951.12.10, Ⅱ二課).”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6차공개, 1106-536.

40) “日韓國交調整特に請求權問題について(1952.11.10, アジア局第二課).”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5차공개, 1042-1303.

41) “請求權問題外務, 大藏打合せ會(1952.7.22).”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6차공개, 922-657.

42) “請求權問題外務, 大藏打合せ會(1953.10.8).”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6차공개, 922-657.

식'에 수렴되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상호포기 내지 상쇄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전술에 대해 간단히 지적해두고자 한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1952년 제1차 교섭 직전에 작성된 '청구권 문제 회담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교섭요강'에 그에 대한 초기의 기술이 보이며 그 제3항에는 한국 측에 "확실한 증거자료 첨부을 요구한다. 이것은 상대방에 방대한 청구를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전란에 결과 자료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기술되어 있다⁴³⁾. 또 제2차 교섭 직후에 외무성과 대장성이 합동으로 연 '청구권문제 협의회'에서도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말하지 않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려 갈" 것이 필요하다는 전술이 확인되었다⁴⁴⁾.

이와 같이 한국 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 '사실관계'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이미 제1차 교섭 시 확정되며, 청구권문제를 '상호포기 내지 상쇄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기본방침의 실현을 노렸던 것이다.

맺음말

이상 두개의 강화조약에서의 구미 여러나라의 식민지주의 및 전후 일본의 식민지주의, 그리고 초기한일교섭에서의 기본관계와 청구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 강화조약 준비과정에서는 이탈리아의 구식민지 지배처리 문제가 제기되어 그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준비과정에서도 한국에 의해 식민지 지배 처리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조약체결 당사국이었던 이탈리아와 일본 및 연합국 측은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분리하여 이탈리아 및 일본의 전쟁책임은 묻지만 식민지 지배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인식과 대응을 보였다. 즉 연합국 측과 이탈리아 및 일본은 전쟁책임에서는 대립적이면서도 식민지처리문제에서는 이해를 공유하는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강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식민지주의와 그것을 방패로 삼은 일본의 식민지주의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일교섭이 열린 것이다. 기본관계문제에서는 "일본의 조선통치 하에서 한국인의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향상"을 "교시"하려 한 일본 식민지주의와 한국 측의 식민지 지배 비판이 대항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묻지 않는다는 타결안이 채택되었다. 청구권문제에서는 일본정부는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분리 시의 국가 재산 및 책무의 계승관계로서 다뤄져야 한다"라는 '청구권' 개념을 도출해 내어 그에 의거한 양국의 '재산 및 책무'를 '상호포기 내지 상쇄'하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그 후의 과정을 전망한다면, 기본관계문제에서는 1965년 제7차 교섭에서는 제1차 교섭에서 제시된 '이미(もはや)'를 넣어 쌍방이 서로 각기의 해석을 하는 타협안이 보다 보강되어진 형태로 기본조약 제2조 "もはや無効である(are already null and void, 이미 무효이다)"가 확정되어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불문에 붙이는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청구권문제에서는, 일본정부가 제3차 교섭 전후에 기본방침으로 확립한 '상호포기 내지 상쇄'론은 1960년대 제5, 6차 교섭에서 계속 주장되어 '경제협력' 처리방식의 틀을 확정지은 '오오히라·김 합의'로 1965년의 '재산 및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주지하는

43) "請求権問題會談の初期段階における交渉要領(1952.1.23, アジア二課)."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6차공개, 1106-537.

44) "外務大蔵第二回請求権問題打合せ会(1952.7.26)." 일본외무성공개 한일회담문서, 6차공개, 922-657.

바와 같이 여기서 3억달러의 ‘생산물 및 용역’의 ‘무상’ ‘공여’, 2억달러의 ‘생산물 및 용역’의 ‘장기저리대출’, 3억달러 이상의 ‘민간신용공여’가 명기되었으며, “양 체결국 및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결국 및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에 체결된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상호포기 내지 상쇄’가 아니더라도 한국 측의 모든 종류의 청구권은 “너무 불공정하다”는 ‘상호포기 내지 상쇄’론 위에 세워진 처리방식이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포기 내지 상쇄’론이야 말로 식민지 지배를 불문에 붙인다는 식민지주의가 관철된 것이라는 점이다.

단지 본고에서 검토한 식민지주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명확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강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에 준거하여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도 강화조약의 초안에 깊이 관여한 미국과 영국의 인식이 보다 선명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기본관계문제와 청구권문제에 대해서만 검토했지만 제일한인법적 지위문제, 문화재문제에서도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방침이 정해졌는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1960년대 ‘오오히라·김 합의’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협력방식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 피지배관계를 처리할 때에 구미 여러나라가 실시한 다른 하나의 식민지주의였다라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논고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한일교섭과 그 결과 체결된 한일조약이, 왜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지 못 하였는지, 식민지주의 비판이라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검토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196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
- 오오타 오사무. 2012. “두개의 강화조약에서의 식민지주의와 일한 ‘청구권’문제.”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6월.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장박진. 2008.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형성과정의 분석:제2조<구조약 무효조항> 및 제3조<유일합법성 조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권2호, pp. 1-39.
- 北原敦編. 2008. 『新版 世界各国史一五 イタリア史』 東京:山川出版社.
- 金民樹. 2000. “対日講和条約と韓国参加問題.”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
- 並木真人. 1997a.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朝鮮篇.” 井村哲郎編 『1940年代の東アジア 文献解題』 東京:アジア経済研究所, pp. 299-305.
- 並木真人. 1997b.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朝鮮篇 補論 - 「日本人の海外発展に関する歴史的調査」 および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研究調査」 を中心に -.” 井村哲郎編 『1940年代の東アジア 文献解題』 東京:アジア経済研究所, pp. 319-331.
- 高橋進. 1995. “イタリアにおける戦後処理.” 『季刊戦争責任研究』 7호, pp. 14-17.
- 竹前栄治監修. 1993a. 『GHQ指令総集成第12巻SCAPIN1745-1800』 東京:エムティ出版.
- 竹前栄治監修. 1993b. 『GHQ指令総集成第13巻SCAPIN1801-1950』 東京:エムティ出版.
- 大韓国外務部政務局. 발행년불명(1949?). 『対日賠償要求調書』
- 宮本正明. 2006. “敗戦直後における日本政府・朝鮮関係者の植民地統治認識の形成 -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成立の歴史的的前提.” 『世界人権センター研究紀要』 11

- 호, pp. 113-141.
- 笹川紀勝, 李泰鎮編. 2008. 『国際共同研究 韓国併合と現代－歴史と国際法からの再検討』 東京: 明石書店.
- 佐々木隆爾. 1993. “いまこそ日韓条約の見直しを.” 『世界』 4, pp.120-136.
- 鈴木武雄. 1946a. “朝鮮統治への反省.” 『世界』 5, pp. 41-54.
- 鈴木武雄. 1946b. “朝鮮産業経済の発展と在鮮日本系事業”(『友邦文庫』 333-15,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所蔵).
- 鈴木武雄. 1951. “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反省と反批判－.” 大蔵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通巻第11冊 朝鮮篇第10分冊 (小林英夫監修. 2000.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第5巻 朝鮮篇4』 東京: ゆまに書房.
- 浅野豊美. 2004. “折りたたまれた帝国－戦後日本における「引揚」の記憶と戦後的価値－.” 細谷千博. 入江昭. 大芝亮編 『記憶としてのパールハーバー』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 浅野豊美. 2008. 『帝国日本の植民地法制－地域統合と帝国秩序－』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 太田修. 2003.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東京: クレイン.
- 太田修. 2008. “財産請求権問題の再考－脱植民地主義の視角から.” 笹川紀勝, 李泰鎮編 『国際共同研究 韓国併合と現代－歴史と国際法からの再検討』 東京: 明石書店, pp. 696-717.
- 太田修. 2011. “二つの講和条約と初期日韓交渉における植民地主義.”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 脱植民地化編』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pp. 21-54.
- 吉澤文寿. 2005.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る』 東京: クレイン.
- 吉澤文寿a. 2006. “日韓会談研究の現状と課題.” 『歴史学研究』 813号, pp. 48-55.
- 吉澤文寿b. 2006. “植民地支配の「清算」とは何か－朝鮮を事例として－.” 『歴史評論』 677号, pp. 31-40.
- 海野福寿. 2000. 『韓国併合史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 石田憲. 2008. 『敗戦から憲法へ－日独伊 憲法制定の比較政治学』 東京: 岩波書店.
- 日本国外務省条約局譯. 1947. 『イタリア平和条約』 東京: 文友社.
- 日本国外務省. 1965. 『日韓諸条約につて』 東京.
- 日本国外務省編. 2006. 『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準備対策』 東京.
- 日本国外務省編. 2007. 『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対米交渉』 東京.
- 日本国. 1952. 『官報』 東京.
- ジョン・フォスター・ダレス(藤崎万里譯). 1950. 『戦争か平和か』 東京: 河出書房.
- 塚本孝. 1992. “韓国の対日平和条約署名問題－日朝交渉、戦後補償問題に関連して－.” 『レファランス』 494号, pp. 95-100.
- John Foster Dulles. 1950, *War or Peac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1947, *Treaty of Peace with Italy*, Printed in USA.
- Department of State. 197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7 Vol. III*.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epartment of State. 197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9 Vol. VII*.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2. 일본 패전 후 한일 분리와 한반도의 주권(主權)

-신탁통치안 및 「한국포기」조항에 대한 논리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나가사와 유코 (長澤裕子, 二松学舎大学)

I. 문제제기

1945년 9월 2일, 일본정부는 연합국에 대한 항복선언에 조인한 후에도 한국에 대한 주권(sovereignty over Korea)이 대일강화까지 일본에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본정부는 신민정책으로 인해 보유한 한국주권이 패전 후에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석했다(長澤, 2006, 42-46). 이 주장은 종전 직후 조선총독부의 대미외교에도 반영됐다(長澤 2007, 85-109). 일본측은 한일회담(1951-1965) 기간에도 국제법에 기반하여 같은 의견을 뒤풀이했다. 한일외교사에서도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1953년 10월 소위 “구보타 망언”에도 “대일강화 이전의 한국독립은 국제법위반”이라는 언급이 들어가 있었다(長澤 2011, 145-146).

이에 한국측은 “한국은 1948년에 독립하고 일본은 1952년에 독립했는데, 후생국인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반박했다(「日韓會談時における韓国獨立の時期についての論議」, 5) 그런데,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의 사실과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을 인정 안 했던 것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연합국의 한국승인이란 한국이 한일관계에서 대일강화조약 체결 이전부터 독립했음을 의미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립시기를 일본과의 관계에서 1952년 4월 29일로 설정했고, 제3국과 일본의 대한민국 승인시기에는 수년간의 간격이 존재하며, 이를 예외적 사례로 간주했다(「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總說三」, 204-205).

대한민국 건국 직후 한국 지식인들의 한국독립과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1949년 『신천지(新天地)』 창간호는 한국지식인들에게 해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8월 15일 세기적 방송을 들으신 순간의 귀하의 심정을 알고 싶습니다」 와 「완전독립의 시기는 어느 때쯤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것이었다. 이에 교수, 정치평론가, 신문 주필, 기자, 소설가를 비롯한 30명 이상이 응했다. 윤태웅 및 민원규 연의전문대 교수, 나세진 성균관대 교수, 양재하 신조선보 주필, 함상훈 정치평론가, 임화 및 이태준 작가가 이 명단에 올라가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답은 「아직 독립이 안 되었다」 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 그들은 국제법 상위라는 점을 들었다. 대부분의 답은, 독립이란 국제적 지지, 즉 연합국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들 한국 지식인들의 주장은 한국의 즉시독립이 국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공식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통일이나 38선이 철폐되어야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신천지』, 1949, 70-73; 138-139).

그런데, 일본정부의 주장이나 한국 지식인들의 인식은 한국의 독립을 규정한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포츠담선언이라는 국제조약의 내용과 충돌된다. 일본이 어떠한 논리에 근거해서 패전후에도 한국에 대한 주권 유지를 주장했는가? 본고는 일본의 한국주권 포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미국의 대일정책 속에서 일본의 다른 식민지역의 예와 함께 검토한다. 특히, 신탁통치안과의 정책적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일강화조약에

「한국주권포기」 조항이 삽입된 정책과정을 배상논리의 논리적 문맥과 함께 해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시기는 1945년 패전 직후부터 1951년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로 설정한다.

II. 일본의 대소(對蘇) 교섭 실패와 대한정책 교섭 창구의 미국 단일화

1. 대소 기대와 직·간접 교섭의 실패

일본정부는 1945년 8월 10일에 연합국측에게 항복의사를 밝히고, 9월 2일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항복문서에 조인했다. 일본정부의 주권은 연합국총사령부에 위해 제한되어, 일본의 국제적 지위도 또한 실질적으로 약화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미국에게 한반도의 주권을 주장했다. 일본의 패전 직후 미국은 대일정책을 결정하는데도 강대국 사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서있었다. 예를 들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대일점령정책 결정사항을 보면, 미국이 연합국들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우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46년에 활동을 개시하고 대일점령정책을 수행하는데 맥아더(Douglas MacArthur) 연합국총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심의기관으로서 기능한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와 대일이사회(Allied Council for Japan)의 설립 결정이 주목된다. 극동위원회는 워싱턴에서 연합국 11개국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최고사령관(미국), 소련, 중국 그리고 영국의 대표로 구성됐다. 대일이사회는 동경에 있는 기관으로 극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련, 중국, 영국 대표로 구성되었는데, 역시 미국이 최고사령관을 맡았다(天川1999, 79).

그런데, 1945년 종전 직후, 국제사회에서 대일정책의 결정과정이 미국으로 단일화되기 이전 시기에 일본정부는 소련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전후 일본정부는 대한정책의 교섭창구를 미국으로 단일화하게 되는데, 우선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제2절에서 종전 직후 일본의 대소교섭을 분석한다.

일본정부는 북한지역(이하, 지리적 개념으로 북한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의 일본 권익을 보장받으려고 대소 직접 교섭을 시도했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7). 일본정부는 패전 직후부터 정부대표를 한국에 파견했다. 일본측의 대소교섭 책임자는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과 외무성의 카메야마(亀山) 참사관이었다. 엔도 정무총감은 외무성에게 대소교섭에 대한 제의와 관련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일본측이 주한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I. M. Chistyakov) 과 우선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정부도 또한 소련군과의 직접교섭을 위해 치스차코프 사령관을 교섭상대자로 선택했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8).

일본측의 대소 기대는 엔도 정무총감이 외무차관에게 제출한 5가지의 대소(對蘇) 요구사항으로 정리됐다. 구체적으로는, 1) 현지 일본인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소련군의 특별조치, 2) 북한지역 일본인의 경찰관 역류로부터의 석방할 것, 3) 현지 발전(發電) 및 송전(送電) 공장 등에서 일본인 직원을 원래 직책에서 재고용할 것, 4) 퇴직자 및 그 가족의 귀국에 따른 이동, 식량 및 보호에 대해 소련군의 배려 제공, 5) 피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보호시설을 확보할 것 등이었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7).

엔도는 그 중에서 특히 북한지역 일본인의 현직 복귀를 강조했다. 엔도는 생산물 중단과 정전(停電)의 원인을 종전 직후에 한국인이 북한지역의 발전(發電)과 송전(送電) 및 비료

(肥料) 시설이나 함경남도의 공장을 독점 운영한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지역 일본인의 전직(前職)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7). 엔도의 대소 요구사항을 보면, 북한지역에서 일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보인다. 그러나 관공사 무소를 비롯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의 복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소련군의 대일 공습과 관련이 있다. 소련군은 일본정부가 판단하기에도 신속히 한반도 북부에 침입하고, 관동군은 8월 15일 항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련군한테서 공습을 받았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2). 소련의 대일 자세는 태평양전쟁 중에 미일 양군 간의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었던 남한지역과는 달랐다. 일본주민들은 평안남도 및 함흥남도 라인에 따라 고지대(高地帶)에 피난하기 위해 먼저 북한지역 내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미소점령의 접촉지역에 거주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무산(茂山) 지역의 산속 깊은 곳으로 피난했다. 8월 20일경부터는 무산으로 신의주 지역으로부터 일본 피난민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었다. 약 7만 5천명의 전쟁 피난민은 다시 이동해서 평양으로 남하할 수밖에 없게 되자, 평양의 일본 당국은 피난민의 구호시설을 구하는 일에 급급해졌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2).

15일부터 북한지역에 주둔한 관동군과 소련군과의 연락은 일본정부를 중심으로 한 조선총독부와의 연락으로 실시됐다. 경성에 위치한 조선총독부에서는 8월 15일 이후 북한지역과의 통신연락이 차단된 상태였다. 총독부는 8월 25일까지 북한지역 주민의 피난상황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접하지 못했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3). 한반도 38도선 북부에 주둔한 일본 관동군(關東軍)은 8월 17일자 10시 25분에 일본정부의 정전훈령(停戰訓令)을 받았었고(「各方面停戰進捗ノ状況一覽表」, 1), 8월 21일 소련군의 원산(元山) 상륙에 직면해서 소련군에게서 무장해제 되었다.¹⁾ 그 결과 남한 경성(京城)에 위치한 조선총독부와 북한지역의 관동군 간 통신연락이 차단됐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3-4).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정부가 파견한 정부대표에 의한 대소 직접교섭은 좌절됐다. 일본은 소련에 대한 직접교섭 제의에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일본인이 아니고 소련출신 관계자를 통해서 일본측 요구를 소련측에 전달하는 대소 간접교섭을 추진하려고 했다. 8월 29일, 엔도는 외무성 외무차관에게 전보를 보내, 주(駐) 경성 소련영사가 치스차코프 사령관과 면담하도록 평양을 방문할 방법을 제의했다. 엔도는 이 면담을 위해 외무차관이 주일(駐日) 소련대사와 함께 사전공작을 전개하는 것과 재(在) 경성 소련영사가 평양을 다녀올 수 있도록 외무성의 허가를 요청했다. 엔도는 주일 소련대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1)주서울 소련영사로 하여금 소련군 사령관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2)주일소련대사가 직접 북한점령 소련군 사령관에게 일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을 구상했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6-7). 그러나 소련은 일본이 요청한 대리인에 의한 간접교섭 제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대한정책 교섭 창구의 미국 단일화

1) From Japanese Government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eptember 16, 1945, CLO No. 3, p. 4; "Attitudes Toward Occupation Forces in Korea, Period: September 14 ~ November 10, 1945," Headquarters, XXIV Corps, G2 Section, Civil Communications Intelligence Group-Korea, November 26, 1945, RG 407, Box 2073, National Archives Records and Administration(이하, NARA로 약기), p. 5.

일본정부는 대소교섭에 대한 미국의 후원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정부는 9월 15일자 각서로 대소교섭의 알선을 연합국총사령부에 요청했고, 다음 날에는 연합국총사령부에게 카메야마 외무성 참사관의 한국과견과 그의 체류에 대한 편의제공을 요청했다(「龜山參事官京城出張ニ便宜供与ノ件」, 1945/9/16). 일본정부는 연합국총사령부에게 대소 직접교섭이 난항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무성 참사관을 북한지역에 파견할 필요성과 이에 대한 협조를 의뢰했다(「執務報告第1號」, 1945/11/15).

연합국총사령부가 일본의 대소교섭에 대한 소련측의 의사를 물어보는 소련군 사령관에 대한 소신을 보내자, 소련사령관은 10월 6일자로 일본의 대소교섭 요청을 기각했다(「執務報告第1號」, 1945/11/15). 이에 따라 일본의 대소 직접 교섭의 실패가 공식적, 국제적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시에 일본의 대한정책이 10월 6일을 기점으로 남한지역에 국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군정청은 10월 6일 이후 일본의 대소교섭을 강경하게 막았다. 미군정청은 일본정부가 파견한 일본정부의 대표들을 모두 그날에 구속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미군정청은 10월 9일자로 카메야마의 보조원으로서 서울에 체류중이던 이나다(稲田) 이사관에 대해서도 출두명령을 내려, 서울 출장의 목적과 출장 지시를 내린 사람을 알아내기 위한 신문(訊問) 조사를 실시했다. 미군정청은 구속한 일본정부 대표들을 10월 17일까지 주한 구(舊) 일본군 헌병사령부에 억류했다. 미군정청이 억류한 일본대표자들을 미군기로 일본 아즈기(厚木) 비행장으로 송환시키자, 연합국총사령부가 그들을 오모리 수용소(大森收容所)로 보냈다. 결국, 대소 교섭을 위해 파견된 정부대표들은 일본정부의 대(對) 연합국총사령부 연락 창구인 종전연락중앙사무국이 연합국총사령부와 합의할 10월 22일까지 옥류됐다(「執務報告第1號」, 1945/11/15).

일소간 접수는 남한처럼 우선 미군정청이 유일하게 일본재산을 접수한 것과 달랐다. 미군정청과 총독부 간의 접수는 경제 및 정치적 공백(Vacuum)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군정청에게 재산의 권리를 옮긴 것이었다.²⁾ 그러나 소련군의 일본재산 접수는 일본권리의 전면적 박탈형태로 진행됐다. 소련군은 일본군을 행정지역 단위로 접수했다. 군 관련 무기와 요새는 소련군으로, 행정권과 주요 공장 및 금융기관 시설은 한국인이 조직한 각 지역 인민위원회를 상대로 접수됐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5-6). 원산지역의 일본항공대와 요새 사령부 등이 무장해제 되었으며, 육군 창고는 소련군에 접수됐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3).

III. 미국의 對日 한반도 주권 포기 교섭 실시

1. 미군정의 남한점령과 한국주권

일소 교섭이 좌절된 반면에, 남한에서는 일본군과 총독부 측이 직접 면담하고 종전대책을 논의했다. 한반도의 주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같은 해석을 했었다. 미 국무부의 8월 31일자 문서 「한국에 대한 권리의 이동(Transfer of Title to Korea)」에 따르면, 미국은 적국(敵國)의 식민영토에 대한 주권이란 승전국에 자동적으로 이동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국무부는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이 보유한 한국주권을 전승국 미국에 이양시키지 못한다

2) Albert Lyan, The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pinions Rendered in the Role of Legal Advise to the Military Government of Korea, and Covering a Period from March 1946 to August 1948", RG 331 Box 1464, NARA.

는 입장에서 대일정책을 수립했다.³⁾

점령 자체는 영토에 대한 주권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으로 인해 점령된 영토에 대해서도 점령 아니고 평화조약처럼 적절한 법적 저지가 있을 때까지 법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 항복선언에 대한 일본의 조인과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군사적 점령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연합국의 한국신탁통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다. 보통 영토주권의 이동은 공식적 조약에 의한 양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 포츠담선언은 일본정부가 연합국총사령부가 지시한 명령을 집행할 것을 고려해서 규정한 것이며, 일본정부가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연합국총사령부가 직접 행위를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4개 연합국으로부터 한국의 권한과 권리를 이양할 것을 명령을 받아야 한다.⁴⁾

미군정청 법무부에 의하면, 미군정청은 영토주권을 결정할 기능을 보유하지 않았다.⁵⁾ 미소 공동위원회와 유엔임시한국위원단(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특별고문(Special Adviser)으로서 미군정청의 법무 분야의 책임자였던 미군정청 법무부 어니스트 프랑켈(Ernst Frankel)⁶⁾은,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의 주권이 정지된 상태라고 해석했다(어니스트 프랑켈, 94-95).⁷⁾ 총독부도 이와 같은 해석을 했다(『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 32-33). 미군정청 법무부는 일본 패전후 한국의 주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미소 양국은 “임자 없는 땅”을 점령한 것으로 해석했다(어니스트 프랑켈, 93-94).

주한 미군정청의 구조(system)에 대한 법적 입장은 국제법 상 전례가 없는 것이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 제8항은 「일본의 주권을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규주(九州), 시코쿠(四國) 그리고 연합국이 규정한 제소도(諸小島: such minor islands)에 제한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한다.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포츠담선언에 조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주권을 박탈당했다. 일본의 항복은 일본제국에서 한국을 사실상 분리할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적대 관계의 종료는 한국의 국가를 합병 이전으로 복귀시키거나 한국의 새로운 국가 수립을 초래하지 않다. 일본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은 1910년 8월 29일의 한일합방조약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지 않다. 한국의 해방은 한국인의 혁명 운동으로 달성되지 않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전승국의 결정에 의해 끝났고, 이 결정은 미국 및 소련군의 결정에 의해 집행됐다. 1945년 8월과 9월, 소련군과 미군이 한국 점령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국제법 상 “주인이 없는 땅(no-man's land)”이었다. ... 한국이 국가들 사이에서 독립된 국가로 간주될 때까지, 한국의 주권은 정지 상태(abeyance)였다. ... 주권이 점령한 국가의 정부에 있다는 일반적인 국제법의 규정은 정부를 갖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점령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의 주권 정부가 부재했기 때문에 미군정청 사령관이 남한 정부의 주권에 대한 권위를 대신 행사했다. 국제법에는 정부를 갖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군사점령의 실질적 주권 행사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⁸⁾

3) (Secret) “Transfer of Title to Korea,” Discussion 2, August 31, 1945, *Records of the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and under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1941-48, 50*, RG59, Box12, NARA.

4) Ibid.

5) Ibid., p. 3.

6) Albert Lyan, The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pinions Rendered in the Role of Legal Advise to the Military Government of Korea, and Covering a Period from March 1946 to August 1948”, RG 331 Box 1464, NARA.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Ernst Frankel, “Structure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G 554 Box 23, NARA.

8) Ernst Frankel, "Structur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G 554 Box 23, NARA. pp.1-3.

미군정청은 종전 이전에 보유한 한국에 대한 이권이 전후에도 유효하고, 또한 일본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대한정책 개입 여지는 전후에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을 제거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⁹⁾ 미군정청은 일본의 영향을 제거(elimination Japanese influences from Korea)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했다. 한일분리(separation Korea from Japan) 정책은 일본 영향력의 제거와 미군의 남한 점령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한일분리정책은 국무부와 연합국총사령부 간에서 시급한 중요 정책이라는데 합의가 있었다. 1945년 10월 초에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정치고문인 애치슨(George Atcheson)도 일본과 한국을 법적으로 분리할 지령이 빠른 시기에 내려져야 하며, 최고사령관이 이 지령의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고 인식했었다.¹⁰⁾ 11월 10일에는 연합국총사령부 민정국 한국과 과장의 클락크(Bruce Clarke)도 한일 간의 법적 분리에 관한 명령의 필요성을 지적했다.¹¹⁾ 이상 미국측의 정책 흐름은 당시 한반도와 일본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2. 주권 이양의 국제 사례와 미국무부의 해석

한국주권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국제법의 선례에 근거한 것이었다(*Digest of International Law*, 526). 국무부는 한미일의 삼각관계가 과거 스페인의 식민영토 쿠바에 대한 통치권과 미국과의 관계를 처리한 선례와 유사하다며, 미국이 스페인과 체결한 1898년 8월 12일자 의정서(protocol)에 주목했다. 이 의정서로,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를 비롯한 스페인의 식민영토에 대한 주권과 모든 권리가 포기되었고, 푸에르토리코와 기타 섬들이 미국에게 이양할 것이 결정됐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 의정서가 주권의 변경(change of sovereignty)을 초래하지 않아서 스페인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1898년 12월 10일까지 식민영토에 대한 주권을 유지했다고 해석했다.¹²⁾

같은 해석은 전쟁 중인 1942년부터 이듬해에 걸쳐서 미 국무부가 실시한 보튼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에 의한 한반도의 독립문제연구에도 들어나 있다. 이 보고서는 1898년의 쿠바를 선례로 간주해서 한국의 독립권을 승인하되 주권과 통치권은 보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용욱2003, 36).

카이로 선언을 승인함으로써 일본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한국이 독립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스페인이 조인한 1898년 8월 12일 의정서(protocol)과 유사한 상황이다. 스페인은 쿠바에 대한 주권과 권리(title)를 모두 포기하고 푸에르토리코의(puerto rico)와 기타 섬을 미국에 양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의정서 자체는 주권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스페인은 평화조약에 조인한 1898년 12월 10일까지 영토에 대한 법적 주권을 계속

9) (Secret) "Transfer of Title to Korea," November 5, 1945, *Records of the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and under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1941-48, 50*, RG59, Box12, NARA.

10) "Reference CA 52759" in "Incoming Message 12," from Byomes to,"HQ AFPAC, Tokyo, October 12, 1945, RG 9, Box 154, MMA.

11) From Clarke to Chief, "Suggests directive legally separation of Korea from Japan, and be completed and telegraphed to GHQ," November 10, 1945, NARA 자료, RG331 Box 2189,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실 소장, (GS(B) 1610).

12) "Transfer of Title to Korea", August 31, 1945, Discussion 1.

보유했다.¹³⁾

사실, 일본정부는 위 문서의 작성날짜 8월 31일 시점에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담은 항복선언에 조인하지 않았고, 9월 2일이 되어서야 항복선언에 조인했다. 이 점은 맥아더도 중요하게 여기고, 1946년 1월, 주일 미 제8군 사령관에게 문서를 보냈다. 맥아더는 일본정부가 1945년 8월 이후 9월 2일까지 항복선언에 조인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합국총사령부의 점령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더군다나 그런 자세가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일본정부에 대한 견제 자세를 들어냈다.

항복 선언은 9월 2일까지 조인되지도 않았고, 일본군의 무기에 관해서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도 선포되지 않았다. 일본은 엄격한 항복조건을 수락을 피하려고 해 왔고(attempting to avoid harsh surrender terms) ...포츠담 선언에 위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제는 이러한 자세가 일본 정부에게도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

3. 일본정부의 포츠담선언 영토조항에 대한 기본방침

일본정부는 9월 2일에 항복선언에 조인했으나, 이미 10월에는 연합국측이 일본에 항복을 재촉한 포츠담선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에 대해서는, 일본 주권의 영향력 범위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포츠담선언은 일본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法的性質」, 1). 그러나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란 조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범위라고 예측 가능할 것이다.

이 보다는 일본정부가 이미 조인한 항복선언에 내포된 포츠담선언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포츠담선언의 근본적 성격 규정과 관련이 있다.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을 명령이 아니고 일종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이란 연합국이 일정 조건을 제시하면서 일본에게 종전을 제의한 것이며,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 시행한 일련의 종전 유도행위가 국내법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계약 신청에 해당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외무성은 이와 같은 입장을 대일강화조약의 체결시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예컨대 외무성은 1951년 3월에 포츠담선언을 해석하면서 "[연합국측이] 항복조건을 제시해서 일본에게 전쟁 종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정리했다(「講話への歩み」, 4). 일본측이 기회제공의 사례로 간주한 구체적 사례는 1945년 8월 10일에 일본정부가 연합국측에 항복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일본이 전쟁을 종결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일본측의 제의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일본정부가 "일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연합국측에게 천황제 유지를 비롯한 일련의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제의에 응해진 연합국측과의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석했다(「法的性質」, 1).

그런데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의 존재가 장차 체결할 대일강화조약과의 관련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945년 10월, 외무성 조약국은 항복문서 및 포츠담선언과 대일강화조약과의 관련성을 추론하면서, "[일본]제국정부는 현재 일본국의 영토에서 포츠

13) Ibid, p.1.

14) "from General MacArthur to Commanding General, Eighth U.S. Army," January 14, 1946, RG 331, Box 785-15, NARA자료, 동경대학총합도서관 소장 AG(D)03679 (마이클로 피쉬).

담선언 제8항[영토조항]에 따라 일본국의 주권이 수행되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할 행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조약국은 주권이 미치지 않은 범위에 대한 주권포기 절차의 필요성이야 말로,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 실행이 강화조약의 체결후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平和条約締結ノ方式及締結時期ニ関スル考察」,12).

한편, 조약국은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이 강화조약의 체결까지 실행되지 않으면, 연합국의 군사 병력도 일본에서 철수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조약국이 구상한 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 즉, 1)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을 강화조약에서 분리하고 별개의 조약으로 만들어서 강화조약의 체결 이전에 조인함, 2) 일본정부가 영토의 포기를 선언함이라는 것이었다. 조약국은 이 선택은 연합국의 의지에 따라야 할 것이며, 1945년 10월 현재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런데 조약국은 안1)에 대해서, 일본과 연합국의 합의로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쟁상태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국제관례에 반대되는 안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선례로 취급되어야지 실행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조약국은 안2)에 대해서, 연합국에 의한 일본정부의 주권 제한을 일시적인 조치로 만들기 위해서도 일본정부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결론지었다(「平和条約締結ノ方式及締結時期ニ関スル考察」,12-13).

VI. 미국의 대일(對日) 주권포기 교섭 좌절과 신탁통치선언

1.대(對) 천황 주권포기 교섭의 실패

맥아더의 지적대로 일본정부는 1945년 9월 2일까지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항복 선언문에 조인하지 않았다. 8월 31일자로 국무부가 작성한 「한국에 대한 권리의 이동(Transfer of Title to Korea)」도 일본측이 여전히 한반도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무부는 대응책으로서 아래와 같이 1)천황과의 한국주권 포기교섭, 그리고 2)연합국의 한국신탁통치안이라는 두 정책을 설정했다.

- 결론: 1. 연합국총사령부는 즉시 일본 천황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권한과 권리(title)를 미국, 중국, 영국, 소련에게 포기함을 선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 그 직후에 미국, 중국, 영국 그리고 소련은 유엔헌장 아래 4개 국가가 수립할 신탁통치에 의해 지배되는 준비기간 동안에, 한국의 독립, 즉 독립 정부의 권한 행사가 보류됨을 승인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해야 한다.
3. 만약 일본 천황이 적절한 시일 내에 상기 1번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연합국측은 상기 2번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야 한다.¹⁵⁾

미국이 구상한 대응책은 1)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인하거나, 2)일본이 아니라 연합국이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을 세계적으로 공식 발표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8월 31일 당시, 미국무부가 우선 실시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한 것은 천황에게 한반도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 국무부는 일본에 대해 한반도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게 지도하는 주체기관을 이 안의 작성 전날에 일본에 진

15) "Transfer of Title to Korea", August 31, 1945.

주한 연합국총사령부로 지정했다.¹⁶⁾

국무부가 신탁통치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연합국총사령부는 천황에게 한반도의 주권을 포기하도록 교섭할 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¹⁷⁾

맥아더의 정치고문단인 연합국총사령부 정책자문단(Policy Adviser for SCAP: POLAD)도 또한 일본의 한국주권 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고자 했다. 당시 연합국총사령부에서 일본과의 한국주권 교섭을 담당한 인물은 맥아더의 측근 리처드 풀(Richard Poole)이었다. 풀은 연합국총사령부에서 「천황과 조약 및 조규(條規) 제정 위원회(Committee on the Emperor, Treaties and Enabling Provisions)」에 소속하여, 천황의 대권(大權)을 부인하는 신헌법 제정의 책임자로 천황과의 교섭 및 천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법률연구를 총괄했다.¹⁸⁾ 대일외교가의 자손이며 하버드대학과 육군 출신 국제변호사인 풀이 한반도 주권에 관련한 천황측 인사와의 교섭을 담당한 것은, 연합국총사령부가 법적 전문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진작할 수 있다. 그가 속한 연합국총사령부의 민정국(Government Section) 산하에는 한국과(Korean Section)도 있었다.

연합국총사령부의 대일 한반도 주권 지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일본정부의 항복선언 조인후에 같은 주제로 11월에 작성한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문서는 연합국총사령부기 일본에 주둔한 이후에 일어난 일본측의 입장 변화와 미국측의 정책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일본정부는 9월 2일자로 포츠담선언을 수락했다... 일본정부는 한국(Korea)이 해방 후에 독립하고 일본의 주권이 일본영토와 연합국이 규정하는 제도(諸小島, such minor islands as the Allied Powers determine)로 제한됨에 합의했다.¹⁹⁾

그러나 국무부는 "일본의 포츠담선언 조인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연합국에게」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²⁰⁾ 또한, 일본의 포츠담선언 조인으로 한국주권이 연합국 또는 한민족(Korean)에게 이양된 것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²¹⁾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무부가 강구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정책을 한국에 대한 일본주권을 제거하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신탁통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 ... 영토주권의 이동이나 종료는 공식적 조약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에서 한국주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조인하도록 요구할 것... 한국에 대한 일본의 주권 포기와 한국의 주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규정할 때까지 이 문제를 연기할 수 없다. 일본영토에 대한 최종적이며 완전한 규정은 아마도 늦어질 것이다. ...연합국측이 한국의 주권 상황에 대해서 조속히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주권은 일본의 항복선언에 의해 종료되었지만, 일본의 기존주권

16) Ibid, p. 4; p. 6.

17) (Top Secret) "Status Summary, 3a-1"(이하 "Status"), December 12, 1945, RG 331, Box 1, NARA.

18) "Status," December 12, 1945, p. 8.

19) "Transfer of Title to Korea," November 5.

20) Ibid.

21) Ibid.

(former sovereignty)은 연합국 및 한국인에 이동되지 않았다. 대일강화조약을 통해서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과의 영토규정을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한국의 법적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본이 한국주권을 포기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언급하는 조항을 대일강화조약에 삽입해야 한다. [이상 밑줄 강조는 필자]²²⁾

국무부는 대일강화조약에 일본의 「한국주권포기」 조항이 삽입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일본의 최종적 영토를 연합국 간에서 규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국무부는 강화조약의 체결 이전에 연합국측이 가능한 빨리 한국의 주권 상황을 확실하게 하는 국제선언을 발표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2. 신탁통치: 주권포기를 수반하지 않은 국가분리

다음달 12월말, 국무부가 태평양전쟁 중부터 구상한 연합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모스크바외상회의에서 결정됐다. 한반도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안은 미국이 소련을 비롯한 다른 강대국이 단독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세를 끌어안고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했다는 측면이 있다(정용석, 1984, 116; 藤城, 1992, 200). 그런데 8월말 시점, 국무부에게 신탁통치안은 한국의 주권을 둘러싼 천황과의 주권포기 교섭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의 차선책이었다.²³⁾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국제법의 관례로부터 봐도 일본의 대한(對韓) 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 연합국측이 한국신탁통치안을 실시하는데 국제적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점령만으로는 피 점령국의 주권을 점령국에게 변경할 수 없었던 것과 직결된 문제였다.²⁴⁾

당시 미국이 필요로 했던 것은 신탁통치 실시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정당성이었다. 연합국의 한국신탁통치안의 실시 이유는 기존연구에서 줄곧 한민족의 자치력(自治力) 부족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신탁통치안은 한국인의 정치능력과 별개의 문제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치능력에 대한 언급은 한반도를 일정기간 통치하려는 강대국의 핑계에 불과하다.²⁵⁾ 사실, 한국인은 해방과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창립했다. 그들은 1945년 8월말까지 독립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했으며, 남북한 전국에는 140개 이상의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창설됐다. 일본의 식민통치기부터, 한국인 사이에는 독립운동단체가 있었고 단지 외세의 억압에 의해 눌러 있었던 뿐이었다. 태평양전쟁중 미 전쟁부 내에는 한국인의 항일운동의 조직력에 주목하여 오히려 그들의 이용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미군에서 대일전에 활용할 구상도 있었다(나가사와2007,30-38).

신탁통치안은 해방 직후에 한국의 즉각 독립을 부정한 것이다(서중석, 1991, 14). 미국은 일본의 항복선언 조인으로 한국주권을 한국(Korea)에게 반환하면, 「연합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증가된다고 예상했다.²⁶⁾ 아울러,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한국에게 반환하면, 연합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22) Ibid.

23) Ibid., Conclusion.

24) "Transfer of Title to Korea," August 31, 1945, Item 1; U.S. Rules of Land Warfare, Sections 273, 275.

25) 건국준비위원회의 존재를 한국인의 자치능력의 증거로 보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서중석1991, 14-15).

26) "Transfer of Title to Korea," November 5, 1945.

이 상황에서 1946년 1월 15일에 트루먼(Hurry Truman) 대통령은 일본이 위임통치한 제도(諸島)에 대한 미국의 신탁통치 실시를 선언했다. 트루먼은 적국(敵國)의 식민통치지역을 신탁통치함으로써 적국의 비(非) 영토화가 가능하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일본의 위임통치 제도(諸島)들 중에서 미국이 필요한 지역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적 신탁통치를 실시함에 찬성할 것이다. 신탁통치에는 각 개별 국가가 실시하는 것과 각국이 집단적으로 통치할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유엔에서 토의해야 할 문제이다.(朝日新聞, 1946/1/17)

트루먼의 신탁통치 실시 선언의 근거가 된 것은 유엔헌장이었다. 유엔헌장 제77조는 신탁통치의 수립 지역을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敵國)에서 분리해야 할 지역으로 규정했다 (「戰後における朝鮮の政治状況」, 6-7). 유엔헌장의 조항에 따르면, 구통치국의 주권 포기 절차없이, 전승국(戰勝國)이 패전국의 구영토를 분리시키고 식민통치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제법 상의 국가분리도 반드시 주권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외무성 니시무라(西村熊雄) 외무성 조약국장도 같은 해석이었다.

국제법 상의 [국가]분리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영토주권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내용으로 담은 이태리강화조약의 방식도 있고, 대일강화조약처럼 영토주권 포기를 내용으로 담지 않고 단지 신탁통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집권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분리방식도 있다(「第12回国会参議院會議録第10号」, 1951/11/5).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식민지에 대하여 미국의 신탁통치가 실시된 선례도 존재한다. 일본의 구영토로서 유일하게 다른 국가에 의한 신탁통치가 실시된 남양군도(South Sea Islands)의 팔라우(Palau)이다. 남양군도는 1947년부터 미국의 단독식민통치가 실시됐다. 한국 주권의 포기에 대해서도 규정한 대일강화조약의 제2조 「영토권의 포기」를 보면, 일본정부는 남양군도에 대해서 미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유엔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있고, 주권포기 문구는 없다.

IV. 대일강화조약의 「한국주권의 포기」 조항

1. 한국주권포기 시점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

대일강화조약의 발효 직전인 1952년 4월, 외무성은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의 이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는 소화(昭和) 20[1945]년 9월 2일에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정식으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였기에, 포츠담선언 [제] 8[항]이 규정한 「일본의 주권은 본주(本州),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및 연합국이 결정한 제도(諸島)에 국한된다」는 조항을 승인했으나, ... 즉각 우리 외지(外地) 등에 대한 주권이 상실되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장래 체결해야 할 평화조약 내용에 외지 등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이 포함될 것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外地關係法令整理に関する善後措置について」, 8).

일본정부의 입장은 포츠담선언의 수락과 실행을 별개의 절차로 해석했던 것이다. 포츠담선언 수락자체가 식민영토에 대한 주권 상실이라는 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본이 장래 체결해야 할 강화조약에 식민지에 대한 주권을 포기할 바가 담겨진 규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정부는 식민영토를 통치할 목적으로 편성한 “외지관계법령은 포츠담선언 및 항복문서로 인해라도 법률상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 한다”고 종전 직후의 입장을 고수했다(「外地關係法令整理に関する善後措置に関する意見」, 20).

2. 「한국주권포기」 조항 없는 대일강화조약 초안

대일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조인, 1952년 4월 28일에 발효가 됐다. 외무성은 대일 강화조약의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1945년 11월 21일에 강화회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전문팀을 구축했다. 1946년 1월 16일,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平和條約問題幹事會, 이하 간사회)의 제1회 모임이 개최됐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정권은 강화문제 가운데 영토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일본정부가 미국측에게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간사회가 작성한 10권 자리 자료 가운데 7권이 영토문제에 관한 것이었다.(玄2006,67).

외무성은 강화준비 가운데 영토문제가 교섭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무성은 그 근거로 극동위원회를 비롯한 연합국측의 대일 감시기구가 영토문제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平和條約と日本の領土」, 3-4). 1945년 12월,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위탁조항(付託條項, terms of reference)도 동위원회가 군사행동의 집행 및 영토의 조정(territorial adjustments)에 관한 권고(勸告)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講和條約と極東委員會の権限」, 2-3)²⁷⁾. 실제로 1947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일본식민지의 남양군도에 대한 미국의 신탁통치를 채택 결정한 주체기관은 유엔안보리였다. 따라서 외무성은 연합국측의 기본방침을 반영해서 일본영토를 규정한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을 유일한 “예비강화조약”으로 간주했다(「平和條約と日本の領土」, 3-4).

국제적으로 대일강화에 대한 기운이 고조된 것은 1947년 봄쯤이다. 3월 17일, 맥아더가 “일본의 군사점령을 일찍 종료시키고, 대일강화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총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늦어도 1년 내에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그 계기다 됐다(「講和への歩み」, 25-26).

같은 시기인 1947년 2월, 간사회가 대일강화조약의 내용을 예측해서 작성한 문서 「対日平和條約想定大綱」를 완성했다. 간사회는 장차 결정될 강화조약의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 포츠담선언의 제8항 영토조항과 카이로선언, 그리고 이태리강화조약의 내용을 검토했다. 간사회가 정리한 대일강화조약의 예상초안 내용에서 주목될 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즉, 1) 대만 및 펑호도(澎湖島)를 중국에 반환함, 그리고 2) 한국의 독립 또는 신탁통치와 같은 연합국이 결정한 점을 승인함이라는 내용이다. 이 시점에서 조약 내에 주권을 포함한 권리 포기에 관한 언급은 없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신탁통치의 가능성도 제시됐다.

같은 예측 내용은 1949년 8월에 다시 강화조약내용을 예측해서 작성된 문서 「対日平和條

27) Terms of Reference of the Far Eastern Advisory Commission, 外務省特別資料部, 23-24; from Washington(WAR) to CINCAFPAC, CG CHINA, WCL 32355, Moscow Communique, 28 December, 1945, RG554 Box1, NARA.

約想定大綱」까지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1) 대만과 땡호도를 중국에 반환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보로 독립 또는 신탁통치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이 권리권원(權原)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근거로는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과 카이로 선언의 적용이 지적됐다(「對日平和條約想定大綱」, 4). 2) 한반도에 대해서는, 1947년판과 똑같이 독립시켜야 할 지역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강화회의가 개최될 장래에도 여전히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남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가능성으로서의 통일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도록 규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對日平和條約想定大綱」, 11).

간사회의 이러한 예측 내용은 외무성이 연합국측이 연합국측의 영토문제에 대한 전후 입장을 「영토불확장방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무성은 연합국측이 대일강화조약의 영토조항에 영토의 반환과 회복, 또는 독립이나 신탁통치제도를 승인하는 내용을 널리 적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외무성은 영토의 병합주의란 이제 결코 허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平和條約と日本の領土」, 3-4).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일본이 언젠가 한국의 독립 승인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平和條約と日本の領土」, 35-36).

그러나 「한국주권포기」 조항은 일본의 대일강화조약 예측안에 안 들어가 있다. 이 입장은 1950년 9월 14일, 트루먼 대통령에 의한 대일강화 촉진 성명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대일강화 촉진 메시지란, 대통령이 국무부에게 명령하여 극동위원회의 구성국 정부들과 비공식 토의를 시작함으로써 대일강화를 촉진시키라고 한 메시지의 공표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트루먼 성명의 다음날인 9월 15일에 대일강화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의 구상에 따라, 대일강화조약의 성격이 패전국의 제재(制裁)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일강화조약의 초점은 일본을 민주주의진영의 일원으로 유인하고, 일본을 활용할 것으로 설정됐다고 공표됐다. 대일강화조약이 일본에 대한 여러 제한이나 금지 규정을 담지 않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됐다. 아울러, 이 미국의 구상은 미국이 이 기본원칙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米国の對日平和條約案の構想」, 1)

일본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환영했다(「米国の對日平和條約案の構想に対するわが方要望方針(案)」, 13). 외무성이 9월 22일자로 작성하고 요시다 수상에게 제출한 정세판단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 성명은 공산세력에 대한 민주국가 진영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어 공표된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을 조속히 민주국가 진영에 유도하고 소련의 공세에 대처할 준비를 시작하려고 대일강화가 필요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사태를 이용해서 대일강화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 사이에서 실현하려고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무성은 미국이 주일 미군병사를 둘러싼 폭력사건의 발생 등, 여론도 일본점령에 대한 미국의 부담 완화에 기울이고 있다고 해석했다(「對日講話問題に関する情勢判斷」, 2).

1950년 10월, 외무성은 미국 구상안에 대한 일본측의 요망을 정리했다. 거기서 강조된 것은 일본의 독립회복이었다(「米国の對日平和條約案の構想に対するわが方要望方針(案)」, 1). 아울러, 일본과 분리해야 할 영토를 최소한도로 설정하고, 류큐, 오가사와라, 이오제도(硫黃諸島)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분리하지 말고 일본의 영토주권을 인정하라고 미국에 대한 요망을 정리했다(「米国の對日平和條約案の構想に対するわが方要望方針(案)」, 5).

일본정부가 대서양현장의 원칙을 이해하여, 이제 주민의 의지에 저항해서 영토를 보유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도 이 문서에 담겨졌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다는

소극적인 표현에 그쳤다. 대만, 땡호도, 관동주, 남양군도와 남사할린에 대해서는 권리 권원을 포기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반면에, 한반도의 권리 권한 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米国の対日平和条約案の構想に対するわが方要望方針(案)」,3-4;15).

한국주권의 포기조항은 국무성이 1950년 10월 24일자로 발표한 「대일강화 7원칙」의 영토조항안에도 삽입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단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recognize)"는 문구가 들어갔을 뿐이다. 대만의 주권 및 권리 포기에 관한 조항도 없었다. 대만, 땡호제도, 남사할린, 치시마 열도의 지위에 관해서는 일본이 미영중소의 결정을 수락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講話への歩み」,58;「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121). 이에 대해 일본외무성은 "대만과 기타 영토의 최종적 귀속을 규정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엔의 결정에 따를 생각을 명백히 했다"고 해석했다(「講話への歩み」,69).

대일강화준비 기간에 일본정부가 예측하거나 미국측이 발표한 대일강화조약의 초안들을 살펴보면, 전후 일찍부터 제2조가 영토포기조항이며, 한국, 대만을 비롯한 일본의 식민영토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1951년 7월에도 주권을 포함한 권리의 포기과 포기후의 귀속 국가를 명백히 규정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 이에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주은래 중국 외상은 1951년 7월12일자 미국 및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대해, 8월 15일자로 「대일강화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주은래 외상은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이 대만과 땡호제도(澎湖諸島)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반환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407).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나타난 한국,대만에 대한 권리 권한의 포기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일찍부터 점령하 일본의 주권이 이제 완전한 주권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3. 일본의 「배상」 논리와 「한국주권포기」 조항 및 「제4조 b항」

1947년 2월, 국제적으로 대일강화 기운이 고조되기 직전에 간사회가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의 예측안 「対日平和条約想定大綱」은 한국에 대한 배상을 감안한 내용이었다. 간사회는 대일강화조약에 합병 이래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미술품과 종교적 물건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반환함을 규정한 조항이 삽입될 것으로 예측했다(「対日平和条約想定と右にたいする我方の希望条項大綱(第二稿)」,1-8). 이 자세는 1949년 8월에 외무성이 강화조약의 내용을 예측해서 작성한 「対日平和条約想定大綱」에도 계승됐다. 이는 외무성이 이태리강화조약 제34조와 제36조에서 이태리가 에티오피아의 미술품과 종교적 물건, 역사적 가치있는 물건을 모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한 선례가 대일강화조약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対日平和条約想定大綱」,12). 나아가 외무성은 이태리가화조약의 전문(前文)처럼, 일본이 침략에 책임 있다는 조항도 함께 대일강화조약에 삽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対日平和条約想定大綱」,23).

1950년 9월, 미국측이 대일강화조약의 성격을 제재가 아니고 민주주의국가의 우호와 협력이라고 공표하자, 10월, 일본정부의 배상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후퇴했다. 일본정부는 배상에 대한 관계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미 철거한 시설 외에 어떠한 박탈도 없을 것을 희망한다고 미국측에게 주장했다. 일본경제의 자립이 지연되면 그만큼 일본을 지원하는 미국에게 부담이 되고, 관계 국가들과의 이익에도 배반될 것이라고

일본의 주장이 정당화되었다(「米国の対日平和条約案の構想に対するわが方要望方針(案)」, 28-29).

일본정부가 대일강화조약의 체결 직전인 1951년 7월 2일에 연합국측에 전달한 문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영토권을 포기할 지역에 대해서 전쟁배상의 의지가 전혀 없음이 보다 명백히 들어났다.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절대적(絶大的)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일본과 일본이 포기할 지역의 재산 처리문제에 대한 외교지원을 안 한다면, 제4조의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전쟁배상을 포함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平和条約案に対するオブザベーション」, 1-2).

일본정부는 연합국측에 제출한 같은 문서에서, 특히 대일강화조약 제4조의 「포기된 지역의 재산처리」에 대해서 반박했다. 일본정부는 「제4조 a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미국정부의 외교지원 없이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주한 일본 및 일본인 재산을 둘러싼 일본국과 일본인의 청구권 처리는 한국정부와 직접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은 이러한 포기지역의 재산 처리문제에서 역사상 일본에 대한 제한이 많았던 점을 잘 알거라고 대책을 요구했다(「平和条約案に対するオブザベーション」, 1).

사실, 체결을 두 달 앞둔 1951년 7월 시점에도,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미군정청 제33조를 비롯한 전후 재한일본인 재산을 미국이 접수하고 관리할 것을 규정한 미국측의 지령들의 법적 유효성을 규정한 조항이 없었다. 11월에 조인된 최종판 「제4조b항」이 바로 그 내용인데, 7월에 공표된 영미측 초안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시점에서 제4조 「포기된 지역의 재산처리」는 최종판의 3항 구조가 아닌 2항 구성였다. 11월에 조인된 「제4조b항」은 한일회담에서 청구권문제가 이 조항의 해석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조항이다(淺野2011, 56-58). 7월 2일자로 공표된 대일강화조약안 초안에 있는 제4조b항은 11월에 조인된 「제4조c항」의 내용, 즉 일본이 일본과 구식민영토 사이에 있는 해저(海底) 전선을 상대국과 절반씩 갖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었다(Draft Japanese Peace Treaty, 2-3).

최종판 「제4조b항」 내용은 8월15일에 발표된 미국과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최종초안에 삽입됐다. 일본정부는 삽입된 「제4조 b항」이 실제 적용 가능한 지역을 한반도라고 지적하면서, 재한일본인 재산이 이 조항의 해당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외무성 조약국장 니시무라는 「제4조 b항」이 대일강화조약에 삽입된 것은 8월 13일이며, 한국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국회에서 설명했다. 니시무라는 국회설명에서 일본정부로서는 이 「제4조 b항」의 삽입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의 논의가 대단히 제약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촉박한 시간상 미국측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1945년 12월 미군정청령 제33호로 미국측에 접수되어, 그후 미국이 한국정부에게 이양한 재한일본인 재산을 이미 한국측이 가졌고, 「제4조b항」이 이 과정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보증한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외무성은 이러한 약점을 한국과의 직접 교섭의 과정에서 한국측에게 더 이상의 대일 청구를 막을 재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한일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第12回国会参議院會議録第10号」, 1951/11/5).

V. 결론

이상에서 일본의 패전부터 대일강화조약 조인까지 한국주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인식과 정책,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봤다. 일본에 의한 한국주권의 포기 여부는 미국의 신탁통치정책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일본이 한국주권을 종전과 동시에 포기했다면, 신탁통치와 같은 주권 이동과 일본영토의 분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대일강화조약에 「한국주권포기」 조항을 삽입할 필요성은 종전 직후부터 미일 정부 간에서 공유된 인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주권포기」는 조약 체결 직전의 최종판까지 삽입되지 않았다. 재한일본인 재산을 일괄 접수한 미국의 법령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보장한 「제4조 b 항」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식민영토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영토의 분리방법과 주권포기 여부, 포기후의 귀속 국가 규정은 전후 배상과 전후처리, 아울러 현재의 외교관계를 규정하는 실마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일강화조약 최종판의 작성 과정에 대한 한국측의 외교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그리고 일본의 반응 등 아직 밝혀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대일강화조약의 체결 직전까지 한국주권포기를 수행하지 않았던 일본의 정책적 의도도 또한 밝혀야 할 중요한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한 분석은, 이번에 정리한 실증분석을 기초로 재산처리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관령선상에서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5 참고문헌

한국어 문헌

- 서중석.1991, 『한국현대 민족운동연구: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서울: 역사비평사.
- 나가사와 유코. 2007, 「일본의 조선주권보유론과 미국의 대한정책」,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어니스트 프랑켈. 1988, 「주한미군정의 구조」,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외 저, 김동춘 편, 『한국현대사연구 1』, 서울: 이상과 현실사.
- 이완범. 2001. 『삼팔선 획정의 진실』, 서울:지식산업사.
- 이호재. 2000,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이승만외교와 미국정책의 반성』, 서울: 법문사.
- 정용석. 1984, 『미국의 대한정책 1845-1980』, 서울:일조각.
- 정용욱. 2003,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천지(新天地)』, 1949년 2월, 창간호.

외국어 문헌

- 淺野豊美.2011, 「サンフランシスコ講話条約と帝国生産過程としての日韓交渉」,李鍾元·木宮正史·淺野豊美編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II脱植民地化編』, 東京:法政大学出版局.
- 天川晃.1999, 「敗戦後の帝国議會-第八八回帝国議會-第九二回帝国議會」, 『日本議會史録4』, 東京: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 池上大祐.2004, 「戦後米国の太平洋戦略: 1946年ミクロネシア信託統治協定をめぐって」, 『七隅史学』 第5號,福岡:福岡大学人文学部歴史学科七隅史学会.
- 鹿島平和研究所編.1985,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1)1941-1960, 東京:原書房.

- 長澤裕子.2006, 「ポツダム宣言と朝鮮の主権」 『現代韓国朝鮮研究』 第6号,東京:現代韓国朝鮮学会.
- _____.2011, 「戦後日本のポツダム宣言解釈と朝鮮の主権」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 『歴史としての日韓外交正常化II脱植民地化編』, 東京:法政大学出版社.
-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 京都:ミネルヴァ.
- 藤城和美. 1992, 『朝鮮分割:日本とアメリカ』, 京都:法律文化社.
- Green Haywood Hackworth, Legal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1940, *Digest of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of State, Government Printing Office.

(미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 Records of the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and under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1941-48, 50, RG5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RG 331, NARA.
- Records of the Far East Command,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RG554,NARA.
- Radiograms:1945.6-1951.4, RG 9,MacArther Memorial Archives.

(일본 전후 직후 관련문서)

- 1945.8.29, 「各方面停戦進捗ノ状況一覽表」.
- 横田喜三郎.1945.10, 「'ポツダム'及降伏文書/法的性質'ポツダム'及降伏文書ト主権」, 外務省報告, 『芳賀四郎関係文書』.
- 外務省.1945.9.16, 「亀山参事官京城出張ニ便宜供与ノ件(CLO電報12BC,連合国司令部往信綴)」, (第1回公開,A.1.0.0.2-2)
- 終戦連絡中央事務局第一部,1945.11.15. 「執務報告 第1號」. <荒敬編.1991, 『日本占領・外交関係資料集 終戦連絡中央事務局・連絡調整中央事務局資料』 第1卷,東京:柏書房>.
- 阿部信行旧蔵.1945.12, 「終戦前後ニ於ケル朝鮮事情概要—終戦時並ニ終戦後朝鮮総督府ノ採リタル措置」, 『阿部信行関係文書』(Microfilm).
- 外務省調査局第五課,1948. 7, 「戦後における朝鮮の政治状況」.

(외무성공개 대일강화조약 관련문서)

- 外務省条約局.1945.10.22, 『平和条約締結ノ方式及締結時期ニ関スル考察』,(第7回公開B'4.1.0.)
- 平和条約問題研究幹事会.1947.2, 『対日平和条約想定と右にたいする我方の希望条項大綱(第二稿)』,(第7回公開 B'4.1.0.11).
- 外務省特別資料部.1949.1 『日本占領及び官吏重要文書集第1卷基本篇』(第3回 公開A'1.0.0.2-4)
- 外務省(政務局)特別資料課.1949.11, 『講和条約と極東委員会の権限』,(第7回公開 B'4.1.0.11).
- 外務省.1950.9.22, 『対日講話問題に関する情勢判断』(第7回公開 B'4.0.0.2).
- 外務省.1950.10.2, 『米国の対日平和条約案の構想』(第7回 公開 B'4.0.0.2).
- 外務省.1950.10.4., 『米国の対日平和条約案の構想に対するわが方要望方針(案)』(第7回公開 B'4.0.0.2).

作者不詳.[1950年外務省file], 『平和条約と日本の領土』 (第6回公開, B'4.0.0.1).
外務省調査局総務室,1951.3, 『講話への歩み』 .
外務省.1951.7.2[제출], 『平和条約案に対するオブザベーション』 (第7回公開 B'4.0.0.6).
Draft Japanese Peace Treaty, July, 3, 1951, (第7回公開, B'4.0.0.6).

外務省条約局編.1952.3, 「外地関係法令に関する学説その他」 ,
外務省条約局編.1952.4, 「外地関係法令整理に関する善後措置に関する意見」 ,
外務省条約局第四課.1952.4, 「外地関係法令整理に関する善後措置についての擬問擬答」 ,
<外務省条約局編.19910, 『外地法制誌 第1巻』 ,東京:文生書院.

(한일회담 공개문서)

外務省北東アジア課,1970.1.22., 「日韓会談時における韓国独立の時期についての論議」 、日韓会

談文書,6-1186-1858.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三」 、日韓会談文書,6-1176-1915.

(일본 국회 회의록)

『第12回国会参議院会議録 第10号』 (1951年11月5日).

3. '해방'의 이론과 실제 :

병합조약에 대한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과 행동*

이동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요지)

한국정부는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병합조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므로 한국은 당연히 이에 따른 책임과 피해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터였다. 하지만, 1951년 이후의 대일 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왜 한국정부는 구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일까.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본고는 주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구조약 무효에 대한 법이론적 해석과 이와 연동된 식민지 피해보상 요구의 이론과 실제, 대한민국 및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상호 연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는 1965년 기본관계조약 제2조, 즉 구조약 무효 조항이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귀결된 원인을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親日性) 혹은 미국의 냉전전략 등으로 환원하기 일췌였던 기존연구와 달리, 구조약 무효에 대한 불투명한 인식 및 식민지 지배 피해보상 포기가 한국정부 초기부터 발현된 정책이었다는 수정주의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약 무효에 대한 애매한 인식은 초기 한국정부 내부에서 이미 노정되었고, 실제로 대일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다. 1952년 2월의 제1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에서 한국측은 구조약에 대해 ‘확실한 무효’가 아니라 “어쨌든 무효”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무효의 근거와 효력에 대한 법적 해명을 “모두 덮어두”고 “어쨌든 무효”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구조약의 “처음부터” 무효가 관철될 여지는 없었다. 그 종착점이 바로 정치적 흥정에 가까운 ‘자구수정’의 담합 끝에 나온 “이미 무효”이었고, 구조약이 ‘전후’ 한일관계에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상 ‘처음부터’ 무효를 부인한 표현이었다.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과거사 청산은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만으로 봉인(封印)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 스스로 봉인하길 원했던 것이다.

초기 한국정부의 구조약 무효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에서도 그대로 표출되었다. 구조약의 법적 해석과 관련해 공개된 유일한 외교문서인 주일대표부의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는 구조약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무효의 법적 효력, 즉 구조약의 실질적 발현이랄 수 있는 조선총독의 식민지 통치를 ‘무권대리’ 개념으로써 사실상 추인했다. 무효효력의 소급적용을 포기한 무효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론적 모순에 직면하고 만다.

이 모순은 35년에 걸친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수반되는 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이를 사실상 인정해온 제국주의적 근대사법의 전통, 더욱이 냉전의 논리에 입각해

‘관대한 배상’으로 돌아선 미국의 대일정책이라는 정치적 고려에서 도출되는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ex factis oritur jus)과, 민족적 자존심과 더불어 강제로 체결된 병합조약의 무효성에 기초한 “불법에서 법은 발생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원칙 혹은 이상과의 갈등이기도 했다. 유진오가 구조약에 대해 “법이론을 관철했을 경우,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법이론은 차치하고 어쨌든 무효로 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갈등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약 무효에 대한 불투명한 입론에서 도출되는 현실적 모순은 지대했다. “어쨌든 무효”론으로써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1949년 최초로 작성한 『배상조서』에는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배상’이 제외됐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첫 만남에서 공식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기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때 한국측이 제시한 ‘대일 8항목 요구’는 사실상의 민사상 청구권으로 국한되었고, 주지하다시피 이는 다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타결 과정에서 정치적 담합에 의한 ‘경제협력’ 방식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한일회담의 결과만을 주목해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과 이승만의 ‘반일성’을 강조해온 기존 해석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부터 구축된 법적, 정치적 판단이었고,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구조약 무효에 대한 애매한 입론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정체성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졌다. 구조약의 “어쨌든 무효”론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한 국가일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무효”론 속에서는 일본 식민지 지배 속에서도 대한제국은 망하지 않았고, 그 국민성은 “기능만 정지”되었을 뿐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을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오가 일본측과의 회담에서 구조약 무효의 이유에 대해서는 “덜어두”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덜어지지 않았다. 한일 과거사의 ‘결락(缺落)’은 지금도 생생하고, ‘과거청산’ 없는 ‘미래지향’이 불가능한 현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I. 들어가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1965년 6월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관계조약’으로 약기)의 제2조, 이른바 ‘구조약 무효’ 조항은 한일 과거사 인식(처리)의 원점이다. 이 조항의 말미에 언급된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 한국정부는 “처음부터”(ab initio)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대한민국정부 1965, 19)¹⁾. 구조약, 즉 일본의 한국병합으로 귀결된 일련의 조약²⁾이 “처음부터”

*이 글은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54권4호(2011년12월)에 게재된 줄고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병합조약 무효의 이론과 적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1) 병합조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국의 ‘불법부당론’과 일본의 ‘합법정당론’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되었던 조약이 “이제는(もはや)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해왔다(谷田正躬 외 1966, 14). 다만, 최근 들어 일본정부는 병합조약이 “법적으로는 유효”했지만 “식민지 지배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엄한 반성을 하여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는 ‘합법부당론’으로 물러섰다. 이종원(2011) 및 1995년 10월의 무라야마(村山富市) 일본 총리의 발언 참조(『第百三十四回国会参议院會議録 第四号』, 19; 『第百三十四回国会参议院予算委員会會議録 第三号』, 34). 한편, 한일병합은 경술국치, 합병, 합병, 병탄, 강제병합 등 여러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조약상의 명칭인 ‘병합’을 그대로 사용한다.

무효였다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므로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과 피해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터였다. 하지만, 1951년 이후의 대일교섭에서 한국 정부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왜 한국 정부는 구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의 법적 효력을 따지지 않은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본고는 초기 한국 정부의 구조약 및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해석과 이에 기초한 과거사 처리방침,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 등을 상호 연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관계조약에 언급된 구조약 무효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예외 없이 조항의 애매성을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장박진에 따르면 1965년 7월 『사상계』의 한일협정 관련 특집호에서 양호민이 ‘이미 무효’에 대해 “과거 군국주의 통치를 합법화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이라고 말한 것이 비판의 효시이다(장박진 2008a, 3; 양호민 1965, 50). 이후 상당수의 관련 연구는 이 ‘이미’라는 문구의 법적 불명확성을 지적하거나(배재식 1970; 김창록 2005), 한발 더 나아가 이 애매한 문구를 수용한 박정희 정권의 ‘몰역사성’ 혹은 대일 ‘굴욕외교’를 비판했다(한상범 1995; 이장희 1996).

기본관계조약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이원덕(1996), 高崎(1996), 太田(2003), 吉澤(2005), 장박진(2007) 등의 연구를 통해 구조약 무효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기본관계조약에 ‘이미’라는 문구가 삽입된 경위 등이 상당히 해명되었다. 특히 이들 연구는 거의 예외 없이 한국 정부가 ‘이미’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외적 요인으로서 미국의 냉전전략과 이와 연동된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 혹은 식민지 청산논리가 배제된 전후 미국의 대일정책을 지적했다³⁾. 특히 장박진(2008a)은 근년 공개된 한국측 외교문서를 본격적으로 이용해 구조약 조항이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동 조약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과 긴밀히 연계된 가운데 정치적 담합에 의해 성립됐다는 주목할 만한 논지를 전개하였다.

본고 또한 한일관계에 노정된 구조약 무효론을 비판적으로 보겠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본고는 이하와 같이 기존 연구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초기 한국 정부가 제시한 구조약 무효론의 법적·역사적 한계와 의의를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초기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제기한 구조약 무효론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가 구조약 무효를 주창했다면 그 법이론적 근거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결과로서의 1965년 기본관계조약 제2조만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親日性) 혹은 미국의 냉전전략 등으로 환원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하 본론에서 논증하듯 구조약에 대한 해석의 불투명성과 식민지 과거청산 요구의 포기는 이승만 정권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발현되었다. 정권의 성격과 관련 없이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부터” 과거사에 대한 법적 청산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⁴⁾.

둘째, 구조약 무효론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다. 구조약 무효론은 단순히 조약 자체가 갖는

2) 1904년 2월23일의 의정서, 동년 8월22일의 협정서, 1905년 11월17일의 이른바 을사늑약, 1907년 7월24일의 한일신협약, 1910년 8월22일(반포일은 8월29일)의 병합조약 등 식민지배에 이르기까지 조선(혹은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60여건의 각종 협정, 조약을 통칭한다.

3) 특히 케네디 및 존슨 정권기에 미국이 청구권문제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의 정치 결착을 촉구한 경위에 관해서는 李鍾元(2009a, 2009b 및 2010)이 자세하다.

4) 이와 관련, 장박진은 주로 청구권 협상의 측면에서 역대 정권사이에 단절성 보다는 ‘연속성’이 강하다는 측면을 입증했다(장박진 2009a).

법리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대한민국 및 국민의 법적, 정치적 정체성과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구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구조약의 효력과 직접 관련된 한국정부의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연구의 경우 조문 분석 혹은 과정분석에 주력한 나머지 이 같이 구조약 무효론이 낳은 논리적 연계의 맥락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했다. 본고는 초기 한국정부가 구축한 구조약 무효론의 실체를 검토하고 이것이 대일 교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어떻게 적용 혹은 변용되었는지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대체로 기존연구에서는 이른바 ‘과거청산’과 ‘전후처리’라는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는 논리적(실제적) 결락을 노정하고 있는 듯하다. 주지하듯이 한국이 주장하는 과거청산이란 문자 그대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따른 일본의 책임과 피해보상’을 말한다. 그러나 ‘전후’ 한일관계는 사실상 미일전쟁이었던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후처리, 특히 이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의 문맥 속에서 전개되었고, 여기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의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하지만 과거청산의 논리를 억제한 이 같은 국제정치적 제약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칫 한일관계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사장된 것을 외생적 요인으로 환원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본고가 초기 한국정부의 구조약 무효론과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는 것은 과거청산이란 무엇보다도 민족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 구조약 무효론의 기원과 전개

1. “어쨌든 무효”론

병합조약 무효론이 국제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2년 2월 시작된 제1차 한일회담 석상에서였다. 동년 2월16일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일본측은 ‘우호조약’(Treaty of Amity) 초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과거사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동 초안은 전문(前文)에서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의 범위에 대해 “양국 간의 신(新)관계 발생에 유래하는 각종 현안”이라고 기술, 한일관계의 속성을 과거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해체와 한국의 ‘분리’에 따른 새로운 관계의 설정 문제로 제한했다(『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1122). 이에 대해 한국측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설된 기본관계위원회의 제2차 회의(2월27일)에서 한국측 유진오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토의하고자 한다면 한국정부로서는 과거 양국 간에 노정된 각종 현안, 특히 1910년부터 36년간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일소하고 실질적으로는 양국의 평화조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체결하고 싶다는 기분”이라면서 조약의 성격과 명칭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第二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錄』, 16). 하지만, 전쟁관계가 아니라 종주국-식민지 관계였던 한국과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기분”의 문제였지 실질을 염두에 둔 발상이 아니었다. 한국측이 그 대안으로서 3월5일의 제4차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이 ‘기본관계’(Basic Treaty) 조약 초안이었다. 동 조약안 3조는 다음과 같았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22일 이전에 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null and void)을 확인한다(『제1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597).⁵⁾

상기 3조는 “무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는 점에서 1965년 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조항에 대한 한국측의 법적 인식이다. 동년 3월12일에 열린 제5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일본측 오노(大野辰巳) 외무성 참사관이 한국측 조약안 3조에 거론된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인지, 아니면 일단 성립했으나 이후 실효했는지를 묻자 유진오는 “중대한 질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910년 이전의 조약은 의사에 반해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법이론을 관철했을 경우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법이론은 차치하고 어쨌든 무효라고 하고 싶다. 한국측은, 병합조약은 최초부터 무효로 하고,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실효했다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이 규정에 관해서는 한국측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펴는 것을 피하면서, 또 포츠담 선언 수락 시점부터 실효했다는 설도 피하면서 막연하게 어쨌든 무효라고 확인하고 싶다.” (『第6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 15-16)

상기 답변내용으로 볼 때 유진오는 구조약 무효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면서도 무효의 근거나 시점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 같은 “어쨌든 무효”론에 대해 일본측은 “언제부터 무효라든가 등의 문제를 피하고 있으니 아주 막연한 정치적인 것,” “이 같은 조문은 쌍방에 과거를 상기시키고, 적어도 일본측에는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연히 평지에 파란을 일으키는 것은 피하는 게 어떤가”라고 동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第五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 17-18). 이에 대해 유진오는 “평지풍파를 일으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파란을 진정시키는 규정이다”라고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1910년 이전의 조약은 국민적으로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라는 강한 신념, 국민감정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강하게 주장하면 이 회담이 정리되지 않는다. 일본측 주장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점을 피하면 한국의 국민감정도 수습되고, 일본 측으로서도 특별히 잃는 것이 없으므로 자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第五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 20-21).”

요컨대, 한국측의 구조약 무효 확인요구는 국민감정과 일본측 입장마저 감안한 정치적 입론의 성격이 강했다. 종래의 통설처럼 박정희 정권이 ‘굴욕외교’를 전개한 결과 합병조약의 무효가 애매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기의 초기 교섭 때부터 한국정부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절충을 모색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유진오와 함께 동 위원회의 대표자격으로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김동조 당시 외무부 정무국장은 구조약 무효의 확인요구가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⁶⁾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5) 이하, 인용하는 한국 및 일본 외교문서의 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해 그은 것임. 또 외교문서명에 이어 적은 숫자는 마이크로필름의 프레임 번호를 가리킴. 한편, ‘null and void’의 기원에 대해 오오타는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지배에 관한 규정을 둔 이탈리아 강화조약 제31조에 같은 표현이 있음에 착목, 이 조항을 한국측이 참고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太田修 2011, 37-38). 실제 당시 초안 작성에 관여했던 김동조는 “정무국 김영주 사무관 등이 중심이 되어 각국의 비슷한 선례를 검토케 한 뒤” 성안했다고 회고했다(김동조 1986, 41).

6) 다만, 김용식은 주일대표부가 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의 삽입을 건의했다고 회고했다(김용식 1987, 120).

“우리가 한일합병조약의 무효확인을 기본조약에 굳이 명문화하려는 것은 실리(實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국민적 자존심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합방’이라는 민족적 수모를 겪기는 했지만 이제 양국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마당에서 문서상으로는나마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씻어 버려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김동조 1986, 41).”

한국측이 법리 해석을 극력 회피하면서도 “어쨌든 무효”의 확인을 요구한 배경에는 물론, 민족감정에 기초해 병합조약과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어떤 형태로든 조약에 명기하고자 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측이 상정한 구조약 무효의 범위는 국민적 자존심을 고려해 “문서상으로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그 위법성을 따짐으로써 그로써 발생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추궁과 피해보상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김동조는 같은 회고록에서 “우리는 과거를 보상하라는 입장인데, 일본측은 과거를 묻지말라는 자세였다”면서 한국측이 대일 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구조약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김동조 1986, 40), 일본정부가 공개한 상기 기본관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국측이 구조약 무효의 법적 근거와 식민지 지배와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⁷⁾. 한국측은 오히려 이 문제의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회피하면서 오히려 ‘애매성’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일본측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다.

2. ‘자구 논쟁’으로 귀결된 무효론

1952년 3월22일에 열린 제6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일본측은 한국측의 “어쨌든 무효” 주장을 “충분히 반영, 연구해 마련한 시안(試案)”이라면서 한국측 초안의 제3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문(前文) 제3항으로 옮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일본국과 구 대한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기술된 일본측 수정안에 대해 유진오는 “1910년 이전의 조약은 역시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간단할뿐더러 명확하다”면서 “어쨌든 무효”론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무효라는 단어만으로는) 실효한 것인지 불성립한 것인지 아주 불명확하다. 불명확한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듯하지만, 이는 장래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불명확함이다”라고 반박했다(『第六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錄』, 15-16, 22-23, 30). 이에 대해 유진오는 3월26일 열린 제7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어쨌든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본국 정부로부터 ‘무효’라는 자구를 반드시 넣으라는 훈령이 와있지만, 나는 (병합조약 등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조약이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논쟁이 되는 점, 예를 들면 ‘언제부터’와 같은 것도 모두 덮어두고, 어쨌든 무효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 표현이라면 일본측은 일본측으로서 일단 설명이 되고, 한국측에서도 다른 내용이 될 지도 모르겠으나 설명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국측 안과 같은 표현을 취하고 싶다. 자구는 달라도 좋으나, 어떻게 해서든 무효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다(『第七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錄』, 13-14).”

한국측이 애초부터 구조약 무효의 법적 효력 문제를 “모두 덮어두”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후 일본측의 관심은 “무효”라는 용어를 적당히 수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

7) 흥미로운 점은 일본정부가 기밀 해제한 외교문서에는 일본측이 작성한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는 한국측이 작성한 회의록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 회의와 관련된 한국측 문서로는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영문 회의요록뿐이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 외교문서를 예외 없이 공개했다고 밝혔으나, 이 회의록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초기 한국정부의 구조약무효 및 식민지 청산에 대한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효의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자구 찾기’로 옮겨갔다. 우선 일본측 오노 대표는 “무효라는 자구를 사용한다면 언제부터 무효인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제는(もはや)’라는 자구를 붙이고 싶다”면서 1965년 기본관계조약의 ‘이미’ 무효의 원형에 해당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 "have been invalid" 등의 수정안을 제시하자 일본측은 다시 “효력을 상실했다,” “현재 효력을 갖지 않는다” 등의 재수정안을 내놓았다. 유진오는 “한국어 문구를 일본어와 약간 다르게 두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속임수이므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第七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 16-31), 한일 양측은 이미 구조약 무효의 법적 효과를 각자 편의대로 해석하기 위한 정치적 흥정을 전개하고 있었다.

결국, 1951년 4월2일 열린 제8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일본측이 최종안으로서 (1) “이미(既に) 효력을 상실했다,” (2) “실제로(現に)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등 3개 문구를 제시하자, 유진오는 일본측 제2안을 지적하며 “실제로’라는 단어가 없어도 현재형으로 말하므로 ‘현재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실제로’라는 단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측이 동의함으로써 이른바 “기본조약”안 전문에 수록될 구조약 무효에 관한 언급은 “일본국과 구 대한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결착을 보았다(『第七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 12). 한국측이 당초 목표로 한 ‘무효’의 의미가 “효력을 갖지 않는다”로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구조약이 효력을 갖지 않는 범위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이므로 구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조차 사라졌다⁸⁾.

다만, 기본관계위원회에서 합의된 상기 “기본조약”안은 일본측의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이른바 역(逆)청구권 제기를 계기로 청구권위원회가 결렬되고 제1차 한일회담 자체가 결렬됨으로써 사실상 사장되었다. 이후 구조약 무효를 둘러싼 한일 간의 논쟁은 오랫동안 동면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한일 양국 모두 필연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따른 책임과 피해보상이라는 ‘본질’을 건드리게 되어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길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극력 회피한 것이다.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의 현안으로 다시 대두된 것은 ‘김종필-오히라 합의’로써 청구권 문제가 정치적 결착을 보고 한일회담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1964년 12월 이후의 제7차 한일회담에서였다. 하지만, 제7차 회담 기본관계위원회에서 거론된 구조약 무효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초기 한일회담의 재판(再版)에 불과했다. 장박진이 규명한 바와 같이 한국측은 이 회담에서도 구조약 무효와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논지를 전개하기는커녕, “어쨌든 무효”론에 입각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고, 그 중착점이 바로 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였다(장박진 2008a, 18-34)⁹⁾. 결과적으로 ‘무효’라는 단어를 조약에 되살렸다는 의미에서 제1차 한일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보다는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측은 1차 회담에서도 “이미 무효”안을 제안하고 있었다.

8) 이 점과 관련, 유진오는 “무효론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조약 명칭을 “우호조약”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효력을 갖지 않는다”를 “무효이다”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측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다(『第七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 14-15).

9) ‘이미 무효’의 삽입 경위에 대해 우시로쿠(後宮虎郎) 당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은 회담 막판에 “(일본정부가 미리 복안으로 준비한 대로) already라는 단어를 null and void 앞에 넣을 것을 가볍게 시사”하자 한국측이 곧바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설마 한국측이 이 단어를 덤석 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11』, 143-144).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왜 대일협상에서 구조약에 대해 막연하게 "어쨌든 무효"라는 주장만 되풀이한 것일까. 이하에서는 한국측 외교사료를 분석함으로써 초기 한국정부의 구조약 및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제법적 인식을 살펴보겠다.

Ⅲ. 초기 한국정부의 구조약 무효에 대한 국제법적 견해

주지하듯이 한국은 정부수립 후 대일강화조약에 서명국으로 참가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한국정부가 공개한 외교사료 가운데 강화조약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법적 검토의 일환으로 작성된 유일한 자료가 바로 1950년 10월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이하, 『기본태도』로 약기)이다¹⁰⁾. 소책자의 형식을 취한 『기본태도』는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도쿄의 주일대표부 정무과가 작성해 외무부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¹¹⁾. 하지만, 한국 외교사료 가운데 유일하게 구조약에 대한 법적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 한국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의 필두를 점하고 있다는 점, 주일대표부 또한 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소책자는 초기 한국정부의 구조약에 대한 법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필수적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태도』는 강제로 체결된 조약으로서의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론을 다음과 같이 전개했다.

1. “강제에 의한 조약”에 대한 해석

『기본태도』는 조약이란 국가 간의 자유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하는 만큼, ‘강제에 의한 조약’의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논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가 가해진 대상을 국가대표자와 국가 자체로 구분한 뒤, “통설”(通說)로서 “조약 체결 당사자인 자연인에 대해 강제 혹은 강박이 가해진 후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단언했다. 즉, 국가 대표자에 대한 강박을 조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로서 인식한 당시 국제법의 단면을 지적한 것이다¹²⁾.

조약체결 당사국 전체에 대한 강제 혹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무효 효과에 대해선 강화조약과 병합조약을 구분해 설명했다. 우선 이 같은 유형의 대표격인 강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패전국에 가해지는 강제는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국가질서 혹은 평화유지라는 위법성 조각(阻却)사유가 존재하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기본태도』, 21). 이 주장은 조약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그 행위자체가 불법인 전쟁을 인도적으로 종결짓기 위해 체결되는 강화조약에서의 국가에 대한 강박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당시 국제법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¹³⁾.

『기본태도』 그러나 병합조약의 경우 전쟁의 결과인 강화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논

10) 다만, 수기(手記) 형식의 『기본태도』는 인쇄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이하, 판독 불가능한 부분은 ○로써 표시했다. 한편, 유진오에 따르면 자신의 제안에 의해 1951년 4월16일에 장면 총리, 조병옥 내무, 김준연 법무 장관,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 최두선, 홍진기씨, 박재섭 고려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대일강화회의 준비위원회’가 설치되어 대일강화조약 제2차 시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외교사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유진오 1993, 21-22).

11) 구체적으로 『기본태도』는 ‘머릿말’에서 “주일대표부의 정무과 전직원과 재일동포 사회에서 송○한 ○○의 권위 4명으로 구성된 ‘대일강화에 대처하는 준비조사위원회’(가칭)가 “주야겸행으로 진지한 연구조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동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기본관계』, 15)

12) 다만, 국가 대표자에 대해 강제가 조약의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국제법적 이해가 존재한다(笹川 2004, 255-256; 이근관 2003).

13) 이 점에 대해선 김창록(2010, 201-202), 백충현(1996, 76-77), 坂本(2004, 253)을 참조할 것.

지를 전개했다. 강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가해지는 국가적 강제력은 배상 등 전후처리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병합조약의 경우 “한 국가의 소멸을 초래하는 무력점령의 계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조약에 가해진 강제 혹은 강박은 쌍무적이지 않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병합조약은 “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한 국가의 기능을, 특히 외교권과 사법·경찰권을 무력으로 박탈한 후에 국가전체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국가기관을 협박” 함으로써 체결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요컨대, 『기본태도』는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효력은 조약 체결 당사자에게 강제를 가하여 체결되었을 때에는 물론 무효이지만, 전쟁과 같이 쌍방이 강제의 연장이 아닌, 즉 원인이 없는 강제는 그것이 국가전체의 가담으로써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약은 무효라 논정(論定)한다”고 병합조약의 무효론을 주장했다(『기본태도』, 21-22). 이는 “국가에 대한 강제는 무력과 협박을 행사한 당사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혹은 ‘권리보장’의 증명이 중요하다”는 당시의 국제법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¹⁴⁾.

이 같은 강제에 의한 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기본태도』는, 일국의 외교권과 행정권을 정지시켜 사실상의 국가 소멸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황제 및 대신을 “직접 협박”하여 체결한 1905년 11월의 한일협약과 이 협약에 준거한 협약, 1910년의 병합조약은 그 강제성과 일방적 폭력성으로 인해 “조약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결론지었다(『기본태도』, 22-23). 『기본태도』는 그 구체적인 학설적 근거로서 한일병합의 강제성을 인정된 법학자 아리가(有賀長雄)와 레이(Francis Rey)의 논문¹⁵⁾ 등을 인용했다.

『기본태도』는 또 1943년 10월 미국과 영국이 1938년 독일에 의한 오스트리아 병합을 무효라고 선언한 점,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의 조선에 대한 언급 등을 내세워 “합방조약의 무효론은 법리적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고 현실에 있어 그 무효의 실천이 금차 대전 후 오스트리아 한국 등에서 실현되었다”고 주장했다(『기본태도』, 25). 이처럼 주일대표부는 어떤 국제법적 문제에 적용할 법은 그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 존재하는 국제법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시제법(時際法)의 원칙’¹⁶⁾에 입각하면서, 동시에 현실 정치의 동학까지 고려해 구조약의 법적 모순과 무효론의 논거를 체계적으로 개진한 것이다.

2. 구조약 무효의 법적 효력과 "무권대리론"

하지만 본고가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기본태도』가 제시한 병합조약 무효의 효력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기본태도』는 무효론의 당연한 귀결로서 “한일합방조약으로 발생한 그 후의 모든 사태는 1910년 8월22일에 소급하여 무효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한편, “그러나 그 무효의 효력 발생에 있어 약간 국제관례상의 ‘목인 혹은 주인’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¹⁷⁾. 『기본태도』가 병합조약 무효의 소급적용의 ‘예외’(例外)를 인정한 가운데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무효의 효력에 대해 요약한 바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14) 이 점에 대해선 笹川(2001, 144), 김창록(2010, 202)을 참조할 것.

15) 『기본태도』는 구체적으로, 일본외교정보 제9권5호에 실린 아리가의 “한일협약과 강제문제,” 레이의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1906년2월)라는 논문을 언급했다. 한편, 구조약에 대한 근대 관습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토츠카 에즈로우(2010)와 김창록(2010)이 자세하다.

16) 시제법적 관점에서 병합조약의 절차 및 형식 문제를 논한 연구로는 박배근(2009)을 참조할 것.

17) 기존연구 가운데 장박진은 거의 유일하게 『기본태도』를 인용했으나, 구조약 무효와 대일 배상요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측면만 강조했다. 동 문서가 ‘목인 혹은 주인’하겠다고 단서를 단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장박진 2008a). 본고는 이 단서 조항이야말로 『기본태도』가 제시한 구조약 무효론의 핵심이라고 본다.

[표 1] 『기본태도』가 제시한 한일병합조약 무효의 효력 (『기본태도』, 17-18)

<p>3. 중요사항의 열거</p> <p>a. 대인상권(對人商權)¹⁸⁾: 1910년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그 기능만 정지</p> <p>b. 선의의 제3자의 이익: 묵인. 무효를 주장치 않음.</p> <p>c. 조선총독의 일반 행정: 무권대리 행위가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할 수 있다.</p> <p>가. 순전한 행정면</p> <p>1. 조선은행권: 구한국 사무 해결과 준비금 보지(保持) 및 ○생활의 경제행위 계속으로 유효</p> <p>2. 세금: 집단생활자의 최저의무범위 내는 유효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특별세는 무효</p> <p>3. 공채 및 기타: 한국국민의 복리를 위한 공채는 유효 그 외는 무효다.</p> <p>4. 대일무역: 유효다.</p> <p>나. 사법면: 일체 무효다. 다만 도의적 책임위반의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판결은 추인함.</p> <p>다. 입법면: 제령(制令)은 일체 무효다. 다만, 사회질서유지에 필요한 점만 추인한다.</p>
--

이상과 같이 『기본태도』는 구조약의 무효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대원칙을 내세우면서도 35년간에 걸친 조선총독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 ‘선택적 추인 혹은 묵인’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우선, “선의의 제3자의 이익,” 즉 일제 식민지 지배 기간 중에 “선의”의 제3국이 합법적으로 조선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국제관례에 따라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다¹⁹⁾. 또 조선총독의 일반 행정 가운데 조선은행권의 발행, “집단생활자의 최저의무범위(最低義務範圍) 내”의 징세, 한국국민의 복리를 위한 공채의 발행, 일본과의 무역은 ‘유효’라고 판단했다. 사법에서의 도의적 책임위반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판결,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입법 행위 등도 무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의 “기정사실” 가운데 “계승적 질서유지를 지속한 선의의 관리자의 행동까지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이유에 대해 『기본태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이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근본목적으로 하는 한, 일정한 기간 기정사실의 지속이 사회질서의 안전을 유지할 때에는 오히려 그 결과를 준 원인의 彼此如何보다 인류사회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현실에 치중하므로, 일반 법질서에 있어서도 「시효」라는 규정 하에서 이러한 점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략) 타국가들의 승인이 장구한 기간 동안 없던 기정사실이 결과적으로 국제질서를 확립하였을 때에는 인류사회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이 기정사실에 법의 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한일병합조약 그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동시에, 무효의 효과가 대인상권(對人商權)에 있어서는 물론 원형회복(natural restitution)이나, 기타의 권리는 전부가 원상회복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으로 ○○별적으로 그 효력을 결정함이 가하다고 생각한다(『기본태도』, 18-19).”

『기본태도』는 구조약 무효의 효력에 ‘예외’를 둔 근거로서 ‘시효’(時效, legal

18) 『기본태도』에 따르면, 대인상권이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의무의 표현”을 의미하는 국적을 가짐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의미한다.

19) 다만, 『기본태도』는 1909년 9월4일 청일 간에 체결된 ‘간도(間島)에 관한 협약’은 당연히 무효라는 입장을 취했다.

prescription)와 ‘무권대리’(無權代理, rightless agency)라는 두 가지 법률 개념을 제시했다. 첫째,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병합조약이 원천 무효이므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또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기정사실”로서 장기간 지속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용인되어온 측면이 있으므로 그 법률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근대사법의 소산으로 민법에서 통용되어온 ‘무권대리’ 개념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이지만 대리권의 외관이 존재한 경우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²⁰⁾. 즉, 『기본태도』는 조선총독의 식민지 통치를 이 같은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조약 자체의 무효와 그 후의 군사점령 및 무권대리의 권리행사의 계속, 즉 최초에 가해진 강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질서에 가해진 사실상의 제2차적, 제3차적 효과 전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기본태도』, 18).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총독부의 행정에 한해서는 적인(適認)한다”고 밝혔다(『기본태도』, 12). 상기 [표 1]의 “중요사항”의 총독부 행정 가운데 ‘유효’ 혹은 ‘추인’, ‘묵인’이라고 밝힌 부분이 바로 ‘적인’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서 오히려 주목할 점은 『기본태도』가 조선총독의 식민지 통치행위 가운데 ‘적인’하지 않은 부분, 즉 ‘무효’라고 단정한 내용이다. 상기 표의 총독부 행정 가운데 “적인”되지 않은 부분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특별세”의 징수와 “전쟁을 목적으로 한” 공채 발행 등으로 제한되었다. 환언하면, 『기본태도』는 구조약 무효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 조선총독의 통치행위를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추인했으며, 다만 일본의 침략전쟁, 즉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조선이 동원되어 당한 피해에 대해서만 ‘무효’라는 각론을 전개한 셈이다. 이는 자칫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실질적 추인’ 혹은 병합조약 ‘유효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 같은 우려는 『기본태도』에서도 지적되었다. 주일대표부는 『기본태도』의 서문에 해당하는 “설명서”(1951년 1월25일)에서 병합조약을 둘러싸고 위원 간에 ‘무효론’과 ‘유효론’의 견해차가 존재했다는 점을 상기한 후, “무효론에서 조선총독의 ‘무권대리’라는 이론 하에서 이를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사회질서 유지상 필요한 총독부 행정에 대해서는 적인한다는 입론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적 질서론을 인정하게 되는 이론적 모순에 직면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기본태도』, 12).

이 같은 모순은 제국주의적 국제법 체계를 ‘시제법의 원칙’에 입각해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틀 속에서 생성된 병합조약을 무효화하고 그 법적 효과를 논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이론적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순은, 앞서 인용했듯이, 유진오가 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법 이론은 차치하고 어쨌든 무효라고 하고 싶다”고 법리 논쟁을 회피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 모순에서 비롯된 구조약에 대한 애매한 입장이 낳은 실제적 파장은 훨씬 중대했다. 조선총독의 식민지 통치를 ‘무권대리’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사실상 추인했듯이,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20) ‘무권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해석은 필자의 전문분야를 넘어서므로 본고에서는 『기본태도』가 제시한 무권대리의 일반적인 내용만을 문제시하고자 한다.

IV. 봉인된 과거청산: 식민지 피해보상에 대한 인식

구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또한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배상’을 내세웠으나 애초부터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를 포기했으며, 실질적으로 민사상의 ‘청구권’ 차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기본태도』가 조선총독의 식민지 통치를 ‘무권대리’ 행위로 이해해 그 법적 효과를 추인한 것이 주일대표부의 독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시사한다.

1. 정부 수립 직후의 대일 ‘배상’ 요구 준비

한국이 정부수립 직후 대일 ‘배상’ 요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 1949년 9월에 완성된 『對日賠償要求調書』(이하, 『배상조서』로 약기)이다²¹⁾. 48년 가을부터 기획처장 이순탁과 함께 법제처장으로서 이 ‘배상’ 준비 작업에 관여한 유진오는 “우리 민족은 35년간 일본의 강점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았으므로 정부가 수립된 이상 일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면서 “이 때 우리가 생각했던 배상은 물론 국제법상의 ‘전쟁배상’이었다”고 말했다(유진오 1966, 456; 동 1993, 8). 즉, 유진오의 표현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국정부는 일본에 의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일종의 전쟁행위로 간주,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태세였다. 당시 국제법상 ‘배상’(reparations)이란 패전국이 승전국에 대해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 손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했다(오오타 2008, 29-30). 실제로 『배상조서』는 서문 “대일배상요구의 근거와 요강”에서 한국이 대일 ‘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의 일본의 한국지배는 한국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한 일본단독의 강제적인 행위로서 정의, 공평,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폭력과 탐욕의 지배이었던 결과 한국 및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여하한 국가보다 최대의 희생을 당한 피해자인 것이며 ‘한국국민의 노예상태에 유 의하여 한국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표명한 카이로 선언이나 또는 이 ‘선언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지배의 비인도성과 비합법성은 전 세계에 선포된 사실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일 배상의 응당성(應當性)은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는...바이다(『배상조서』, 1).“

요컨대, 『배상조서』의 서문에서 제시한 배상요구의 대상은 “1910년부터 1945년 8월5일까지의 일본의 한국지배”로 발생한 “한국 및 한국인”의 희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행위 자체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배상 개념은 각론에서는 모습을 감추고, 사실상 식민지 말기에 전개된 일본의 전쟁행위, 즉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한국 및 한국인의 피해보상 요구로 축소된다. 『배상조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대일배상요구의 ‘응당성’을 설명한 직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대일배상 요구의 기본정신은 일본을 징벌하기 위한 보복의 부과가 아니고 희생과 회복(恢復)을 위한 공정한 권리의 이성적 요구에 있는 것”이라면서 ‘배상’의 범위를 제한할 뜻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배상조서』가 “공정한 권리의 이성적 요구”라면서 제시한 ‘배상’의 내용을 살펴보자.

21) 이하 본고가 인용하는 『배상조서』는 1954년 8월15일자로 재판집된 『對日賠償要求調書』이다. 이 『배상조서』는 서문에 “본 조서는 1949년 9월1일 현재 조사된 것”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한편, 『배상조서』에 첨부된 방대한 분량의 증빙자료는 한국전쟁 중 소실되었다고 한다(유진오 1993, 16).

[표 2] 대일배상요구조서 일람표²²⁾

제1부	<현물반환> ①지금 249톤633킬로198.61그램, ② 지은 89톤112킬로205.12그램, ③서적, ④미술품 및 골동품, ⑤선박, ⑥지도원판, ⑦기타
제2부	<확정채권> 17,429,362,305엔 및 4,000,000 상하이(上海)달러 ①일본계 통화 1,514,134,098엔, ②일본계 유가증권 7,435,103,942엔, ③상해불화(弗貨) 4,000,000달러, ④보험금, 은급(恩級), 기타 미수금 6,436,617,521엔, ⑤체신관계 특별계정 2,043,506,744 엔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12,122,732,561 엔 ①인적 피해 565,125, 241엔, ②물적 피해 11,326,022,105엔, ③8·15 전후 일본 관리의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 231,585,215엔
제4부	<일본정부의 저가 수탈에 의한 손해> ①강제공출에 의한 손해 1,848,880,437엔
요구총액	(제1부의 현물반환 제외) 31,400,975,303엔, 4,000,000 상하이달러

우선 제1부 ‘현물반환’은 반환(restitution)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일본이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차지했던 것을 돌려달라는 의미이다. 또, 제2부 ‘확정채권’은 『배상조서』의 서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는 일본의 패전을 계기로 하여 생성(生成)한 어떤 요구조건이 아니라 전쟁의 승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단순한 기성(既成) 채권채무 관계”이며 “따라서 배상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배상조서』, 2). 즉, ‘확정채권’은 상환이 약정되어 있는 재산상의 권리에 대해 권리소유자(rightful owner)가 요구하는 민사상의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배상조서』의 제1, 2부는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의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및 제4부 ‘일본정부의 저가수탈(低價收奪)에 의한 손해’ 또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가령, 제3부에서 말하는 ‘인적 피해’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당한 한국인에 대한 ‘사망자 장제료(葬祭料)’ 및 ‘유가족 위자료,’ ‘상이자 및 일반노무자 위자료,’ ‘부상자 상이수당,’ ‘퇴직수당,’ ‘각종 보관금 및 미수(未收) 임금,’ ‘징용기간 연장수당’ 등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란 일본군의 전쟁 수행을 위해 강제로 수용되거나 그 과정에서 손상된 건물(주로 학교 교사) 및 토지, 임야의 피해, 군사목적으로 징발한 선박 등의 피해, 군수품 생산을 위한 기업정비령에 의한 피해, 방공호 등 불필요한 군사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 등을 가리킨다(『배상조서』, 330-506). 제4부의 ‘저가수탈’은 일본군이 상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수용으로 강제 공출한 옥우, 쇠가죽, 건조, 면화, 임산물, 유기(鑰器) 등에 대한 피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제3, 4부는 1937년 이후 일본이 중국 및 미국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부과한 각종 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한국정부의 과거청산에의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해온 『배상조서』는,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본고가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과거청산’과 일본의 ‘전후처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와 관련, 『배상조서』는 “우리는 을사조약의 무효성을 국제법적으로 변명(辨明)할 수도 있고 또는 카이로, 포츠담의 양 선언의 진의를 천명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과거 36년간의 지배를 비합법적 통치로 낙인(烙印)하는 동시에 그간에 피해 입은 방대하고도 무한한 손실

22) 표는 『배상조서』 519-523쪽에 기재된 내용을 필자가 요약 정리한 것임.

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대일 배상요구 기본정신에 비추어 이는 이에 전연 불문에 부치는 바이다”고 말했다 『배상조서』, 3).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방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모두 불문에 부친다는 ‘관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물론,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지적했듯이, 점령초기의 엄격한 배상에서 일본의 전후복구를 우선시하는 관대한 배상으로 극적인 역전을 이룬 미국의 대일정책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실제로 연합국 최고결정기관인 극동위원회는 1947년 8월, 연합국만이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동 위원회의 참여국이 아닌 한국은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의 획득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²³⁾. 그러나 『배상조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인 1948년 9월30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시정방침 연설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강화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연합국에 요청해 (대한)민국이 대일배상요구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한국정부는 결코 ‘배상’ 요구에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조선일보』 1948년10월1일). 더욱이 한국정부가 『배상조서』를 작성한 1948년 가을~49년 9월은 이후 한일 간의 청구권 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일강화조약의 향방이 여전히 아주 불투명한 시기였다²⁴⁾.

따라서 『배상조서』가 실질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를 포기한 이유를 미국의 대일정책 등 외부적 요인만으로 환원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상기한 바와 같이 『배상조서』가 ‘배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기본정신,” 즉, “일본을 징벌하기 위한 보복의 부과가 아니고 희생과 회복(恢復)을 위한 공정한 권리의 이성적 요구”가 태동하게 된 내재적 동인에 대한 관심이 아울러 요망된다. 『기본태도』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무권대리’ 행위로 인식했듯이, 한국정부 스스로 ‘정당한 권리’로서의 식민지 피해보상 요구를 ‘이성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2. ‘배상’에서 민사적 청구권으로

하지만, 당초부터 식민지 피해보상을 제외한 한국정부의 ‘이성적 요구’는 대일강화조약 발효(1952년 4월28일) 직전인 52년 2월 시작된 제1차 한일회담의 ‘청구권’²⁵⁾ 협상에서 더욱 ‘이성적으로’ 쪼그라든다. 그때까지 표면적으로나마 주장했던 ‘배상’이 실질적으로 ‘청구권’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일본의 ‘전후처리’의 범주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측이 동년 2월20일 열린 제1차 ‘재산 및 청구권 문제 분과위원회’에서 일본측에 제시한 이른바 ‘대일 8항목 요구’(공식명칭은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임송분 한국측 대표는 ‘대일 8항목 요구’의 골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36년간의 일본의 점령(occupation)에서 발생한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추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23) 극동위원회의 이 결정에 대해 미국은 자국이 받는 배상의 일부(즉, 제한 일본인 재산)를 한국에 충당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대일배상 취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ng-Hwa Cheng 1991, 128).

24) 대일강화조약 초안은 1947년 3월부터 몇 차례 작성되었으나 일본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이 시기 맥아더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 등은 일본의 전후회복을 강조하는 견해를 워싱턴에 끊임없이 진언했다. 한편, 덜레스가 미 국무장관 정책 고문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일강화에 관한 각서를 미국무성에 제출한 것은 49년 6월6일이며, 대일강화7원칙이 제시된 것은 50년 9월22일이었다(塚元 1992, 96; 유진오 1993, 38-39).

25) 오오타에 따르면 청구권 개념은 한일교섭 준비작업을 했던 유진오가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대일강화조약 초안 제4조에 언급된 Claim을 ‘청구권’으로 번역해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했다고 한다(오오타 2008, 31).

장래의 한국의 생존(existence)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288)

말하자면, 한국정부는 이후 1965년까지 전개되는 대일 청구권 교섭의 벽두부터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기할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것이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청구권의 범위를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는 것, “장래의 한국의 생존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재산”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의 법적 효과를 사실상 ‘무인’했다. ‘대일 8항목 요구’의 속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 3] 대일8항목요구 (『제2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1119-1120)

제1항: 한국으로부터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지도원판 및 지금과 지은을 반환할 것.
제2항: 1945년 8월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對)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
제3항: 1945년 8월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할 것.
제4항: 1945년 8월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主)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제일재산을 반환할 것.
제5항: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할 것.
제6항: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이 소유한 일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제7항: 전기 제(諸)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生)한 제(諸)과실을 반환할 것.
제8항: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결할 것.

한국측이 설명한 청구근거에 따르면, 제1항은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된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2항은 조선총독부의 권한이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승계됐으므로 총독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우편저금, 연금 등)을 한국정부가 청구한다는 것이다. 또, 제3~7항은 기본적으로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의 몰수를 명령한 미군정령 제33호와 몰수된 재산의 한국 이전을 명시한 1948년 ‘한미협정’ 등 ‘전후’ 미국이 정한 룰에 의거해 일본 국내에 남아있는 한국 재산 및 그 이익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었다(『제2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293-306).

‘대일 8항목 요구’를 정부수립 초기에 작성된 상기 『배상조서』와 비교하면 그 실상이 더욱 확연해 진다. 『배상조서』의 제1부 ‘현물상환’은 거의 그대로 ‘대일 8항목 요구’의 제1항목으로, 제2부 ‘확정채권’은 8항목의 제2~7항으로 흡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전시피해에 해당하는 『배상조서』의 제3, 4부는 ‘대일 8항목 요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장박진이 적확하게 지적했듯이, 『배상조서』 제3, 4부의 청구내용이 실제 대일협상에서 제외된 것은 병합조약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못하는 제약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장박진 2008b, 215). 구조약 무효의 법적 효력에 대한 애매한 인식은 대일 협상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된 셈이다.

V. 구조약 무효론과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정체성

구조약 무효에 대한 법적 인식은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정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및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8년 7월 제정된 제헌헌법이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

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밝힌 이래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이 3·1운동과 그 결과로서 임시정부를 정부로 하여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과 계속성(continuity)을 가진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3·1운동에 의하여 건립된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동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배근 2004, 63). 그렇다면 1910년 8월29일 병합조약으로부터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이 태동한 1919년 4월13일까지의 기간은 국가의 법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인가. 또, 그 기간 중에 국민은 무엇이었던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²⁶⁾, 이하에서는 구조약 무효론과 관련지어 초기 한일회담에서 표출된 한국정부의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1. 대한제국 법통설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측은 제1차 한일회담의 기본관계위원회에서 병합조약에 대해 “어쨌든 무효”라는, 법이론적 근거를 회피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약 체결의 일방이었던 대한제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적 관계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2년 3월12일 열린 제5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일본측 오노 외무성 참사관은 한국측의 “어쨌든 무효” 주장에 대해 “구 대한제국이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로서 소멸한 이상 그것은 대한민국과 별개이며, 그 사이에 계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소멸해 사라진 조약의 무효를 새삼스럽게 문제시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유진오는 “(구조약이) 사실상 소멸했으므로 이 3조(한국측이 제시한 기본조약안의 구조약 무효 조항)에 의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은 알겠으나, 그것(구조약 무효)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이 되지만, 이것도 덮어두고 싶다”고 말했다(『第五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 17-18).

한국측이 헌법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대한제국과의 법적 동일성을 사실상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즉, 신생 대한민국이 구 대한제국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의 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구조약의 “어쨌든 무효”론의 논리적 구조 하에서는 대한제국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의해 주권이 제한되었을 뿐이며, 그 주권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에 의해 계승되어 다시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만이 가능했다. 이는 물론, 일본의 식민지 강점이 불법이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한국민의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다만, 유진오가 계승론을 인정하면서도 “이것도 덮어두고 싶다”고 말한 것은 35년간에 걸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수반하는 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자신이 깊숙이 관여한 제헌헌법과의 불일치성 등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대한제국 승계론은 앞서 거론한 『기본태도』에서도 확인된다. 『기본태도』가 병합조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단정한 것은 대한제국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했음을 전제로 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본태도』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불법적인 군사점령을 통한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26)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국가적 동일성, 이와 연동되는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의 대한제국의 소멸 여부 등을 둘러싼 학설의 대립과 논점에 관해서는 박배근(2004, 59-61)이 자세하다. 또, 임시정부 법통론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로서 윤대원(2010)을 참조할 것.

동일성과 계속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무권대리 행위로서의 위법한 군사점령에 의한 법적 효과는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²⁷⁾. 결국, 한국정부는 일본에 대해 병합조약의 “어쨌든 무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었다는, 헌법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는 모순을 연출한 셈이다.

2.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

구조약의 “어쨌든 무효”의 논리 구조 하에서는 그 국민 또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국민이어야 했다. “어쨌든 무효”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주권의 변동을 부인하므로 당연히 그 국민의 국적 변경 또한 부인하기 때문이다. 국가 없는 국민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도 그 국민 또한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진오는 “일본의 포츠담 선언수락으로 한국은 이미 일본의 굴레를 벗어났으므로 한국인에게 씌워졌던 일본국적도 그 날짜로 이미 소멸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모든 한국인(在內, 在外를 막론하고)은 한국국적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유진오 1993, 47-48). 즉,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불법적인 씌워졌던 ‘굴레’였던 만큼, 그 국민의 국적 또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킨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이 같은 국적 ‘회복’ 입장은 건국 직후인 1948년 12월20일 제정된 국적법에서 이미 표출되었다. 동 국적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제 식민지 기간 중에 출생한 자에 대한 국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장박진 2009, 217). 달리 말하면 식민지 시대에 태어난 자는 당연히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선택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별도로 국적을 확인하거나 취득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 이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1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가 결국 8월 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 하면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더라도 정부가 없는 법이 있습니다. (중략) 그런 까닭에 이 법률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이전부터 시작해서 (중략)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적을 가졌다 (중략)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법률을 제정한 후 그 사람이 국적을 가졌다면 대단히 기인한 상태가 생길 것입니다(『제1회 제118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4).”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소멸하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역시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약 무효론 및 혈통주의에 기초한 국적의 계속성 원칙은 한일회담에서의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에 대한 입론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김태기가 소상히 밝혔듯이 한국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패전국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군총사령부(SCAP/GHQ)에 대해 재일조선인의 한국 국적을 국제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金太基 1997, 632-634)²⁸⁾. 앞서 인용한 『기본태도』 또한 할양지 주민의 국

27) 군사점령에 의하여 국가가 소멸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국가의 구성요소(대표적으로 정부)를 상실하더라도 국가는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혁명이나 쿠데타, 혹은 내전에 의해 정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존속하는 것과 같다(박배근 2006, 262).

28) 한편, GHQ는 일본 점령초기인 1945년 11월의 ‘기본지령’(JCS-1380/15)에서는 재일조선인을 ‘해방민족’(liberated peoples)으로 대우하여 적국인 ‘일본’인과 구별했으나, 이후 필요에 따라 ‘적국인’(enemy nationals)으로 처우해도 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한국’의 지위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한국은 1945년 10월31일 작성된 GHQ 각서에서 연합국, 중립국, 적국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2년 후인 47년 8월4일자 같은 취지의 각서에서는 결국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은 ‘특별지위’(Special Status)국’으로 규정되었다(外務省特別資料部編 1989, 33-37).

적선택에 관한 국제적 선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재일교포는 최초부터 최후까지, 즉 어느 순간일지라도 일본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그 기능만을 36년간 정지당하였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자동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였으므로 재일교포에 관해 국적선택을 운운하는 법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기본태도』, 72). 또한, 상기 [표 1]이 말하듯이 『기본태도』는 ‘무권대리’의 개념으로써 조선총독의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를 사실상 추인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대인상권, 즉 국적을 가짐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1908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그 기능만 정지”된다는 법리 해석을 내렸다.

흥미롭게도 구조약 무효론에 입각한 이 같은 한국정부의 국적 ‘회복’ 개념은 그 의도하는 바가 정반대였지만 일본측의 생각이기도 했다. 가령, 일본측이 1952년 2월16일 열린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제시한 ‘우호조약’ 초안의 제4조는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1945년 9월2일 이전의 어느 시기부터 일본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한인(韓人)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본국 국민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혀 재일한국인의 국적선택권을 부인했다(『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1125). 하지만 일본측의 제안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를 통해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당초 일본 국적이던 재일조선인의 경우 ‘외국인’이 되었으므로 이들의 본국송환 혹은 강제퇴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일본측이 주장한 재일조선인의 국적 ‘회복’의 논리는 병합조약으로 인한 일본국적 취득과 일본제국으로부터의 조선의 ‘분리’로 인한 일본국적 상실, 그 귀결로서의 강제퇴거 가능이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한국측의 희망대로 한국이라고 규정하든, 아니면 일본측의 의도대로 일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든, 한일 양국이 동일하게 재일조선인의 국적선택권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점점 모색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유진오가 회고했듯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같이 재일한국인에게 국적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했으므로 전후처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선례를 배제하는 데 양국 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은 일본에 영주를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어떠한 대우를 공여하느냐 하는 것뿐이었다(유진오 1978, 199-200).” 하지만, 이 같은 유진오의 언급은 본질적 문제, 즉 구조약 무효 확인 문제를 “덮어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동상이몽이 낳은 우연의 역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할 것이다²⁹⁾.

VI. 나오며

한국정부는 과거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일본에 요구한 적이 없다.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본고는 주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구조약 무효에 대한 법이론적 해석과 이와 연동된 식민지 피해보상 요구의 이론과 실제, 대한민국 및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상호 연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1965년의 기본관계조약의 구조약 관련 조항은 한일 간의 과거사 인식(처리)의 원점이다. 이 조항 말미에 등장하는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문구는 한일 간의 과거사 인식의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한일 간의 불편한 관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14년간에 걸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 오랫동안 직간접적으

29) 실제 유진오는 1952년 3월25일 열린 제1차 한일회담 제7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근본론을 (전개)하면 회의 그 자체가 성공하지 못하므로 단지 논의를 해도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론(理論)을 만족시키면서 현실을 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략) 이번 조약에서 한인이 일본국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확인하게 되면 병합조약의 그것(근본론, 즉 무효 확인 문제)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나 이 논의는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第七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錄』, 34-35).

로 깊숙이 관여한 유진오 스스로 “양국의 외교적·법적 관계를 정상화한 것에 불과할 뿐 본질문제에 대해서는 타결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한국인문사회연구원 2007, 183; 유진오 1978, 201)고 혹평할 정도로 한일관계는 원점부터 어긋나 있었다.

그러나 그 어긋난 원점은 1965년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구조약 무효에 대한 애매한 인식은 초기 한국정부 내부에서 이미 노정되었고, 실제로 대일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1965년 한일회담 타결의 불완전성을 개탄한 유진오 자신이 주도한 1952년 2월의 제1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에서 한국측은 구조약에 대해 ‘확실한 무효’가 아니라 “어쨌든 무효”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무효의 근거와 효력에 대한 법적 해명을 “모두 덮어두”고 “어쨌든 무효”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무효가 관철될 여지는 없었다. 오히려 한국측의 “어쨌든 무효”론은 일본측에 구조약 유효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할 근거를 제공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종착점이 바로 정치적 흥정에 가까운 ‘자구수정’의 노력 끝에 나온 “이미 무효”이었고, 구조약이 ‘전후’ 한일관계에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지극히 애매한 표현이었다.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과거사 청산은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에 의해 봉인(封印)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 스스로 봉인하길 원했던 것이다.

초기 한국정부의 구조약 무효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구조약의 법적 해석과 관련해 공개된 유일한 외교문서인 주일 대표부의 『기본태도』는 구조약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무효의 법적 효력, 즉 구조약의 실질적 발현이랄 수 있는 조선총독의 식민지 통치를 ‘무권대리’ 개념으로써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 무효효력의 소급적용을 포기한 무효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추인하는 이론적 모순에 직면하고 만다.

이 모순은 35년에 걸친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수반되는 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이를 사실상 인정해온 제국주의적 근대사법의 전통, 더욱이 냉전의 논리에 입각해 ‘관대한 배상’으로 돌아선 미국의 대일정책이라는 정치적 고려에서 도출되는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ex factis oritur jus)과, 민족적 자존심과 더불어 강제로 체결된 병합조약의 무효성에 기초한 “불법에서 법은 발생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원칙 혹은 이상과의 갈등이기도 했다. 유진오가 “법이론을 관철했을 경우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법이론은 차치하고 어쨌든 무효라고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아마 이 같은 갈등의 소산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구조약 무효에 대한 불투명한 입론에서 도출되는 현실적 모순은 지대했다. “어쨌든 무효”론으로써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1949년 최초로 작성한 『배상조서』에는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배상’이 빠져 있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첫 만남에서 공식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기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때 한국측이 제시한 ‘대일 8항목 요구’는 사실상의 민사상 청구권으로 국한되었고, 주지하다시피 이는 다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타결 과정에서 정치적 담합에 의한 ‘경제협력’ 방식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한일회담의 결과만을 주목해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과 이승만의 ‘반일성’을 일반화해온 기존 해석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기한 것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구축된 법적, 정치적 판단이었고,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구조약 무효에 대한 애매한 입론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정체성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졌다. 구조약의 “어쨌든 무효”론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한 국가일 수밖에 없었

다. “어쨌든 무효”론 속에서는 일본 식민지배 속에서도 대한제국은 망하지 않았고, 그 국민성은 “기능만 정지”되었을 뿐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을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부인한 것이다.

유진오가 “덮어두”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덮여지지 않았다. 한일 과거사의 ‘결락’(缺落)은 지금도 생생하고, ‘과거청산’ 없는 ‘미래지향’은 공허할 뿐이다.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은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 『제1회 제118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1948년12월1일.
- 김동조. 1986. 『回想 30年 韓日會談』. 서울: 중앙일보사.
- 김용식. 1987. 『希望과 挑戰: 金溶植外交 회고록』. 서울: 동아일보사.
- 김창록. 2005.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성격: 법적 관점에서의 접근.” 한일관계사연구 논집 편찬위원회 편.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한일관계사 연구논집 10). 서울: 경인문화사.
- . 2010. “1910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사학적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 제29호.
- 대한민국정부. 1954. 『對日賠償要求調書』.
- . 1965. 『한일회담백서』.
- 박배근. 2006. “국제법상의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저스티스』 통권 제90호.
- . 200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하).” 연세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3권 4호.
- . 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2호.
- 배재식. 1970. “한일기본조약연구: 제2,3조를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15권1호.
- 백충현. 1996. “國際法으로 본 1900년대 韓日條約들의 문제점.” 『한국사 시민강좌』 19. 서울: 일조각.
- 사사가와 노리카츠(笹川紀勝). 2001. “일한의 법적 “대화”를 목표로하여: ‘제2차 일한협약’ 강제문제를 보는 관점.” 이태진 편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서울: 태학사.
- 오오타 오사무(太田修).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옮김. 2008.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유진오. 1966. 『구름 위의 慢想』. 서울: 일조각.
- . 1978. 『未來로 向한 窓』. 서울: 일조각.
- . 1993. 『韓日會談-第1次 會談을 回顧하면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윤대원. 2010. “임시정부 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고정휴 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서울: 나남.
- 이근관. 2003. “국제조약법상 강방이론의 재검토: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장희. 1996. “1965년 韓日基本條約 재검토.” 이장희 편. 『韓日基本條約의 再檢討와 東北亞秩序』. 서울: 아사연.

- 이종원. 2011. "한일협정과 향후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학술회의(2011년 8월12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발표문.
- 양호민. 1965. "基本關係條約: 그 政治的 盲點을 批判한다." 『思想界』 7월호(긴급 증간호).
- 장박진. 2009.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분석: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재일성'(在日性)의 기원." 『아세아연구』 제52권1호.
- . 2009a. 『식민지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한일회담이라는 역설』. 서울: 논형.
- . 2008a. "한일회담에서의 기본조약 형성과정의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7권2호.
- . 2008b.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정신문화연구』 제31권1호.
- . 2007. "한일회담에서의 식민지관계 청산연구: 청산소멸의 정치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토즈카 에츠로우(戸塚悦郎). 2010. "한국 강제병합 과정에 대한 재조명: 한일구조약의 불법·무효성에 관한 법학적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제29호.
- 한국인문사회연구원. 2007. 『知性の 路: 玄民 兪鎮午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논집』.
- 한상범. 1995. "한일기본조약." 민족문제연구소 편.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서울: 아세아문화사.

(한국정부 공개 한일회담 외교문서)

-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등록번호 76.
-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본회의 회의록, 제1차-5차, 1952.2.15-4.21』. 82.
- 『제1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2.22-4.2』. 80.
- 『제1차 한일회담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1-8차, 1952.2.20-4.1』. 86.
-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3차, 1953.5.11-6.15』. 92.

- 太田修. 2003. 『日韓交渉 請求権問題の研究』. 東京: クレイン.
- . 2011. "二つの講和条約と初期日韓国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植民地主義."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第2卷.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 高崎宗司. 1996. 『検証 日韓会談』. 東京: 岩波書店.
- 吉澤文寿. 2005. 『日韓関係: 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る』. 東京: クレイン.
- 李鍾元. 2009a. "日韓の親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 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1)." 『立教法学』 第76号.
- . 2009b. "日韓の親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 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2)." 『立教法学』 第77号.
- . 2010. "日韓の親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 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3)." 『立教法学』 第78号.
- 坂本茂樹. 2004. 『条約法の理論と実際』. 東京: 東信堂.
- 谷田正躬·辰巳信夫·武智敏夫編. 1966. 『日韓条約と国内法の解説』 (『時の法令』 別冊). 東京: 大蔵省印刷局.
- 外務省特別資料部編. 1989. 『日本占領重要文書』 第2卷. 東京: 日本図書センター.
- 塚元孝. 1992. "韓國の対日平和条約署名問題." 『レファレンス』 no.494.

(일본정부 공개 한일회담 외교문서)

『日韓會談第二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年2月27日). 文書番号 974.

『日韓會談第五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年3月12日). 977.

『日韓會談第六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年3月22日). 978.

『日韓會談第七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年3月26日). 979.

『日韓會談第七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1952年4月2日). 980.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11』 1127.

(일본 국회 회의록)

『第百三十四回国会参議院會議録 第四号』(1952年10月5日).

『第百三十四回国会参議院予算委員會會議録 第三号』(1952年10月17日).

Sung-Hwa Cheong. 1991. *The Politics of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Japanese-South Korean Relations under American Occupation, 1945-1952*. New York: Greenwood Press.

「解放」の理論と実際：併合条約に対する 初期大韓民国政府の認識と行動¹⁾

李東俊（高麗大学アジア問題研究所）

（要旨）

韓国政府は1910年の韓日併合条約が「最初から」無効であると主張してきた。併合条約が「最初から」無効だとすれば、日本の植民地支配は法的根拠のない違法行為に属するので、当然、韓国はそれに対する被害補償を日本に要求すべきであった。しかし、1951年の韓日会談以来、韓国政府が植民地支配に対する補償を日本に正式に求めたことは一度もない。なぜ韓国政府は旧条約無効を主張しながら植民地支配に対する補償要求を諦めたのか。その原因に対する一考察として本稿は、初期韓国政府の旧条約に対する法的解釈、それに連動した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補償への方針、国家としての韓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問題を総合的に考察した。このことは特に、その原因を主としてアメリカの冷戦戦略や朴正熙政権の「親日性」に求めた従来の認識に対する修正主義的な解釈でもある。

旧条約に対する曖昧な認識は初期韓国政府から表出されていた。1952年2月に開かれた第1次韓日会談の基本関係委員会で韓国側は旧条約について無効の法的根拠や効力に関する議論を回避しながら「とにかく無効」との姿勢をとった。無効を立証する法理論の展開を意図的に避けたので、韓国政府が求めた「最初から」無効が実現する余地は当初から存在しなかった。その終着点とは、政治的妥協と「字句修正」を経てからの「もはや無効」という極めて曖昧な表現であった。植民地支配に関わるいわゆる過去史の清算は「冷戦の論理」や「経済の論理」のみによって封印されたことではなく、むしろ韓国政府自らが封印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こうした初期韓国政府の姿勢は植民地支配に対する法的解釈でも投影されていた。旧条約無効論に関して韓国政府が公開したほぼ唯一の外交文書である『対日講和条約に関する基本態度とその法的根拠』は旧条約無効を原則的に主張しながらも、他方で朝鮮総督の植民地統治行為を「無権代理」の概念で説明することで無効の効力を事実上否認した。無効を主張しながらもその効力の遡及適用を諦めた無効論は結局、日本の植民地支配を追認するという理論的矛盾を露呈させる。

こうした理論的矛盾がもたらした現実的矛盾はさらに大きかった。「とにかく無効論」をもって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補償を求めることは当初から不可能であったからである。韓国政府が1949年に作成した『対日賠償調書』には植民地支配そのものに対する「賠償」要求は存在しなかった。しかも韓国政府は対日交渉に際して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補償を放棄するとの立場を公式的に表明した。そのとき韓国側が提示した「対日8項目要求」は事実上民事的請求権に局限された。周知のように、それは1965年の国交正常化成立過程では政治的談合による「経済協力」方式に帰結する。したがって、韓日会談の結果のみに注目し、朴正熙政権の「親日性」と李承晩政権の「反日性」とを強調してきた従来の認識は修正されるべき

1) 本稿は、高麗大学アジア問題研究所『アジア研究』第54巻4号（2011年12月）に掲載された拙稿「初期大韓民国政府の韓日関係の認識に対する批判的考察：併合条約無効の理論と適用」の韓国語原文をさらに一部修正して、日本語にしたものである。

であろう。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補償の放棄は韓国政府樹立初期から構築された法的、政治的判断であり、政策でもあったからである。

旧条約無効に対する曖昧な立論は大韓民国とその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曖昧さをももたらした。旧条約の「ともかく無効」論に基づく大韓民国は大韓帝国を継承した国家と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なお、「とにかく無効」という立論の下で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もかかわらずその国民性は単に「機能だけが停止」されただけであった。韓国政府は、憲法に明示されたいわゆる「臨時政府法統説」を日本との交渉では否定するという自己矛盾に陥っ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な矛盾は、35年間にわたった日本の実効支配に対する法的効果を無視し得ない現実と、それを認めてきた帝国主義的な近代国際法に起因する「事実的なものの規範力」(ex factis oritur jus)と、民族的プライドと強制的に締結された併合条約の無効性に基づく「不法から法は発生しない」(ex injuria jus non oritur)という原則(あるいは理想)との葛藤からもたらされただろう。しかし、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みずからが旧条約無効の効力について「一切伏せて」おこうとした後遺症の根は深かった。その後、歴史は決して伏せられなかっただけでなく、今も韓日間の過去史の「欠落」はあまりに生々しい。「過去清算」のない「未来志向」は至難であるからである。

Keywords: 併合条約、とにかく無効、無権代理、基本関係条約、植民地支配被害補償

I. はじめに

『1910年8月22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民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1965年6月22日に締結された「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以下、「基本関係条約」と略記)の第2条、いわゆる「旧条約無効」条項は、韓日両国における過去史認識(処理)の原点である。この条項の末尾に言及されている「もはや無効」(already null and void)の効力発生の時点に対して韓国政府は、「最初から」(ab initio)無効だという立場を固守してきた(韓国政府 1965年, 19) 2)。旧条約、すなわち日本の韓国併合に帰結した一連の条約³⁾が「最初から」無効だとすれば、日本の植民地支配は法的根拠のない違法行為に属するがゆえに、韓国は当然それに伴う責任と被害補償を日本に要求するはずであった。しかし、1951年以降の対日交渉で韓国政府が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の被害補償を正式に要求した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なぜ韓国政府は旧条

2) 併合条約については、依然として韓国の「不法不当論」と日本の「合法正当論」が対立する状況が続いている。日本側は『「正当な手続きを経て」有効に締結された条約が「もはや無効」になった』と解釈してきた(谷田正躬ほか 1966, 14)。ただし、最近になって日本政府は、併合条約が『「法的には有効」だったが、「植民地支配が現実であったことを直視し、厳しく反省して謝るべきことは謝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合法不当論」を展開している(李鍾元 2011)。1995年10月の村山富市日本総理の発言を参照(『第百三十四回国会参議院会議録第四号』, 19; 『第百三十四回国会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三号』, 34)。一方、韓国では韓日併合について庚戌国恥、合併、合邦、合邦勅約、併呑、強制併合などと記されているが、本稿では条約上の名称である「併合」をそのまま使用する。

3) 1904年2月23日の議定書、同年8月22日の協定書、1905年11月17日のいわゆる「乙巳勅約」、1907年7月24日の韓日新協約、1910年8月22日(公表日は同年8月29日)の併合条約など、植民地支配に至るまで朝鮮(あるいは大韓帝国)と日本が締結した60余件の協定、条約を通称する。

約が「最初から」無効だと主張しながらも、無効の法的効力を追及しなかったのであろうか。この疑問に対する一つの手がかりとして、本稿では、初期韓国政府による旧条約および日本植民地支配の法的解釈と、それに基づく過去史の処理方針、韓国およびその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対する立場などを相互に関連付けて考察する。

基本関係条約に記載された旧条約無効に関する既存研究は、ほぼ例外なく条項の曖昧性を批判的に論じている。張博珍によれば、1965年7月『思想界』の韓日協定関連特集号で梁好民が「もはや無効」に対して『過去の軍国主義統治を正当化する余裕を与えたもの』と述べたことが批判の嚆矢である（張博珍 2008a, 3； 梁好民 1965年, 50）。その後、多くの関連研究では、この「もはや」という文句の法的不明確性を指摘するか（裴載湜 1970； 金昌祿 2005）、さらに一步進んで、この曖昧な文句を受け入れた朴正熙政権の「没歴史性」あるいは「対日屈辱外交」を厳しく批判した（韓相範 1995； 李長熙 1996）。

基本関係条約の形成過程についての研究もかなり進んでいる。李元徳（1996）、高崎（1996）、太田（2003）、吉澤（2005）、張博珍（2007）などの研究を通じて旧条約無効に対する韓日両国の立場や基本関係条約に「もはや」という語句が挿入された経緯などがかなり解明された。特にこれらの研究はほとんど例外なく韓国政府が「もはや」を受け入れざるを得なかった外的要因として、アメリカの冷戦戦略とそれに深く連動していた東アジア地域統合戦略、そして植民地清算の論理が排除された戦後アメリカの対日政策を指摘した⁴⁾。特に張博珍（2008a）は、近年公開された韓国側の外交文書を本格的に活用して、旧条約条項がもう一つの論争の種でもあった同条約第3条における「唯一の合法性」条項と緊密に連携されながら韓日間に政治的談合が成立した、という注目すべき論旨を展開した。

本稿もまた、旧条約無効論を批判的に評価している点において、従来研究の延長線上にある。しかし本稿は、以下のように、既存研究の成果を再評価し、初期韓国政府が提示した旧条約無効論の法的・歴史的限界と意義を修正主義的な観点から再解釈しようとする。

まず、本稿では、初期韓国政府が構想して提起した旧条約無効論そのものに対する分析を図りたい。韓国政府が旧条約無効を主張したとすれば、その法律論的根拠に対する実証的検討が不可欠であるが、従来ほとんどの研究では、結果としての1965年基本関係条約第2条のみに注目し、なお、その原因を朴正熙政権の「親日性」、あるいはアメリカの冷戦戦略などに還元しがちであった。しかし、以下の本論で論証するように、旧条約に対する解釈の不透明性と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補償要求の放棄方針は、李承晩政権の発足初期から明確に披瀝されていた。政権の性格とは関係なく、韓国政府は当初から過去歴史に対する清算を念頭に置かなかったのである。

第二に、旧条約無効論の「適用」への関心である。旧条約無効論は、単に条約自体に対する法理解釈の問題だけでなく、そこには韓国とその国民の法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日本植民地支配に対する政治的判断が含まれていた。すなわち、旧条約をどのように解釈するかという問題は、大韓帝国と大韓民国との関連性に関する理解だけでなく、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に対する認識、旧条約の効果に直接関係する韓国政府の日本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補償要求にも直接影響を与えるしかなかった。従来研究では、条文分析やプロセス分析に力を注いだ残り、このように旧条約無効論が生み出した論理的連携の文脈に対してはあまりの無関心であった。本稿では、初期韓国政府が構築した旧条約無効論の実体を検討し、それが対日交渉という

4) 特に、ケネディおよびジョンソン政権期に、アメリカが請求権問題を中心に韓日両国に対して政治的決着を促した経緯については、李鍾元（2009a, 2009b, 2010年）が詳しい。

プリズムを通してどのように適用あるいは変容したのかを総合的に解明しようとする。

第三に、概ね従来の研究では、いわゆる「過去清算」と「戦後処理」という概念を明確に区別しない、論理的欠落を露呈しているようである。周知のように、韓国の主張する「過去清算」とは、文字通り「植民地支配に対する日本の責任と被害補償」を指す。しかし、「戦後」韓日関係は事実上日米の戦争であつた太平洋戦争の戦後処理、特にそれを規定した1951年サンフランシスコ対日講和条約の文脈の中で展開され、そこには植民地支配に対する清算の論理が介在する余地がなかった。しかし、「過去清算」の論理を抑えた、そのような国際政治的な制約要素を過度に強調する場合、ややもすると戦後韓日関係に過去清算の論理が薄められたことを外生的要因のみに還元する矛盾に陥りやすい。本稿が初期韓国政府の旧条約無効論と日本植民地支配に対する認識に注目するのは、韓国における「過去清算」とは国際政治的な問題である以前に、民族史的課題であつたと考えるからである。

II. 旧条約無効論の起源と展開

1. 「ともかく無効」論

併合条約無効論が国際舞台に初めて登場したのは1952年2月に始まった第1回韓日会談の席上であつた。同年2月16日の本会議第2回会合で日本側は「友好条約」(Treaty of Amity)の草案を提示したが、そこには過去歴史への言及は全くなかつた。むしろ同草案の前文には、韓日間に解決すべき問題の範囲について『両国間の新関係発生に由来する様々な懸案』と記述し、韓日関係の属性を過去の特殊な関係から生じたものではなく、日本帝国の解体と韓国の「分離」に伴う新たな関係の設定の問題として限定した(『第1回韓日会談本会議議事録』, 1122)。これに対して韓国側は直ちに反論を提起した。この問題を具体的に議論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基本関係委員会の第2回会合(2月27日)で韓国側の兪鎮午代表は、『この問題について根本的に討議するとなれば複雑な問題であるが、韓国政府としては過去両国間にあつた各種の懸案特に、1910年より36間にあつた色々な問題を一掃して実質的には両国の平和条約となるものを結びたいと云う気持ち』であると述べつつ、条約の性格と名称に不満を吐露した(『第二回基本関係委員会会議録』, 16)。しかし、戦争関係ではなく、宗主国-植民地の関係であつた日本と韓国とが「平和条約」を締結するということはまさに「気持ち」の問題であり、実践を念頭に置いた発想ではなかつた。その代案として、韓国側が3月5日の第4回委員会で提出したのが「基本関係」(Basic Treaty)条約草案である。同条約案の3条は、次のようになっていた。

『大韓民国と日本国は、1910年8月22日以前に旧大韓帝国と日本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が無効(null and void)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第1回韓日会談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597) 5)

5) 以下、引用する韓国および日本政府の外交文書における下線は筆者が強調するために引いたものである。また、外交文書名後に書かれた数字は、マイクロフィルムのフレーム番号を指す。一方、「null and void」の起源について太田は、イタリアのアルバニアの支配に関する規定を置いたイタリア講和条約第31条に同じ表現があることに着目し、韓国側がこの条項を参考にした可能性を指摘している(太田修 2011年, 37-38)。実際、当時草案作成に関与した金東祚は『(外務部) 政務局の金永周事務官などが中心になって各国における同様の先例を検討させた後』成案したと回顧した(金東祚 1986年, 41)。

上記の3条は、「無効」という言葉が初めて登場したという点で、1965年の基本関係条約第2条の原型であると言えよう。しかし、本稿が注目したいことはむしろこの条項に対する韓国側の法的認識である。同年3月12日に開かれた第5次基本関係委員会で日本側の大野辰巳外務省参事官は韓国側条約案の3条に言及された「無効」が最初から無効であるか、それともいったん成立したがその後失効したのかと聞いた。これに対して兪鎮午は「重大な質問」であると述べながら次のように答えた。

『一九一〇年以前の条約は意思に反し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ので遡って無効としなければならぬ。しかしこの法律論を貫くときには、実際には複雑な問題が起るので、法理論はさて置き、兎に角無効としたいというのである。韓国側では、併合条約は最初から無効とし、日本のポツダム宣言受諾により失効したと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が、この規定では右韓国側の主張をあからさまに云うのを避け、またポツダム宣言受諾の時より失効した説も避け、漠然と兎も角無効を確認したいのである。』（『第5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15-16）

上記の回答を見る限り、兪鎮午は、旧条約無効の遡及適用を主張しながらも、無効の根拠や時点に対する立場表明を留保した。このような「ともかく無効」論に対して日本側は、『いつから無効であるのかなどの問題を避けたので、非常に漠然とした政治的なもの』、『これらの条文は双方に過去を思い出させ少なくとも日本側には好い印象を与えない』と指摘しつつ、『平地に波乱を起こすことは避けた方がどうか』と同条項の削除を要求した（『第五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17-18）。これを受けて兪鎮午は『波紋を起こすものとは思わない。むしろ過去の波乱を収める規定である』と反論した後、次のように付け加えた。

『当方は、1910年以前の条約は国民的に、当時に遡って無効であるという強い信念、国民感情があるが、それをこの席上で私が強く主張すればこの会談が纏らなくなる。日本側の主張もあろうし、また当時に遡って無効とすれば種々複雑な問題が生ずる。その点を避ければこの規程によって韓国の国民感情も収めうるし、日本側にとっても別に失うものは何もないので刺激することにならないそうだ。』（『第五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20-21）

要するに、韓国側の旧条約無効確認の要求は、国民感情と日本側の立場さえ考慮した政治的立論の性格が強かった。従来通説のように、朴正熙政権が「屈辱外交」を展開した結果、併合条約の無効が曖昧になったというよりも、李承晩政権期における初期韓日交渉から韓国政府はこの問題に対して政治的折衝を模索したのである。しかしこの点について、兪鎮午とともに同委員会の代表としてこの問題に深く介入した金東祚外務部政務局長は、旧条約無効の確認要求が李承晩大統領の「強い指示」によるものであると述べつつ⁶⁾、次のように回顧した。

『我々が韓日合併条約の無効確認を基本条約にあえて明文化しようとするのは、実利からではなく、それがまさに国民的自尊心を凝縮しているからである。たとえ日本帝国主義によって「合併」という民族的屈辱を経験したものの、現在、両国関係を新たに設定するところにあ

6) ただし、金溶植は駐日韓国代表部が旧条約無効確認条項の挿入を提案したと回顧した（金溶植 1987, 120）。

たって、文書上なりともそのような恥辱の歴史を洗って捨てようという意志を表したものであった。』(金東祚 1986, 41)

韓国側が法理解釈を極力回避しながらも「ともかく無効」の確認を要求した背景にはもちろん、民族感情に基づいて併合条約と植民地支配の不当性を何らかの形でも条約に明記しようとした強い意志があった。しかし、韓国側が想定した旧条約無効の範囲は、国民的自尊心を考慮して「文書上なりとも」それを確認すべきであるという意味であり、その違法性を問い詰めることで併合条約によって生じた植民地支配に対する責任追及と被害補償要求まで念頭に置いたものではなかった。金東祚は同じ回顧録で、『我側は過去の補償を求める立場であったが、日本側は過去を問わないと言う姿勢であった』と韓国側が対日請求権を念頭に置いて旧条約無効確認を求めたと述べたが(金東祚 1986, 40)、日本政府が公開した上記の基本関係委員会の議事録を見る限り、韓国側が旧条約無効の法的根拠と植民地支配との因果関係を明らかにしようと努力した痕跡は見当たらない⁷⁾。韓国側はこの問題の議論を「最初から」回避しながら、むしろ「曖昧性」を残すことを目標に、日本側との政治的妥協を試みたと思われる。

2. 「字句論争」に帰結した無効論

1952年3月22日に開かれた第6次基本関係委員会で日本側は韓国側の「ともかく無効」の主張を「十分に反映し、さらに研究して用意した試案」であると強調しながら、韓国側草案の第3条に該当する内容を前文第3項に移した修正案を提示した。『日本国と旧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関係を規制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確認する』と記された日本側の修正案に対して兪鎮午は、『1910年以前の条約はやはり無効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簡単であるだけでなく明確だ』と主張しつつ、「ともかく無効」論を繰り返した。これに対して日本側は『(無効という言葉だけでは)失効したかどうか、不成立したのか、非常に不明確である。不明な方がいいと言うようだが、これは将来に混乱を呼び起こす不明確さである』と反論した(『第六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5-16, 22-23, 30)。これに対して兪鎮午は3月26日に開かれた第7次基本関係委員会で、「ともかく無効」を主張する理由について次のように説明した。

『本国政府から「無効」という字句を是非入れるように訓令して来ているが、私は(併合条約等が)、始めから無効ということ⁸⁾を主張すれば、条約が妥結に至らないであろうと考えて、議論になる点、例えば「いつから」というようなことも一切伏せて、ともかく無効という表現したのである。この表現ならば、日本側は日本側として一応の説明がつき、韓国側も別の内容になるかも知れないが、説明がつく、であるから、韓国側の案のような表現にしたい。字句は別でもよいが、どうしても無効という意味を表したい。』(『第七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3-14)

7) 興味深いことに、日本政府が機密解除した外交文書には日本側が作成した基本関係委員会の議事録が含まれているが、韓国政府が公開した外交文書には、韓国側が作成した議事録が抜けている。この会議に関わる韓国側の資料は、韓日両国が共同で作成した英文の会議要録だけである。韓国外交部は関連外交文書を例外なく公開したと述べたが、この議事録のみが抜けていることは、これが初期韓国政府の旧条約無効と植民地清算に対する立場を赤裸々に表しているため、非公開した可能性を示唆する。

韓国側が最初から旧条約無効の法的効力の問題を「一切伏せて」おくという政治的意志を表明しただけに、その後日本側の関心は「韓国側の気持ちを汲んで」、「無効」という用語を適当に受け入れながら実質的には無効の効果を無力化するための「字句調整」に移った。まず、日本側の大野代表は『無効という字句を使用すれば、いつから無効なのかをはっきりさせなければならぬので、「もはや」という字句をつけたい』と述べ、1965年基本関係条約における「もはや無効」の原型たる妥協案を提示した。これに対して韓国側が「効果を有しない」、「have been invalid」などの修正案を提示すると、日本側はまた「効果を失った」、「現に効力を有しない」などの見直し案を出した。兪鎮午は『韓国語の文句を日本語と少し違えておく方法もあるが、それは胡麻化しであるから、やりたくない』と話したが（『第七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6-31）、韓日双方はすでに旧条約無効の法的効果をそれぞれのご都合に合わせて解釈するための政治的駆け引きを展開していた。

結局のところ、1951年4月2日に開かれた第8次基本関係委員会で日本側が最終案として（1）「既に効力を失った」、（2）「現に効果を有しない」、（3）「効力を喪失している」など3つの文句を提示すると、兪鎮午は日本側の第2案を指摘し、『「現に」の字はなくとも、現在形で述べてあれば、「現在効力を有しない」意味になる』と主張し、「現に」という字句の削除を要求した。これに日本側が同意することで、いわゆる「基本条約」の前文に収録される旧条約無効に関する言及は、『日本国と旧大韓帝国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関係において効力を有しない』というフレーズで決着をみた（『第七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2）。韓国側が当初目標にした「無効」の字句が「効果を有しない」に緩和されただけでなく、旧条約が効果を有しない範囲が「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関係において」であるため、旧条約が「最初から」無効であるという意味で解釈される余地すら完全に消えた⁸⁾。

ただし、基本関係委員会で合意された上記の「基本条約」案は、日本側が在韓日本人私有財産に対するいわゆる「逆請求権」を提起して請求権委員会が決裂し、結局第1次韓日会談そのものが決裂されることで、事実上廃棄された。その後旧条約無効をめぐる韓日間の論争は、長い間冬眠状態に入ることになる。韓日ともに必然的に植民地支配に対する責任と被害補償という「アキレス腱」に触り、会談自体を破綻させる可能性のあるこの問題への言及を極力回避したからである。

この問題が韓日両国の懸案として再台頭したのは、金鍾泌-大平合意によって請求権問題が政治的決着をみることで、韓日会談が最終段階に入った1964年12月以降の第7次会談であった。しかし、第7次会談の基本関係委員会で議論された旧条約無効をめぐる議論は、事実上、初期韓日会談の再版に過ぎなかった。張博珍が明らかにしたように、韓国側はこの会談でも旧条約無効とその効果に関する法理論を展開するどころか、「ともかく無効」論に立脚した政治的妥協を試みたが、その終着点が他ならぬ基本関係条約第2条における「もはや無効」であった（張博珍 2008a, 18-34）⁹⁾。結果的に「無効」という字句が条約に蘇ったという意味では、

8) この点について、兪鎮午は「無効論者を満足させるために」条約の名称を「友好条約」とすることを受け入れる代わりに、「効力を有しない」を「無効である」に置き換えることを提案したが、日本側の反対によって収容されなかった（『第七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4-15）。

9) 「もはや無効」の挿入経緯について後宮虎郎日本外務省アジア局長は第7次会談後に『alreadyという言葉>null and voidの前に挿入することを軽く示唆したところ、先方はこれは考慮の余地がありとして座りなおし』たと述べつつ、『まさか韓国側がこの句にいついてくるとは思わなかったが、交渉はこのままでは決裂という事態となったので、韓国側もこの案に同意してき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と証言した（『日韓外交正常化交渉の記

第1次韓日会談での合意事項でもあった「効力を有しない」よりは明確な内容であったと評価されうるかも知れないが、前述のように、日本側は第1次会談でも「もはや無効」案を提示していた。

そうであるならば、韓国政府はなぜ対日交渉で旧条約について漠然と「ともかく無効」という主張だけを繰り返したのであろうか。以下では、韓国側の外交資料を分析することで、初期韓国政府の旧条約と日本植民地支配に対する国際法的な認識を検討する。

Ⅲ. 初期韓国政府の旧条約無効に対する国際法的見解

周知のように、韓国は政府樹立後、対日講和条約に署名国として参加するために準備してきた。韓国政府が公開した外交資料のうち、講和条約に対応するための国際法的検討の一環として作られた唯一の資料が他ならぬ1950年10月に駐日韓国代表部講和調査委員会が作成した『対日講和条約に関する基本態度とその法的根拠』(以下、『基本態度』と略記)である¹⁰⁾。

『基本態度』は、朝鮮戦争の最中に東京の駐日代表部政務課が作成して臨時首都釜山の外務部に報告する形式をとっているという点で、当時政府の立場を完全に反映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¹¹⁾しかし、韓国の外交資料の中で唯一に旧条約に対する法的立場を開陳している点、韓国政府が公開した韓日会談文書群の筆頭を占めている点、駐日代表部も事実上本国政府の立場を代弁するという点などを考慮すれば、この小冊子は初期韓国政府の旧条約に対する法的認識を把握するに不可欠のデータであると評価できよう。『基本態度』は、強制的に締結された条約としての韓日併合条約の無効論を次のように展開した。

1. 「強制による条約」

『基本態度』は、条約とは国家間の自由意思の合致を前提にするだけに、「強制による条約」の場合、その法的効力が議論になると主張した。続いて、強制が加えられた対象を国家代表者と国家自体に区分した後、「通説」によると『条約締結の当事者である自然人に対して強制あるいは強迫が加えられた末に締結された条約は無効である』と断言した。つまり、国家代表者に対する強迫を条約無効化の法的根拠として認めていた当時国際法の断面をきちんと指摘していた。¹²⁾

ただし、『基本態度』は条約締結国全体への強制や強迫によって締結された条約の無効効果を判断するに際しては、講和条約と併合条約とを区分して説明した。『基本態度』はまず、このようなタイプの代表的な例である講和条約の締結過程で敗戦国に加わる強制力はその違法性が認められるが、国家の秩序もしくは平和の維持という違法性阻却事由が存在するので、有効だ

録総説11』, 143-144)。

10) ただし、手書きの形式で記された『基本態度』は印刷状態が非常に悪い。以下、判読不可能な字句は○をもって表示する。一方、兪鎮午によると、自分の提案により1951年4月16日の張勉総理、趙炳玉内務長官、金俊淵司法長官、崔斗善東亜日報社長、洪璉基、朴在瀾高麗大学教授などから構成された「対日講和会議準備委員会」が設けられ、対日講和条約第二次試案の検討作業を行ったとされるが、それに関する外交資料は確認されていない(兪鎮午 1993, 21-22)。

11) 具体的に、『基本態度』は「はじめに」において『駐日代表部の政務課全職員と在日同胞社会から宋○ハン、○○など権威ある4人』からなる「対日講和に対処する準備調査委員会」(仮称)が『昼夜兼行で真剣な研究調査を進め』た結果であると同資料の出所を明らかにしている(『基本態度』, 15)。

12) ただし、国家代表者に対する強制が条約無効の原因になりうるかについては相反した国際法的理解が存在している(笹川 2004, 255-256;李根寛 2003)。

という解釈を披露した（『基本態度』， 21）。この解釈は、自由意思の合致としての条約の大原則を守りながらも、その行為自体が違法とされる戦争を人道的に終結させるために講和条約えお締結する際に国家に対して加えられる強制は現実的に認める必要があるという当時国際法学の多数見解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¹³⁾

しかし『基本態度』は、併合条約の場合、戦争の結果である講和条約とは根本的に異なっているという論旨を展開した。すなわち、講和条約の締結過程で加えられる国家的強制力は賠償など戦後処理のために避けられないが、併合条約の場合、『一国の消滅をもたらす武力占領の継続を意味するので、その条約に加えられる強制あるいは強迫は双務的ではなく、絶対的である』がゆえに無効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特に、併合条約は、『戦争を前提とせず、漸進的に一国の機能を、特に外交権と司法・警察権を武力で剥奪した後、国家全体を武力で占領し、国家機関を脅迫』することで、締結される条約であるという点で、違法性阻却事由がないと断言した。

要するに、『基本態度』は『強制的に締結された条約の効力は、条約締結の当事者に強制を加えて締結する際にはもちろん無効であるが、戦争のように双方による強制の延長ではなく、つまり、原因のない強制は、それが国家全体が加担することで締結された場合であっても条約は無効であると論定する』と併合条約の無効論を主張した（『基本態度』， 21-22）。これは、国家に対する強制の場合、武力と脅迫を行使した当事国に対して「不法行為に対する救済」や「権利保障」の証明を求めることを重視した、当時の国際法的判断を適切に理解したものと評価されうる¹⁴⁾。

このような強制による条約の国際法的解釈の延長線上で、『基本態度』は、一国の外交権と行政権を停止させ、事実上国家そのものを消滅させることを目的にして、大韓帝国の皇帝と大臣を「直接脅迫」して締結させた1905年11月の韓日協約と、この条約に準拠した条約、そして1910年の併合条約は、その強制性と一方的な暴力性によって自ずと『条約の性格を喪失した』と結論付けた（『基本態度』， 22-23）。『基本態度』は、その具体的な学說的根拠として、韓日併合の強制性を認めた法学者有賀長雄とフランシス・レイ（Francis Rey）の論文¹⁵⁾などを引用した。

『基本態度』はまた、1943年10月にアメリカと英国が1938年のドイツによるオーストリアの併合を無効と宣言した点、1943年のカイロ宣言における朝鮮への言及などを取り上げ、『合邦条約無効論は法理問題だけで終わらず、現実においてその無効の実践が今次大戦後、オーストリア、韓国などで実現した』と主張した（『基本態度』， 25）。このように駐日代表部は、ある国際法の問題に適用されるべき法律は、その問題が発生した当時に存在した国際法を根拠に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時際法の原則」¹⁶⁾を踏まえつつ、同時に現実政治のダイナミズムをまで考慮して旧条約の法的矛盾と無効論の論拠とを体系的に展開したのである。

13) この点に対しては 金昌祿 (2010, 201-202)、白忠鉉 (1996年, 76-77)、坂本 (2004, 253) を参照すること。

14) この点に対しては笹川 (2001, 144)、金昌祿 (2010, 202) を参照すること。

15) 具体的に『基本態度』は、『日本外交情報』第9巻5号に掲載された有賀の「日韓協約と強制の問題」と、フランスの国際法学者レイの論文「大韓帝国の国際法的地位」（1906年2月）を取り上げた。一方、旧条約に対する近代慣習法的解釈に関しては、戸塚悦郎 (2010) と金昌祿 (2010) が詳しい。

16) 時際法的な観点から併合条約の手続きおよび形式の問題について論じた研究は、朴培根 (2009) を参照すること。

2. 旧条約無効の法的効力と「無權代理論」

しかし、本稿がより注目したい点は、『基本態度』が提示した併合条約無効の効力範囲に関する法的判断である。『基本態度』は無効論の当然の帰結として、『韓日合邦条約によって生じたその後のすべての事態は、1910年8月22日に遡及して無効である』と結論を下す一方、『しかし、その無効の効力発生において少し国際慣例上「黙認あるいは追認」が必要である』と制限を加えた。17) 『基本態度』は、併合条約無効の遡及適用に「例外」を認める意思を表明しつつ、日本の植民地支配につながった併合条約の効力範囲を次のように整理した。

[表1] 『基本態度』が提示した韓日併合条約無効の効力（『基本態度』,17-18）

3. 重要事項の列挙

- a. 対人商権¹⁸⁾: 1910年8月29日から1945年8月15日までにその機能だけが停止
- b. 善意の第三者の利益: 黙認。無効と主張しない。
- c. 朝鮮総督の一般行政: 無權代理の行為であるがゆえに、原則的に無効だ。ただし、〇〇することができる。
 - イ) 純然たる行政の面
 - (1) 朝鮮銀行券: 旧韓国の事務解決と準備金の保持、および〇生活の経済行為継続で有効。
 - (2) 税金: 集団生活者の最低義務範囲内は有効。
日本の侵略戦争のための特別税は無効。
 - (3) 公債およびその他: 韓国国民の福利のための公債は有効。
その他は無効だ。
 - (4) 対日貿易: 有効である。
 - ロ) 司法の面: 一切無効だ。ただし、道義的責任違反の反社会的犯罪者に対する判決は追認する。
 - ハ) 立法の面: 制令は一切無効だ。ただし、社会秩序の維持に必要な点飲みを追認する。

以上のように、『基本態度』は旧条約の無効を遡及して適用するという大原則を掲げながらも、35年間にわたる朝鮮総督の植民地統治に対して「選択的に追認あるいは黙認」しうる部分が存在することを認めていた。まず、「善意の第三者の利益」、つまり、日本植民地支配期間中に「善意」の第3国が合法的に朝鮮から得た利益に対しては国際慣例に基づいて「無効」を主張しないと述べた¹⁹⁾。また、朝鮮総督の一般行政のうち、朝鮮銀行券の発行、「集団生活者の最低義務の範囲内」の徴税、韓国国民の福利のための公債の発行、日本との貿易は「有効」であると判断した。司法の面では、道義的責任違反など反社会的犯罪者に対する判決や、

17) 張博珍はほぼ唯一に『基本態度』を引用したが、この文書が旧条約無効と対日賠償要求の根拠を提供したという側面だけを強調しただけである、日本植民地支配に対して「黙認あるいは追認」する立場をとったという点については注目しなかった(張博珍 2008a)。本稿は、この但し書きこそ『基本態度』が提示した旧条約無効論の核心であると思う。

18) 『基本態度』によると、対人商権とは『国民としての基本的な権利義務の表現』を意味する国籍を持つことで享受しうる様々な権利を指す。

19) ただし、『基本態度』は、1909年9月4日に日本と清との間で締結された「間島に関する条約」は当然無効だという立場を取った。

社会秩序の維持に必要な立法行為なども無効の対象から除外された。このように植民地支配の「既成事実」の中で『継承的な秩序の維持を持続させた善意の管理者の行動をまで無効だとは主張しない』という立場をとった理由について、『基本態度』は次のように説明した。

『法が社会生活の秩序維持を根本目的とする限り、一定の期間、既成事実の継続が社会秩序の安全を維持するときには、むしろその結果を与えた原因の彼此如何よりも、人類社会の平和と安全という現実に重みをおくがゆえに、一般法秩序でも「時効」という規定の下で、これらの点を〇〇し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他の国家らの承認が長久期間にわたって行われなかった既成事実が結果的に国際秩序を確立したときには、人類社会全体の幸せのためにこの既成事実に対して結果的に法の効果を付与することが妥当である。韓日併合条約そのものの無効を主張すると同時に、無効の効果については、对人商権に対してはもちろん原型回復（natural restitution）であるが、その他の権利についてすべてを原状回復せよと主張せずに、無権代理行為の追認をもって〇〇別的にその効力を決定することが妥当であると思う。』（『基本態度』，18-19）

『基本態度』は旧条約無効の効力に「例外」を置いた根拠として、「時効」（legal prescription）と「無権代理」（rightless agency）という2つの法律概念を提示した。第一に、時効とは、一定の事実状態が一定期間続いてきた場合に、その事実状態が真の権利関係と合致するかどうかを問わずに、法律上その事実状態に対応する法律効果を認める制度を指す。つまり、併合条約が源泉的に無効であるがゆえに日本の植民地支配そのものも違法行為であると断定しうが、このような不法行為が「既成事実」として長期間継続され、さらにそれが国際的に容認された側面があるので、その法的効果を認めうるということである。

第二に、近代私法の所産として主として民法で通用されてきた「無権代理」概念は、代理権なしに行われる代理行為を意味するが、一般に代理権を有しない者が行った代理行為は無効であるものの、代理権の外観が存在した場合にはその無権代理行為を無効であるとは主張し得ない²⁰⁾。つまり、『基本態度』は朝鮮総督の植民地統治をこのような「無権代理」行為とみなし、原則として無効を主張しながらも『条約自体の無効と、その後の軍事占領および無権代理の権利行使の継続、言い換えれば最初に加えられた強制が続く中で国家秩序に加えられた事実上の第2次的、第3次的効果全体の無効を主張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立場を取った（『基本態度』，18）。そして、その延長線上で『総督府の行政に限っては適認する』と述べた（『基本態度』，12）。上記[表 1]の「重要事項」の総督府行政の中で「有効」または「追認」と書かれた部分が他ならぬ「適認」しうる内容である。

したがって、ここでむしろ注目すべき点は、『基本態度』が朝鮮総督の植民地統治行為のうち「適認」しなかった部分、つまり「無効」と断定した内容である。上記表の総督府の行政の中で「適認」されていない部分は、「日本の侵略戦争のための特別税」の徴収と「戦争を目的とした」公債発行などに制限された。換言すれば、『基本態度』は旧条約無効に伴う法的効果について、朝鮮総督の統治行為をおよそ「有効」なものとして追認しており、ただし、日本の侵略戦争、すなわち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中に朝鮮人が動員されるなどの被害のみに限って「無効」だという、各論を展開したわけである。これは、ややもすると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

20) 「無権代理」の具体的な法律解釈は筆者の専門分野を越えるので、本稿では『基本態度』が提示した無権代理の一般的な内容だけを問題視する。

「実質的追認」あるいは併合条約「有効論」として解釈される余地があった。

このような懸念は、『基本態度』そのものも指摘していた。駐日代表部は『基本態度』の序文にあたる「説明書」（1951年1月25日）で、併合条約をめぐる委員の間で「無効論」と「有効論」との見解の違いが存在したと振り返った後、『無効論の場合、朝鮮総督の「無権代理」という理論の下で、それを原則的に否定しながらも、社会秩序維持のために必要な総督府の行政に対しては適認するとの立論は、過去の日本帝国主義的秩序論を認めることになる、という理論的矛盾に直面したと言えよう』と指摘した（『基本態度』, 12）。

このような矛盾は、帝国主義的な国際法体系を「時際法の原則」に基づいて受け入れた上で、その枠組みの中で生成された併合条約を無効にしなから、その法的効果をまで論じようとしたことによって生じうる、理論的な限界とみることができよう。この矛盾は、先に引用したように、兪鎮午が旧条約の無効を主張しながらも、『法理論は擱置いて、ともかく無効にしたい』と法理論争を回避した理由でもあったであろう。しかし、理論的矛盾から始まった旧条約に対する曖昧な立場が生んだ実際的な波長はあまりにも大きかった。朝鮮総督の植民地統治を「無権代理」行為として理解することでその法的効力を事実上追認しただけに、韓国政府は「最初から」日本の植民地支配そのものに対する被害補償要求を事実上放棄したからである。

IV. 封印された「過去清算」：植民地被害補償に対する認識

旧条約が「最初から」無効であるならば日本の植民地支配も違法行為に属し、したがってそれに対する被害補償を要求することは当然の帰結であった。しかし、李承晩政府は表面的には「賠償」を掲げたものの、当初から植民地支配そのものの被害補償要求を放棄しており、実質的にはそれを民事上の「請求権」次元に制限していた。これは、『基本態度』が朝鮮総督の植民地統治を「無権代理」行為として捉えてその法的効果を追認したことが駐日代表部のみの解釈ではなく、初期韓国政府の政治的判断であったことを示唆する。

1. 政府樹立直後の対日「賠償」要求への準備

韓国が政府樹立直後に対日「賠償」要求を念頭に置いて準備したことが1949年9月に完成した『対日賠償要求調書』（以下、『賠償調書』に略記）である²¹⁾。48年秋から企画処長の李順鐸とともに法制処長としてこの「賠償」要求の準備作業に関与した兪鎮午は、『わが民族は35年間にわたり日本の強占（強制占領）によって甚大な被害を受けたので、政府が樹立された以上、日本に対して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当たり前だと思った』と回顧した上で、『このとき私達が思っていた賠償はもちろん、国際法上の「戦争賠償」だった』と強調した（兪鎮午 1966, 456；同 1993, 8）。つまり、兪鎮午の表現を額面通りに解釈すれば、韓国政府は日本による違法な植民地支配を一種の戦争行為とみなし、それに対する賠償を要求する構えであった。当時の国際法における「賠償」（reparations）とは、敗戦国が戦勝国に対して戦争によつて生じた被害と損害、損失を補償することを意味する（太田 2008, 29-30）。実際、『賠償調書』はその序文「対日賠償要求の根拠と要綱」で、韓国が対日「賠償」を要求する根拠について次の

21) 以下本稿で引用する『賠償調書』は、1954年8月15日に再編集された『対日賠償要求調書』である。この『賠償調書』は序文に、『この調書は、1949年9月1日現在調査されたもの』という注釈をつけている。一方、『賠償調書』に添付された膨大な分量の証拠資料は、朝鮮戦争中に焼失されたという（兪鎮午 1993, 16）。

ように述べている。

『1910年から1945年8月15日までの日本の韓国支配は、韓国国民の自由意思に反した、日本単独の強制的な行為であり、正義と公平、互惠の原則に基づかずに暴力と貪欲の支配であった結果、韓国と韓国人は日本によっていかなる国家よりも最大の犠牲を受けた被害者であるがゆえに、「韓国人民の奴隷状態に留意して韓国を自主独立させる決意」を表明したカイロ宣言や、またこの「宣言の条項を履行すること」を再確認したポツダム宣言をもって、韓国に対する日本人の支配の非人道的性と非合法性が全世界に宣布されたことが事実である。韓国の対日賠償の正当性は再び疑う余地がない...ところである。』（『賠償調書』, 1）

要するに、『賠償調書』の序文に提示された賠償要求の対象は、「1910年から1945年8月5日までの日本の韓国支配」によって発生した「韓国と韓国人」の犠牲で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日本植民地支配に対する包括的な意味での賠償は各論に入ってからでは姿を消し、事実上植民地末期に展開された日本の戦争行為、つまり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による韓国と韓国人の被害補償要求に縮小される。『賠償調書』は、上記のような対日賠償要求の「正当性」を主張した直後に、『しかし、我が大韓民国の対日賠償要求の基本精神は、日本を懲罰するための報復の賦課ではなく、犠牲と恢復(ママ)のための公平な権利の理性的要求にある』と言いながら、「賠償」要求の範囲を制限する意志を披瀝した。それでは、『賠償調書』が「公正な権利の合理的要求」であると強調しながら提示した対日「賠償」要求の内容を詳しくみよう。

[表2] 対日賠償要求調書一覧表²²⁾

第1部	<現物返還> ① 地金 249トン633キロ198.61グラム、② 地銀 89トン112キロ205.12グラム、③ 書籍、④ 美術品および骨董品、⑤ 船舶、⑥ 地図原版、⑦ その他
第2部	<確定債権> 17,429,362,305円および4,000,000万上海ドル ① 日本系通貨1,514,134,098円、② 日本系証券7,435,103,942円 ③上海弗貨 4,000,000ドル、④ 保険金、恩給、その他の未収金 6,436,617,521円、⑤ 郵政関係特別計定 2,043,506,744円
第3部	<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に起因する人的、物的被害> 12,122,732,561円 ① 人的被害 565,125,241円、② 物的被害 11,326,022,105円 ② 8・15戦後日本官吏の不正行為によって生じた損害 231,585,215円
第4部	<日本政府の低価格収奪による損害> ① 強制供出による損害 1,848,880,437円
要求総額	(第1部の現物返還を除いて) 31,400,975,303円、4,000,000上海ドル

まず、第1部「現物返還」は返還 (restitution) という用語が示唆するように、日本が借りたり、違法に占めていたものを返してくれという意味である。また、第2部「確定債権」は、『賠償調書』の序文でも説明されたように、『これは日本の敗戦をきっかけにして生じたある

22) 表は、『賠償調書』519-523頁に記載された内容を筆者が要約したものである。

種の要求条件ではなく、戦争の勝負とは何ら関係のない、単純な既成債権債務関係』であり、『したがって、賠償問題とは本質的には関係のないもの』である（『賠償調書』， 2）。つまり、「確定債権」は償還が約定されている財産上の権利の権利所有者（rightful owner）が要求する民事上の請求権を意味する。要するに、『賠償調書』の第1、第2部は、植民地支配そのものに対する被害補償の意味を全く含んでいない。

第3部「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に起因する人的、物的被害」と第4部「日本政府の低価格収奪による損害」もまた日本の植民地支配そのものとは直接関係のないものである。例えば、第3部で言う「人的被害」とは、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に動員され犠牲になった韓国人死亡者の葬祭料と遺族慰謝料、傷痍者と一般労働者に対する慰謝料、負傷者傷痍手当、退職手当、各種保管金、未収賃金、徴用期間延長手当などを意味する。なお、「物的被害」とは、日本軍の戦争遂行のために強制的に収容されたり、その過程で破損した建物（主に学校の校舎）や土地、森林の被害、軍事目的のために取り立てられた船舶などの被害、軍需品生産のために発された企業整備令による被害、防空壕など不要な軍事施設の設置による被害などを指す（『賠償調書』， 330-506）。第4部の「低価額収奪」は、日本軍が上記の戦争を遂行する過程で軍需用として強制徴発した肉牛、牛皮、乾草、綿、林産物、鑰器などの被害を意味する。すなわち、第3、4部は1937年以降日本が中国とアメリカとの戦争を遂行する過程で韓国に強制的に課した様々な動員や収奪に対する被害補償を骨子としている。結局のところ、ほとんどの既存研究が韓国政府の過去清算への意志の表現として評価してきた『賠償調書』はむしろ、1910年から45年までの日本の植民地支配そのものに対する被害補償を全く反映していなかった。本稿が冒頭で指摘したように、「過去の清算」と日本の「戦後処理」とは本質的に異なる概念であるからである。

これと関連し、『賠償調書』は『我々は乙巳条約の無効性を国際法的に弁明することもでき、またカイロ、ポツダムの両宣言の真意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韓国に対する日本の過去36年間の支配を非合法的な統治として烙印づけるとともに、これまでに被害を受けた膨大かつ無限の損失に対して賠償を要求することもできる』述べながらも、『しかし、我々の対日賠償要求の基本精神に照らして、ここに全然不問に付すところである』と結論づけた（『賠償調書』， 3）。

植民地支配に対する膨大な「賠償」を要求することもできるが、それを不問に付するという「寛容」はどこから出てきたのであろうか。もちろん、ほとんどの既存研究が指摘したように、占領初期の厳格な賠償から日本の戦後復興を優先する寛大な賠償に劇的な逆転を成し遂げたアメリカの対日政策の影響を受けたであろう。実際に、連合国の最高決定機関であった極東委員会は1947年8月、連合国のみが日本から賠償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同委員会の参加国でもない韓国は日本が残した財産の獲得に満足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決めていた²³⁾。しかし、『賠償調書』が作成され始めた時点でもあった1948年9月30日に李承晩大統領が施政方針演説で、『連合国の一員として対日講和会議に参加することを連合国に要請することで、大韓民国が対日賠償を要求する正当な権利を保有することにする』と述べるなど、韓国政府は決して「賠償」要求への意志を曲げなかった（『朝鮮日報』， 1948年10月1日）。さらに、韓国政府が『賠償調書』を作成した1948年秋から49年9月までには、その後韓日間の請求権交渉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対日講和条約の行方がまだ不透明な時期であった²⁴⁾。

23) この極東委員会の決定に対して、アメリカは自国が受ける賠償の一部（すなわち、在韓日本人の財産）を韓国に充当する意向を表明した。これは、アメリカが韓国の対日賠償取得権を認め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Sung-Hwa Cheong 1991, 128）。

したがって、『賠償調書』が実質的に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補償要求を放棄した理由を、アメリカの対日政策変化など外部的な要因のみに還元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むしろ、上記のように『賠償調書』が「賠償」の範囲を大幅に縮小した「基本精神」、つまり、『日本を懲罰するための報復の賦課ではなく、犠牲と回復のための公平な権利の理性的要求』が生まれた内在的動因への関心が同時に要される。『基本態度』が日本の植民地支配を「無権代理」行為として認識したように、韓国政府自らが「正当な権利」としての植民地被害に対する補償の要求を「理性的」に諦めたからである。

2. 「賠償」から民事請求に

しかし、当初から植民地被害に対する補償を排除した韓国政府の「理性的要求」は、対日講和条約発効（1952年4月28日）直前の52年2月に始まった第1回韓日会談の「請求権²⁵⁾」交渉でさらに「理性的に」縮小されることになる。それまで表面的には主張されてきた「賠償」が実質的に「請求権」に縮められただけでなく、その範囲も日本の「戦後処理」のカテゴリーの中に完全に編入されたからである。これは、韓国側が同年2月20日開かれた第1次「財産および請求権問題小委員会」で日本側に提示した、いわゆる「対日8項目要求」（正式名称は「韓国の対日請求要綱案」）を通じ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当時韓国側代表の林松本は「対日8項目要求」の骨子を次のように説明した。

『大韓民国は、36年間の日本の占領（occupation）を通じて生ずる不快な過去の記憶によって促されるすべての請求権の充足を日本に対して要求する意図はなく、ただし、韓国に合法的に属し、そして将来韓国の生存（existence）のために充足されるべき財産に対してのみ、その請求権を要求するものである』（『第1回韓日会談請求権小委員会議事録』，288）。

要するに、韓国政府はその後1965年まで展開される対日請求権交渉の初頭から日本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補償を放棄する意思を明らかに表明したのである。むしろ韓国政府は請求権の範囲を、「韓国に合法的に属する」もの、「将来韓国の生存のために充足されるべき財産」に限定することで、日本の不法な植民地支配の法的効果を実質的に「黙認」したのである。「対日8項目要求」の中身をより詳細にみよう。

[表3] 対日8項目要求（『第2次韓日会談請求権委員会議事録』，1119-1120）

第1項：韓国から持ち出された古書籍、美術品、骨董品、地図原版および地金、地銀を返還すること。
第2項：1945年8月9日現在、日本政府の対朝鮮総督府債務を返済すること。

24) 対日講和条約草案は、1947年3月から数回作成されたが、日本に対する懲罰的措置が必要であるという基調が維持された。ただし、この時期マッカーサー日本占領軍最高司令官などは、日本の戦後回復を強調する見解をワシントンに絶えず進言した。一方、ダレスが国務長官政策顧問に就任した後初めて、対日講和に関する覚書を米国務省に提出したことは1949年6月6日であり、対日講和7原則が提示されたのは50年9月22日であった（塚本 1992年，96； 兪鎮午 1993，38-39）。

25) 太田によると、請求権の概念は、韓日交渉の準備作業をしていた兪鎮午がアメリカから寄せられた対日講和条約草案の第4条に言及されたClaimを「請求権」と翻訳して韓国に初めて紹介したという（太田 2008，31）。

第3項：1945年8月9日以降、韓国から振替や送金された金員を返すこと。
第4項：1945年8月9日現在、韓国に本社または主事務所がある法人の在日財産を返還すること。
第5項：韓国法人または韓国自然人の日本国または日本国民に対する日本国債・公債、日本銀行券、被徴用韓人の未収金、その他請求権を返済すること。
第6項：韓国法人または韓国自然人が所有する日本法人の株式またはその他の証券を法的に認めること。
第7項：前記の諸財産または請求権から生じた諸果実を返還すること。
第8項：前記の返還および決済は、契約成立後ただちに開始し、遅くとも6ヶ月以内に終結すること。

韓国側が説明した請求の根拠によれば、第1項は韓国の意思に反して持ち出されたものなので「返還」を求めるものであり、第2項は朝鮮総督府の権限が米軍政を経て大韓民国に承継れたので、総督府が日本政府に対して持っていた債権（郵便貯金、年金など）を韓国政府が請求するということを指す。また、第3-7項は、基本的に韓国内の日本人財産の没収を命じた米軍政令第33号と、没収された財産の韓国移転を明示した1948年の「韓米協定」など、「戦後」アメリカが定めたルールに準じて日本国内に残っていた韓国の財産とその利益の返還を要求したものであった（『第2次韓日会談請求権委員会議事録』，293-306）。

「対日8項目要求」を政府樹立初期に作成された『賠償調書』と比較すれば、その実像がさらに明らかになる。『賠償調書』の第1部「現物償還」はほぼそのまま「対日8項目要求」の第1項目に、なお、第2部「確定債権」は8項目の第2-7項に吸収されていたことが分かる。一方、戦時被害に該当する『賠償調書』の第3、4部は「対日8項目要求」には全然反映されなかった。張博珍が的確に指摘したように、『賠償調書』第3、4部にあった請求内容が実際の対日交渉では除外されたのは、併合条約の不法性を前提としない制約条件に起因すると理解する（張博珍 2008b, 215）。旧条約無効の法的効力の曖昧な認識は対日交渉で植民地支配の被害補償の要求を事実上放棄することに帰結したのである。

V. 旧条約無効論と大韓民国およびその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

旧条約無効に対する法的認識は、日本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補償要求だけではなく、大韓民国の国家と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理解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た。周知のように、1948年7月に制定された韓国の制憲憲法がその前文で『3・1運動を契機にして大韓民国を建設し世界に宣言した偉大な独立精神を継承して』と明記してから韓国政府は、大韓民国が3・1運動とその結果としての臨時政府を政府にして1919年に樹立された大韓民国と継続性（continuity）を持つとの見解を披瀝してきた。1987年10月に改正された現行憲法では明示的に、大韓民国が「3・1運動で建立された大韓民国臨時政府の法統」を継承していることを規定している。これは、3・1運動によって建立された大韓民国と現在の大韓民国とが国家として同一である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ものである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朴培根 2004, 63）。そうであるならば、1910年8月29日の併合条約から上海臨時政府の大韓民国が生まれた1919年4月13日までの期間は、国家の法統が断絶されたのであろうか。また、その期間中に存在していた国民は何だったのか。韓国の法統をめぐる議論はさまざまに展開されているが、²⁶⁾以下では、旧条約無効論と

26) 大韓民国と大韓帝国との国家的同一性、これに深く関わる日本の植民地支配期間中の大韓帝国の消滅如何をめ

関連づけて、初期韓日会談で表出された韓国政府の大韓民国とその国民に対する認識について検討する。

1. 大韓帝国法統説

上記のように、韓国側は第1次韓日会談の基本関係委員会で、併合条約について「ともかく無効」という、法律論的な説明を回避する姿勢をとった。しかし他方で韓国側は、何らかの方法であっても旧条約の「無効」を日本側に納得させるためには、旧条約締結の一方であった大韓帝国と現在の大韓民国との法的関係に関する見解を表明せざるを得なかった。

1952年3月12日に開かれた第5次基本関係委員会で日本側の大野外務省参事官は、韓国側の「ともかく無効」の主張に対して『旧大韓帝国が国際法上の主体として国家として消滅している以上、それは大韓民国とは別個のもので、その間にcontinuityはない。すでに消滅して去っている条約の無効を今更問題とすることは凡そ意味がない』と韓国側を追い詰めた。これに対して兪鎮午は、『(旧条約が)事実上なくなっているのに、この第3条(韓国側が提示した基本条約案の旧条約無効条項)によってなるのではないとの点は解るが、それ(旧条約無効)を確認するのがよい』と述べつつ、韓国が大韓帝国を『継承したこととなるが、これも伏せてあって触れていない』と言った(『第五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7-18)。

韓国側が憲法にも触れていない大韓帝国との法的同一性を実質的には是認せざるを得なかった理由は簡単である。つまり、新生大韓民国が旧大韓帝国と日本とが締結した条約の無効を主張するためには、国家としての法統性を強調せざるを得なかったからである。言い換えれば、旧条約の「ともかく無効」論の論理構造の下では、大韓帝国は日本の不法植民地支配によって主権が制限されているだけであり、その主権は上海臨時政府の大韓民国によって受け継がれて、また現在の大韓民国につながったという主張だけが可能であった。これはもちろん、日本の植民地支配が違法であったという認識に基づくもので、韓国民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も深く関わる問題であった。ただし、兪鎮午が継承論を認めながらも「これも伏せてあって」と言ったのは、35年間に及ぶ日本の実効支配に伴う法的効果は無視できないと判断し、同時に自分が深く関与した制憲憲法との不一致などをまで勘案したからであろう。

このような大韓帝国継承論は先に挙げた『基本態度』からも確認できる。『基本態度』が併合条約について強圧によって締結されたため無効であると断定したのは、大韓帝国が消滅することなく存続したことを前提にした発想であったからである。さらに、『基本態度』は日本の植民地統治を不法な軍事占領を通じた「無権代理」行為とみなすことで、大韓帝国と大韓民国との国家としての同一性と継続性を事実上認めた。「無権代理」行為としての違法な軍事占領による法的効果は帰属しないからである²⁷⁾。結局、韓国政府は日本に対して併合条約の「ともかく無効」を確認する過程で、大韓帝国の法統を受け継いだという、憲法とは異なる解釈を展開する矛盾を演出したのである。

2. 大韓民国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在日朝鮮人の国籍問題

ぐる学説の対立と論点に関しては、朴培根(2004, 59-61)が詳しい。また、臨時政府法統論をめぐる論争の歴史の淵源についての最近の研究成果として、尹デウオン(2010)を参照のこと。

27) 軍事占領によって国家が消滅しないことは、一時的に国家の構成要素(代表的に、政府)を喪失しても国家は存続できることを意味し、これは革命やクーデター、あるいは内戦による政府の不在にもかかわらず、国家が存続しているのと同じである(朴培根 2006, 262)。

旧条約の「ともかく無効」の論理構造の下では、その国民もまた大韓帝国から大韓民国につながる国民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もかく無効」論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伴う主権の変動を否定するので、当然のことながらその国民の国籍変更も否定するからである。国家のない国民はあり得ないとすれば、大韓民国の政府樹立以前にもその国家の国民も存在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に対して兪鎮午は、『日本のポツダム宣言受諾によって、韓国はすでに日本の面がいを外したため、韓国人にかぶせられてきた日本国籍もその日にすでに消滅した。その後大韓民国政府の樹立によってすべての韓国人は（在在、在外を問わず）、韓国国籍を回復した』と説明した（兪鎮午 1993, 47-48）。つまり、韓国が日本の植民地になったのは違法に被せられた「面がい」であっただけに、その国民の国籍もまた元の状態に回復させるという意味である。

このような韓国政府の国籍「回復」論は、建国直後の1948年12月20日に制定された国籍法にもすでに表出されていた。同国籍法の最大の特徴は、日本植民地期間中に出生した者の国籍をあえて規定しなかった点である（張博珍 2009, 217）。換言すれば、植民地時代に生まれた者は当然韓国人であるため、国籍選択の余地がなく、したがって大韓民国が新たに成立したにもかかわらず、別途に国籍を確認したり取得要件を規定する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に対し、当時司法長官であった李仁は次のように説明した。

『3・1独立精神を継承する私たちは結局、8月15日以前に国家がなかったかということ、国家はあったと思います。国家があったとしても政府が存在しない場合があります...そういうわけで、この法律上の大韓民国の国民は依然として以前から...昔から精神的に法律的に国籍を持っていた...もしそうではなく、この法律を制定した後にその人が国籍を持つことになれば、大変稀有の状態が生じ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第1回第118次国会本会議議事録』, 4）

日本の植民地支配にもかかわらず、国家は消滅しておらず、したがって韓国国籍を持つ人もまた国籍法が制定される以前から存在し続けてき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旧条約無効論および血統主義に基づく国籍継続性の原則は、韓日会談における在日同胞の国籍問題に対する立論にもそのまま投影された。金太基が詳細に述べたように、韓国政府は数回にわたって敗戦国日本を占領統治した連合軍総司令部（SCAP / GHQ）に在日朝鮮人の韓国国籍を国際的に確認するように要求した（金太基 1997, 632-634²⁸⁾）。先に引用した『基本態度』もまた割譲地住民の国籍選択に関する国際的な先例を批判的に考察した後、『在日同胞は、最初から最後まで、つまりいかなる瞬間であっても、日本国籍を取得したことがない』と主張しつつ、『ただし、その機能だけを36年間にわたって停止された後に日本の敗戦によって自動的にその機能を発揮したため、在日同胞に関して国籍選択を云々する法的根拠は希薄だ』と断言した（『基本態度』, 72）。また、上記の[表 1]から分かるように、『基本態度』は「無権代理」の概念をもって朝鮮総督の統治行為の法的効果を実質的に追認する立場をとったものの、対人商権、

28) 一方、GHQは、日本占領初期の1945年11月「基本指令」（JCS-1380/15）では、在日朝鮮人を「解放民族」（liberated peoples）とみなすことで敵国人の「日本」人と区別していたが、その後必要に応じて「敵国国民」（enemy nationals）として処遇しても良いと指示した。GHQのこのような曖昧な態度は、韓国の地位においても表れた。1945年10月31日に作成されたGHQ覚書では、韓国は連合国や中立国、敵国のいずれの定義にも適用されておらず、2年後の47年8月4日に作成された同じ趣旨の覚書では結局、いかなる類型にも属しない「特別な地位（Special Status）国」として規定された（外務省特別資料部編 1989, 33-37）。

つまり国籍を持つことにより行使しうる権利については、『1908年8月29日から1945年8月15日までに、その機能だけが停止』という法理解釈を下した。

興味深いことに、旧条約無効論に立脚したこのような韓国政府の国籍「回復」論は、その意図するところが正反対であったものの、日本側の考えでもあった。例えば、日本側が1952年2月16日に開かれた第1次韓日会談本会議第2回会合で提示した「友好条約」草案の第4条は、『日本国および大韓民国は、1945年9月2日以前のある時期から日本国に引き続き居住する韓人が大韓民国の国民であり、日本国の国民ではないことを確認する』と述べ、在日韓国人の国籍選択権を否定した（『第1次韓日会談本会議議事録』，1125）。しかし、日本側の提案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第2条（a）を通じて日本が朝鮮の独立を「承認」した結果、当初日本国籍であった在日朝鮮人が「外国人」になったので、彼らの本国送還や強制退去が可能であるという主張を展開す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つまり、日本側が主張した在日朝鮮人の国籍「回復」の論理には、併合条約による日本国籍取得と日本帝国からの朝鮮の「分離」による日本国籍の喪失、そしてその帰結としての強制退去という意図が内包されてい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在日朝鮮人の国籍を韓国側の希望通りに韓国と規定したとしても、あるいは日本側の意図通りに日本人ではないことを強調したとしても、韓日がともに在日朝鮮人の国籍選択権を否定したという事実は、この問題に限っては両国間に合意が成立する可能性を予告していた。兪鎮午が回顧したように、『韓国も日本もみんな在日韓国人に国籍選択権を付与することに反対したので、戦後処理に関する国際条約の先例を排除することに対して両国間には特別な異議がなかった』がゆえに、『論争になったのは、日本永住を希望する韓国人にどのような待遇を供与するかということだけであった（兪鎮午 1978, 199-200）。しかし、このような兪鎮午の言及は、本質的な問題、すなわち旧条約無効確認の問題を「伏せておく」ことを前提にしているだけに、一種の同床異夢が生んだ偶然の意見一致に過ぎないものであった。29)

VI. おわりに

韓国政府は、過去35年間にわたる日本植民地支配の被害補償を日本に要求したことがない。その原因を考察する一環として、本稿は、主に韓日会談関連外交文書を分析することで、初期大韓民国政府の旧条約無効に対する法律論的解析と、これに連動する植民地被害に対する補償要求の理論とその実体、そして大韓民国および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を相互に連携させて検討した。

冒頭で指摘したように、1965年基本関係条約の旧条約関連条項は、韓日関係における過去認識（処理）の原点である。この条項の末尾に登場する「もはや無効」という曖昧な文言は、韓日間の過去歴史認識のギャップを明らかに示すと同時に、それ以来今日に至るまでの韓日間の不便な関係の出発点でもある。14年間にわたった韓日国交正常化会談に長らく深く関与してきた兪鎮午自身が1965年の条約に対して『両国の外交的・法律上の関係を正常化したことに過ぎず、本質的な問題については妥結されたことは一つもない』（韓国人文社会研究院 2007年, 183; 兪鎮午 1978年, 201）と酷評するほど、韓日関係は原点から大幅にずれていた。

29) 実際、兪鎮午は1952年3月25日に開かれた第1次韓日会談第7次基本関係委員会で、『根本論をやれば会議そのものが成功しないから、ただ議論をしても実益が無い。それで、理論を満足させつつ、現実を規制するように努力している...今度の条約で韓人が日本国籍を持っていないことを日本が確認するというになると、併合条約のことに触れて来るのである。しかし、この議論は避けたい』と述べた（『第七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34-35）。

しかし、そのズレの原点は、1965年ではなく、さらに遡ら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旧条約無効への曖昧な認識は、初期韓国政府の内部からすでに露呈され、実際に対日交渉で具体的に表出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1965年韓日会談妥結の不完全性を慨嘆した兪鎮午自分が主導した1952年2月の第1次韓日会談の基本関係委員会で韓国側は、旧条約の「確実な無効」ではなく、「ともかく無効」と主張するにとどまった。無効の根拠やその効力をめぐる法的説明を「すべて伏せて」おいて「ともかく無効」のみを主張する中では、「最初から」無効、源泉の無効は貫徹される余地がなかった。むしろ韓国側の「ともかく無効」論は日本側にして旧条約の有効と植民地支配の正当性を主張する根拠を提供した側面も否定できない。その終着点は政治的駆け引きに近い「字句修正」の末に出された「もはや無効」であり、旧条約が「戦後」韓日関係には「効力を有しない」という、極めて曖昧な表現であった。植民地支配をめぐるいわゆる過去歴史の清算は、「冷戦の論理」と「経済の論理」のみによって封印されたのではなく、韓国政府自らが封印したのである。

初期韓国政府の旧条約無効に対するこのような態度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国際法的な解釈でもそのまま表れた。旧条約の法的解釈と関連して唯一に公開された駐日代表部の『基本態度』は、旧条約の源泉の無効を主張しながらも無効の法的効力、すなわち旧条約の実質的な発現ともいえる朝鮮総督の植民地統治を「無権代理」概念をもって理解することで、事実上それを黙認した。無効の効果の遡及適用を放棄した無効論は結局、日本の植民地支配を追認するという、理論的矛盾に直面してしまう。

この矛盾は、35年にわたる日本の実効支配に伴った法的効果は無視できない現実、それを事実上認めてきた帝国主義的近代私法の伝統、さらに冷戦の論理に沿って「寛大な賠償」に向けたアメリカの対日政策という政治的考慮から導かれる「事実的なものの規範力」(ex factis oritur jus)と、民族的自尊心とともに、強制的に締結された併合条約の無効性に基づく「不法から法は発生しない」(ex injuria jus non oritur)という原則あるいは理想との葛藤でもあった。兪鎮午が『法律論を貫くときには、実際には複雑な問題が起るので、法理論はさて置き、兎に角無効としたい』と述べたのは、おそらくこのような葛藤の所産ではなかったのだろうか。

しかし、旧条約無効の不透明な立論から導出された現実的な矛盾はさらに大きかった。「ともかく無効」論をもって植民地支配の清算を要求することは当初から不可能であったからである。本論で論証したように、韓国政府が政府樹立直後の1949年に始めて作成した『賠償調書』には、植民地支配そのものの「賠償」が抜けていた。さらに、韓国政府は日本との初めての出会いから正式に植民地支配の被害補償を放棄する意向を明らかにしていた。このとき韓国側が提示した「対日8項目要求」は、事実上民事上の請求権に限定され、周知のように、それは結局、1965年の韓日国交正常化の妥結過程で政治的談合による「経済協力」方式に帰結する。こうした文脈を勘案すれば、韓日会談の結果だけを注目して朴正熙政権の「親日性」と李承晩の「反日性」とを強調してきた既存の解釈は修正されるべきであろう。植民地支配の被害補償を放棄したのは、大韓民国政府樹立の当時から整えられてきた法的、政治的判断であり、政策であったからである。

旧条約無効に対する曖昧な立論は、大韓民国とその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不透明性を生んだ。旧条約の「ともかく無効」論に基づいた大韓民国は、大韓帝国を継承した国家になる他なかった。「ともかく無効」論の下では、日本の植民地支配が行われる中でも大韓帝国は滅びず、その国民性は「機能のみ停止」されただけであった。韓国は憲法に適用された臨時政府法統

説を日本との交渉ではそれを否認したのである。

俞鎮午が「伏せて」おこうと言わざるを得なかった「複雑な問題」があったであろう。しかし、歴史は上書きされなかった。韓日間の過去史の「欠落」は今も鮮やかであり、「過去清算」のない「未来志向」は虚しいだけである。韓日間の過去史清算の原点は、もしかしたら今、この時点であるかも知れない。

[参考文献]

(韓国語)

- 国会事務処. 『第1回第118次国会本会議議事録』. 1948年12月1日.
- 金東祚. 1986. 『回想30年、韓日会談』. ソウル: 中央日報社.
- 金溶植. 1987. 『希望と挑戦: 金溶植外交回顧録』. ソウル: 東亜日報社.
- 金昌祿. 2005. 「韓日基本条約と請求権協定の内容と性格: 法的な観点からのアプローチ」 韓日関係史研究論集編纂委員会編 『解放後韓日関係の争点と展望』 (韓日関係史研究論集10). ソウル: 京仁文化社.
- , 2010. 「1910年韓日条約に対する法史学的再検討」. 『東北アジア歴史論叢』 第29号.
- 大韓民國政府. 1954. 『対日賠償調書』.
- , 1965. 『韓日会談白書』.
- 朴培根. 2006. 「国際法における国家の同一性と継続性」. 『ジャスティス』 通巻第90号.
- , 2004. 「大韓民國臨時政府の国際法的地位と韓国の国家的同一性 (下)」. 延世大学校法学研究所 『法学研究』 第13巻4号.
- , 2009年. 「時際法的な観点から見た韓国併合関連『条約』の効力: 条約締結の形式と手順を中心に」. 『国際法学会論叢』 第54巻第2号.
- 裴載湜. 1970. 「韓日基本条約の研究: 第2,3条の規定内容を中心に」. 『国際法学会論叢』 第15巻1号.
- 白忠鉉. 1996. 「国際法から見た1900年代韓日条約の問題」. 『韓国史市民講座』 19. ソウル: 一朝閣.
- 笹川紀勝. 2001. 「日韓の法的『対話』を目指して: 『第2次日韓協約』の強制問題を見る観点」. 李泰鎮編著 『韓国併合、成立しなかった』. ソウル: 太学社.
- 太田修. 宋ビョングオン・朴サンヒョン・吳ミジョン訳. 2008年. 『韓日交渉: 請求権問題の研究』. ソウル: 図書出版ソニン.
- 俞鎮午. 1966. 『雲の上の慢想』. ソウル: 一朝閣.
- , 1978. 『未来に向けた窓』. ソウル: 一朝閣.
- , 1993. 『韓日会談—第1次会談を回顧しながら』. ソウル: 外交安保研究院.
- 尹デウォン. 2010. 「臨時政府法統論の歴史的淵源と意味」. 高ジョンヒュほか 『大韓民國臨時政府の現代史的省察』. ソウル: ナナム.
- 李根寛. 2003. 「国際条約法における強迫理論の再検討: 日本の韓国併合と関連して」. 李泰鎮ほか 『韓国併合の不法性研究』. ソウル: ソウル大学校出版部.
- 李元徳. 1996. 『韓日過去史処理の原点』. ソウル: ソウル大学校出版部.
- 李長熙. 1996. 「1965年韓日基本条約の再検討」. 李長熙編 『韓日基本条約の再検討と東北亜

秩序』. ソウル:アサヨン.

李鍾元. 2011. 「韓日協定と今後の課題」. 東北亜歴史財団主催 『韓日協定の国際法問題点に対する再照明』 シンポジウム (2011年8月12日、東北亜歴史財団大会議室) 発表文.

梁好民. 1965. 「基本関係条約: その政治的盲点を批判する」. 『思想界』 7月号 (緊急増刊号).

張博珍. 2009. 「韓日会談開始前における韓国政府の在日韓国人問題への対応の分析: 韓国の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と『在日性』の起源」. 『アジア研究』 第52巻1号.

-----. 2008a. 「韓日会談における基本条約の形成過程の分析」. 『国際・地域研究』 第17巻第2号.

-----. 2008b. 「韓日会談における被害補償交渉の変化過程の分析」. 『精神文化研究』 第31巻1号.

-----. 2007. 「韓日会談における植民地関係の清算に関する研究: 清算消滅の政治論理を中心に」. 韓国外国語大学博士学位論文.

戸塚悦郎. 2010年. 「韓国併合過程の再照明: 韓日旧条約の不法・無効性に関する法学的研究」. 『東北アジア歴史論叢』 第29号.

韓国人文社会研究院. 2007. 『知性への道: 玄民兪鎮午先生生誕100周年記念学術論集』.

韓相範. 1995. 「韓日基本条約」. 民族問題研究所編 『韓日協定を見直す』. ソウル: アジア文化史.

(韓国政府公開韓日会談外交文書)

『対日講和条約に関する基本態度とその法的根拠』. 登録番号 76.

『第1次韓日会談 (1952.2.15-4.21) 本会議議事録, 第1次-5次, 1952.2.15-4.21』. 82.

『第1次韓日会談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第1次-8次, 1952.2.22-4.2』. 80.

『第1次韓日会談請求権小委員会議事録, 1-8次, 1952.2.20-4.1』. 86.

『第2次韓日会談 (1953.4.15-7.23) 請求権委員会議事録, 1-3次, 1953.5.11-6.15』. 92.

(日本語)

太田修. 2003. 『日韓交渉: 請求権問題の研究』. 東京: クレイン.

-----. 2011. 「二つの講和条約と初期日韓国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植民地主義」.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第2巻.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高崎宗司. 1996. 『検証 日韓会談』. 東京: 岩波書店.

吉澤文寿. 2005. 『日韓関係: 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東京: クレイン.

李鍾元. 2009a. 「日韓の親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 朴正熙軍事政権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1)」. 『立教法学』 第76号.

-----. 2009b. 「日韓の親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 朴正熙軍事政権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2)」. 『立教法学』 第77号.

-----. 2010. 「日韓の親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 朴正熙軍事政権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3)」. 『立教法学』 第78号.

坂本茂樹. 2004. 『条約法の理論と実際』. 東京: 東信堂.

谷田正躬・辰巳信夫・武智敏夫編. 1966. 『日韓条約と国内法の解説』 (『時の法令』 別冊). 東京: 大蔵省印刷局.

外務省特別資料部編. 1989. 『日本占領重要文書』 第2卷. 東京: 日本図書センター.
塚元孝. 1992. 「韓国の対日平和条約署名問題」. 『レファレンス』 no.494.

(日本政府公開韓日会談外交文書)

『日韓会談第二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952年2月27日). 文書番号 974.

『日韓会談第五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952年3月12日). 977.

『日韓会談第六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952年3月22日). 978.

『日韓会談第七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952年3月26日). 979.

『日韓会談第七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1952年4月2日). 980.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11』 1127.

(日本国会議事録)

『第百三十四回国会参議院會議録 第四号』 (1952年10月5日).

『第百三十四回国会参議院予算委員会會議録 第三号』 (1952年10月17日).

Cheong, Sung-Hwa. 1991. *The Politics of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Japanese-South Korean Relations under American Occupation, 1945-1952*. New York: Greenwood Press.

4.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I. 머리말

2012년 9월 현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에 걸친 제국주의국가 일본(이하 '일제')의 한반도 지배라는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그리고 격렬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한일 과거청산에 관해서는 14년여의 오랜 회담을 거쳐 1965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 등이 체결되면서 일단 하나의 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법적 구조는 출발선상에서 이미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이후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청산 요구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인 1990년대에는 적지 않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와 마침내 그 법적 구조는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가 당초 어떤 모습과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며, 1990년대에 어떤 균열이 생겨났으며, 2010년대 초인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해보기로 한다.

II.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 '1965년 체제'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체결한 「기본조약」 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¹⁾라고 합의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 1조에서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2조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들 '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출발선상에서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우선 「기본조약」 2조에 관해 한국 정부는, “해당되는 조약 및 협정에 관하여는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의정서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간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이며 또한 정부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이다. 무효의 시기에 관하여는 '무효'라는 용어 자체가 별단의 표현이 부대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이미'라고

* 이 글은 미완고입니다. 이 글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와 상의하여 동의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모두가 “동등히 정본”이며,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해서 무효(Null and Void)이다”²⁾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그 조약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³⁾이라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일본 정부는 “이제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무효가 되어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 또한, 무효가 된 시기에 관해서는, 병합조약 이전의 조약들은 각각의 조약에 규정된 조건의 성취 또는 병합조약의 발효와 함께 실효했고, 병합조약은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시기 즉 1948년 8월 15일에 실효했다”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다”⁵⁾라는 것, 다시 말해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사에 따라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⁶⁾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는 그 1조의 무상 3억 달러와 2조의 청구권 문제 해결 사이에 상호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한 데 대해,⁷⁾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의 증진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은 동일한 협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 . . 양자 사이에는 전혀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⁸⁾이며, 무상 3억 달러는 청구권 문제 해결과는 상관 없는 “독립축하금”⁹⁾이라고 해석했다.

요컨대 한국 정부는 일제에 의한 35년간의 한반도 지배의 법적 근거인 1910년 「병합조약」이 애당초 무효였고, 따라서 35년간의 지배는 ‘불법강점’이었으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고, 일본 정부는 1910년 「병합조약」이 1948년까지는 유효였고, 따라서 35년간의 지배는 ‘합법지배’였으며, 무상 3억 달러는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축하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1965년 당시 한일 양국 정부가 해석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다.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청구권의 범위가 그것이다. 즉 한국 정부는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이 해결되었을 뿐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¹⁰⁾, 일본 정부도 한반도 지배에 관한 언급은 없이 “조선의 분리독립”에 따른 청구권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¹¹⁾

이상의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기본조약」 제2조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

	한 국	일 본
--	-----	-----

- 2)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1965, 19면.
- 3) 1965년 8월 8일, 한일간 조약과 제협정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의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발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日本研究室編, 『韓日關係資料集<第一輯>』, 高麗大學校出版部, 1976, 252면.
- 4) 谷田正躬外2編,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説』(『時の法令』別冊), 大藏省印刷局, 1966, 14면.
- 5) 위의 책, 같은 면.
- 6) 1965년 11월 5일, 일본 중의원 日韓特別委員會에서의 사토오(佐藤榮作) 수상외의 발언. 『第50回 國會 衆議院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會議錄 第10號』, 1965.11.5, 2면.
- 7) 1965년 8월의 ‘韓日間 條約과 諸協定批准同意案審査特別委員會’에서, 張基榮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청구권 제 2항[‘제1조 1 (a)’를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됨.]에 있는 소위 무상 3억불은 청구권이 아니라 할금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는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경제협력이 아니라 청구권이 주로 되어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日本研究室編, 위의 책, 242면.
- 8) 谷田正躬外2編, 위의 책, 62면.
- 9) 谷田正躬外2編, 위의 책, 63면.
- 10) 대한민국정부, 위의 책, 41면.
- 11) 谷田正躬外2編, 위의 책, 61-62면.

무효의 대상	1910년 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1910년 조약
무효의 시기	당초부터 무효	1948년 8월 15일에 실효
already	“null and void”를 강조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무효가 되어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
해석의 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	정당한 절차, 대등한 입장, 자유의사
35년간의 지배의 성격	불법강점	합법지배

<표 2> 「청구권협정」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

	한 국	일 본
1조와 2조의 관계	관계 있음	관계 없음
무상 3억 달러의 성격	배상적인 성격의 것 ⇔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아님.	독립축하금
해결의 대상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에서 규정하는 일본에 의한 조선의 분리독립의 승인에 의해, 한일 양국간에 있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게 된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위와 같은 한국 정부의 해석 중, 1) 1910년 조약 무효 - 불법강점 - 「청구권협정」 1조와 2조 관계 있음 - 배상적인 성격은 논리가 통한다. 2)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 -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아님도 논리가 통한다. 하지만 1)과 2)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일본 정부의 해석 중, 1910년 조약 유효 - 합법지배 - 조선의 분리독립의 승인에 따른 청구권 - 「청구권협정」 1조와 2조 관계 없음 - 독립축하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논리가 통한다. 하지만, 하나의 조약의 1조와 2조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무리이다. 게다가 한국의 ‘독립’이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하면 일본은 결코 그 독립을 ‘축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양국 정부의 주장 모두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뒤틀림의 원인이 역사적 현실에 있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것이다. ‘1965년 체제’는 미국 주도의 「샌프란시스코조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가 미봉된 결과이다. 1950년에 주일대표부 차원에서 1910년 조약 무효론에 입각하여 불법강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후 회담과정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던 한국 정부는,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 부정함을 무시하고 ‘국내용’으로 위의 1)을 끼워 넣었다. 한국과의 특수한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일본 정부는 무리를 무릅쓰고 ‘독립축하금’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 자체를 부정하며 돈을 돌려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채권자는 돈을 받은 듯하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1965년 체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출발했다. 과거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12) 이에 관해서는 장박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논형, 2009, 249-253면 참조.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였던 일제의 한반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데 그 해결된 청구권이 무엇인지도 애매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III. 법적 구조의 균열

하지만, 그 불안정한 '1965년 체제'는 냉전 덕분에 25년간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 자본주의진영의 '동지'가 된 한일 양국 정부가 '전시의 논리'를 내세워 그 도전의 여지를 봉쇄한 결과였다.

따라서 1980년대 말 냉전이 붕괴되었을 때 '1965년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뒤따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제의 한반도 지배로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이 거리에서, 국제무대에서, 법정에서 과거청산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요구 앞에 '1965년 체제'의 논리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특히 강렬하게 부각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는 1992년 1월 12일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1월 13일에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お詫び)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죄의 담화를 발표할 때까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했었다. 1992년이 될 때까지 존재 자체를 부정한 문제가 1965년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의 과탄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또 한편으로 냉전 이후 아시아에서의 입지 구축의 필요성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1995년이 되어 '방향선회'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종전 50주년'을 맞아, 1995년 8월 15일 당시의 무라야마 토미이찌(村山富市) 수상이 발표한 담화¹³⁾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했다. 그리고 1998년 10월 8일의 김대중-오부찌 케이조오(小淵恵三) 공동선언¹⁴⁾을 통해서도 "과거의 한시기에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의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9월 17일의 「조일공동선언」¹⁵⁾을 통해서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1965년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하면, 이것이 적지 않은 변화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이후에도, "식민지 지배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엄한 반성을 하여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¹⁶⁾라고 하면서도, 1910년 조약이 "법적으로 유효"였다¹⁷⁾는 입장은 계속 고수함으로써 '법적 무책임의 원칙'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을 위한 아

13)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 1995.8.15.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0815.html).

14) 「日韓共同宣言 - 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1998.10.8.

(http://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

15) 「日朝平壤宣言」, 2002.9.17 (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engen.html).

16) 1995년 10월 1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무라야마(村山富市) 수상의 발언. 『第134回国會 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 第3號』, 1995.10.17, 34면.

17) 1995년 10월 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무라야마 수상의 발언. 『第134回国會 參議院 會議錄 第4號』, 1995.10.5, 19면.

시아 평화국민기금¹⁸⁾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¹⁹⁾ 그런데 일본 정부의 ‘법과 마음 분리 전술’은 애꿎게도 피해자들의 ‘법적 책임’ 요구에 부딪혀 ‘위로금’ 사업이 좌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1995년 이후 일본 정부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고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부터 ‘합법이었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매우 옹색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1965년 체제’는 일본 사이드에서 우선 균열이 생겼다.

한편 한국 정부는 냉전 이후에도 ‘1965년 체제’를 기본적으로는 묵수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거듭 요청했지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미봉으로 일관했다. 한국 사이드에서의 균열은 ‘광복 후 세대’이기에 한일 과거미청산에 보다 민감했다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비로소 만들어졌다.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획기적인 결정²⁰⁾을 내놓았다. 즉, 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에 관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물론, 위원회는 그와 동시에, “한일협정 협상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 무상자금의 성격, ’75년 한국정부 보상의 적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으므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면서도 무상 3억 달러에 의한 일정한 해결을 언급함으로써 ‘1965년 체제’로부터의 전면 이탈은 피했다.

18) ‘아시아 여성기금’의 활동에 관해서는, 그 홈페이지(<http://www.awf.or.jp/>) 및 大沼保昭·下村満子·和田春樹,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東信堂, 1998 참조.

19) 참고로 일본 수상의 편지의 전문(<http://www.awf.or.jp/6/statement-12.html>)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해, 과거의 중군위안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일본 ; 필자)의 국민적인 보상이 행해지는 데 즈음하여, 저의 마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해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이른바 중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합니다. / 우리들은, 과거의 무게로부터도 미래에의 책임으로부터도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일본 ; 필자)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마음에 입각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것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당시의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문제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편안한 삶을 보내시기를 마음으로부터 빕니다. /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2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8.26.

그러나, 비록 한정된 범위에서이기는 하지만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노무현 정부의 선언은, 그 이전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뛰어넘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모두 해결 종료’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1965년 체제’의 균열은 더욱 심각한 것이 되었다.

IV. 법적 구조의 붕괴

2010년대에 들어와 ‘1965년 체제’는 마침내 그 수명을 다하기에 이르렀다. 결정타를 날린 것은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사법기관들이었다.

1.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

한국 정부가 2005년 결정을 통해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에 주목하여, 2006년 7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외교통상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측은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²¹⁾ 이에 대해 피청구인측은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고유의 권리”로서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 침해도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에 대해, 2009년 4월 9일 공개변론을 거쳐,²³⁾ 2011년 8월 30일 주목할만한 결정²⁴⁾을 내렸다.

현재는 그 결정에서,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선언했다. 여기에서 한일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현재가 「청구권협정」에 관해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1965년의 과제였던 한일 과거청산이 당시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도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현재의 결정은 한일 과거청산이라는 과제의 존재와 그 해결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이 결정을 한국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였다. 외교통상부는 곧바로 TF팀을 꾸리고 자문위원단도 구성하여 대책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구상서도 두 차례 보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에 끝난 일’이라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교착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결정은 한일 과거청산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단지 한

21) 청구인(이용수 외 108명),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6.7 참조.

22) 피청구인(외교통상부장관), 「변론요지서」, 2009.3.5 참조.

23) 이 공개변론에서 필자가 청구인측 참고인으로서 제시한 의견은,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법학논고』 (경북대) 31, 2009 참조.

24)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국 정부가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뿐이다. 그 점에서 현재의 결정은 한일 과거청산을 위한 전면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결정이 '1965년 체제'에 가한 타격은 크다.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 3조 1항의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2항 및 3항에 따라 중재 절차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정적이지만,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로 나아가든 않든 '1965년 체제'는 더 이상 명맥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로 나아간다고 선언했는데 일본 정부가 끝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 의한 「청구권협정」 위반의 상황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의 파기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965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파기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권협정」은 한 쪽에 의해 위반된 협정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 때에도 역시 '1965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만일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로 나아간다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도 그에 응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은 한일 양국 정부의 손을 떠나 전적으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분쟁은 「청구권협정」의 핵심적인 주제에 관한 분쟁이므로, 핵심적인 주제에 관해 발생한 분쟁이 제3자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그 경우에도, 한일간 합의로서의 '1965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만일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은 그 존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분쟁이야말로 '1965년 체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어설피게 덮어 놓았던 것이다. 그 점에서 이 경우에도 '1965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2012년 5월 24일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체제'에 가한 타격은 보다 치명적이다. 그 날 대법원은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미쯔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²⁵⁾이 그것이다. 이 판결들은 한일 과거청산 전반에 관한 매우 획기적이고도 역사적으로 주목할만한 '법적 결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보다 많은 논점을 담고 있는 2009다22549 판결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기로 한다. 이 판결은 일본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미쯔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0년 5월 1일 미쯔비시중공업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던 부산의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다.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²⁶⁾을 내렸다. 2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일본국 재판소의 중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²⁷⁾을 내렸다.

25)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26) 부산지방법원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27) 부산고등법원 2009.2.3 선고 2007나4288 판결

한일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이 대법원 판결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 책임 일반’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선언한 부분이다. 즉, 판결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결론적으로, “원고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분명 한국 정부의 2005년 결정도 뛰어넘은 것이다. 2005년 결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규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였다. 강제동원에 관해서는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 “무상 3억불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오히려 소극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었다. 그에 대해 판결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확산’이 가지는 의미는 심대하다. 그것은 곧 ‘식민지 책임 일반에 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외교보호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미에 다름 아닌 것이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일제 강점의 불법성 = ‘식민지 책임’을 전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 확인은,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의 이유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다. 즉 판결은,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헌법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強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선언했다.

판결의 이 부분은, 일본 재판소 판결의 승인 여부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의 법적 단절을 명확하게 선언한 획기적인 판단이다. 과연 장한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일제강점기의 법령은 미군정기를 거치면서도 대부분 연속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또한 그러했다. 1948년 헌법 제100조²⁸⁾가 분명히 “헌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선언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일제강점기 법령과 미군정기 법령의 효력이 부정되게 되어 있었지만, 분단과 내전 등 엄혹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것은 그 과거 법령들의 효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역이용된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애매한 과거청산을 정당화하는 ‘법적 핑계의 원천’이 되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는 ‘선언적인 단절’과 ‘법적·현실적인 연속’의 괴리²⁹⁾ 속에 애매하게 자리매김되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애매성의 고리를 잘랐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強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적인 강점”임을 법적으로 확인했다.³⁰⁾ 그 연장선상에서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강점기 동안 일제가 만든 법령과 그 법령에 근거한 일체의 법률관계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한 모두 무효라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일제가 그 법령에 따라 독립지사를 체포, 감금, 처벌한 것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한반도의 인민을 징용, 징병으로 끌고 간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 인민에게 피해를 가한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며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언이 ‘1965년 체제’에 기댄 일본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1965년 체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종언을 고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V. 맺음말 - 새로운 법적 구조의 구축에 나설 때이다.

2012년 9월 현재, 일제에 의한 35년간의 한반도 지배라는 청산하여야 할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1965년 체제’는 더 이상 법적 구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해석의 통일로 해결할 수 있는 균열이 아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덮을 수 있는 붕괴가 아니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1965년 체제’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28) 1948년 헌법 제100조에 대한 분석은, 김창록, 「1948년 헌법 제100조 --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 『법학연구』(부산대) 39-1, 1998 참조. 다만, 위의 글 중 III-4 부분은 잘못된 기술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29) 이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김창록, 「1910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사학적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 29, 2010 참조.

30)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제령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26, 2002 참조.

새로운 법적 구조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때마침 3년 뒤인 2015년은 ‘1965년 체제’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2세션: 해방/분리의 청산과정

1. 제국청산 과정으로서의 일한 교섭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관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¹⁾

아사노 도요미 (淺野豊美, 中京大学)

(요지)

본 논문은 1952년부터 전개된 일한회담을 1951년 연합국과 일본 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의 관계, 특히 국제 조약으로서의 일한 관계에의 적용 방식을 둘러싼 교섭과 논쟁을 중심으로 재검증한 것이다. ‘청구권문제’가 정치문제가 된 배경에는, 일한 쌍방이 각각 만들어 낸,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강화조약에 대한 해석과, 이에 의거한 자기 정당화의 법적 논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적 감정이나 역사 인식까지도 외교상의 정치문제가 되어 버린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제1차 일한 회담은 1951년 9월의 강화조약 조인으로부터 다음 해 4월말의 비준 발효 사이의 기간에 개최되었는데, 당시 한국 측은 연합국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 했지만 ‘연합국으로서의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측은 연합국 측이 포기한 전쟁 피해배상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약탈당한 물자의 반환과 재일 연합국 재산 반환이라는, 강화조약 규정에 의거함으로써 대일 청구권을 정리하고 있었다. 즉, 한국 측의 대일 청구권 8항목은 크게 지금·지은을 포함한 현물반환(지도원판과 문화재)과, 재일 한국계 재산(이씨 왕가 및 조선은행의 재일 자산·채권을 포함함)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연합국과 같다’는 높은 국가윤리 하에서, 한국 측은 재일 한국계 자산을 재일 연합국 자산(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5조로 반환 의무가 정해진다)과 같은 정도로 취급해 반환할 것, 반면 재한 일본 자산의 경우 재일 일본 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몰수(동 제4조에 의거함)하는 것을 승인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이것은 『대일전쟁 배상조서』가 요구한 배상이 재한 일본 자산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입장에서, 현물반환과 재일 연합국 자산 반환 요구를 한국 측 청구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의 주장은, 재한 일본 자산 중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일본 측의 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데 동의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재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일 연합국(한국계) 자산과 현물반환 요구는 재한 일본인 사유 재산분과 상쇄되어야 한다는, 다른 상쇄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재산을 잃은 일본인 귀환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 문제, 더욱이 일본의 경제부흥을 최우선하겠다는 자세가 있었다.

양측의 대립은 강화조약에 규정된 재한 일본 자산의 ‘효력’을 일본 측이 승인한 제4조가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재연합국 일본 자산과 대일 배상과의 상쇄를 규정한 제14조보다 강한 것인가 (재한 일본 자산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은 없다), 아니면 약한 것인가 (재한 일본 자산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은 일본 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남아있다)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그 논쟁은 해방 국민과 전승 국민의 법적 권리의 강약뿐만 아니라, 해방이전의 ‘지배’ 상태에 대한 역사 인식의 문제로 발전해 갔다. 즉, 일본인 ‘사유’ 재산은 충독부라는 공권력에 의한 보호와 조선인에 대한 ‘착취’에 의해 축적된 부당이득인가

1) 본고는 淺野豊美. 2011.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と帝國清算過程としての日韓交渉」李鍾元·木宮正史·淺野豊美編.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東アジア冷戦編』(法政大學出版局)을 한국에서의 발표를 위하여 일부 수정한 것이다.

아닌가의 문제였다. 이 대립을 증개한 미국은, 배상의 틀 밖에 존재한 일본의 대미 채무 반환 의무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한의 청구권 협정은,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연관된 것이었다.

본고는 일관성과 체계성을 불가결 요소로서 하여 만들어지는 법적인 제논리를 분석 대상으로 한 ‘법사’(法史)적 분석과 법이나 권리를 둘러싼 정치외교사적 분석을 조합함으로써 문제의 전체 구조를 논증하고, 그것이 현대에 이를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봉인되어 왔다는 것을 논했다. 일한 쌍방의 ‘법적 정의’에 의해 지탱되는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은 오늘날 긴 시간의 봉인으로부터 풀어져 다시 전면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후 보상·식민지 책임 전반에 대한 해결을 상호 간의 국민감정으로도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봉인되어 온 청구권을 둘러싼 문제의 구조를 우선 전후(戰後) 역사의 분석을 통해 밝힌 뒤, 근대 전반에 걸치는 역사적 검증과, 현대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치적 틀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전후 역사를 학문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서로 국민감정의 역사성을 묻고, 그것을 전후 역사의 산물로서 ‘이해’할 때만이 현재까지도 남겨져 있는 문제를 서로의 국민감정으로 수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믿고 싶다.

Keywords: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청구권, 재외사유 재산, 배상, 상쇄, 가리오아(GAR IOA) 채무

I. 일한 교섭의 초기 조건으로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 연합국과 일본과의 사이의 배상 틀 - 재외 일본 자산과 청구권 상쇄의 기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에서 ‘조선’의 ‘독립’을 일본이 승인하는 것 외에 대만, 쿠릴(지시마, 千島) 등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반환’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명시한 것으로, 제국으로서의 일본의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조약으로서의 의미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 해체 후에 해당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시정 당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을 상당히 남긴 조약이었다. 강화조약 제4조는 그러한 시정 당국과 일본정부가, 각각의 국민이나 정부가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하는 재산이나 채권, 그리고 각종 보상 요구 전반으로 구성되는 청구권(claims)에 대해서는 ‘특별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법에 상당하는 부분인 4조(b)항에서 “합중국군 정부에 의해, 또는 그 지령에 근거해 실시된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의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제4조(b)항에 의해 한국이 누린 것은, 미 군정청(USAMGIK, 정식명칭은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군 정청)이 1945년 12월6일에 발한 군정령 33호에 의한 ‘재산 처리의 효력’이다. 이 군정령은 같은 해 8월9일로 소급해서 일본인에 의한 일체의 재산거래를 무효로 하여²⁾, 일본인의 모든 소유권(title)은 미 군정청에 ‘귀속’(vest) 시켜 ‘소유’(owned by)된다고 한 것이었다.³⁾ 여기서 순수하게 군정령 33호의 대상이 된 재산의 정의만을 둘러싸고도, 8월9일

2) 군정령 33호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그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그 정부가 조직 또는 단속하는 단체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 계좌, 채권, 유가 증권 등과, 군 정청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모든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자로 한국 주둔 군 정부가 취득하고, 군 정청이 그 재산을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군정령 33호의 발령이 트루먼의 배상 사절단인 폴레 사절단의 방일·방한에 맞춰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로 소급하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보아 허용되는 것인가 아닌가, 소급법이 유효했다고 하더라도 “미 군정청 관할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는 본사를 한국에 둔 회사의 재일 자산이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지리적 범위의 문제가 발생했다.⁴⁾

최대의 쟁점은 귀속(vest)이 곧바로 ‘몰수’라는 법적 효력을 갖는가, 어떤가라는 점이었지만, 그 해석을 둘러싼 논쟁의 기준점이 된 것이 바로 일본과 미국 등의 연합국과의 사이의 맺어진 강화조약에 있어서의 배상의 구조였다.

일본과 연합국의 사이에서 사유 재산을 포함한 재외재산의 접수를 배상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것이 제14조였다. 즉, 이 제14조에 기초해 일본이 일본의 재외 재산접수를 승인함으로써 연합국은 그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14조는, (a)항과 (b)항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a)항에서 연합국 국내에 있는 일본인 사유재산의 몰수를 일본 정부가 외교사절과 종교단체의 재산을 제외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⁵⁾, 그 대신에 (b)항에서 연합국 측이 일본에 대하여 전쟁 배상을 중단하고, 연합국 측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투 행위에 유래하는 물질적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전쟁 수행 중에 일본 측에서 취한 행동에 유래하는 “기타의 청구권” (군표 지불 등), 그리고 전쟁 후에 발생한 “점령의 직접 군사비”를 연합국이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제14조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서는, 첫째 2개국 간 교섭에 의한 생산물과 역무에 의한 추가 배상의 가능성, 둘째 재일 연합국재산, 셋째 전전(戰前) 채무, 넷째 민간인에게 식량이나 의약품이 원조되었을 때의 간접 군사비, 즉 점령 경비였다.⁶⁾

첫 번째 예외라고도 볼 수 있는 제14조 (a)항 1은, 미얀마(버마), 필리핀 등의 구(舊)연합국이나 그 식민지였던 지역이 희망할 경우 역무와 생산물에 의한 2개국 간 배상 협정을 체결하는 의무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일본이 원재료 구입을 위한 외환 부담을 안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공장 설비 자체로써 지불하는 자본배상 이외에, 이 규정에 의해 생산물과 역무에 의한 배상이 2개국 간 협정으로 가능해졌다. 이후의 일한 국교정상화 때의 경제 협력도 이 규정에 준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합국이 전체로서 배상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각 연합국에서 2개국 간 협정을 요구되었을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근거가 여기서 정해졌다.⁷⁾

참조. 淺野豊美. 2010. 「ポーレー・ミッション-賠償問題と帝國の地域的再編」, 小林道彦・中西寛編 『歴史の枠を越えて- 20世紀日中關係への新視点』 (千倉書房), 第8章.

4) 山下康雄 「在韓日本資産に對する請求權」 『國際法外交雜誌』 第五一卷第五号 (一九五三年) .

5) 제14조 (a)항 2는 상채를 전제로 하여 배상 명목으로서의 연합국에 의한 재외 재산 접수 규정이다. 이것은 각 연합국에 소재하고 그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일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을, “제압하고, 유치하고, 청산하여” “처분하는 권리”가 연합국 측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때 “처분”되어야 할 재산의 정의(I)와, 처분으로부터 제외되는 예외 항목(II), 그 예외에 관한 청산 대금의 반환 방식(III), 청산에 대한 준거법은 각국 국내법이어야 할 것(IV)이 규정되었다. 14조 (a) 2(II)는 재외재산 접수의 예외 규정이었지만, 제15조 및 18조와의 관계에서 중요했다. 접수의 예외로 간주된 것은 연합국에 소재하는 외교관 시설과 외교관의 사유 재산(ii), 종교·자산단체 재산(iii), 그리고 엔화로 표시되는 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채무, 일본국에 소재하는 유체재산에 관한 권리, 권원, 혹은 이익, 일본국의 법률에 근거해서 조직된 기업에 관한 이익 또는 이것들에 관한 증서” (v)였다. 이들 규정은, 가령 주식이나 사채가 미국에서의 일본 자산접수에 의해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엔화로 표시된 한 그 효력은 일본에 있는 담보 물건이나 주식회사 본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대일 청구권에는 이 같은 종류의 재일 자산이 포함되고 있었지만, 분리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이 규정(v)을 근거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접수된 증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의 일본에서 일본 (법)인이 미국 기업이나 정부에 대해 소유하고 있었던 채권이 제외되어, 제18조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되었다.

6) 점령 중에 일본에 공장 설비 반출이라 형태로 부과된 중간 배상 분도 반환된 적은 없었다.

7) 入江 『日本講和條約の研究』, p. 281.

일본의 재외재산 접수에 의한 배상의 두 번째 예외가 된 것은 제15조 (a)항에 의한 재일 연합국 재산의 반환 규정이다. 이것은 일본국에 있는 연합국 및 그 국민의 재산·권리 또는 이익으로, 전쟁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일본 국내에 있었던 것의 반환은 일본국의 책임이라는 규정이다. 연합국(국민)의 동산·부동산 등의 유체(有體) 재산과, 채권·주식 등의 무형 재산을 “반환”하고 “손해”를 변상할 의무가 일본에 부과되었다. 이 규정이야말로 이후 한국 측이 재일 한국계 자산을 청구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951년 4월 25일 일본 외무성과 미국의 실무자와의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어 재일 연합국 재산문제와 관련, 일본 측의 연합국 국민재산에 대한 보상액을 200억엔에서 300억엔 사이로 견적하고 구(舊)엔화에서 신(新)엔화로 바뀌었을 때의 배율을 120배에서 150배로 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문건은 한국의 참가 문제와 더불어 기술되어 있다.⁸⁾ 또, 7월13일에는 재산의 정의나 반환의 형식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를 규정한 일본 국내법 “연합국 재산 보상 법안”이 미일 간 교섭에서의 양해를 거쳐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강화조약 제15조에도 언급되었지만,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한국인의 재산을 언급하자는 제안이 미국 측에서 제기되었지만, 일본 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요컨대, 한국이 연합국이 됨으로써 재일 연합국 재산으로서 일본 정부가 그 반환 책임을 지는 금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되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법적 논리의 분석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3의 예외인 제18조는, 전전(戰前)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개인이 갖고 있던 대외채무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규정으로, 상호적인 것이었다. 영국, 프랑스, 미국에 대한 전전 외채를 달러 표시로 환산한 합계 채무는, 미지불 이자 누적 액수와 원금을 합쳐 4억 달러 정도였다.⁹⁾ 게다가, 외채상환에 전쟁이 준 손해 분이 엔화 표시로 59억엔, 유체 재산에 대한 손해가 61억엔, 연합국이 전전에 일본에 대한 주식투자 분이 일본 업체의 자산·영업 내용의 변동에 의해 그 자산 가치가 저하된 부분이 “물가변동을 150배”, “기업의 손해율을 30% 내지 50%”로 잡아 60억엔에서 100억엔이 되는 것으로 견적하였다.¹⁰⁾

그리고 제4의 예외가 된 것이 간접 점령경비로 간주된 가리오아(GARIOA) 채무였으며, 미국의 대일청구 분으로서 약 19억 달러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틀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금전배상 실패의 교훈을 근거로 하여 재외 추축국(樞軸國) 자산의 사유 재산을 포함한 접수를 통한 자본 배상 방식을 법적 축으로 하면서¹¹⁾, 그 예외 조항으로 미래의 국제정치적 결정에 유연하게 맡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강화조약 중에는 일본이 “전쟁 중에 발생시킨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원망(願望)”(제16조)도 있었지만, 일본이 경제를 존립시키면서 제15조·18조에 유래하는 예외로서의 “기타 채무를 이행”하는 완전한 배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제14조 (a)항의 첫머리)는 상황이 적혀 있다. 관점을 바꿔 말하면, 첫 번째 예외인 2개국 간 교섭에 의한 생산물과 역무, 4번째 예외인 점령경비 등 어느 것도 명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는 장래의 지불을 일본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면서, 재외재산 접수에 의해 그 이상의 배상을 법적으로 차단한다는 틀이 마련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경제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

8) 「ダレス使節団との會談経過 一九五一年四月二五日」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一一六六一一八六一.

9) 『日本外交文書 平和條約調書 第三冊』. p. 155, 및 『同 第二冊』, p. 745.

10) 『日本外交文書 平和條約調書 第二冊』, pp. 673-674.

11) 그 탄생의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Toyomi Asano, "Between the Collapse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with South Korea," *Comparative Imperiology* I, ed. Kimitaka Matsuzato, by Slavic Research Center of Hokkaido University, pp. 109-129.

는 그 부흥한 정도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컨트롤하는 ‘자유세계’를 향해 서서히 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가 인식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¹²⁾ 일본 자체가 경제적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불투명했던 초기 국면에서 이러한 배상의 틀은 관대한 배상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성장이 미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하면서 케도에 올라감에 따라 일본 경제로 하여금 미국의 국민과 정부에, 그리고 자유주의 세계에 속한 동남아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해 경제 협력이라는 형식으로 지불토록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에 의한 전후 일본의 컨트롤 하에서 중화학공업 설비가 집중되는 일본 경제의 부활이 추진되고, ‘아시아의 공장’으로 활용되는 체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배상과 경제협력을 둘러싼 법적 구조는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틀이 어떻게 기능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연합국 자격 강화회의 참가 추구

대한민국 건국 후 한국 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인 것은 『대일전쟁배상조서(對日戰爭賠償調書)』의 정리였는데¹³⁾, 이는 강화회의 참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GHQ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다년간 일본의 강탈로 가장 많이 신음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인식 하에서, 전승국의 입장에서 강화회의에 참가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직후인 1948년 8월17일, 쓰시마(對馬) 반환과 문화재 반환, 배상을 제기했고, 한국 국회도 같은 해 11월27일 전시 중 한국 국민이 징용·징병된 것에 대한 배상 요구의 건의를 채택했다. 이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자료를 모아 『대일전쟁배상조서』가 편찬되어 GHQ에 제출된 것은 이듬해인 1949년 3월26일이었다. 그 전 달에 막 설치된 주일 한국대표부 공사가 도쿄의 총사령부에 제출, 한국의 강화회의 참가도 함께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은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안정 세력으로, 경제적으로는 동양의 공장으로서의 일본의 등장을 합법화하는 것’을 추진한 데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강화회의에 참가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군국주의, 침략주의적 잔존 세력의 완전소탕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일 배상에 있어서는 한국이 보유한 막대한 채권의 상환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¹⁴⁾

한국이 연합국으로서 강화회의에 참가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이었던 임병직의 증언을 통해서도 명확하다. 이승만이 일한 회담 개최에 즈음해 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3개의 훈령 중 마지막 하나는 일한 회담과 관련, 한국은 사실상 연합국의 일원이라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었다. 그 “근본 의도”는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국 자격으로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참석해 조약 서명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을사조약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한일 간의 적대관계와 전쟁 중에 한인이 일본에 대하여 사실상 취해온 모든 전쟁 행동으로부터 보아 한국은 다른 참전국과 동일한 위치에서 일본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는 데 있었다.¹⁵⁾ 즉,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 것을 근거로 한국은 그 ‘법통’을 계승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전승국의 일원이며 강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

12) 入江 위의 책.

13) 太田修. 2003. 『日韓交渉－請求權問題の研究』(クレイン), pp. 47-59.

14) 朝鮮銀行調査月報. 1950. 「對日講和問題の推移と韓國」, 2월호(1952년 1월 17일에 아시아국 2과에서 야마구치 씨한테서 접수했다고 한다). 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一一八六一八三六.

15) 林炳稷. 1964. 『林炳稷回顧錄－近代韓國外交の裏面史』(ソウル: 女苑社), p. 496.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한 회담에서 한국 측의 전권대표로서 참가한 미국 거주 한국 대사 양유찬도 강화회의에 의 한국 참가와 이에 의한 연합국으로서의 권리 획득을 추구하였다. 양유찬은 “덜레스 대사와 사이가 대단히 좋고” “미국에서 성장했으며 한국어도 일본어로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1951년 7월1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대일 평화조약에 관한 심의를 마친 후, 양은 7월19일 덜레스에게 연합국으로서의 회의 참가와 재한 일본인 재산의 완전 포기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¹⁶⁾

강화회의 직전에 한국 외교부의 조사원으로서 도쿄에 체류하고 있었던 유진오는 1951년 6월 한국의 참가가 어려워지자 미국 측에 강화회의에 대한 한국 측의 요구를 법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설명해 교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요점은 같은 해 9월 초순의 영문 문서에 남겨져 있는데¹⁷⁾, 강화조약에 참가할 수는 없어도 연합국과 동일한 권리를 한국도 향유하는 것에 역점이 두어져 있었다.

우선 재일 한국계 자산에 대해서는 제15조를 한국계 자산에도 적용하고, 조선은행 등 폐쇄기관의 재일 재산 및 조선총독부 정령상의 선박령에 등록된 일본 선박의 ‘반환’은 실현될 것이라고 유진오는 주장했다. 유진오는 또, 1949년 1월의 SCAPIN에 의해 청산이 진행되고 있던 구(舊)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해 8월10일자 정령 291호에 의해 “일본 내 사업재개를 목적으로 한 제2회사 설립을 위하여 일본 지점의 재산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점, 그 중에는 “고주파 회사, 고바야시(小林) 광업 등 다수의 한국 귀속 기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같은 “재일 재산은 상당한 거액에 달한다고 추측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재산은 모두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 재일 재산은 재일 기관(지점 등)의 소유가 아니라 그 본사 소유인 것이 명백하고, 본사 재산은 군정 법령 제33호에 의해 모두 군정청에 귀속된 뒤 1948년의 한미 협정에 의해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¹⁸⁾

유진오는 또 제14조의 적용 문제와 관련, 그 권리로부터 한국이 제외되더라도 재한 일본 자산에 관한 한국 측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특별 협정과 관련된 제4조에 삽입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그 전례로서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의 해외 식민지의 독일 자산 접수와 이탈리아 강화조약을 지적하고, 재한 일본 자산은 일본이 한국에서 착취한 결실(fruits)로서 이것이 되돌아오지 않는 한 약소민족의 해방과 장래 일본과의 우호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⁹⁾

또,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데, 유진오는 일한 교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강화조약

16) 「日韓國交正常化の記録(平和條約發行前の日韓關係と日韓會談予備會談)」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九〇九一一二四. 한국의 연합국으로서의 참가는 그 전날에 덜레스가 거부했지만, 어쩌면 시차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부된 것을 일본 외무성이 미국의 기록을 그대로 적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淺野·吉澤·李 『日韓國交資料 基礎資料編 第二卷 日誌·年表』, p. 148.

17) Yu Chin O, 'A Korean looks on the Japanese Peace Treaty (Korea. Sept. 51), 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一一八六一八三六(영문 p. 6. 아래 쪽). 淺野·吉澤·李. 『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 第一期第一卷』, p. 130. 영문으로서 남겨진 것으로 미뤄볼 때 유진오가 영문으로 견해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 측이 한국 측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 등에 발표된 견해를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다.

18)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법률고문 유진오 「일본출장보고서」 (1951년9월10일)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7, 『한일회담예비회담 (1951.10.20-12.4) 본회의회의록, 제1-10차, 1951』, 〇〇九八-〇一一; 淺野·吉澤·李 『日韓國交資料 第一期 第八卷』, pp. 40-44.

19) Yu Chin O, 'A Korean Looks on the Japanese Peace Treaty (Korea. Sep. 1951), 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一一八六一八三六(영문 p. 6. 아래 쪽). 淺野·吉澤·李. 『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 第一期第一卷』, p. 130.

에만 의거함으로써 제일 한국계 자산의 반환 및 재한 일본 자산의 완전 획득을 법적으로 실현하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연합국과 같은 권리를, 우선 분리되는 한국에게도 법적으로 적용시킨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지는 미국에 대한 배상의 일부로 간주한다, 등의 해석을 취함으로써, 미일 간의 문제로서 제일 한국계 자산 반환과 재한 일본 자산 몰수를 확정, 일한 교섭에는 법적 문제의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호소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일본 측이 본 한국의 강화회의 참가 문제

연합국과 같은 권리를 강화회의를 통해 얻고자 한 한국에 대해 일본 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 1951년 4월23일 강화 준비를 위해 도쿄를 방문한 덜레스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에게 강화조약에 한국이 서명하는 것을 수용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²⁰⁾ 그러나 미국 측은 “조약의 실시의 결과 제일 한국인이 연합국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를 취득하고, 이것을 주장해 오면, 일본 정부가 곤란하다”는 점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제15조의 적용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었다.

요시다 시게루 측도 “제일 조선인이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 연합국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서명하는 것에는 이의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각서로써 취했다.²¹⁾ 이는 한국의 참가가 제15조의 적용 제외라고 하는 유보적 조건부이면서도, 일본 측으로부터 거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을 연합국으로 대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곤란한 문제는 제일 조선인이 연합국 국민 대우를 받는 데다, 일본에 있는 구 조선총독부 관련 시설이나 재산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권리가 미치다는 점이었다.²²⁾ 실제로 덜레스가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한 1950년 6월19일, 일본 측은 한국의 연합국으로서의 참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주요 문제는 분리 지역의 당국이 일본 본토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 제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본사가 그 분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또 일본 소재 자산과 그 분리 지역과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제일 자산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일본 측이 우려한 부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덜레스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청구권이 몰려오고 있다”²³⁾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미국의 입장으로서, 이 국가들은 이미 분리 지역에 존재한 일본 자산을 얻었으므로 추가로 일본에 소재하는 자산까지 그 청구권을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사가 그 분리 지역에 존재한다고 해도 일본에 존재하는 그 단체의 자산을 소유하는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not entitle the power [of] corporate assets in Japan)”고 말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

20) 「[一九五一年]四月二十三日午前十時半ないし正午 吉田ダレス會談記録」(三井本館にて 總理、井口、西村、ダレス、シーボルト、ジョンソン、バブコッフ、フェアリー、スピックス), 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六六—一八六一.

21) 「一九五一年四月二三日夕吉田ダレス會談で先方に交付した(イ)對比賠償問題および(ロ)韓國政府の平和條約署名問題に關する補足陳述」, 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六六—一八六一.

22) 실제로 전술의 요시다-덜레스 회담 직후의 1951년 4월 25일에는 제일 연합국 재산 문제에 관한 교섭이 열심히 실시되어, 이 문서가 한국 참가 문제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ダレス使節団との會談經過 一九五一年四月二五日」, 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六六—一八六一.

23) Japanese Property and Claims Questions, June 19, 1950, Box1, Folder; Briefing papers for Dulles, 1950(Japanese Peace Treaty), RG59, E1228, Lot 56D225, National Archives II in College Park, Maryland, U.S.A. (NARA).

구권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겠다는 방침을 신중한 고려 속에서 굳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로서 델레스는 제일 한국계 자산과 관련된 “그런 종류의 청구권이 장점이 되는 것도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선박과 측량 지도 원판에 대한 청구권에 한해 제15조에 준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²⁴⁾

한국의 참가가 중국 문제와의 관련, 혹은 영국의 반대에 의해 6월 중순부터 말까지의 단계에서 실현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가운데²⁵⁾,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언급한 유진오가 법적 논리에 호소해 한국에도 연합국과 같은 권리를 확보하려 한 와중에, 미국 측이 1951년 7월 상순에 정리한 강화조약 제2차 초안 중의 제4조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교섭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즉, 이 초안은 양국 간의 특별협정 체결을 장래에 실시한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제4조 중에서 청구권 상쇄 규정을 포함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1951년 7월2일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 제2차 초안에 대한 일본 측의 관찰을 GHQ에 제출했다. 이 관찰은, 제4조에 있는 특별협정의 “실시는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중전에 제시한 방식(적극 및 소극의 재산의 상속은 각 해당 지역에서 종결된다- 원문)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초안의 규정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하는데 합중국 정부의 절대적인 외교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일본 측의 재산 혹은 청구권에 비해 관치(管治) 당국이나 주민의 일본이나 일본인에 대해 갖는 청구권이 근소(僅少)”하고 “상호 간에 전쟁이 없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이치에 맞지 않게 배상을 청구할 뿐일 것”이기 때문에, “할양 지역의 재산이나 청구권의 상속 문제는 일본 측의 경우는 일도양단으로 각 지역 내에서 종결하고, 서로 일절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⁶⁾

이상으로 일본 측이 상쇄(相殺)를 강화조약 일반의 방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한국에도 적용하려 했던 점은 명확한데, 이 상쇄 방침의 기원은 1947년의 초기 강화조약 문제의 검토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7월 일본 외무성은 배상에 관한 조사서를 정리, 재외재산의 평가를 높임과 동시에, 이것을 중간 배상으로서 철거되어야 할 배상 물자에 포함시키려는 법적 논리를 제시하였다.²⁷⁾ 이를 위해 동원된 것이 이미 멸망한 제국의 법적 논리였다.

따라서 베르사이유 조약의 선례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연합국 측에 의해 조선, 대만, 가라후토(사할린, 樺太)는 독일의 본국 영토의 경우라기보다 오히려 식민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본인 재산의 청산 및 배상 충당의 일익(一翼)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은 오히려 폴란드 등의 경우에 준해야 하고, 가라후토는 일본인 거주역의 역사, 러일 간의 교환 조약 등의 경위를 고려하여, 독일의 해외 식민지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사실상 일본 본토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

24)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李東俊. 2009. 「日韓『船舶』請求權交渉の展開、一九四五-一九六五年」 『中京企業研究』 第三一號.

25) 吉澤文壽. 2005. 『戦後日韓關係-國交正常化交渉をめぐる』 (クレイン), p. 33.

26) 「日韓國交正常化の記録(平和條約發効前の日韓關係と日韓會談予備會談)」 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九〇九-一一二四.

27) 「一三. 在外資産の賠償處理に關する件 調査課 管經 昭和二二、七、五日」 『占領下の對日賠償關係一件調書類(第一卷)』 戦後外交記録, B0003, 四三一 코마. (「在外資産賠償處理」로 약기. 또 본문 중의 코마 번호를 제시함) 다음에서 열람 가능함.

http://gaikokiroku.mofa.go.jp/microfilm/04/m_04_005.html

장해야 하고, 대만에 관해서도 역사적 사정 및 대만에 거주한 일본인이 단순한 식민지적 외지인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제2의 고향으로 정주한 이주민의 성질을 갖는 점 등을 강조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특별 조치를 요망해야 한다.

이 주장은 주변 지역을 내지(内地)의 연장으로 간주함으로써, 독일의 사유 재산 취득 사례에 의거해 일본인의 재외 사유재산 처분 및 반출을 인정시키고자 하는 논리와 연결된다. 이것이야말로 일한 교섭을 일단 파탄시킨, 1953년 10월의 구보타(久保田) 발언의 직접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의 시대, 가령 현지에 남겨진 만주의 중공업 설비나 조선의 광산 등의 재외재산이 사유재산으로 간주되고, 게다가 그 재산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일본 본토로부터 철거되는 물자의 양은 적어진다. 후술하는 유진오가 적용하려 한 제국법제(帝國法制)의 원리와는 반대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제국의 법제는 제국의 청산에 즈음하여 그 방향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여전히 중요했다.

더욱이 일본 측의 사유재산 예외 원칙은 또 하나의 중요한 논리였던 ‘상쇄’와 짝을 이룬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외무성 조사서에서 일본 외무성은 패전국의 입장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사유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외 자산의 접수와 청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전쟁이나 전쟁 이전의 사회에 유래하는 모든 현지 주민 측으로부터의 청구권과의 상쇄를 요구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무성은 “재외 자산의 배상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는 대상은 전쟁에 의한 피해상국 및 그 국민의 손해, 개인 채권 기타 청구권, 군표 기타의 공적 채무 등 모든 현지 관련 청구권을 망라하며, 이로써 전쟁 종결까지의 일절의 청구권을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제국의 청산으로써 전후 배상을 대신하기 위한 정책이 모색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그리고 현지 측의 모든 청구권과 일본의 모든 재외 자산을 상쇄한다는 원칙, 일본 측은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 법적 논리를 구성하였다. 이는 일본 측도 한국과의 직접 교섭을 회피하여 미국을 이 논리에 끌어들임으로써 강화조약에 의해 한국과의 사이에서 청구권 교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려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한 양측 모두 직접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권위에 의존함으로써, 방향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지만, 강화조약에 의해 큰 틀을 결정지으려 했던 셈이다.

일한 쌍방으로부터의 줄다리기 상태에서 미국 측은 재한 일본 자산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수용해 8월13일의 강화조약 최종안에서 제4조에 b항목을 삽입했다. 그러나 그 최종조약안이 통과된 후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는 “Last Moment까지 제4조는 실시 불가능하다”고 일본 측은 주장하고 있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불합리한 요상(要償)을 일본 정부에 제기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일한 간의 대화로 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상호 포기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자주 문서로 제기하고” 있었다.²⁸⁾

실제로 일한 간의 청구권 교섭은 특별협정을 둘러싸고 개시되게 되지만, 군정령 33호가 1945년 12월부터 8월9일로 소급하여 일본인 사유재산을 미군 정청에 귀속(Vest)시켜, 그것을 48년 8월 한국 정부의 독립 직후에 해당 정부에 넘겨줬다고 말하는 처분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를 둘러싸고, 양자는 완전히 다른 법적 논리를 제국법제의 다른 해석을 출발점으로 하여 맞부딪친 것이다. 다음으로 법적 논리의 변천을 그 후의 일한 교섭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도 근거로 하여 논함으로써, 그 배후에서 충돌요인으로 작용한 ‘정의’나 ‘감정’

28) 「條約局長に對する依頼事項(亞二) 割讓地との間の財産請求權處理方式につき、ダレス大使宛意見書とその反響」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六一—一六六—一八六一.

의 문제로까지 깊이 거론하고자 한다.

II. 국민 감정의 대립을 법적 논리의 대립으로 매개하는 것-- 역사 인식 문제의 기원

1. 제4조 (b) 항을 둘러싼 법적 논리와 역사 인식

한국 측의 요구가 어떻게 제4조 (b)항으로서 삽입되었는가, 또 이 조항이 삽입된 정치적 의미는 각 정치 주체에게 어떻게 해석되었던 것일까. 자세한 것은 불분명하지만, 유진오가 강화회의 개최에 즈음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9월10일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측의 해석을 엿볼 수 있다.²⁹⁾ 유진오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한국과 한국인의 자산 및 채권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를 거론, “대일 강화조약 제4조 B항에 따라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 및 일본인의 자산 및 채권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했다. 즉, 미국이 한국 측의 법적 논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 셈이다. 게다가 유진오는 “동조 A항에 따른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한국과 한국인의 자산 및 청구권 문제만이 한일 양국 간에 조약이나 협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청구권 만이 한일 특별협정에 남아 있다는 이 인식은 이후 한국 측의 기본 인식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한국 측의 법적 논리는 1961년 제6차 회담까지 계속된다.³⁰⁾

이 같은 한국 측의 법적 논리는 법인이 영역을 넘어 소유하는 족인(屬人)적 권리에 의거한 것이었다. 미 군정령 제33호로써 접수 대상이 된 회사 재산을 주주 또는 사원이 아니라 회사라는 법인에 귀속시킨 후 그 회사를 다시금 설립 근거 법령에 의거해 구(舊) 제국의 관할에 귀속시킨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속(屬)‘법인’주의 원리와 결합시킴으로써, 가령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 군정령 제33호의 재산 몰수의 효력이 38도선 이남의 남조선(한국)이라는 영역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본인 주주에게서 몰수한 주식 이 한국인에게 불하될 경우 그것은 한국인 주주만의 한국 법인이 되고, 그 한국 법인이 법역(法域)을 넘나드는 재산을 일본 법역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회사의 재일재산에 대해 한국 측은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제국 법제상의 법역론과 속인주권론을 역이용하여, 그것을 제국 해체 원리로서 주장한 것이 유진오가 전개한 법적 논리의 골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법적 논리가 미국을 매개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의 ‘귀속’과 이관은 ‘몰수’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만일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한다는 논리가 대동하게 된다. 이 점을 통해 보더라도 미국의 존재는 일한 간의 협상보다도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법적 논리의 배후에 존재한 국민 정서-- 양자를 매개하는 ‘역사’ 인식

이 같은 법적 논리를 본국 정부를 향해 강조하는 한편, 유진오는 강화조약 당시 일본 국

29)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법률고문 유진오 「일본출장보고서」 (一九五一年九月一〇日)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 문서 등록번호 77 『한일회담예비회담 (1951.10.20-12.4) 본회의회의록, 제1-10차, 1951』, 〇〇九八-〇一一〇; 淺野·吉澤·李 『日韓國交資料 第一期 第八卷』 四〇-四四頁.

30) 「日韓會談問題別經緯 (4) (一般請求權問題) 昭和37. 7.1」 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三-五三三, [原文頁數] 三七-四〇頁; 淺野·吉澤·李 『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 基礎資料編第一卷 問題別經緯』, 一七八-一七九頁.

내정치 상황으로 판단컨대 그 해석에 대해 일본 측이 도전을 시도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이 전면적으로 몰수된 것에 대해 일본인들이 몰래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진오는 한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³¹⁾ 유진오는 또 “본인이 직접 청취한 정보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제4조 B항의 수정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고 강화회의 전권인 요시다 총리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것이 무망하게 되자 ‘사유재산제도씨 서거(私有財産制度氏 逝去)’라는 괴문서를 돌리기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진오가 읽은 ‘사유재산제도씨 서거’라는 괴문서는 사단법인 전국귀환자단체 연합회(전련, 全連)가 강화조약 체결에 즈음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였다. 패전으로 조선과 대륙으로부터 귀환한 귀환자는 출신지와 거주지, 직장·업계 등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를 결성해 일본 국내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군마(郡馬)현의 귀환자가 중심이 된 강화조약 반대 운동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는 도민에게 찬물을 끼얹기 위해, 도쿄 사무소에 조기를 내걸고, 화물 자동차에 ‘사유재산지영위(私有財産之靈位)’라고 쓰인 위패를 쌓아 도내를 돌아다니며 국회의원에게 ‘영결식 거행 통지’를 보내는 등 과격화했다. 당시 조선으로부터 귀환한 일본인 귀환자들은 조선의 주택과 토지, 기업 설비가 배상의 일환으로 접수되었으므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해야한다는 격렬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들이대고 있었다.

‘전련’은 1946년 11월에 발족, 제외재산 보상을 위한 귀환자의 정신적 유대의 중심이 되어 1980년대까지 활동을 계속했는데, 가령 일본을 방문한 딜레스 특사와 애치슨 국무장관 앞으로 혈판(血判) 요망서를 송부하거나, 재미 일본자산 반환을 호소하는 운동을 전개했다.³²⁾ 제외재산에 대해 ‘영결식 거행’을 실행한 배경에는 귀환 과정에서 숨진 전몰자의 존재가 있었다. 귀환자 단체는 ‘제외재산’을 전쟁이 남긴 귀환 유산으로 간주하여 그 보상을 죽은 전몰자에 맹세하였다.³³⁾

국내에서 치열하게 보상 요구를 받는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장차 예상되는 엄격한 요구를 앞둔 일본 정부는 재한 일본 자산과 제일 한국계 자산의 상쇄를 미국에 요구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법적인 상쇄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야말로,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국제법이 점령 당국에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군 정령을 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즉, 군 정령 제33호는 헤이그 육전 법규 중 사유재산 보호 원칙에 종속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법적 논리이며, 그 배후에는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규정한 포츠담 선언의 해석 문제조차 관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일본 측의 법적 논리의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 대만 타이베이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일본에 귀환한 야마시타 야스오(山下康雄)라는 국제법 학자였다. 야마시타는 아이치(愛知) 대학을 거쳐 나고야(名古屋)대학의 국제법 담당으로 있었는데, 야마시타에 따르면 ‘귀속’은 일종의 전시 중 강제신탁 행위에 지나지 않고, 사유재산의 처분 시에는 제3자에 대

31)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법률고문 유진오 「일본출장보고서」 (一九五一年九月一〇日)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 문서 등록번호 77 『한일회담예비회담 (1951.10.20-12.4) 본회의회의록, 제1-10차,1951』, 〇〇九八-〇一一〇; 淺野·吉澤·李 『日韓國交資料 第一期 第八卷』 四〇-四四頁.

32) 「전련」의 임원으로는 穂積真六郎、大野伴睦、田中武雄、川島正次郎 등이 취임하고 있었고, 귀환자의 다수는 자민당 당원으로서 총재선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 자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외재산 법적 처리 촉진 의원연맹’(회장 長谷川峻)도 결성되었다. 總理府大臣官房管理室 『在外財産問題の處理記録-引揚者特別交付金の支給』 (内閣總理大臣官房管理室, 1973年).

33) 1946년 8월 조선으로부터의 귀환과정에서 사망한 육친을 애도하는 집회가 열렸을 때 제외재산을 유산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의 조사가 임혀졌다. 淺野豊美 (研究代表者) 『脱植民地化プロセスとしての戦後日本の対アジア外交の展開と国内制約要因』 (二〇〇三年度~二〇〇五年度、日本学術振興会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 報告書、課題番号15330035), 二〇〇七年五月三十一日.

한 매득대금(賣得代金)에 대해 원(元)소유자는 청구권이 갖게 되는데, 이는 헤이그 육전 협정의 사유재산 불가침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미 점령군은 원칙 없이 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는 군정 명령은 발할 수 없다.³⁴⁾

이러한 일본 측의 법적 논리에 대해 한국 측이 내세운 것이 다음과 같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법적 논리였다. 이것은 원래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이 형성된 기원을 역사로써 문제시하면서, 민족 자결·독립을 우선시하는 법적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 측의 사고방식은 그 근본부터 아직까지 구(舊) 지배 관계의 타성으로부터 지양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깊게 하지 않을 수 없다. 1945년 8월9일 현재 한국의 재산은 그 대부분이 일본이나 일본인의 소유였던 사실에 대해 일본이 정당한 상태였다면서 그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지금 이에 대해 한국 측에 재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곧 새로운 경제적 병합으로 이어질 것이며,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노예 상태에 대해 새삼스럽게 승인을 구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한일 양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의미에 대한 충분히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조약 제4조 B항은 동 제2조 A항과 조응하여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고려한 후에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³⁵⁾

일본 측이 재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공공 부문이 일본인에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무시하고, 제국의 시대가 ‘정당한 상태’였다는 역사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한국 측의 비판이었다. 한국 측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노예 상태’였다는 인식을 드러낸 후, 만일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새로운 경제적 병합으로 이어진다’고 강경하게 항의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병합’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한국 측은 민족 자결 원칙에 따라 국제법 원칙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원래 ‘사유’재산이라고 불리던 것은 조선인을 착취한 부당 이득이고, 민족자결의 원칙 하에서는 수용될 수 없다는 법적 논리를 제시하게 된다.³⁶⁾

두 가지의 법적 논리가 대립했다라고 보기보다도, 그 배후에는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국민 감정’이 존재하고, 이에 의거한 ‘정의’를 요구하는 충동이 논쟁 속에서 서로 다른 법적 논리를 만들어 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진오가 재한 일본 자산을 오랫동안 자행한 착취의 결실로 간주한 데 대해 일본인 귀환자는 그것을 전몰자의 유산으로 간주했지만, 이러한 전혀 상반되는 국민 감정이 각각의 법적 논리와 결합되었으며, 그 매개가 된 것이 바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기억과 결부된 ‘역사’에 대한 인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강화조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외교 협상에 등장한 역사 인식의 문제는 이후 국교 정상화 시에 봉인될 수는 있었어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오늘까지 계승되어 왔다고 말할

34) 야마시타의 법이론은 일본 외무성 문서에 흩어져 있는데, 체계화된 것은 이하와 같다.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集 基礎資料編 第四卷』 [以下、巻数に応じて『日韓国交資料 基礎資料編 第〇巻』と略す] (現代史料出版, 2010年).

35) 「日韓會談第六回請求權委員會議事要録 一九五二年三月一〇日」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五-一〇二二-一一八三.

36) 줄고 「제국청산 과정으로서의 한일교섭」 국민대학 일본연구소 편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서울: 선인, 2010년).

수 있다.

3. 봉인(封印)의 구조와 미국

한국 측이 반발한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역사 인식의 단층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 측의 상쇄 제안을 미국과 일본과의 전승국과 패전국과의 관계를 모델로 해 거부하고자 한 것이었다. 한국 측에서 보면, 재외 일본재산의 몰수 처분은 연합국에 의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 침략 전쟁에 대한 배상·징계의 일환이며, 미군정이 한국에서 선포한 명령은 강화조약의 또 다른 조항(제14조)에서 재미 일본인 자산을 동결·몰수한 정신과 같은 것이었다. 한국 측의 인식은 제국으로서의 일본 전체에 대한 세계적 제재(制裁)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으며, 이 가운데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장 고통 받은 국가³⁷⁾라는 역사 인식을 전제로 했다.

반면, 일본 측은 귀환자를 포함한 일본 국민 일반도 전쟁의 피해자라고 하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제3차 한일회담의 석상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종전(終戰)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인은 빨가벗겨져 돌아갔다는 점을 매우 섭섭하게 말했다”면서 동정을 표시하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첫째, 한국이 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단행했다는 점, 둘째, 그것도 한국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행해진 조치로, 그 일환으로 한국에서 취해진 것이라면서, “왜 일본은 미국에 있던 일본 재산의 몰수에는 의심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있던 일본 재산의 처분만을 불평하느냐”³⁸⁾고 반론을 전개했다.

이에 맞서 일본 측은 연합국의 일본 재산 몰수를 그 이상의 배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본이 동의한 제14조와, 한일 분리 후 관계 원칙을 정한 제4조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한국 측은 ‘해방 국민’은 ‘전승국 국민’이 갖는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고 재반박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미국은 강화조약의 해석에 대해 권위 있는 최종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2조는 만일 “이 조약의 어느 한 당사국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은 어느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위해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힘으로써,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조약 비준국은 “모든 분쟁에 관한 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특별한 합의 없이 일반적으로 수락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일본은, 해방 국가는 전승국 이상의 입장이라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엄하게 단죄하고 재한 사유재산에 대한 일본 측의 청구권을 거부하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 한때 니시무라(西村熊雄) 조약국장을 중심으로 제네바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한 흔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했는데, 일본 측으로서는 군 정령 33호의 법적 ‘효력’인가 아닌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초부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파악되지 않지만, 이 제소는 취해질 수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 한 것이 미국에 중재 요청이었다. 미국이 내놓은 중재 방안은 재한 일본인 사유 재산에 대한 일본 측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37) 「對日戰爭賠償調査」, 淺野豊美·吉澤文壽·李東俊『日韓國交資料 基礎資料編 第3卷』現代史料出版, 2010年.

38)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제2차 청구권 위원회 경과보고」(1952년 2월23일),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86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8차, 1952.2.20-4.1』, 299-302; 淺野豊美·吉澤文壽·李東俊『日韓國交資料 第一期 第九卷』, 13-14頁.

도, 그 재산 취득과 한국 측의 대일 청구권이 “관련이 있다”[relevant]면서, 그 만큼의 부분적 상채를 요구하는 절충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부분적 상채를 전제로 한 일본 측의 재한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미국이 거부한 것을 일본 측이 수용한 것은, 1957년 12월31일 한일합의서의 체결을 통해서이다. 이 한일합의서는 “미국 정부의 견해 표명을 기초로, 쇼와(昭和) 27년 3월26 일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회담에서 일본 측 대표가 행한 재한 재산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철회 한다”는 것을 일본 측이 공식 표명한 것이었다. 이 성명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만든 것은 일본 외무성의 나카가와(中川融) 아시아 국장과 김용식 공사의 수습 차례에 걸친 비공식 회담, 그리고 당시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대만과 동남아 국가 방문과 더불어 한국과도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합의서도 재한 일본자산에 대한 몰수처분을 제14조 수준으로 승인하기는 했지만, 제15조에 기초한 재일 한국계 자산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까지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견해는 재한 일본자산의 몰수에 의해 한국 측이 재산을 획득한 것이 한국 측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관련’에 근거해 제15조에 상당하는 재일 한국계 자산에 대한 한국 측 청구권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채’되어 감액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일본 측이 재한 일본자산 처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협상은 다시 고착화했다.³⁹⁾

한국 측은 이 같은 타협을 거부했다. 이 후 협상은 박정희 정권이 성립한 후 미국이 금액까지도 중재하는 형태로 간신히 정리되었다. 결론만을 정리하자면, 1965년의 기본조약은, 청구권의 실제 크기를 금액으로 환산한 부분에 대해선 한국 측의 주장에 맞추는 한편, 청구권의 형식·명목은 일본 측의 주장에 맞춘 것이 되었다. 요컨대, 상호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일본 측이 원한 상채가 실현되고, 그것과는 별도로 일본 측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생산물·용역을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재한 사유 재산을 상실한 일본인 귀환자에 대한 국내보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화조약 제26조에서 최혜국 대우에 따른 의무⁴⁰⁾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미국의 자금(資金) 이니셔티브

한일 간의 대립을 목도하면서 내실과 형식을 각각 분리함으로써 해결을 위한 일정한 국제적 틀을 제공한 것이 미국의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니셔티브가 금전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강화조약 제14 조에서 ‘직접 점령 경비’와는 구분되어 ‘기타 청구권’으로 자리 잡은 가리오아 경제부흥 원조 자금에 대한 일본 측의 대미 상환 의무를 미국이 감액해 준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부흥 원조 비용에 해당하는 간접점령비는 미국 측의 주장으로 약 19억 달러까지 이르렀지만, 그 반환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은 1961년 6월22일의 이케다-케네디 회담이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듬해 1월19일에 체결된 “일본국에 대한 전후 경제 원조의 처리에 관한 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이른바 가리오아 상환 협정은, 서독 수준의 3분의 1 상환 비율

39) 太田 『日韓交渉-請求權問題の研究』, 155-158頁.

40) “일본국이 어느 국가와의 사이에 이 조약이 정한 바보다도 더 큰 이익을 그 국가에 제공하는 평화 처리 혹은 전쟁청구권 처리를 행했을 경우에는, 이것과 동일한 이익이 이 조약의 당사국에도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에 따라 일본의 대미 채무를 우선 감액하고, 더욱이 액면 분에서가 아니라, 그 감액 분으로부터 일본 측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던 대미 채권을 공제하는 관대한 것이었다. 일본이 갖고 있던 대미 채권으로는, 미군 점령의 통제 경제 하에서 점령군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나 오키나와로 갖고 간 물자 대금 인 '조선 채권'·'류큐 채권'이 포함되었고, 더욱이 한일 간의 오픈 계정에 의한 무역 대금으로 청산되지 않은 부분도 일본의 대미 채무로부터 공제하도록 인정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대미 가리오아 채무는 최종적으로는 4억9000만 달러로 감액되어 연간 2푼5리의 이자를 붙여 15년 강에 걸쳐 6개월 마다 지불하는 것만으로 귀착되었다.⁴¹⁾ 이 결정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61년 5월 일본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청구권 보상을 대폭 증액해 5억 달러 전후로 검토하는 방안을 이세키(伊關佑二郎) 외무성 아시아 국장 주변으로부터 타진되기 시작했다.⁴²⁾

가리오아 채무 상황과 관련된 미일 간의 교환 공문은 “자금의 대부분을 저개발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에 관한 미국의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한다”,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신속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미일 양국이 “계속해서 수시로 상호 긴밀한 협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후 일본의 경제 협력 관련 제도의 기원도 가리오아 지원금에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원조 물자를 구입했을 때의 대금이 적립된 “대충자금(見返資金) 특별 회계”, 이것이 형태를 바꾼 “산업 투자 특별 회계”로부터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설립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1960년부터 계획되었다.⁴³⁾ 한일 유상 경제 협력은 이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리오아 채무 상황과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 자금의 대폭 증액은 표면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같은 시기에 각각의 큰 범위가 결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단계에서의 일본 측 메모 혹은 미 국무부 내부 의견 구신 등의 방증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외무성이 독일의 가리오아 채무 문제를 조사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시에는, 아테나워 총리가 상환 비율을 3분의 1로 미국이 결정한 것에 대해 독일의 재외 재산 상실 분에 대한 대가라고 서독 의회에서 발언 한 사실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는 삭제되었다. 또한,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 1958년에 생산된 문서는 가리오아 채무 감액조치에 동의하면서도, 다만 그럴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제협력 자금을 대폭 증액할 것, 일본이 미군기지 제공에 대해 편의를 봐줄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더욱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이 경신된 뒤 직후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는 다음 목표로 가리오아 채무 문제의 확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해 기시 총리는 만주국에 관여한 책임자로서 스스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선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방증(傍證)과 한일 협상에 대한 세심한 분석의 결과, 일본 전후사의 최대의 밀약이라고 할 수 암묵적 양해가 미일 당국자 간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가리오아 채무 감액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대일 편의가 제공됨으로써, 미일 간의 강화조약의 법적 틀 위에 한일 국교정상화의 토대가 한국 국내의 정통성이 결여 된 채 강제로 놓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경제와 법의 양면으로 구성된 이니셔티브에 의해 일본의 제국은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종적으로 해체되어 한일 간에 새로운 국민국가 간의 정상화한 관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륙과 해양에 남겨진 일본인 귀환자 600만명을 실어 날

41) 外務省『外交青書』(外務省, 1962年)第6号, 18-22頁.

42) 李鍾元「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會談とアメリカ(二)」『立教法學』第77号, 2009年, 115-116頁.

43) 國際協力銀行編集・發行『日本輸出入銀行史』2003年3月, 4-5頁.

은 미국 수송선 LST의 임차료가 증전 처리 비용으로 지불된 것을 출발점으로, 초토화한 일본 본토의 부흥 비용이 미국으로부터 원조되고 그 상환을 위해 마련된 대충자금특별회계가 이번에는 전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돌아온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럼 제국 해체와 증전 처리와 함께 발생한 대일 원조자금 상환의무를 미국이 일본에 크게 면제해주는 것을 지렛대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미국이 중재해 대폭 증액토록 하는 동시에, 일본 측의 ‘역(逆) 청구권’도, 한국 측의 청구권도 모두 일방적으로 각자가 포기한다는 상쇄를 실현함으로써 한일 경제협력과 청구권에 관한 최종 협정이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 감정의 측면에서 본 바와 같이 ‘정통성’이 부족한 정상화, 그 결과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오늘날 ‘식민지 책임’이라고 불리는 ‘식민지 지배의 청산’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나오며

재일 한국계 재산과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을 둘러싸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법적 틀을 어떻게 한일관계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청구권 협상의 출발점이었다. 원래 해방·분리된 이후 상호 간의 청구권 문제는 전전(戰前)의 제국주의 시대에 형성된 관민(官民)의 복잡한 제도·조직과 관련된 재산·채권의 청산이라는 문제에, 제2차 세계대전과 동반된 총력전 시대에 식민지에 대해 전개된 사람과 물건의 동원에 대한 청산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었다. 게다가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논하는 지표로서 연합국 간의 재외 재산 배상과 관련된 틀이 있었다. 또한, 본론에서는 논하지 못한 문제이지만, 일본 국민의 전쟁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내보상 문제와도 한일 양국의 청구권이 연동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는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같은 전장(戰場)으로 향했는데 “왜 한국인만 보상을 받는가”). 국민감정의 최종 단계에서의 분기점은 패전과 귀환, 해방과 귀환이라는 각각의 정치적 격변이었지만, 그 이전의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적 사회 속에서 다양한 집단마다 감정이 표출되고, 그것이 해방·분리에 의해 태어난 새로운 국가와, 그 체제 속에서 ‘국민’적 감정으로서 변화해 왔던 것이 한일협상이 전개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게다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해와 가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 한일협상은 통상적인 국가 간 관계를 전제로 한 외교라는 범주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패전을 계기로 한 국가 분리 문제이며, 분리 국가와의 외교 (분리된 측은 ‘해방’국이라고 인식)라는 점에서 연합국·분리국·패전국 간의 전시 및 평시의 국제법적 관계의 해석 논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와 국내라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이해가 복잡하게 전개, 사람과 물건에 어떻게 경계를 그을 것이냐라는 문제 자체가 각각의 국민감정과 얽혀 정치 문제화하는 국내상황(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어업과 영토, 재외 재산)을 뒤에 떠안은 외교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일 협상은 분석하는 측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심각한 도전을 강요하여, 기억과 감정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그러한 대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 반증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정치 주체들의 법적 논리와 그 충돌의 위상을 ‘정의’를 담보한 논리에 맞게 추구함으로써 그 배후에 있는 각각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유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협상의 타결은 미국의 중재에 의해 이뤄졌지만, 태동한 정상화 이후의 구조는 당시 한국의 엘리트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의와 이에 기초한 책임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배후에는 일본 국내의 사상적 국내 냉전상황, ‘근대화’를 축으로 한 탈선(脫線)과 전복(顛覆)에 의해 전쟁에 돌입한 것을 일시적인 실수로 간주하는 역사 인식, 그리고 그것과는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전개된 경제 협력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다. 국민적 신념·감정에 근거한 정의의 모습이 상호간에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모호한 빛깔(玉虫色)의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를 만들어 낸 미국의 이니셔티브가 최근까지 유효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지개 빛깔의 미묘한 균형이 깨진다면, 그것은 다시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틀은 이번이야말로 국민 정서면에서의 화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방·분리에 거슬러 올라가 전후 경제 성장의 그늘에 숨겨진 채 다양하게 왜곡되어 정치화되어 온 문제를 이제 경험적 방법으로 밝혀냄으로써 상호 간의 국민 감정 자체의 역사적 기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자신 속에 존재하는 타고난 국민적 감정을 차가운 이성으로 관찰하는 한편, 상대의 그것에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고로써 ‘지역’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과 이성의 틀을 역사 연구와 기억의 점검을 통해 만들어낼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역사 문제는 어떻게 외교로부터 떼놓을까라는 관점만이 강조되어 왔지만, 외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늘려가기 위해 그 작업은 불가피하다. 제국의 청산을 둘러싼 주변 지역과의 사이에서의 전후(戰後) 외교의 연구는 자료의 공개와 더불어 겨우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법학적 분석과 그 배후에 있는 사회학적 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앞으로 국경을 넘어선 연구의 진전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부록]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日本國との平和條約

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Title] **Treaty of Peace with Japan**

[Place] San Francisco [Date] September 8, 1951

Japanese and Korean Source is from Prof. Akihiko Tanaka, while original source is from *Shuyo-Joyakushu*, pp.5-32, *Japan's Foreign Relations-Basic Documents*, Vol.1, pp.419-439.

Article 4

(between Japan and separated region; Korea, Taiwan, Sakharin and Mariana islands: Asano)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The property of any of the Allied Powers or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shall, insofar as this has not already been done, be return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now exists. (The term nationals whenever used in the present Treaty includes juridical persons.)

(b)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dispositions of property of Japan and Japanese nationals made by or pursuant to directive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any of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s 2 and 3.

(c) Japanese owned submarine cables connecting Japan with territory removed from Japanese control pursuant to the present Treaty shall be equally divided, Japan retaining the Japanese terminal and adjoining half of the cable, and the detached territory the remainder of the cable and connecting terminal facilities.

CHAPTER V

CLAIMS AND PROPER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Nations; Asano)

Article 14

(a) It is recognized that Japan should pay reparations to the Allied Powers for the damage and suffering caused by it during the war. Nevertheless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 resources of Japan are not presently sufficient, if it is to maintain a viable

economy, to make complete reparation for all such damage and suffering and at the same time meet its other obligations.

Therefore,

1. Japan will promptly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llied Powers so desiring, whose present territories were occupied by Japanese forces and damaged by Japan, with a view to assisting to compensate those countries for the cost of repairing the damage done, by making available the services of the Japanese people in production, salvaging and other work for the Allied Powers in question. Such arrangements shall avoid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liabilities on other Allied Powers, and, where the manufacturing of raw materials is called for, they shall be supplied by the Allied Powers in question, so as not to throw any foreign exchange burden upon Japan.

2. (I)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II) below, each of the Allied Powers shall have the right to seize, retain, liquidate or otherwise dispose of all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a) Japan and Japanese nationals,

(b) persons acting for or on behalf of Japan or Japanese nationals, and

(c)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by Japan or Japanese nationals,

which on the first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Treaty were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specified in this sub-paragraph shall include those now blocked, vested or in the possession or under the control of enemy property authorities of Allied Powers, which belonged to, or were held or managed on behalf of, any of the persons or entities mentioned in (a), (b) or (c) above at the time such assets came under the controls of such authorities.

(II) The following shall be excepted from the right specified in sub-paragraph (I) above:

(i) property of Japanese natural persons who during the war resid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concerned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Allied Powers, other than territory occupied by Japan, except property subjected to restrictions during the war and not released from such restrictions as of the date of the first coming into force the present Treaty;

(ii) All real property, furniture and fixtures own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and used for diplomatic or consular purposes, and all personal furniture and furnishings and other private property not of an investment nature which was normally, necessary for the carrying out of diplomatic and consular functions, owned by Japanese" diplomatic and consular personnel;

(iii) property belonging to religious bodies or private charitable institutions and used exclusively for religious or charitable purposes;

(iv)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which have come within its jurisdiction in consequence of the resumption of trade and financial relations subsequent to September 2, 1945, between the country concerned and Japan, except such as have resulted from transactions contrary to the laws of the Allied Power concerned;

(v) obligations of Japan or Japanese nationals,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tangible property located in Japan, interests in enterprise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Japan, or any paper evidence thereof; provided that this exception shall only apply to obligations of Japan and its nationals expressed in Japanese currency.

(III) Property referred to in exceptions (i) through (v) above shall be returned subject to reasonable expenses for its preservation and administration. If any such property has been liquidated the proceeds shall be returned instead.

(IV) The right to seize, retain, liquidate or otherwise dispose of property as provided in sub-paragraph (I) above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Allied Power concerned, and the owner shall have only such rights as may be given him by those laws.

(V) The Allied Powers agree to deal with Japanese trademarks and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rights on a basis as favorable to Japan as circumstances ruling in each country will permit.

(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present Treaty, the Allied Powers waive all reparations claims of the Allied Powers, other claims of the Allied Powers and their nationals arising out of any actions taken by Japan and its nationals in the course of the prosecution of the war, and claims of the Allied Powers for direct military costs of occupation.

Article 15

(a) Upon application made within nine month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 concerned, Japan will,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such application, return the property, tangible and intangible, and all rights or interests of any kind in Japan of each Allied Power and its nationals which was within Japan at any time between December 7, 1941, and September 2, 1945, unless the owner has freely disposed thereof without duress or fraud. Such property shall be returned free of all encumbrances and charges to which it may have become subject because of the war, and without any charges for its return. Property whose return is not applied for by or on behalf of the owner or by his Governmen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may be disposed of by the Japanese Government as it may determine. In cases where such property was within Japan on December 7, 1941, and cannot be returned or has suffered injury or damage as a result of the war, compensation will be made on terms not less favorable than the terms provided in the draft Allied Powers Property Compensation Law approved by the Japanese Cabinet on July 13, 1951.

(b) With respect to industrial property rights impaired during the war, Japan will continue to accord to the Allied Powers and their nationals benefits no less than those heretofore accorded by Cabinet Orders No. 309 effective September 1, 1949, No.12 effective January 28, 1950, and No. 9 effective February 1, 1950, all as now amended, provided such nationals have applied for such benefits within the time limits prescribed

therein.

(c) (i) Japan acknowledges that the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rights which existed in Japan on December 6, 1941, in respect to the published and unpublished works of the Allied Powers and their nationals have continued in force since that date, and recognizes those rights which have arisen, or but for the war would have arisen, in Japan since that date, by the operation of any conventions and agreements to which Japan was a party on that date,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such conventions or agreements were abrogated or suspended upon or since the outbreak of war by the domestic law of Japan or of the Allied Power concerned.

(ii) Without the need for application by the proprietor of the right and without the payment of any fee or compliance with any other formality, the period from December 7, 1941, until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 concerned shall be excluded from the running of the normal term of such rights; and such period, with an additional period of six months, shall be excluded from the time within which a literary work must be translated into Japanese in order to obtain translating rights in Japan.

帝国清算過程としての日韓交渉-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日米関係との関連から¹⁾

浅野豊美 (中京大学)

(要旨)

本論文は、一九五二年からの日韓会談を、連合国と日本との間で一九五一年に調印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枠組との関係、特に、国際条約の日韓関係への適用のあり方をめぐる交渉と論争を中心に再検証したものである。「請求権問題」が政治問題していった背後には、日韓双方が各々作り上げた相容れない講和条約解釈と、それに依拠した自己を正統化する法的論理があり、それこそが国民的感情や歴史認識までも外交上の政治問題と化していった主要な原因と考えられる。

第一次日韓会談は、一九五一年九月の講和条約調印から、翌年四月末の批准発効の谷間の期間に開催されたが、その際、韓国側は連合国としては認められなかったものの、「連合国としての姿勢」で臨んでいた。ゆえに、連合国側が放棄した戦争被害賠償そのものを韓国側は要求せず、あくまでも略奪された物資の返還と、在日連合国財産返還という講和条約規定に依拠して、韓国側は対日請求権をまとめていた。つまり、韓国側の対日請求権八項目は、地金・地銀をふくめた現物返還（地図原版と文化財）と、在日韓国系財産（王家や朝鮮銀行の在日資産・債権を含む）という二本立てから構成されていた。つまり、韓国は連合国同様であるという高い国家倫理を踏まえた立場から、韓国側は、在日韓国系資産を在日連合国資産（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一五条で返還義務が定められる）並みに扱い返還すること、且つ、在韓日本資産を在米日本資産同様に没収（同一四条による）することの承認を日本側に要求していた。これは、戦争賠償調書で要求された賠償は在韓日本資産により相殺されたという立場に立った上で、現物返還と在日連合国資産返還要求を韓国側の請求権の中心に置くものであった。

それに対して、日本側が主張したのは、在韓日本資産中でも私有財産への日本側の権利は残っているため、その放棄に同意するためには、韓国の在日資産への請求権を放棄することが条件であるというものであり、在日連合国(韓国系)資産と現物返還要求は、在韓日本人私有財産分と相殺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異なる相殺論に立ったものであった。その背後には財産を失った日本人引揚者への日本政府の補償問題、さらには日本の経済復興を最優先する姿勢も存在していた。

両者の対立は、講和条約の在韓日本資産の「効力」を日本側が承認した第四条が、連合国と日本との間で在連合国日本資産と対日賠償との相殺を規定した第一四条より、強いのか（在韓日本資産への日本の請求権はない）、それとも弱いのか（在韓日本資産への日本の請求権は日本側が同意しない限り残っている）を焦点として展開したが、その論争は解放国民と戦勝国民の法的権利の強弱のみならず、解放以前の「支配」状態に対する歴史認識の問題へと発展していった。つまり、日本人「私有」財産は、総督府という公権力による保護と朝鮮人の「搾取」によって蓄積された不当利得なのか否かの問題である。その対立を仲介したアメ

1) 本稿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帝国清算過程としての日韓交渉」『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東アジア冷戦編』（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法政大学出版局、2011年2月）を韓国語での発表に向けて一部修正したものである。

リカは、賠償枠組みの外に存在した日本の対米債務返済義務を減額する形で具体的な影響力を行使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日韓の請求権協定は、法的にも実際的にも関連したものであった。

本報告は、一貫性や体系性を不可欠の要素として作られる法的な諸論理を分析の対象とした「法史」的分析と、法や権利をめぐる政治外交史分析を組み合わせることにより、問題の全体構造を論じ、それが現代に至るも解決されることなく封印されてきたことを論じた。日韓双方の「法的正義」に支えられる国民「感情」と歴史「認識」は、今日、長い間だの封印から解かれ再び全面的に衝突を始めているが、戦後補償・植民地責任全般の解決を互いの国民感情にも受け入れられるものとして実現するためには、こうして封印されてきた請求権をめぐる問題の構造を、まず戦後史の分析を通じて明らかにした上で、近代全般にわたる歴史的検証と、現代的価値観に立脚した政治的枠組みの準備が必要となろう。戦後史を学問的に把握することにより、互いの国民感情の歴史性を問い、それを戦後史の産物として「理解」することからこそ、今に至るも残されている問題を、互いの国民感情に受け入れられるものとして解決していくための歩みは始まると信じた。

Keywords :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請求権、在外私有財産、賠償、相殺、ガリオア債務

一. 日韓交渉の初期条件として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

1. 連合国と日本との間での賠償枠組み－在外日本資産と請求権相殺の起源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は、第二条で「朝鮮」の「独立」を日本が承認するほか、台湾や千島など、日本の主権を「放棄」したり「返還」したりする地域を全体として明示することで、帝国としての日本の解体を国際的に宣言する条約としての意味も帯びていた。しかし帝国解体後に現地を実効支配する「施政当局」と日本との間の関係については、あいまいな部分が相当残された条約であった。第四条はそうした施政当局と日本政府とが、各々の国民や政府が相手方に対して有している財産や債権、そして各種の補償要求全般から構成される請求権 (claims) については「特別取極」を結ぶべきと規定し、実体法に相当する部分の四条(b)項で「合衆国軍政府により、又はその指令に従って行われた日本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の処理の効力を承認する」とした。四条(b)によって韓国が享受したのは、アメリカ軍政庁 [USAMGIK、正式名称は「在朝鮮米陸軍司令部軍政庁」] が一九四五年一二月六日に発した軍政令三三号による「財産処理の効力」である。この軍政令は同年八月九日に遡及して日本人の一切の財産取引を無効とし²⁾、日本人の一切の所有権 (title) は米軍政庁に「帰属」 (vest) させられ「所有」 (owned by) されるとしたものであった。³⁾ここから、純粋に軍政令三三号の対象となった財

2) 軍政令三三号の内容は、「一九四五年八月九日以後日本政府、その機関又は該国民、会社、団体、組合、該政府のその他の機関或は該政府が組織又は取締る団体が、直接間接に全部又は一部を所有又は管理する金銀、白金、通貨、証券、銀行勘定、債券、有価証券並に本軍政庁管轄内に存在するその他すべての種類の財産及びその収入に対する所有権は、一九四五年九月二五日付をもって朝鮮軍政府が取得し、朝鮮軍政庁が該財産を所有す」というものであった。

3) 軍政令三三号発出が、トルーマンの賠償使節団であるポーレー使節団の訪日・訪韓に合わせて行われたことについては以下を参照。浅野豊美「ポーレー・ミッション—賠償問題と帝国の地域的再編」、小林道彦・中西寛編『歴史

産の定義だけをめぐっても、八月九日に訴求することが法の一般原則から見て許されるのか否か、遡及法が有効であったとしても「本軍政庁管轄内」に所在する財産には本社を韓国に有する会社の在日資産が含まれるのかという地理的範囲の問題が発生した⁴⁾。

最大の問題は、帰属(vest)が即、没収という法的効力を持つものかどうかという点であったが、その解釈をめぐる論争の水準点となったのが、日本とアメリカ等の連合国との間の講和条約における賠償枠組みであった。

日本と連合国のあいだで、私有財産を含めた在外財産の接収をもって、賠償と見なすと定めたのが、第一四条であった。つまり、この一四条による日本の在外財産接収の承認により、連合国はそれ以上の賠償は求めないという枠組みが作られたのである。この一四条は、(a)と(b)という二つの部分から構成され、(a)で連合国内にある日本人私有財産の没収を日本政府が外交使節と宗教団体の財産をのぞいて承認することとし⁵⁾、その代わりとして、(b)で連合国側が日本に対して戦争賠償を打ち切り、連合国側の「すべての賠償請求権」（戦闘行為に由来する物的人的損害に対する賠償）、戦争遂行中に日本側でとられた行動に由来する「他の請求権」（軍票支払い等）、ならびに戦争後における「占領の直接軍事費」を連合国が放棄するとしたものであった。

この一四条の例外とされたのが、第一に二国間交渉による生産物と役務による追加賠償の可能性、第二に在日連合国財産、第三に戦前債務、第四に民間人が食糧や医薬品を援助された際の間接軍事費、すなわち占領経費であった。⁶⁾

第一の例外ともいべき一四条(a)項1は、ビルマやフィリピン等の旧連合国やその植民地であった地域が希望すれば、役務と生産物による二国間賠償協定を結ぶ義務が日本にあることを定めたものであった。日本が原材料購入のための外国為替の負担を被らないという条件付きではあったものの、工場設備そのもので支払う資本賠償以外に、この規定によって、生産物と役務による賠償が二国間協定で可能となった。のちの日韓国交正常化の際の経済協力も、この規定

の枠を越えて— 20世紀日中関係への新視点」（千倉書房、二〇一〇年）、第八章。

4) 山下康雄「在韓日本資産に対する請求権」『国際法外交雑誌』第五一卷第五号（一九五三年）。

5) 一四条(a)項2が相殺を前提にして賠償分としての連合国による在外財産接収の規定であった。これは各連合国に所在しその「管轄の下」にあるすべての日本の「財産、権利及び利益」を、「差し押さえ、留置し、清算し」「処分する権利」が連合国側にあるとしていた。その際、「処分」されるべき財産の定義（I）と、処分から除外される例外項目（II）、その例外に関する清算代金の返還方式（III）、清算にあたっての準拠法は各国国内法であるべきこと（IV）が規定されていた。

一四条(a)2（II）は在外財産接収の例外規定であったが、一五条一八条との関係で重要であった。接収の例外とされたものは、連合国における外交館施設と外交官私有財産（ii）、宗教・慈善団体財産（iii）、そして円建ての日本政府と「日本国民の債務、日本国に所在する有体財産に関する権利、権原、若しくは利益、日本国の法律に基づいて組織された企業に関する利益又はこれらについての証書」（v）であった。これらの規定は、たとえ株券や社債がアメリカにおける日本資産接収によって処分されても、それらが円建てである限りその効力は日本にある担保物件や株式会社本体には及ば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た。後述するように、韓国からの請求権にはこの種の在日資産が包含されていたが、分離国であるが故に単純には排除できない側面が存在していた。実際、この規定（v）からも、アメリカで接収された証書に基づくのではなしに、戦前の日本において日本(法)人がアメリカ企業や政府に有していた債権が除外され、一八条によって有効となっていた。

6) 占領中に日本に工場設備搬出という形で課された中間賠償分も払い戻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

に準じたものと考えられる。連合国が全体として賠償を放棄しても、日本は各連合国から二国間協定を求められたときには、それ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法的根拠がここで定められた。⁷⁾ 在外財産接収による賠償の第二の例外となったのが、一五条(a)による在日連合国財産の返還規定である。これは、日本国にある連合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又は利益で、戦争期間内のいずれかの時に日本国内にあったものの返還は、日本国の責任とする規定であった。連合国(民)の動産・不動産等の有体財産と、債権・株式等の無体財産を「返還」し「損害」を償う義務が日本に課された。この規定こそ、のちに韓国側が在日韓国系資産を請求してくる根拠となった規定と考えられる。

実際、一九五一年四月二五日、外務省とアメリカの実務者との間の話し合いが行われ、在日連合国財産問題について、日本側が連合国民財産の要補償額を二〇〇億円から三〇〇億円の間で見積もり、旧円から新円への切り替え倍率を一二〇倍から一五〇倍とすることの当否が話し合われたが、その際の当該文書は韓国参加問題とともにつづられている。⁸⁾ 七月一三日には財産の定義や返還形態に関する実務的な問題を規定した日本の国内法「連合国財産補償法案」が日米交渉での了解を経て閣議決定され、講和条約一五条中で言及されたが、この法案審議の際に韓国人の財産に言及するアイデアがアメリカ側から出されたが、日本側によって拒否されている。つまり、韓国が連合国となることによって、在日連合国財産として日本政府が返還に責任を有する金額は、飛躍的に増加すると考えられた。その詳細は、法的論理の分析のところで述べたい。

第三の例外である一八条は、戦前から日本政府と企業・個人が負っていた債務を有効と認めた規定で、相互的なものであった。戦前の外債の英仏米合わせてドル建てに換算した合計債務は、未払い利子累積額と元本も入れて四億ドル余りであった。⁹⁾ さらに、外債償還に戦争が与えた損害分が円建てで五九億円、有体財産への損害が六一億円、連合国からの戦前日本への株式投資分が日本企業の資産・営業内容の変動によって資産価値を低下させた分が、「物価変動を一五〇倍」「企業の損害率を三〇%乃至五〇%」に見積もって六〇億円から一〇〇億円、と見積もられていた。¹⁰⁾

さらに、第4の例外となったのが、間接占領経費とされたガリオア債務であり、アメリカの対日請求分として約一九億ドル存在していた。

以上のような枠組みは、アメリカが第一次大戦後の金銭賠償失敗の教訓を踏まえ、在外枢軸国資産の私有財産を含めた接収による資本賠償方式を法的な軸として、¹¹⁾ その例外を柔軟な未来の国際政治的決定にゆだねたものといえる。講和条約の中では、日本が「戦争中に生じさせた損害及び苦痛」に対して「償いをする願望」(一六条)はあるが、日本経済の存立を維持しつつ、これら一五条・一八条に由来する例外としての「他の債務を履行」しながら「完全な賠償」を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一四条(a)の冒頭)という状況が記されている。見方を変えれば、第一の例外である二国間交渉による生産物と役務、第四の例外である占領経費、いずれも明確な金額が算出されていない将来の支払いを日本側に要求できる権利を留保し

7) 入江『日本講和条約の研究』二八一頁。

8) 「ダレス使節団との会談経過 一九五一年四月二五日」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一―一六六―一八六一。

9) 『日本外交文書 平和条約調書 第三冊』、一五五頁、および『同 第二冊』、七四五頁。

10) 『日本外交文書 平和条約調書 第二冊』、六七三―六七四頁。

11) その誕生の経緯等、詳しくは以下を参照。Toyomi Asano, 'Between the Collapse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with South Korea,' Comparative Imperiology I, ed. Kimitaka Matsuzato, by Slavic Research Center of Hokkaido University, p109-129.

ながら、在外財産接収によってそれ以上の賠償を法的に打ち切るという枠組みが設けられる一方、日本経済が復興を実際に遂げたときには、その復興した分に依りて、アメリカのみならず、アメリカがコントロールする「自由世界」に向けて、徐々に賠償を支払わせる仕組みが意識されていたといえよう¹²⁾。日本自体の経済復興が進むかどうかは未知であった初期局面において、こうした賠償枠組みは「寛大な賠償」として機能したが、日本経済の成長が対米輸出市場を主な販売先として軌道に乗っていくに依りて、日本経済が支払い可能となる余剰を、アメリカの国民と政府に、そして自由主義世界に属した東南アジアから韓国に対して、経済協力という形で支払わせることが可能となったのである。アメリカによる戦後日本のコントロールのもとに、重化学工業設備の集中する日本経済の復活をすすめ、「アジアの工場」として活用する体制が存在したことを、賠償と経済協力をめぐる法的枠組みは示している。次に、韓国との関係においてこうした枠組みがどのように機能を始めたのかについて論じていきたい。

2. 韓国の連合国としての講和会議参加の追求

大韓民国建国後の韓国政府が真っ先に取り組んだのは、『対日戦争賠償調査』の取りまとめであったが¹³⁾、それは講和会議参加の資格を証明するためにGHQに提出すべくまとめられたものであった。「多年の間日本の強奪で最も多く呻吟した」のが韓国であるという認識の上に、戦勝国の立場で講和会議に参加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実際、李承晩大統領は、建国直後の一九四八年八月一七日に対馬返還、文化財返還、賠償を提起し、韓国国会も同年十一月二七日に、戦時中に韓国の国民が徴用・徴兵されたことに対する賠償要求の建議を採択している。これに基づいて、韓国政府が民間から資料を集め、『対日戦争賠償調査』が編纂され、GHQに提出されたのは、翌一九四九年三月二六日のことであった。その前月に設置されたばかりの駐日韓国代表部公使が総司令部に提出し、講和会議への韓国参加も合わせて要求されたと考えられる。当時の韓国は、アメリカが「政治的には民主主義安定勢力としての、経済的には東洋の工場としての日本登場の合法化」を推進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の強い不信を持っており、連合国の一員として講和会議に参加することで、韓国としては「危険性の根本的免除を徹底的に監視」し、「軍国主義、侵略主義的残存勢力の完全掃討を要求」すると同時に、「対日賠償に於いては、韓国が保有する莫大な債権の返済を追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であった。¹⁴⁾

連合国として講和会議に韓国が参加しようとしていたことは、当時韓国の外交部長官であった林炳稷の証言からも明らかである。李承晩から林外交部長官に対して日韓会談開催に当たって下された三つの訓令の中の最後の一つは、日韓会談に対して「韓国は事実上『連合国』の一員という姿勢で臨むこと」であった。その「根本意図」は、韓国が「第二次大戦参戦国の資格からサンフランシスコ会談に参席し条約署名には参席せずとも、乙巳条約以後現在まで継続されてきた韓日間の対敵関係と戦争中韓人が日本に対して事実上取った全ての戦争行動からみて韓国は他の参戦国と同一なる位置で日本に臨んでいることを世界に誇示」することにあつた¹⁵⁾。つまり、臨時政府が日本に宣戦を布告したことを根拠として、韓国はその「法統」を受け継ぐ国家として当然に戦勝国の一員であり講和会議に参加できるという立場であったことがわか

12) 入江啓四郎前掲書。

13) 太田修『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クレイン、二〇〇三年)、四七—五九頁。

14) 「対日講和問題の推移と韓国」(朝鮮銀行調査月報、一九五〇年二月号【五二年一月一七日にアジア局二課で山口氏から接受したという】)、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一八六一—一八三六。

15) 林炳稷『林炳稷回顧録—近代韓国外交の裏面史』(ソウル:女苑社、一九六四年)四九六頁。

る。

日韓会談で韓国側全権代表となった在米韓国大使の梁祐燦も、講和会議への韓国の参加と、それによる連合国としての権利の獲得を追求していた。梁は「ダレス大使との仲は非常によ」く「アメリカ育ちで、韓国語も日本語でできず、英語しかできな」い人物であったが、一九五一年七月一六日に韓国国会での対日平和条約についての審議後、七月一九日にダレスに対して連合国としての会議参加と在韓日本人財産の完全放棄に関する規定を設けよとの要求を行っている。16)

講和会議直前に、韓国外交部の調査員として東京に滞在していた俞鎮午は、一九五一年六月に韓国参加が困難となった情勢を受けて、アメリカ側に対して講和会議に対する韓国側の要求を、法的な論理をもとにして説明し交渉したと考えられる。その際の要点は、同年九月初旬の英文として残されているが17)、講和条約に参加できなくても、連合国と等しい権利を、韓国にも認めさせることに力点が置かれていた。

まず在日韓国系資産については、一五条を韓国系財産にも適用し、朝鮮銀行等の閉鎖機関の在日財産、および、朝鮮総督府の政令上の船舶令に登録された日本船舶の「返還」を実現できるはずであると俞鎮午は主張した。また、一九四九年一月のSCAPINにより清算が進められている「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おいた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についても、同年八月一〇日の政令二九一号により、「日本における事業再開を目的にした第二会社設立のために、日本支店財産に関する整理事務」が開始されていること、その中に「高周波会社、小林鋳業、その他多数の韓国帰属企業体が含まれて」おり、その「在日財産は相当な巨額に達すると推想される」と指摘した上で、「このような財産は全て韓国に返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なぜなら、「その在日財産は、在日機関(支店など)の所有ではなく、その本社の所有であることが明白であり、本社の財産は軍政法令第三三号によって全て軍政庁に帰属されてから一九四八年の韓米協定によって、韓国政府に委譲された」からであるとした。18)

また、一四条の適用問題については、その権利から韓国が除外されることとなっても、在韓日本資産についての韓国側の完全な所有権を認める規定を特別取極についての四条に挿入してほしいこと、その前例としてベルサイユ講和会議における海外植民地のドイツ資産接収とイタリア講和条約があること、在韓日本資産は日本が韓国を搾り取った結実 (fruits) であり、それが戻らぬ限り弱小民族の解放と未来における日本との友好はありえないことが訴えられている19)。

16) 「日韓国交正常化の記録(平和条約発効前の日韓関係と日韓会談予備会談)」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九〇九一一二四。韓国の連合国としての参加は、その前日にダレスから拒否されているが、もしかすると時差の関係で、その場で拒否されたのを日本外務省がアメリカの記録そのままに記した可能性がある。浅野・吉澤・李『日韓国交資料 基礎資料編 第二巻 日誌・年表』、一四八頁。

17) Yu Chin O, 'A Korean looks on the Japanese Peace Treaty (Korea. Sept. 51), 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一一八六一八三六(英文六頁下)。浅野・吉澤・李『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一期第一巻』、一三〇頁。英文として残されていることから、俞鎮午が英文で見解をまとめた可能性もあるが、アメリカ側が韓国側の見解を知るために、新聞等に発表された見解を翻訳した可能性が高い。

18)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법률고문 유진오 [大韓民国駐日代表部法律顧問俞鎮午] 「일출총장보고서」 [日本出張報告書] (一九五一年九月一〇日) 大韓国外務部外交文書登録番号七七 『한일회담예비회담(1951.10.20-12.4) 본회의회의록, 제1-10차, 1951』 [韓日会談予備会談 (1951. 10. 20-12. 4) 本会談會議録, 第1-10次, 1951] 〇〇九八-〇一一〇。浅野・吉澤・李『日韓国交資料 第一期 第八巻』四〇-四四頁。

19) Yu Chin O, 'A Korean looks on the Japanese Peace Treaty (Korea. Sept. 51), 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一一八六一八三六(英文六頁下)。浅野・吉澤・李『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一期第一巻』、一三〇頁。

また、この点は非常に重要であるが、兪鎮午は日韓交渉によってではなく、願わくは講和条約にのみ依拠することで、在日韓国系資産の返還、および在韓日本資産の完全獲得を法的に実現したいとの立場を表明していた。つまり、連合国と同様の権利を、まず分離される韓国に対して法的に認めさせた上で、いかにそれを実現するかについては、アメリカへの賠償の一部とみなす等の解釈をとることによって、日米間の問題として在日韓国系資産返還と在韓日本資産没収を確定させ、日韓交渉に法的な問題の議論を委ねないでほしいと訴えていたといえる。

3. 日本側から見た講和会議への韓国参加問題

連合国と同じ権利を講和会議の中で得ようとする韓国に対して、日本側はいかなる反応を示したのであろうか。一九五一年四月二三日、講話準備のために東京を訪れたダレスから、吉田茂首相は講和条約に韓国が署名することを受け入れてほしい旨を要請されている²⁰⁾。しかし、アメリカ側は「条約実施によって、在日韓国人が連合国としての地位及び権利を取得して、これを主張してくると、日本政府が困まる」ことに配慮するという形で、一五条の適用からは韓国を除外する方針であった。

吉田茂の方も「在日朝鮮人が平和条約によって日本国内において連合国人の地位を取得しないことを明白にされるならば、韓国政府が署名することには、異議を固執しない」との態度を覚書でとった²¹⁾。これは韓国参加が一五条の適用除外という留保条件付きながら、日本側からは拒否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

韓国の連合国待遇によって生まれる最も困難な問題は、在日朝鮮人が連合国民待遇を得てしまうと同時に、日本にある旧朝鮮総督府関連施設や財産に対して韓国政府の権利が及んでくることであった。²²⁾ 実際、ダレスが次に来日した一九五〇年六月一九日、日本側から韓国の連合国としての参加の際の懸念が伝えられ、「主要な問題は、分離地域の当局が日本本土に存在する財産に対して、在日資産を保有する組織の本社がその分離地域に存在していること、また、日本所在資産とその分離地域との間に何らかの関係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在日資産に対して主権を行使してくること」が日本側の懸念であると伝えられている。これに対してダレスは、「韓国政府からすでに広範な請求権が寄せられている²³⁾」と指摘した上で、「一般的なアメリカの立場としては、これらの国々は、すでに分離地域に存在した日本資産をすでに得ているので、さらに日本に所在する資産にまでその請求権を拡大することを認めない、本社がその分離地域に存在するからといって日本に存在するその団体資産を所有する力を認めない (not entitle the power [of] corporate assets in Japan)」とした。既にこの時点で、アメリカは韓国の日本に対する請求権の相当部分を否定する方針を慎重な考慮のもとに固めていたことが

20) 「[一九五一年]四月二十三日午前十時半ないし正午 吉田ダレス会談記録」(三井本館にて 総理、井口、西村、ダレス、シーボルト、ジョンソン、バブコッフ、フェアリー、スピックス) 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六六―一八六一。

21) 一九五一年四月二三日夕吉田ダレス会談で先方に交付した(イ)対比賠償問題および(ロ)韓国政府の平和条約署名問題に関する補足陳述」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六六―一八六一。

22) 実際、前述の吉田ダレス会談直後の一九五一年四月二五日には在日連合国財産問題についての交渉が盛んに行われ、この文書が韓国参加問題とともにつづられている「ダレス使節団との会談経過 一九五一年四月二五日」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六六―一八六一。

23) Japanese Property and Claims Questions, June 19, 1950,' Box1, Folder; Briefing papers for Dulles, 1950 (Japanese Peace Treaty), RG59, E1228, Lot 56D225, National Archives II in College Park, Maryland, U.S.A. (NARA).

わかる。その証拠にダレスは、在日韓国系資産に関連する「その種の請求権が長所となることも、特殊なケースに限ってはある」と指摘し、船舶と測量地図原版への請求権は一五条に準じるべき対象と認めていた。²⁴⁾

韓国の参加が中国問題との関連や英国の反対によって六月半ばから末の段階で実現不可能となる一方²⁵⁾、前述した兪鎮午が法的論理に訴えて韓国にも連合国同様の権利を認めさせようとする中、アメリカ側が一九五一年七月上旬にまとめた第二次草案中の第四条は、日本にも韓国にも交渉余地を残すものとなった。つまり、両国の間での「特別取極」締結を将来行うという方式である。

これに対して、日本外務省は、四条の中に請求権相殺規定を盛り込むための運動を展開した。一九五一年七月二日、日本政府は第二次草案に対する日本側の「観察」をGHQに提出し、四条にある特別取極の「実施は、實際上不可能で」あるため日本側が「従前提示した方式（積極及び消極の財産の相続は各当該地域において終結する－原文）」を受け入れてほしい。「草案の規定を保持せられる場合には、その実施に当って合衆国政府の絶大なる外交上の支援を必要とする」。さらに「日本側の財産なり請求権なりに比し管治当局や住民の日本や日本人に対してもつ請求権が僅少であり」、「相互の間に戦争がなかったにかかわらず」、韓国側は「理くつぬきに賠償を請求するのみであろう」から、「割譲地域における財産や請求権の相続問題は、日本側の場合は、一刀両断に各地域内で終結して、相互に一切の請求をしないと規定する外、実際の解決方法はあるまい」とした。²⁶⁾

日本側が相殺を講和条約一般の方針とし、それを韓国にも当てはめようとしていたことは以上から明らかであるが、この相殺方針の起源は一九四七年の初期講和条約問題の際の検討に遡る。

一九四七年七月、外務省は賠償に関する調査書をまとめ、在外財産の評価を高めると同時に、それを中間賠償として撤去されるべき賠償物資の方に組み込もうとする法的論理を打ち出している。²⁷⁾そのために動員されたのが、滅びたはずの帝国における法的論理である。

従ってヴェルサイユ条約の前例を援用する場合は逆に連合国側より朝鮮、台湾、樺太は独本国領土の場合よりも寧ろ植民地の場合に準ずべきものとして日本人財産の清算及賠償充当の一翼とせらるるおそれあるも、これに対しては朝鮮は寧ろ波蘭等の場合に準ずべく、樺太は日本人居住の歴史、日露間の交換条約等の経緯に鑑み、独海外植民地と同一視するは不当にして、事実上日本本土の一部と見らるべきものと主張すべく、台湾に関しても歴史的事情並びに台湾在住日本人が単なる植民地的出かせぎ人に非ず寧ろここを第二の故郷として定住せる移住民たる性質を有する点等を強調し、私有財産の特別処置を要望すべきである。

この主張は周辺地域を内地の延長と見なすることで、ドイツの私有財産接収の事例に従い、在

24) 詳細は、以下を参照。李東俊「日韓『船舶』請求権交渉の展開、一九四五―一九六五年」『中京企業研究』第三一号（二〇〇九年一月）。

25) 吉澤文寿『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クレイン、二〇〇五年、三三頁。

26) 「日韓国交正常化の記録（平和条約発効前の日韓関係と日韓会談予備会談）」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一九〇九―一一二四

27) 「一三、在外資産の賠償処理に関する件 調査課 管経 昭和二二、七、五日」『占領下の対日賠償関係一件調書類（第一巻）』戦後外交記録、B0003、四三一コマ（「在外資産賠償処理」と略し、本文中にコマ番号を掲げる）。以下で閲覧可能。http://gaikokiroku.mofa.go.jp/microfilm/04/m_04_005.html

外私有財産の日本人による処分、帯出を認めさせようとする論理につながる。これこそが、日韓交渉を一旦破たんさせた、一九五三年一〇月の「久保田発言」の直接的起源である。帝国の時代、現地に残された満州重工業設備や朝鮮の鉱山等の在外財産が、私有財産と見なされ、しかも高く評価されるほど、本土から撤去される物資の量は少なくて済む。後述する兪鎮午が利用せんとした帝国法制の原理とは逆ではあったが、もはや存在しない帝国の法制は、帝国清算にあたりその方向性を左右するものとして依然重要であった。

さらに、日本側の私有財産例外原則は、もう一つの重要な論理としての、相殺と対になるものであった。先の外務省調査書において、日本外務省は敗戦国の立場と限界を認識しており、私有財産を含めた全在外資産の接收と清算を不可避免的に迫られる場合には、それを認める代償として、戦争や戦争以前の社会に由来する一切の現地の住民の側からの請求権との相殺を要求することを準備していた。いわく、「在外資産の賠償に依り充当さるべき対象は戦争による被賠償国、国民の損害、私的債権その他の請求権、軍票その他の公的債務等の一切の現地関係請求権を網羅し、これに依って戦争終結までの一切の請求権を打ち切るべきこととする」とされたのである。帝国の清算を以って戦後賠償に充てるための政策が模索されていたといえる。

こうして、私有財産尊重原則、ならびに、現地側からの一切の請求権と日本の全在外資産とを相殺という原則、この二つを核として、日本側の法的論理を組み立てることで、日本側も韓国との直接交渉を嫌い、アメリカをその論理に巻き込むことにより、講和条約によって、韓国との間での請求権交渉を、実質的に決着させようとしていた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日韓双方ともに、直接に交渉するのではなく、アメリカの権威にすがること、方向は全く相反するものではあったが、講和条約により大筋を決着させようとしていたのである。

日韓双方からの綱引き状態の中で、アメリカ側は韓国側からの在韓日本資産に対する懸念を受け入れ、八月一三日の最終案で四条にb項を挿入する。しかし、その最終条約案が通告されてから、サンフランシスコに出発する「Last Moment」まで、四条は実施不可能だと日本側は主張していた。日本外務省は、「韓国政府が理不尽な要償を日本政府に提起するに違いないので、日韓の話し合いで、本問題が解決しうとは思えない。相互放棄以外に途がないということ、度々、文書で申入れ」していた。²⁸⁾

実際、日韓の請求権交渉は、特別取極をめぐって開始されることになるが、軍政令三三号が四五年一二月から八月九日に遡及して日本人私有財産を米軍政庁に「帰属」(Vest)させ、それを四八年八月の韓国政府の独立直後に当該政府に引き渡したという「処分」が、いかなる「効力」をもつものであるのかをめぐって、両者はまったく異なる法的論理を、帝国法制の異なる解釈を出発点として、ぶつけ合うこととなるのである。次に、法的論理の変遷を、その後の日韓交渉過程についての研究成果も踏まえて論じることで、その背後で衝突していた「正義」や「感情」の問題に踏み込んでいきたい。

二. 国民感情の対立を法的論理の対立へと媒介するもの—歴史認識問題の起源

1. 四条(b)項をめぐる法的論理と歴史認識

韓国側からの要求がいかにして四条(b)項の挿入として実現したのか、また、その挿入の政

28) 「条約局長に対する依頼事項(亜二)割譲地との間の財産請求権処理方式につき、ダレス大使宛意見書とその反響」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六—一—六六—一八六一。

治的意味は、各政治主体にとってどのように解釈されていたのであろうか。詳細は不明であるが、兪鎮午の講和会議開催に際して李承晩大統領に送った九月一〇日の報告書からは、韓国側の解釈を窺うことができる²⁹⁾。兪鎮午は「日本及び日本人に対する韓国及び韓国人の資産及び債権を含む請求権の問題」を取り上げ、「対日講和条約第4条B項によって、韓国及び韓国人に対する日本及び日本人の資産及び債権を含む請求権の問題は解決した」とした。つまり、アメリカは韓国側の法的論理を全面的に受け入れたと見なしたのである。その上で「同条A項による日本及び日本人に対する韓国及び韓国人の資産及び請求権の問題だけが、韓日両国間に条約または協定で解決する問題として残って」いるとした。この韓国側からの請求権だけが日韓の特別取極で残っているとする認識は、以後の韓国側の基本認識となり、それをもとに構成された韓国側の法的論理は、一九六一年の第六次会談にまで継続することになる。³⁰⁾

この韓国側の法的論理は、法人が領域を超えて有する属人的権利に依拠したものであった。軍政令三三号で接收の対象となった会社財産を、株主や社員ではなく会社という法人に帰属させた上で、その会社をさらに設立根拠法令によって旧帝国の法域に帰属させ、法の一般原則としての属「法人」主義原理と組み合わせることにより、たとえ日本側が主張するように、米軍政令三三号の財産接收の効力が、三八度線以下の南朝鮮（韓国）という領域に限られるとしても、韓国で日本人株主から没収された株券が韓国人に払い下げられれば、それは韓国人株主だけの韓国法人となり、その韓国法人が法域をまたいだ財産を日本法域に有しているため、その新会社の在日財産に対して韓国側は権利があるという論理が作り上げられたのである。帝国家制上の法域論と属人主権論理を逆手に取り、それを帝国解体原理として主張したものが兪鎮午の法的論理の骨格であった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

さらに、この法的論理はアメリカを媒介にして成立していたことも重要である。在韓日本人私有財産の「帰属」と移管は「没収」と同様の効力をもつものであるが、万が一、それに異議があれば、日本は米国に対して異議を申し立てるべきとの論理が生まれていくことになる。この点でも、日韓の間での交渉よりも、米国の存在は勝っていたといえる。

2. 法的論理の背後の国民感情－両者を媒介する「歴史」への認識

こうした法的論理を本国政府に向けて強調する一方で、兪鎮午は講和条約当時の日本国内の政治状況からみて、その解釈に対して日本側が挑戦を試み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指摘していた。

「韓国にある日本財産が全面的に没収されたことに対して、日本人たちが密かに大きな不平感を持っているという事実」について、兪鎮午は韓国「政府の注意を喚起」していた³¹⁾。また、

29)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법률고문 유진오 [大韓民国駐日代表部法律顧問兪鎮午] 「일본출장보고서」 [日本出張報告書] (一九五一年九月一〇日) 大韓国外務部外交文書登録番号七七 『한일회담예비회담 (1951.10.20-12.4) 본회의회의록, 제1-10차, 1951』 [韓日會談予備會談 (1951. 10. 20-12. 4) 本會議會議録, 第1-10次, 1951] ○○九八-〇一一〇. 浅野・吉澤・李『日韓国交資料 第一期 第八卷』四〇-四四頁。

30) 「日韓會談問題別經緯 (4) (一般請求權問題) 昭和37. 7. 1」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三-五三三, [原文頁數] 三七-四〇頁. 浅野・吉澤・李『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基礎資料編第一卷 問題別經緯』, 一七八-一七九頁。

31)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법률고문 유진오 [大韓民国駐日代表部法律顧問兪鎮午] 「일본출장보고서」 [日本出張報告書] (一九五一年九月一〇日) 大韓国外務部外交文書登録番号七七 『한일회담예비회담 (1951.10.20-12.4) 본회의회의록, 제1-10차, 1951』 [韓日會談予備會談 (1951. 10. 20-12. 4) 本會議會議録, 第1-10次, 1951] ○○九八-〇一一〇. 浅野・吉澤・李『日韓国交資料 第一期 第八卷』四〇-

俞鎮午「本人が直接聴取した情報によれば、日本人たちは第4条B項の修正のために運動を展開して講和会議全権の吉田首相に陳情書を提出したし、それが無望なことになると、『私有財産制度氏逝去』という怪文書を回すことさえした」と報告している。

俞鎮午が読んだ「私有財産制度氏折去」の怪文書は、社団法人全国引揚者団体連合会（全連）が、講和条約締結に際して国会議員に送付した文書であった。敗戦により朝鮮や大陸から引き揚げてきた引揚者は、出身地や、居住地、職場・業界等を核に各種の団体を結成し、日本国内での運動を開始していた。特に、群馬県の引揚者が中心となった講和条約反対運動は、祝祭気分になっている都民に冷水を浴びせるべく、東京事務所に弔旗を掲げ、貨物自動車に「私有財産之霊位」と書かれた位牌を積んで都内を走り回り、国会議員に「告別式挙行通知」を送りつけるなど過激化していた。³²⁾当時、朝鮮から帰還した日本人引揚者は、彼らの朝鮮における住宅や土地、企業設備が、賠償の一環として接収されたのだ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もってそれを補償すべきとする激しい要求を日本政府に突きつけていた。

「全連」は一九四六年一月に発足し、在外財産補償のための引揚者の精神的結束の中心となり、一九八〇年代に至るまで活動を続けたが、日本を訪れたダレス特使とアチソン國務長官宛てに血判要望書を送付したり在米日本資産返還を訴えたりする運動を展開していた³³⁾。在外財産への「告別式挙行」を実行した背後には、引揚げ過程で亡くなった戦没者の存在があり、「在外財産」は戦没者の残した尊い遺産と見なされ、その補償を引揚者団体は亡くなった戦没者に誓っていた。³⁴⁾

国内からの激しい要求にさらされ、また、韓国からの将来予想される厳しい要求を前にして、日本政府は在韓日本資産と、在日韓国系資産の相殺をアメリカに要求していたといえるが、法的相殺を実現するために日本政府が持ち出したものこそ、アメリカといえども既存の国際法が占領当局に許している枠の中でしか軍政令を発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つまり、軍政令三三三号はハーグ陸戦法規の中の私有財産保護原則に従属するという日本側の法的論理であり、その背後には「日本軍隊の無条件降伏」を規定したポツダム宣言の解釈の問題さえ横たわ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

こうした日本側の法的論理のイデオログとなったのが、台湾の台北帝国大学で教鞭を執り日本に引き揚げてきた山下康雄という国際法学者であった。山下は、愛知大学を経て名古屋大学の国際法担当となっていたが、山下によれば、「帰属」は一種の戦時中の強制的信託行為にすぎず、私有財産処分の際には第三者に対する売得代金に対して、元所有者は請求権を有するのであり、それはハーグ陸戦協定における私有財産不可侵原則に保護された権利で、アメリカの占領は無原則な命令を出せるものではなく、国際法の許さない軍政命令は出し得ないとされた

四四頁。

32) 「全連」役員には、穂積真六郎、大野伴睦、田中武雄、川島正次郎等が就任しており、引揚者の多くは自民党員として総裁選挙を通じて影響力を行使し、自民党議員を中心に「在外財産法的処理促進議員連盟」（長谷川峻会長）も結成されている。総理府大臣官房管理室『在外財産問題の処理記録－引揚者特別交付金の支給』（内閣総理大臣官房管理室、一九七三年）。

33) アメリカ側からの回答は日本の国内問題として善処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の内容に過ぎなかった。北条秀一・城戸忠愛『私有財産論－在外財産補償要求運動史』（構造社、一九七一年）、八四頁。

34) 一九四六年八月に朝鮮からの引揚げ過程でなくなった肉親を弔う集会が開催された際、在外財産を遺産とみなすとの意味の弔辞が読まれている。浅野豊美（研究代表者）『脱植民地化プロセスとしての戦後日本の対アジア外交の展開と国内制約要因』（二〇〇三年度～二〇〇五年度、日本学術振興会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報告書、課題番号15330035）、二〇〇七年五月三十一日。

のである。³⁵⁾

こうした日本側の法的論理を前にして、韓国側が打ち出してきたのが、以下のような歴史認識に裏打ちされた新たな法的論理であった。これは、そもそも在韓日本人私有財産が形成された起源を歴史として問題とし、その上で民族の自決・独立を優先する法的論理を提示せんとしたものである。

要するに、韓国側としては、日本側の考え方は、その根本において今だ旧支配関係の惰性から止揚されていないという印象を深くせざるを得ない。一九四五年八月九日現在韓国の富は、その大部分が、日本あるいは日本人の所有であった事実を、日本は正当なる状態として、このままの権利を主張し、今これについて韓国側の再確認を求めることは、すなわち新しい経済的併合を結果するものであり、カイロ宣言にいう奴隷状態の新しき承認を求むるものである、といわざるを得ない。[中略] 韓日両国間の財産および請求権問題の論議にあたっては、この問題の含む政治的の意義の十分なる認識から出発せねばならない。平和条約第四条B項は、同第二条A項と照応して、韓国の政治的経済的独立への考慮の上に規定されたものである。従って、この条文に対し疑義をさしはさむことは、韓国の政治的経済的独立に対し疑義をさし挿むことである³⁶⁾。

日本側の主張する私有財産への権利は、韓国社会の公的セクターが日本人に支配されている状況下で行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無視し、帝国の時代を「正当なる状態」とする歴史認識に立っているものというのが韓国側の批判点であった。韓国側は日本時代を「カイロ宣言にいう奴隷状態」であったという認識を示した上で、もしも万が一韓国側が日本側の要求を受け入れれば、それは「新しい経済的併合を結果する」ものと強硬に抗議したのである。

こうした「経済的併合」を拒否するものとして、韓国側は民族自決原則によって国際法原則自体が変化しており、そもそも「私有」財産とされるものは、朝鮮人を搾取した不当利得であって民族自決原則のもとで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する法的論理を提出することになる³⁷⁾。

二つの法的論理が対立したというよりも、その背後には日韓双方の対立する「国民感情」があり、それに依拠した「正義」を求める衝動こそが、論争の中でお互いの異なる法的論理を生み出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できよう。兪鎮午が在韓日本資産を長く困難な搾取の結実と見なしたのに対し、日本人引揚者はそれを戦没者の遺産とみなしたが、こうした全く相容れない国民感情が、それぞれの法的論理と結びつくにあたって、その媒介となったものこそが体験に裏打ちされた強固な記憶と結びついた「歴史」への認識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出来る。

講和条約を契機として本格的に外交交渉に登場した歴史認識の問題は、以後、国交正常化の際に封印されることはあっても、根本的な解決を見ることのないまま、今日に受け継がれてきたといえよう。

35) 山下の法理論は外務省文書の中に散見されるが、体系化されているものは以下である。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集 基礎資料編 第四巻』[以下、巻数に応じて『日韓国交資料 基礎資料編 第〇巻』と略す] (現代史料出版、二〇一〇年)。

36) 「日韓会談第六回請求権委員会議事要録 一九五二年三月一〇日」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談文書、五一一〇二二一一一八三。

37) 拙稿「제국청산 과정으로서의 한일교섭」[帝国清算過程としての韓日交渉] 韓国国民大学編『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外交文書公開と韓日会談の再照明] (ソウル：ソンイン出版社、二〇一〇年)。

3. 封印の構造とアメリカ

韓国側の反発の背後には、より根本的な歴史認識の断層が存在していたといえる。それは日本側からの相殺提案を、アメリカと日本との戦勝国と敗戦国との関係をモデルに拒否せんとしたものであった。在外日本財産の没収処分は韓国側から言わせれば、連合国による世界的な次元で展開された侵略戦争への賠償・懲罰の一環であり、韓国で米軍政が発した命令は講和条約の別な条項（一四条）で在米日本人資産を凍結・接収したと精神において変わらないものであった。韓国側の認識は、帝国としての日本全体に対する世界的制裁として第二次大戦が戦われ、韓国は最も日本帝国主義に苦しめられてきた国である³⁸⁾とする歴史認識を前提とした。

それに対して日本側は、引揚者も含め日本国民一般も戦争の被害者であるとする歴史認識に立っていたと言える。実際、第三次日韓会談の席上、韓国側は日本側が「終戦当時韓国にある日本人は真っ赤で脱いで帰ったという点を非常にさびしく話した」ことには同情するとしても、「これは、第一に、韓国が行ったことでなく連合国が行ったという点、第二に、それも韓国にだけ行われたのではなく、世界的に行われたことで、その一環として韓国に現れた」ものであるとした上で、「なぜ日本は米国にあった日本財産の没収は疑わなくて、韓国にあった日本財産の処分だけを疑うのか³⁹⁾」と反論している。

それに対して日本側は、連合国にある日本財産没収にそれ以上の賠償を放棄する条件で日本が同意した一四条と、日韓の分離後の関係原則を定めた四条は異なるとして反論し、韓国側は「解放国民」は「戦勝国民」が有する権利を当然有するとして再反論する。その詳細は省略するが、アメリカは講和条約の解釈に対して権威ある最終的な解釈をできる立場にはなかった。万が一、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第二十二條では、「この条約のいずれかの当事国が」、「条約の解釈又は実施に関する紛争が生じたと認めるときは、紛争は、いずれかの紛争当事国の要請により、国際司法裁判所に決定のため付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日本のみならず米国も条約批准国は「すべての紛争に関して一般的に同裁判所の管轄権を特別の合意なしに受諾する」必要があった。

実際、解放国は戦勝国以上の立場であるとして、厳しく日本帝国主義を断罪しつつ、在韓私有財産への日本側の請求権を拒否する韓国側の主張に対して、日本側は西村条約局長を中心に、一時、ジュネーブの国際司法裁判所に対して、アメリカを提訴することも真剣に検討した形跡がある。当時のアメリカは、国際司法裁判所の強制管轄権を受諾しており、軍政令三三号の法的「効力」が没収であったのか否かを確定するためには、アメリカとの交渉、あるいは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の必要があった。

しかし、詳細な情報はそもそも記録が作成されないためと考えられ不明であるが、この提訴は行われることがなかった。それに取って代わったのが、米国への仲介依頼であった。米国の出した仲介案は、在韓日本人私有財産への日本側の請求権を認めないとしつつも、その財産取得と韓国側の対日請求権を「関連がある」[relevant]として、その分の部分的相殺を求めた折

38) 「対日戦争賠償調書」、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日韓国交資料 基礎資料編 第3巻』現代史料出版、二〇一〇年。

39) 大韓民国駐日代表部公使金溶植「제2차 청구권 위원회 경과보고」[第2次請求権委員会経過報告]（一九五二年二月二三日）大韓国外務部外交文書登録番号八六『제1차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분과위원회회의록, 제1-8차, 1952. 2. 20 - 4.1』[第1次韓日会談(1952.2.15-4.21)請求権分化委員会会議録, 第1-8次, 1952. 2.20-4. 1]、二九九-三〇二。浅野・吉澤・李『日韓国交資料 第一期 第九巻』一三—四頁。

衷案であったといえる。

部分的相殺を前提に日本側の在韓私有財産への請求権主張をアメリカが否定したことを日本側が受け入れたのは、一九五七年一二月三十一日の日韓合意書締結による。この日韓合意書は、

「合衆国政府の見解の表明を基礎として、昭和二十七年三月六日に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会談において日本側代表が行った在韓財産に対する請求権主張を撤回する」ことを日本が声明したものであった。それに至る流れを作ったのは、日本外務省の中川融アジア局長と金公使の数十回に及んだ非公式会談、および、当時の日本の首相、岸信介の台湾と東南アジア諸国訪問と合わせて韓国とも基本的な合意に達したいとの政治的思惑によるものであった。

しかしながら、この日韓合意書も、在韓日本資産についての没収処分を一四条並みに承認することはしたものの、一五条による在日韓国系資産に対する韓国側の主張までも全面的に認めたものではなかった。アメリカの見解は、在韓日本資産没収によって韓国側が財産を獲得したことは、韓国側からの日本に対する請求権と「関連がある」とするものであったため、この関連に応じて一五条相当の在日韓国系資産に対する韓国側請求権の中で、どれ位が在韓日本人私有財産によって部分的に「相殺」され減額されるべきかが論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根拠によって、日本側は在韓日本資産処分に関する資料が必要と主張したため、交渉は再び膠着化した⁴⁰⁾。

韓国側はそうした妥協を拒否し、その後の交渉は、朴政権になってから米国が金額までも仲裁する形でようやくまとめられた。結論だけを取り上げれば、一九六五年の基本条約は、請求権の実際の大きさを金額に換算した分は韓国側の主張に合わせる一方、請求権の形式・名目は日本側の主張に合わせるものとなった。つまり、相互に請求権を完全に放棄することにより日本側が望んだ相殺がこれにより実現され、それとは別個に日本側が韓国に対して経済協力のための資金・生産物・役務を無償・有償で提供するものとなった。これにより、日本側は在韓私有財産を喪失した日本人引揚者への国内補償義務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と同時に、講和条約第二六条における最恵国待遇ゆえの義務⁴¹⁾からも解放される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

4. アメリカによる資金的イニシアティブ

日韓間の対立を前にして、内実と形式をそれぞれ分けることで、一定の国際的枠組みを与えたのが、アメリカのイニシアティブであったといえるが、そのイニシアティブが金銭面で可能となったのは、講和条約第一四条で「直接占領経費」とは区別され「その他の請求権」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ガリオア経済復興援助資金に関する日本側の対米返済義務をアメリカが減額したことと、大いに関係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復興援助費用に該当する間接占領経費は、アメリカ側首長で約一九億ドルにのぼったが、その返還が最終的に実現したのは、一九六一年六月二二日の池田・ケネディ会談であった。その合意に基づき、翌年一月九日に結ばれた、「日本国に対する戦後の経済援助の処理に関する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協定」、いわゆるガリオア返済協定は、西ドイツ並みの三分の一の返済率により日本の債務をまず減額した上で、さらに額面分からではなく、その減額分から日本側がアメリカに有した対米債権を控除するという寛大なものであった。日本の有した対米

40) 太田『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一五五—一五八頁。

41) 「日本国が、いずれかの国との間で、この条約で定めるところよりも大きな利益をその国に与える平和処理又は戦争請求権処理を行ったときは、これと同一の利益は、この条約の当事国にも及ぼさなければならない。」

債権としては、アメリカの占領下の統制経済によって占領軍が日本から南朝鮮や琉球に持ち出した物資の代金である「朝鮮債権」・「琉球債権」があったが、さらに日韓オープンアカウントによる貿易代金で焦げ付いた分も、日本の対米債務から控除することが認められたのである。その結果、最終的には四億九千万ドルにまで減額され、年二分五厘の利子を付して一五年間にわたる半年賦により支払うのみとなった⁴²⁾。この決定とほぼ同じ一九六一年五月は、日本側でも韓国への請求権補償を、大幅に増額して五億ドル前後で検討することが、伊関佑二郎アジア局長周辺から打診され始めた時期である。⁴³⁾

ガリオア債務の返済にあたっての日米間の交換公文では、「資金の大部分を低開発諸国に対する経済援助に関する合衆国の計画を促進するために使用する」こと、「東アジアの諸国の経済のすみやかなかつ均衡のとれた発展」のために、日米で「引き続き随時相互に密接な協議を行なう」ことが合意されている。さらに、戦後日本における経済協力関連制度の起源もガリオア援助金につながっており、アメリカからの援助物資を購入した際の代金が積み立てられた「見返資金特別会計」、それが形を変えた「産業投資特別会計」から、海外経済協力基金の設立原資充当が一九六〇年の設立に際して計画され⁴⁴⁾、日韓の有償経済協力はこの海外経済協力基金を通して行われてもいる。

ガリオア債務の返済と韓国への経済協力資金の大幅増額は、表面上は関係がないとされているが、同時期にそれぞれの大枠が決定されているのみならず、政策決定段階での日本側のメモやアメリカ国務省内部の意見具申等の傍証が残されている。たとえば、日本側でドイツのガリオア債務問題を調査した資料を外務省から国会に提出するに際しては、アデナウアー首相が返済率を三分の一とアメリカが決定したのは、ドイツの在外財産喪失分の見返りであると西ドイツ議会で発言した事実は、国会提出資料から削除された。また、アメリカ国務省内部での一九五八年の資料では、ガリオア債務を日本に減額するのはいいとして、その際には条件としてインドネシアと韓国への経済協力資金を大幅増額することと、日本での米軍基地提供についての便宜供与を行うことの二つを付すべきことが意見具申されている。さらに、六〇年安保条約が更新された直後、外務省内部では、即座に次の目標としてのガリオア債務返済問題の確定作業が開始されており、それに対して岸は満洲国に関与した責任者として自ら首相の座を降りたとさえいえることもできる。こうした傍証、そして日韓交渉の細部にわたる分析の結果から、日本戦後史の中の最大の密約ともいえるべき暗黙の了解が、日米当局者の間に存在した可能性は極めて高い。

比喩的にいえば、ガリオア債務減額によるアメリカの見えない実質的な対日便宜供与に支えられることで、日米間で作成された講和条約の法的枠組みの上に、日韓の正常化の土台は、韓国国内の正統性を欠いたまま、強制的に置かれたということができよう。

このアメリカの経済と法の両面からなるイニシアティブによって、日本の帝国は法的にも経済的にも最終的に解体され、日韓間の新たな国民国家同士の正常化された関係がそれにとって代わったということが出来る。大陸と海洋に取り残された日本人引揚者六百万人を運んだアメリカの輸送船LSTの賃借料が終戦処理費用として支払われたことを出発点に、焦土となった日本

42) 外務省『外交青書』（外務省、一九六二年）第六号、一八—二二頁。<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62/s37-3-2.htm#3>

43) 李鍾元「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二)」『立教法学』第七七号、二〇〇九年、一一五—一一六頁。

44) 国際協力銀行編集・発行『日本輸出入銀行史』二〇〇三年三月、四—五頁。

本土の復興費用がアメリカから援助され、その返済のためにもうけられた見返資金特別会計が、今度は、戦後日本の海外への経済協力のための制度へと転じたともいう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この帝国解体と終戦処理に伴って発生した対日援助資金返済義務を、アメリカが日本に大幅に免除することをテコとして、日本の韓国への経済協力をアメリカが仲介して大幅に増額せしめ、同時に、日本側からの「逆請求権」も、韓国側からの請求権も、全て一方的に各自が放棄するという相殺が実現することで、日韓の経済協力と請求権に関する最終協定は生まれたのである。そして韓国の国民感情から見たところの「正統性」を欠いたままの正常化、これによって失われてしまったものこそが、今日「植民地責任」と呼ばれる「植民地支配の清算」の問題とすることができる。

おわりに

在日韓国系財産と在韓日本人私有財産をめぐって、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法的枠組みをいかに日韓の間に適用するか、それが請求権交渉の出発点であった。そもそも解放・分離されて以後の互いの請求権の問題は、戦前の帝国時代に形成された官民の複雑な制度・組織に関連した財産・債権の清算という問題の上に、第二次大戦にともなう総力戦の時代に植民地に対して展開されたヒトとモノの動員に関する清算問題が絡まり合ったものであった。その上、日韓の新たな関係を論じる指標として、連合国との間での在外財産と賠償についての枠組みがあった。また、本論では論じきれなかった問題としての、日本国民の戦争被害に対する日本政府の国内補償問題とも日韓双方の請求権は連動していた点で、日韓関係は日本の国民感情を刺激する問題ともなっていた（同じ戦場に赴いたのに「なぜ韓国人だけが補償されるのか」）。国民感情の最終段階での分岐点は、敗戦と引揚、解放と帰還という各々の政治的大変動にあったが、それ以前の植民地時代の帝國的な社会の中から、様々な集団ごとに感情が表出され、それが解放・分離によって生まれた新しい国家と、その体制の中で、「国民」的感情へと変遷しつつあったのが日韓交渉が展開された時代と言えるであろう。

こうした社会状況の中で、しかも、国内政治と国際政治を跨ぐ様々な利害や価値にさらされていたという点で、初期の日韓交渉は、通常の状態間関係を前提とした外交という範疇には収まりにくい。敗戦を契機とした国家分離問題であり、分離国との外交（分離側は「解放」国と認識）という点で、連合国・分離国・敗戦国間での戦時平時の国際法関係の解釈論争という性格を帯びたといえる。また、国際と国内というレベルを超えて政治的社会的利害が複雑に展開し、ヒトとモノにいかん境界を引くのかという問題自体がそれぞれの国民感情と絡まって政治問題化しているような国内状況（在日の法的地位、漁業と領土、在外財産）を背後に抱え込んだ外交でもあった。こうした点で、日韓交渉は分析する側の方法論に対しても深刻な挑戦を迫っており、記憶や感情の問題は避けて通ることができない。しかし、それ故に、観察者の主観によってのみそうした対象を記述するのではなしに、客観性、反証可能性を担保するために、各政治主体ごとの法的論理とその衝突の位相を、「正義」を担保した論理に即して追求し、その背後の各々の感情に迫ることは有力な手法となろう。

交渉の収束は、アメリカの仲介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が、生まれてきた正常化後の枠組みは、韓国の当時のエリートから見てさえも歴史認識に裏打ちされた正義と、それを踏まえた責任のあるべき姿から離れたものとな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からう。その背後には、日本国内の思

想的国内冷戦状況、「近代化」を基軸とした脱線・転覆によって戦争突入を一時の過ちと見なす歴史認識、および、それとは矛盾しない形で展開された経済協力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が、その詳細は述べることができない。国民的信念・感情に基づいた正義のあり方が、相互には激しく矛盾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韓の「正常化」が玉虫色の状態で維持されている状態を作り出したアメリカのイニシアティブは、つい最近まで有効であったと言えるのかもしれない。

玉虫色の微妙な均衡が破れたとしたら、それは再び新しい枠組みを作るための絶好の機会と考えることもできよう。その枠組みは、今度こそ、国民感情の面での和解を前提としたものとな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には、解放・分離に遡り、戦後の経済成長の陰に隠され、さまざまにゆがめられ政治化されてきた問題を、今こそ実証的な手法で解き明かし、そのことを以って相互の国民感情自体の歴史的起源に迫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それによってこそ、自分の中に存在する生まれ付いた国民的感情を冷めた理性で観察する一方、相手のそれにも共感し合えるような感情を育む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新たな思考によって「地域」的とも言える新たな感情と理性の枠組みを、歴史研究と記憶の点検の上に作り出すべき時がきたのではないであろうか。今まで、歴史の問題はいかに外交から切り離すかという観点のみが強調されてきたが、外交の基盤となり得る人々を徐々に増やしていくために、その作業は不可避である。帝国の清算をめぐる周辺地域との間での戦後外交の研究は、資料の公開とともに、ようやく緒に就いたが、それを読み解くためには法学的分析とその背後に存在する社会学的分析が不可欠であろう。これからの国境を越えた研究の進展を期待してやまない。

2. 전후 한국의 대일 배상 요구의 변용

-미국의 대일 배상 정책에 대한 대응과 청구권으로의 수렴

장박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I 문제 제기

주지하다시피 독립 후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대일 과거 처리 문제를 당초 ‘배상’으로서 추진하려 한 한국정부는 대일평화조약 서명국 참가 좌절에 따라 ‘청구권’ 문제로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배상과 청구권 간에 큰 단절이 생겼다는 인상을 주는 것¹⁾과는 반대로 배상이 청구권과 개념적으로 대조되는 동일 개념으로서 인식되는 결과 배상 구상 자체에 생기고 있었던 변용에 주목되는 일은 없었다.

물론 청구권과 대조되는 배상 문제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 연구는 『대일배상요구조서』(이하 ‘배상조서’로만 약칭)²⁾ 작성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배상 요구 준비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동 과정에서 일어난 대일 요구의 변용에 주목한 것이 아니다.³⁾ (太田修 2003; 박진희 2008)

본고는 전후 대일 배상 처리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미국의 대일 정책의 변화와 연동하면서 한국의 대일 배상 구상이 변용을 거치면서 결국 ‘반환’적인 성격의 요구가 됨으로 인해 사실상 한일회담 개시 후의 ‘청구권’ 요구로 수렴되어 가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이라고 함은 물론 대일평화조약 4조(a)에 기초한 한일 간의 청구권(claims)을 뜻한다. 그것은 한일 간의 식민지 지배 등의 정치적인 배경을 불문으로 한 민사상의 확정채권의 환수를 뜻한다. 그에 대해 한국이 일본에 제기한 ‘배상’(reparation) 개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배상은 바로 1차 대전 후의 대독 처리에 상징되듯이 교전관계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서 전승-패전이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반영하게 마련이었다. 그 결과 배상요구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구속되지 않고 그 이상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띠며 그 의미에서 청구권 요구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피식민지 국가의 피해 청구 근거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던 2차 대전 후의 전쟁 처리에서도 배상은 주로 대일 전승국인 연합국이 주도한 전통적인 ‘교전 피해 배상’을 뜻했다. 그러나 본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병합에 따른 한일의 일체화라고 하는 조건을 배경으로 한국이 제기한 배상은 그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이 제기한 배상에는 같은 전쟁 피해라도 대일 교전에 따른 것 이외에 전쟁으로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의미에서 제기한 ‘전쟁 동원 피해 배상’, 또 전쟁 이전에 식민지 통치 자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식민지 피해 배상’ 등도 있었다. 그들은 비록 피해 요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다르나 모두 배상이라는 개념

- 1) ‘단절’이라는 인상과 달리 ‘배상’과 ‘청구권’ 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점은 장박진(2008)에서 이미 논했다.
- 2) 배상조서는 1949년 3월에 『對日賠償要求調書 第1部: 現物返還要求』로서, 이어 9월에 제2부·제3부·제4부를 수록한 『對日賠償要求調書(續)』로서 정리되었으나 이하에서는 그들을 총칭해서 배상조서로 약기한다. 또 배상조서는 그 후 1954년에 다시 제1부와 제2부, 제3부, 제4부를 합쳐 한 권의 책자로서 정리되었다.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1949년 원본의 보존 상태는 지극히 좋지 않아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이하 배상조서의 검토에는 주로 1954년판을 이용한다.
- 3) 그 점은 한국의 대일 배상요구의 움직임을 가장 상세히 분석한 오타가 본고도 중요시하는 이상덕 배상론을 배상조서로 이어지는 ‘대일배상요구의 원형’으로서 논하고 있는 점(太田修 2003, 39)에서 알 수 있다.

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치적인 색채를 뺀으로써 청구권 요구와 다른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바로 본고는 전후 한국이 제기한 대일 배상 요구가 교전 배상, 전쟁동원 배상, 그리고 식민지 배상 요구를 교차시키면서도 결국 미국의 정책에 대한 대응의 논리적인 귀결로서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불문으로 하는 ‘반환’적인 요구로 접근됨에 따라 그 의미에서 청구권 요구로 수렴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재한일본인 재산을 둘러싼 배상론의 변용

독립 후 한국사회가 대일 피해 보상 처리에 관한 배상 문제로서 안게 된 두 가지 과제는 재한일본인 재산과 그 이외의 피해 보상 문제로서 구성되었다. 먼저 재한일본인 재산 문제부터 고찰하고자 한다.

1945년 9월 3일 김구는 임시정부로서 당면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그 제12항에는 ‘적산 몰수’가 규정되고 있었다.(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 1976, 13) 동 조항에는 ‘일본인 재산’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비록 일부지만 그에는 일본 이외에도 추축국으로서 연합국과 교전한 국가들의 재한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재산의 동결을 명한 군정령 2호는 일본과 함께 독일 등의 추축국 재산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구조에 기인하는 재산 규모를 생각할 경우, 김구가 밝힌 한반도 내 ‘적산’의 실태가 사실상 일본인 재산을 겨냥한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김구가 직접 ‘일본인 재산’을 명시하지 않고 ‘적산 몰수’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 까닭은 바로 몰수 대상을 교전 관계에 있었던 적국 재산으로 한정해야 하는 국제적 선례를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선례에 따른 임시정부의 동 방침은 반대로 식민지 관계라고 하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었다. 바로 일본을 패전으로 몰아간 교전의 구조는 재한일본인 재산의 취득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일교전 관계를 자부한 임시정부의 주장을 어렵게 했다.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인해 한반도 진주의 근거를 일본의 항복 문서에 찾은 미국은 애초부터 한반도가 연합국에 대한 적국, 즉 한반도가 일본영토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⁴⁾ 즉 대일 교전라고 하는 논리에 따라 재한일본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물론 한반도는 단순한 적지가 아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카이로 선언 등, 한반도의 독립은 바로 미국이 주도한 것이었다. 즉 한반도는 ‘적국’으로서의 지위와 동시에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국이기도 했다. 실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민생에 관한 점령 행정의 내용을 지시한 SWNCC176/8은 “귀관에게는 적국 영토의 군사 점령자가 통제 가지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 뒤에서 “민정은 귀관의 군대의 안전과 양립하는 한 최대한 한국(Korea)을 해방된 국가로서 취급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神谷不二 1978, 171)⁵⁾고 지령했다.

그러나 가령 한국이 해방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저절로 구 지배국의 재산을 취득할 근거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 당시 전후의 적산 취득 권리를 둘러싼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던 1907년 10월의 이른바 ‘헤이그 육전법규’는 그 부속서 제3관 “적국의 영토에서의 군의 권력”에서 비록 사유재산, 종교, 교육, 자선 관련 재산 등을 제외했으나 점령군에게만 적산을 몰수하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었다.

4) 또 항복이 즉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 상실을 뜻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長澤裕子(2011)를 참고.

5) 동 문서에 관해서는 神谷不二(1978)에 수록된 일본어 번역 자료를 활용했다.

10월 23일 미 군정청은 일본인 재산 처리에 관한 방침을 발표, 그 가운데 일본인 재산을 미 군정청 재산으로 할 것을 천명했다.(『資料 大韓民國史1』 1968, 295) 동 발표는 일본인 재산을 최종적으로 미국의 소유물로 할 것을 공언한 것이 아니었으나 동 발표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점령군의 권한에 기인한 것으로 비추어지게 됨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실제 그에 보조를 맞추듯이 12월 4일 군정장관 아놀드(Archibald V. Arnold)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서는 배상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 보인다. 한반도는 일본 영토이었으나 전쟁의 피해가 없으므로 배상 근거가 될지 알 수 없다”(『資料 大韓民國史1』 1968, 522)고 말하고 있다. 즉 배상은 교전에 따른 연합국들 고유의 피해 보상 권리이며 일본 영토였던 한반도가 일본과의 교전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일이 없는 이상, 한반도에는 배상 취득 권리가 없음을 천명했다.

또 그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초기 대일 배상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던 폴리(Edwin W. Pauley)의 발언에 의해서도 전해지고 있었다. 11월 28일 한국에서는 “일본은 연합국에 몰수된 朝鮮, 滿洲, 中國, 臺灣, 필리핀, 蘭印 등지의 투자만으로도, 즉 수십억 불에 상당한 배상을 지출할 수 있다”(『資料 大韓民國史1』 1968, 484)는 폴리 발언이 크게 보도되고 있었다. 즉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다른 지역의 일본인 재산과 더불어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 재산 역시 직접 한국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대연합국 배상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우려가 한국을 덮치고 있었던 것이다.

동 보도의 진의와 상관없이 책임 있는 미국 관계자로부터 잇따라 나온 그와 같은 발언은 당연히 재한일본인 재산의 귀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한국에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12월 3일 조선인민당은 폴리사절단의 시각을 “일본의 군국주의의 침략정책에 어두워 배상량에만 편향하고 질적으로 그 투자가 우리 한국인들의 응혈체(凝血體)인 것을 모르고 있다”(『資料 大韓民國史1』 1968, 513)고 비판했다. ‘응혈체’라는 말은 구체성을 결여한 지극히 추상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그 개념이 재한일본인 재산이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원래 ‘한국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재배 하에서 일본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의미에서 식민지 피해를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이었음은 틀림없다. 즉 그것은 적산 몰수 논리가 자칫 동 재산의 연합국 귀속을 자초할 위험성을 간과하면서 그 대체 논리로서 식민지 통치의 불평등한 역학관계에 재한일본인 재산의 취득 근거를 찾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응혈체론 같은 정서적인 담론이 일본인 재산의 한국 취득을 정당화하는 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은 자명의 일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대일 전승국인 많은 연합국이 식민지를 보유하고 그에 따라 각 지역에 재산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립되는 지역에 가진 구 종주국의 재산권을 부정하기 위한 응혈체 논리는 자칫하면 연합국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 한국이 의거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 자체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바로 불확실성이 한국을 덮고 있었던 12월 6일 군정법령 제33호(이하 군정령 33호)가 공포되었다. 재한일본인 재산을 9월 25일자 미 국정청이 ‘취득’(vest)하고 ‘소유’(own)할 것을 지시한 동 법령 역시 재한일본인 재산을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귀속시킬 것을 결정한 법령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한일본인 재산이 적산으로서 미국으로 돌아갈 우려가 컸던 그 시기, 동 군정령 33호가 적어도 공포 당시 한국사회에 대해 한 층 더 동 재산에 대한 상실 위기감을 높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와 같은 국제정치의 현실 앞에서 적산 몰수로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담론은 응혈체론을

거쳐 드디어 국가경제 재건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담론으로 돌아서게 된다. 예를 들어 방한한 폴리에 대한 메시지로서 1946년 5월 22일 비상국민회의 홍진 명의로 작성된 서한은 재한일본인 재산의 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資料 大韓民國史2』 1969, 681)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산은 전 한국재산의 90%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니 이것은 한국독립의 경제적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양찰(諒察)하시고 그 재산을 한국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한국본위로 처리하심을 바라고 건투하심을 비나이다.

공식적인 탄원의 성격을 띤 이 메시지에서는 ‘응혈체’ 같은 추상적인 구호는 이미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오직 그것은 한국에서 차지하는 일본인 재산의 규모와 그로 인해 독립 한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동 재산이 절실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호소만이 담겼다. 재한일본인 재산의 처리 문제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폴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에서 응혈체 같은 추상적인 기술이 빠져, 현실적인 호소만이 담겼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구 지배 지역과 일본의 경제적 연결을 절단시켜 동 지역의 부흥을 통해 일본의 지배력을 차단하려 한 폴리의 정책 구상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결국 폴리 중간배상 구상에 따라 1946년 5월부터 대일 정책의 최고 기관이었던 극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중간배상계획 작성에 들어갔다. 12월 결정된 중감배상계획에서 실제 철거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들은 모두 일본 내에 있는 것들 만이었다.⁶⁾ 또 11월 16일 폴리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 그 가운데 일본이 지배, 또는 점령한 지역에 있는 일본인 소유의 산업 시설을 철거하는 정책은 취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 시설은 그대로 각 지역에 남길 것을 권고했다.(岡野鑑記 1958, 89에서 재인용) 그 후 미 군정청으로 귀속되고 있었던 일본인 재산은 대한민국 건국 후의 1948년 9월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하 한미협정)에 따라 정식으로 한국으로 이양되었다.

물론 그와 같은 ‘성과’는 적산몰수나 응혈체 같은 민족적 정서를 포기하고 국가경제 재건이라는 현실적인 담론으로 선회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의 대일 정책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건, 교전관계나 식민지 피해를 강조한 적산몰수론이나 응혈체론의 쇠퇴와 그에 대신하는 국가경제 재건이라는 현실적인 담론의 대두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재한일본인 재산의 취득 근거를 스스로 애매하게 했다.

즉 그것은 동 재산을 교전이나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서 받는 것인가, 또는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으로서 받는 것인가 하는 근거에 관해서도, 또 일본으로 받는 것인가 또는 미국으로 받는 것인가 하는 재산 소유자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못했다. 실제 그와 같은 규정의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 한미 양국 역시 재한일본인 재산을 이양시킨 한미협정 제5조에서 군정령 33호로 인해 미 군정청이 취득한 일본인 재산 중, 미 군정청이 이미 처분한 것을 제외하고 한국으로 이전시킬 것만을 규정했을 뿐, 한국의 취득 근거에 관해서도, 또 이양 전의 법적 소유자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재한일본인 재산은 연합국의 배상 문제와 연동하면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한국의 경우 그 처리의 성격이 식민지 또는 전쟁 피해에 따른 일방적인 배상 취득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해지며 한일 간의 청구권 처리에 관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선불의 성격을 띠기

6) 자세한 지정 과정에 관한 연구는 岡野鑑記(1958, 82~87) 참고.

시작했다. 실제 그와 같은 애매함은 한일회담 개시 후 재한일본인 재산의 취득과 한국의 대일청구권과의 상쇄 문제로서 대두되게 된다.

Ⅲ 대일추가 배상론

1 중간배상으로부터의 한국 배제

대일 배상 문제는 물론 재한일본인 재산의 귀속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946년 6월 18일 당시 조선상공회의소는 폴리에게 제출하는 청원서 속에서 재한일본인 재산과 더불어 일본 본토 및 기타 점령지역에서 일본이 소유한 군사 시설 및 군수품들이 한국인의 강제노동과 원료의 일부로 생산된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이전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資料 大韓民國史2』 1969, 785-786) 즉 응혈체론을 활용하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중간 배상계획에 따라 한국에게도 재한일본인 재산의 취득과 더불어 일본 본토 및 기타 일본점령 지역에 있는 일본 시설들을 이전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한국사회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나오던 1946년 6월 22일 폴리는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한반도에 관한 보고서를 보내고 있다. 그 가운데 폴리는 한반도의 경제 구조가 일본의 지배 하에서 일본을 위한 원재료 및 중간재의 생산을 위해 형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향후 자립적인 경제에 필요한 생산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로서 폴리는 한국(Korea)이 필요한 산업 시설을 일본으로부터의 배상 철거물(reparations removals)의 일부로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권고를 내렸다. (“Ambassador Edwin W. Pauley to President to President Truma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VIII The Far East 1971*, 709) 물론 동 보고는 한국의 희망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동시에 그것은 한국이 연합국으로 참가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는 권리까지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11월 23일 이승만은 워싱턴에 있었던 주미한국대표부 대표인 임병직에게 전문을 보내, 일본의 배상문제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유하고 있는 한국을 12월 초에 예정된 배상회의에 직접 참가시켜 타당한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大韓民國史資料集 28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1944-1948>』 1996, 166) 동 훈령을 받아, 임병직은 25일 이승만으로부터의 지시임을 밝히면서 폴리에 대해 배상회의로의 참가 허가를 요청했다. (『大韓民國史資料集 28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1944-1948>』 1996, 169)

그러나 1947년 1월 8일자로 폴리에서 돌아온 답장(『大韓民國史資料集 28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1944-1948>』 1996, 201)은 일본의 배상 교섭이 극동위원회 참가국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며 한국의 건설(installation)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이전시킬 산업 시설은 미국에게 배분될 것으로 충당할 방침임을 밝혔다. 즉 미국은 대일 배상 문제를 위한 교섭에 한국이 직접 참여할 것을 거절하고 일본 본토에 있는 시설 등의 한국 이전 문제는 미국이 대일 배상으로서 받는 것 중에서 배정할 성격의 문제임을 통보한 것이었다. 또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배상 교섭 참가를 거절한 동 폴리의 답신은 동시에 비록 다년간에 걸친 일본의 착취에 대한 대가를 위해 미국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원조(assistance)를 확보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즉 폴리의 답신은 중간배상계획과 연동하면서 일부 시설의 한국으로의 이전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식민지나 전쟁 피해국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단지 분리국가의 경제 건설을 위한 지원의 성격으로서 일본으로부터 받는 원조의 문제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실제 대일 배상 처리

에 관해 한국의 법적지위를 정식으로 결정하는 평화조약 관련 구상에서도 그 시기 한국의 지위는 연합국과는 명확히 구별되고 있었다. 예컨대 1946년 10월 25일자로 미국정부의 일각에서 작성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동 제1항 영토 조항과 관련해 한반도(Korea)를 전 일본제국의 잔여(remainder)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⁷⁾ 또 제2항으로서 “할양지역(ceded Territories)에 관련된 조항들”을 따로 설정하고 배상협정 등의 확정이 들어간 제7항 “전쟁으로부터 생긴 청구권”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⁸⁾

즉 이 시기 한국의 법적지위를 정식으로 결정하는 평화조약 구상에서도 한국은 일본제국의 ‘잔여’로서 연합국의 배상 권리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것이다.⁹⁾ 결국 그러한 한국에게 일본 본토 등에 존재한 관련 일본 시설의 직접적인 이전 권리가 주어지는 일은 없었다. 1947년 4월에 미국이 내놓은 중간배상 추심 지령 속에서 그 배정을 먼저 받게 된 국가들은 중국, 네덜란드, 필리핀, 영국의 4개국이었다. 더구나 그 후 동 계획은 미국의 대일 배상정책 자체의 변경에 따라 중단되었다. 그 결과 미국이 중간배상을 일본으로부터 취득하는 일은 없었다. 그로 인해 비록 미국이 받을 대일 중간배상으로부터의 재배분에 불과했으나 재한일본인 재산 이외에 일본의 생산시설들이 한국으로 이전되는 일 역시 없었다. 그러나 가령 그것이 실행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식민지나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권리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재한일본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의 재산 청구권의 선불 재료로서 작용하게 된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2. 이상덕 배상 구상

대일 피해국으로서의 처리를 위해 한국에게 남겨진 마지막 가능성은 동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평화조약에 연합국으로 참가하고 배상권리를 획득할 것이었다.

선생연구들도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의 대일평화조약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1947년 여름쯤 시작되었다. 8월, 남조선과도정부는 연합국의 대일배상회의가 정식으로 성립 때 일본에게 요구할 배상액에 대한 구체적 조사, 및 그 대책 수립을 위해 오정수 상무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資料 大韓民國史5』 1972, 250) 1947년은 동년 2월에 이탈리아가 연합국과 평화조약을 체결, 또 4월에는 중간배상계획이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최종적인 대일 배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시기였다.

조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그 시기, 한국의 대일 배상 문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8월 18일 입법의원은 제131차 본회의에서 대일평화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결의를 냈다.(『資料 大韓民國史5』 1972, 231) 그 결의가 나오자 당시 입법의원 의장이던 김규식은 한일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복잡한(complicated)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한국이 평화회의에 직접 참가할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참가를 허락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트루먼 대통령에 보내고 있다.(“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to the Secretary of State” (1947.8.2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7)“Peace Treaty with Japan”(unpublished manuscript). *Drafts of Treaty(Ruth Bacon)*, YF-A10, Box no.1; Folder no.15, R.01, p.213. 단 동 문서에 찍힌 날짜 표기는 애매하고 ‘1945’년의 가능성도 있다.

8) *ibid.*, p.214; p.219. 동 문서는 한반도를 직접 할양지역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 정확히 말해 타이완 등 ‘할양’ 상대가 있는 지역도 아니었으나 ‘전 일본제국의 잔여’로 인식되고 있었던 한반도가 연합국이 아닌 ‘할양지역에 관련된 조항들’ 관련 규정을 받게 될 지역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9) 그 후 평화조약과 관련해 1949년12월 초안부터 1951년 3월 초안까지 한국은 연합국으로서 배상 권리의 적용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 주어진 권리는 재한일본인 재산의 취득 이외에 추가 배상을 포기하는 ‘권리’였다. 즉 연합국 자격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은 재한일본인 재산 이외에 추가 배상을 취득하는 권리를 부여된 적이 없는 것이다. 그에 관해서는 장박진(2011)에서 논했다.

States 1947 vol. VI The Far East, 1971, 511)

대일평화회의를 향해 1947년 여름쯤 시작된 준비 작업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대일 배상 구상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1948년 1월, 당시 조선은행 업무부 차장이었던 이상덕에 의해 집필된 「대일배상요구의 정당성」이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동 배상 구상은 결코 이상덕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후술하는 배상조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한국정부 내부의 준비 과정에서 과도기적이면서도 공적인 성격을 지닌 요구 구상이었다고 판단되는 점이다.

실제 같은 금융기관에 몸을 담은 조선식산은행의 김남용은 1947년 9월 재무부 산하에 각 은행관계자의 대일청산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金南瑢 1948, 20) 국내 금융기관의 축이었던 조선은행이 각 은행관계자로 조직된 청산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 시기적으로 보와도 동 원회가 배상조사위원회와 연계된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더욱 이상덕은 그 후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대표로서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오타(2003, 50)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상덕이 발표한 배상 구상은 다음으로 검토할 배상조서 서문의 내용, 심지어 그 표현까지 지극히 흡사하고 있다.

즉 이상덕은 1947년 배상 준비 시작부터 배상조서 작성을 거쳐, 그 후 대일청구권 교섭까지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다. 그 점에서 이상덕은 정부관계자로서 대일 배상 작성 과정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으며 그만큼 동 과정의 연속과 변용을 구현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그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배상 구상은 1947년 여름쯤부터 1948년 초까지 대일배상 문제의 준비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 간에 공유되고 있었던 공적인 견해를 질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점에서 그것은 배상조서로 귀결된 한국정부의 대일 배상 요구의 변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만큼 이하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상덕은 먼저 2차 대전 후의 대일 배상 문제에 대한 연합국의 일련의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전후 연합국의 대일 배상 방침이 침략국의 전력 제거나 재군비 조지에 있으며 종래와 같은 승자의 보복을 패자의 부담으로 가하려 하는 것이 아님을 논하면서 한국의 대일 배상 요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세계적인 조류(潮流)에 부합할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후 그는 제2차 대전의 성격에 주목해 동 2차 대전이 제국주의적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던 1차 대전과 달리 과시즘의 침략에 대한 민주주의 방위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 특징이 해방전쟁이라는 성격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덕 1948, 29-32) 동 지적이 한국의 대일배상 요구 정당화의 핵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은 틀림없다. 즉 한국의 대일 배상의 정당성을 바로 연합국이 주도한 2차 대전의 성격과 그에 부합하는 ‘민족의 해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찾은 것이었다.

이어 동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국제정의의 기본적 조건인 도의 · 공평 · 호혜의 원칙을 어긴 폭력과 착취로 얼룩진 지배였다고 강조하면서 한일병합이 한민족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된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상덕 1948, 32) 즉 일본의 한국 지배가 한국국민의 의사를 반한 것인 만큼 2차 대전 후의 한국 독립은 바로 ‘해방’ 전쟁이라는 2차 대전의 역사적 성격에 부합하는 일임을 부각시킨 것이었다. 또 그러면서도 이상덕이 한국의 대일배상이 일본을 징벌하기 위한 보복의 부과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필연적 수행이 기본적 이념이며 이는 연합국이 일본에 가하려는 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만는다고 표현한 것도 한국의 대일배상 근거를 연합국의 정신에 둘 것을 그 실현 여부의 관건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⁰⁾

10) 선행연구 중, 먼저 이상덕 배상론에 주목한 오타는 ‘보복의 부과가 아니라 피해 회복’이라는 논리가 미국의

한국의 대일 배상의 근거를 연합국의 대일 처리 방침에 연결시킨 후 이상덕은 대일 배상 요구의 범주를 이하와 같이 ‘기본적 표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상덕 1948, 32)

1. 일본으로부터 강제된 합병 이래 약탈·강탈·학대·강압 등으로 인한 일절의 희생 또는 손해, 손실은 그 정당한 소유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상 또는 반환할 것이다.
2. 일본이 기도하고 강제로 관련된 전쟁의 결과 한국인이 피(被)한 일절의 손해 및 손실이 그 책임이 일본국에 있음을 단정하고 그 보상금을 주장한다.
3. 1945년 8월 9일 포츠담선언 수락 이후 9월 7일 미군 진주시까지의 허공 상태에 일본잔존 세력의 집정과 책임 하 한국의 불이익을 초래한 일절의 배신적 불법행위 또는 재산상의 침략은 무효 또는 보상할 것이다.
4. 한반도 내 유체(有體)·무체(無體) 일절의 일본인 재산은 우리의 노력(勞力)과 우리의 자원을 착취하여 비대한 것이므로 그 소유가 일본정부 그 대행기간 또는 보통 인민 여하를 막론하고 한반도에 수립되는 국가에 무상 귀속할 것을 주장한다.
5. 한반도 내 거주 또는 한반도 외 거주 또는 소재를 막론하고 일본인 또는 일본인 지배 하의 법인의 부담하는 금전 채무는 변제기간 도래 또는 미 도래를 막론하고 즉시 반납을 주장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기본적 표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 강제병합에 따른 식민지 피해 보상>, <2. 일본의 전쟁 수행에 따라 발생한 피해 보상>, <3. 해방 후의 혼란기에 생긴 피해보상>, <4. 재한일본인 재산의 무상 취득>, <5. 일본 관련 법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채권 청산>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상덕은 동 ‘기본적 표준’을 제시한 후 보다 구체적인 대일 배상 요구 항목들은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상덕 1948, 33-34)

<표1 이상덕이 밝힌 구체적인 배상 요구 항목>11)

(1)약탈에 의한 손해	a) 일본이 자의 또는 강제로 반출한 국보미술품, 문헌, 유물, 기타 역사적 물건의 반환 또는 보상 b) 일본육해군 또는 신사 건축에 기부헌납 또는 위문(慰問) 기타 방법으로 강탈한 금전 또는 물건의 반환 또는 보상 c) 공출헌납 또는 금속회수령 등으로 강탈한 귀금속제품, 수기(輸器) 등의 반환 또는 보상
(2)강제로 동원된 금차 전쟁의 결과 피	a) 동원, 지원 또는 출정(出征)한 군인 군속의 사망 질병 또는 불구 폐질(廢疾)의 희생이 된 일절의 수당 은급 및 보상 b) 전투 또는 군사적 행위의 직접적 결과 사망 상해에 의한 손해

대일 배상정책의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논리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太田修 2003, 46) 이는 오히려 반대라고 해야 하겠다. 즉 동 논리는 한국의 대일 배상이 연합국의 처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서 한국의 대일 요구가 2차 대전 후의 연합국의 방침과 일치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상덕 자신이 연합국의 대일 처리가 승자의 보복이 아님을 지적하고 한국의 대일 배상 실현을 위해 그와 같은 세계적인 조류에 부합해야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11) 이상덕은 구체적인 항목들 직접적으로 ‘청구권’으로서 제시하고 있으나(이상덕 1948, 33) 동 ‘청구권’이 대일 평화조약 이후 성립된 ‘청구권’ 요구가 아니라 ‘배상청구권’의 뜻으로 제기된 것은 동 글 속에서 ‘청구권 문제’에 해당하는 ‘금전채권’ 문제를 따로 거론하고 있는 점(이상덕 1948, 36-39)으로 알 수 있다. 본고는 배상의 변용을 논하는 것이므로 글자 수 제한도 고려해, 후술할 배상조서 제2부 <확정채권>에 들어가는 금전채권 항목은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한 손해	c) 징용근로봉사 또는 보국대(報國隊)의 명목으로 강제노동의 희생이 된 자 및 생존 피부양자의 손해 d) 직접 또는 간접의 군사적 목적에 의한 시설 공작물 또는 수용령의 결과 피한 재산의 파괴 몰수 또는 훼손
(3) 학대강폭(強暴)에 의한 손해	a) 관공서, 한교 정부기관 회사 등에 있어 급여성 민족적 차별 대우로 인한 손해 b) 가문의 명예, 인권의 존엄을 무시한 창씨개명의 강제에 기인한 손해 c) 종교 신앙 사상 학문의 자유 탄압으로 폭학(暴虐)한 희생이 된 자 및 그 생존 피부양자의 손해 d)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당히 폭행 고문 재산파괴 또는 몰수의 희생된 자 및 그 생존 피부양자의 손해 e) 이민 또는 인구 정책의 명목 하 간도 만주 등에 추방의 희생이 된 자 및 생존 피부양자의 손해 ※ 일본의 폭학에 의한 피손해 및 위자료 일절이 포함될 것이다.
(4) 해방 직후 발악 일인이 조선의 불이익을 초래할 목적으로 각 중 시설공장 부동산 또는 재고품 파괴 소각 매장 또는 훼손에 의한 손해. 또는 경비의 부정 지출, 회계의 문란, 급여의 과불 등 배덕(背德)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5) 전시 중 일본의 작전 목적으로 사용된 선박 차량 자동차 기타 수송기관의 상실, 파괴 훼손 등에 의한 ()의 보상	
(6) 미곡 강제 반출의 보상: 당시 미곡시장 가격과 공출 가격의 교환 불균등한 수탈 차액에 대한 보상	
(7) 일군 10만 명의 양병(養兵)비: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생활 자원에 속하는 막대한 물자의 강탈적 보급으로 구성된 양병비에 대한 보상	
(8) 전시 중 일본이 전비 염출의 목적으로 강제 징수된 과세, 부금(賦金), 벌금 기타 이에 유(類)하는 피해 일절	
(9) 반출 지금(地金)의 현물 반환	
(10) 본방(本邦)인의 해외 재산: 전후의 혼란으로 상실 또는 손실된 만주·중국 또는 해외에 소유한 본방인의 재산에 대한 보상	

※(5)에 있는 ()는 인쇄 불명의로 인해 판독 불가능함을 뜻함

이상덕이 거론한 구체적인 항목들은 열 개 항목이며 따라서 그들 항목이 정확히 다섯 가지 ‘표준’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 약탈에 의한 손해>에는 미술품 등의 반출과 함께 일본육해군의 강탈, 공출 등이 섞여 있으며 따라서 동 요구는 ‘표준’ <1. 강제병합에 따른 식민지 피해 보상>과 <2. 일본의 전쟁 수행에 따라 발생한 피해 보상>의 양쪽에 걸치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원래 한국의 경우 전쟁 수행에 따른 피해가 식민지 지배 관계와 얽히는 것이 많으니 만큼 세부적인 차원에서는 ‘식민지 피해’와 ‘전쟁 동원 피해’를 사실상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배상 내용의 변용을 이해하는 데는 비록 식민지 피해와 전쟁 피해를 엄격히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이상덕이 개념적으로 식민지 피해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것은 <(3) 학대강폭에 의한 손해>에 들어간 구체적인 항목들로서 나타났다. 즉 예컨대 동 항에 포함된 민족적 차별로 인한 급여 차별, 창씨개명 등은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를 부각시킨 것이며 또 신앙, 학문 등의 탄압, 언론·결사 등의 억압 등 역시 전쟁 수행 이전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들을 탄압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48년 초 전쟁 피해와 더불어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포함시킨 것은 그 시기, 아직 미국의 대일 정책이 완전히 전환된 것이 아닌 가운데 한국의 대일 배상을 연합국이 주도한 민족의 ‘해방’이라는 성격에 찾을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큰 과

오는 없을 것이다. 실제 미국의 대일 배상 정책이 무배상 원칙으로 돌아서게 됨에 따라 한국의 대일 배상 구상은 큰 변모를 이루게 된다.

3. ‘배상 아닌 배상 요구’로의 후퇴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생산 능력을 억제하려 한 미국의 초기 대일 배상 정책은 그 후 냉전의 격화에 따라 크게 변모를 이루게 되었다. 냉전의 격화에 민감한 육군성 주도로 작성된 1947년 2월의 제1차 스트라이크 보고서는 대일 정책에 필요한 기초 조건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폴리 배상 방침에 따를 것을 부정했다. (“Report on Japanese Reparations(First Strike Report)”, 大藏省財政室編 1982, 464.) 또 1948년 4월 육군성에 제출된 소위 ‘존스톤(Percy H. Johnston)보고서’는 “일본의 공업 생산물이 극동지역 전체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해 “미국이 바야흐로 일본의 부흥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다. (“Report on the Economic Position and Prospects of Japan and Korea: Measures Required to Improve Them”, 大藏省財政室編 1982, 483-484) 동 조사를 위해 방일한 존스톤은 일본 관계자와의 회담 자리에서 자신들의 사명이 어떻게 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자립경제 위에 서게 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 이는 물론 단지 애타적인 정신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外務省 2006, 349) 그 후 미국은 1949년 5월 이른바 맥코이(Frank R. McCoy) 성명을 통해 중간배상계획을 중단시켜 정식으로 무배상 정책으로 돌아섰다.

상술한 1948년 초의 이상당 배상 구상으로부터 후술할 배상조서로의 변용은 바로 미국의 대일 배상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틀림없다. 실제 미국의 대일 배상 정책의 전환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1949년 3월 SCAP에 대해 배상조서 <제1부 현물>을 제출한 당시 임병직 외무부장관은 배상조서를 통한 대일 요구에 관해 “그는 배상이 아니다. (중략) 배상이라는 문구는 당초에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 달린 ‘배상’이라는 개념과 달리 동 배상조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그 내용에 관해 그것을 ‘배상’으로 형용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던진 것이었다. 임병직은 그 이유를 “소위 배상이란 정신적 손실이나 이는 앞날의 강화회의 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資料 大韓民國史11』 1999, 298-299) 다시 말해 임병직은 ‘배상’이 ‘정신적 손실’을 요구하는 것인 데 반해 한국의 대일 요구가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님을 내비친 것이었다.

그러면 동 배상조서를 통해 밝힌 한국의 대일 요구라고 함은 어떤 성격의 요구였는가? 임병직은 미국정부의 방침이 대일 추가 배상을 부정하는 것임을 전한 외신보도에 대한 답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다. (『資料 大韓民國史12』 1999, 191)

“대일배상은 미군정 밑에서 받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운운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일본에서 배상을 받을 것이며 민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왜정 40년 동안 강도당한 국보 및 국가와 민족의 자원·재산의 현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선은 인용자)

동 발언은 먼저 현물을 대상으로 한 배상조서 제1부의 제출에 맞춘 것인 만큼 그 반환대상을 ‘현물’에만 한정했으나 동 발언을 통해 임병직은 한국의 대일 요구가 미국의 정책과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동 요구가 ‘정신적 손실’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요구하는 것임을 부각시켰다. 주목해야하는 것은 동 발언 역시 단지 임병직 개인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이다. 실제 임병직은 1949년 1월, 35년 만에 한국에 귀국하고 그 도착 시에 처음으로 자신이 외무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것을 들었던 인물이었다.(임병직 1964, 323) 그는 배상조서 작성 과정의 대부분, 한국에 있지 않았으며 그가 밝힌 요구 근거는 귀국 후 대일배상 문제를 담당하던 주변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일 배상정책의 전환을 맞이해 1949년에 그 체계적인 모습을 드러낸 대일요구는 ‘배상이 아닌 배상 요구’였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이미 반환적인 요구로 재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한일회담 ‘청구권’ 요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¹²⁾ 이하 배상조서의 구체적인 고찰을 통해 ‘반환’적인 성격을 검증해야 한다.

IV 배상조서의 성격

1 배상조서의 구성

그 성격이 반환적인 것이며 미국의 정책과 무관한 것임을 강조한 임병직의 언설과 달리 배상조서는 애초부터 미국의 대일 정책을 인식해야만했던 고심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배상조서를 미국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¹³⁾ 또 배상조서 전문은 “한국의 대일배상의 응당성(應當性)은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이미 (1)포츠담선언, (2)연합국일본관리정책, (3)포레배상사절단보고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배상조서 1954, 1)라고 선언하고 대일 배상의 정당성을 연합국에 의한 대일 정책에 찾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일배상의 정당성을 담보한 미국의 대일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는 현실이었다. 다시 말해 배상조서는 미국에게 제출되면서도 그 대일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했다. ‘반환’적인 배상조서의 성격은 바로 그와 같은 모순에 부응하기 위한 산물이었다고 판단해 무방할 것이다.

그와 같은 모순 속에서 작성된 배상조서는 제1부 <현물>, 제2부<확정채권>,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제4부<일본 정부 저가 수탈에 의한 손해>라는 4부 구성으로 편성되었다.

그 가운데 먼저 지금·지은, 미술품, 골동품, 선박, 해외 부동산 등을 포함한 제1부 <현물>에 관해 배상조서는 동 요구 내용이 ‘반환’ 요구임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 (배상조서 1954, 2) 또 제2부 <확정채권>에 관해서도 배상조서는 그것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이며 따라서 배상문제와는 본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중략) 신속히 상환 또는 변제될 것을 요구는 바”(배상조서 1954, 2-3)라고 적고 있다.

즉 제1부 요구는 과거 한반도에 존재하면서도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 미술품 등의 현물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반출 자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현물 가치 이상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 제2부는 식민지 지배나 전쟁 등의 정치적인 요

12) 임병직은 훗날 회고록에서 한일교섭에서는 “대일배상요구를 철폐하고 재산권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독자는 주목하여야할 것이다”라고 일부러 강조하면서 그 차이를 배상요구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강경한 태도이며 재산권에 대한 청구 요구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청구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임병직 1964, 499)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임병직의 발언을 볼 때 회고록에서의 증언은 배상 요구가 추진되어 있었던 실제 과정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13) 제1부가 1949년 4월 7일 GHQ에 제출된 것은 배상조서에 명시되어 있으나(배상조서 1954, 2) 제2부, 제3부, 제4부를 담은 속편이 언제 제출되었는지는 불명이다. 그러나 9월의 속편에도 제2부 확정채권에 관한 설명에 맥아더 사령부가 확정채권 문제를 일반배상요구에 포함시켜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기술이 있으므로(배상조서 1954, 2) 동 속편 역시 미국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은 확실하다.

인과 상관없이 생긴 단순한 채권의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의미에서 동 제2부가 애초 반환적인 요구를 모은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즉 제1부 및 제2부는 임병직이 설명한 ‘정신적인 손실’ 요구가 아니라 ‘반환’적인 요구에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자세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전쟁 피해’나 ‘저가 수탈’ 등의 정치적인 성격을 표면상 강조한 제3부, 제4부의 요구 내용이다.

2. 제3부의 분석

1) 인적 피해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첫 제 요구항목은 인적 피해에 관한 요구항목들이었다.

한국정부는 동 인적 피해 요구 항목들을 ‘피동원 한국인 제 미수금’으로서 총칭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관계법규와 각 사업장의 제 급여 규정에 의한 제 미수취(未受取) 금품과 동원으로 인하여 받은 당사자 및 그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하선은 인용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배상조서 1954, 329) 구체적인 요구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¹⁴⁾

<표 2 인적 피해에 관한 요구항목들>

요구 항목	배상조서 중의 추가 설명
① 사망자 조위금	보험금도 합쳐, 규정에 따라 12,603명에 대해 1인당 5,000엔(신고액 평균)으로 함
② 사망자 상제료	규정에 따라 사망자 12,603명에 대해 1인당 100엔(신고액 평균)으로 함
③ 유가족 위자료	사망자 12,603명에 대해 1인당 10,000엔(신고액 평균)으로 함
④ 부상자 및 일반 노문자 위자료	“전시재해 수당”, “기타 수당”을 “위자료”로 하여 이하로 함 -부상자 1인당 5,000엔, -일반노무자 1인당 1,000엔(전체 노무자 수 105,151명)
⑤ 부상자 부상 수당	-
⑥ 퇴직 수당 총액	신고액
⑦ 상여금 총액	신고액
⑧ 현금 기타 보관금	신고액
⑨ 미수 임금	신고액
⑩ 가정송금 액	기본보조금, 특별보조금, 가족수당, 가정송금을 일괄 ‘가정송금’으로 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1인당, 월평균 80엔(신고액 평균)을 한도로 함
⑪ 징용기간 연장 수당	규정에 의하여 1인당 월평균 400엔(신고액 평균)으로 함

배상조서는 <표 2>에 제시한 각 세부항목들의 어느 범위가 ‘미수취 금품’이며 또 ‘배상’ 요구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는다. 개념적으로 보고 <① 사망자 조위금>부터 <④ 부상자 및 일반 노문자 위자료> 또는 <⑤ 부상자 부상 수당>까지가 후자인 ‘배상’, 그리고 <⑤ 부상자 부상 수당>또는 <⑥ 퇴직 수당 총액>부터 <⑪ 징용기간 연장 수당>까지가 전자인 ‘미수취 금품’으로 분류해 파오는 없을 것이다.

먼저 ‘수당’, ‘상여’, ‘보관금’, ‘임금’, ‘송금’ 등으로 구성된 ‘미수취 금품’이 ‘반환’적인 것임은 알기 쉽다. 비록 그 요구가 전쟁으로 동원된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면서도 동 요구의 실태는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관계법규나 급여 규정에 따른 수당 등, 이미 노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국인의 금전 채권을 요

14) 저자가 배상조서(1954, 323-324)에서 정리.

구하는 것, 또한 한국인이 보관을 의뢰한 자산의 회수를 요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것은 한국인을 동원했다는 것 자체의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당사자 및 그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관련 항목이다. 이들 ‘배상’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조위금’, ‘상제료’,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의미에서 수당 등, 노무 보수와 같은 직접적인 미수금 요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상조서는 조위금이나 상제료에 관해 ‘규정’에 의해서, 또 위자료에 관해서도 ‘전시재해수당’, ‘기타 수당’들을 위자료로 간주해 산출했음을 명시하고 있다.(배상조서 1954, 329) 동 설명은 산출에 적용한 ‘규정’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일제강점기 한국이 독자적인 규정을 가지지 못했던 조건, 또 그것이 일본으로 동원된 노무에 관련된 요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규정’이 정부 차원이건 각 사업소 차원이건 일본의 관계법규임은 틀림없다.

즉 배상조서가 제기한 ‘조위금’, ‘상제료’, ‘위자료’ 등의 ‘배상’은 비록 그것이 임금, 상여 등 직접적인 노동 보수라는 ‘채권’이 아니었으나 그것 역시 일본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일본 국민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사망, 부상에 따른 수취 채권의 회수 요구를 뜻했다. 그 의미에서 동 요구 역시 한국인을 동원시켜 사망, 부상으로 몰아갔다는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한 ‘정신적인 손실’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즉 배상조서가 제기한 인적 피해 요구는 그것이 ‘미수취 금품’이건, ‘당사자 및 그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이건 모두 반환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물적 피해

전쟁 관련 피해를 다룬 제3부의 두 번째는 물적 피해에 관한 요구항목들이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1) 일본군 점유·사용에 의한 피해

물적 피해 중의 첫 번째 항목은 전쟁을 위해 일본군이 점유·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 보상 요구였다. 그러나 그 상세 내용을 보면 요구 대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내의 각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내역은 <표 3>과 같다.¹⁵⁾

<표 3 물적 피해 중, 일본군 점유·사용에 의한 피해 요구 항목들>

요구항목	추가설명
문교본부 관계	서울대학, 이화여자대학, 경성신학, 동국대학, 연희(延禧)대학(1947년 조사 당시 시기에 의함)
서울시 학무국관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 전 103 학교의 건물 파손 및 일본인 교사의 비행으로 인한 부정처분된 비품 등 (1947년 10월 1일 현재)
경기도 학무국관계	상업학교, 초등학교 등 전 6학교(1947년 조사 당시 시기에 의함)
강원도 학무국관계	중학교 2학교(1947년 조사 당시 시기에 의함)
충청남도 학무국관계	중학교, 초등학교 등 전 57 학교(1947년 조사 당시 시기에 의함)
전라북도 학무국관계	사범학교, 중학교 등 전 13학교(1947년 조사 당시 시기에 의함)
전라남도 학무국관계	중학교, 초등학교 등 전 19학교(시기에 관한 기술이 없음)
경상북도 학무국관계	중학교, 초등학교 등 전 13학교(1947년 조사 당시 시기에 의함)
경상남도 학무국관계	중학교, 초등학교 등 전 22학교 (1947년 조사 당시 시기에 의함)

15) 저자가 배상조서(1954, 330~332)에서 정기. 또 각 도별의 구체적인 대상 학교 리스트는 동 배상조서(1954, 332~359)에 수록.

교통부 관계	철도학교 기숙사가 해방 직전, 직후에 만주, 38이북에서 남하한 일본인 전제민의 수용소였던 관계로 파괴된 피해
제주도 학무국관계	농업학교, 중학교 2학교(1947년 조사 당시 시가에 의함)

배상조서는 동 요구에 관해 일본군의 병력 확충으로 인하여 기존 병사(兵舍)만으로는 소기의 병력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각 장소의 대건물(주로 학교)을 병사로서 사용하거나 그 부근에 진지를 설정하고 주둔한 관계로 발생한 건물 피해 및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원상 복구비’를 요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배상조서 1954, 331) 즉 동 요구는 1947년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자의적인 사용에 따른 상실 가치의 충당을 요구하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 요구는 학교 건물들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의 책임을 추궁하려 한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었다. 그 의미에서 동 요구가 상실 가치의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임은 다른 바가 없다.

(2) 부정 파괴 또는 소모에 의한 피해

물적 피해의 두 번째 청구 항목은 <부정 파괴 또는 소모에 의한 피해> 요구였다. 배상조서는 동 요구와 관련해 그 요구 내용을 전쟁 중, 일본 정부가 전쟁 목적 완수를 위하여 각종 군용시설의 건설 및 기존 시설을 철거하여 군수품으로 전용한 것, 또는 방공(防空) 목적을 위해 일반주민의 가옥들을 소개(疏開)시킨 것, 그리고 각종 불필요한 방공 시설의 건설 등을 위하여 불필요한 공사, 기존 시설의 철거, 소개 등을 강요한 것들에 따른 피해 요구를 밝히고 있다. (배상조서 1954, 359-360) 그 내역은 <표 4>과 같다.¹⁶⁾

<표 4 물적 피해 중, 부정 파괴 또는 소모에 의한 피해 요구 항목들>

요구 항목	추가 설명
구왕궁 관계	수류(獸類) 독살, 조류 사료 무배급, 문류(蚊類) 족출(簇出), 열대 식물 처분
임야 피해 복구비	군용으로 송근(松根), 탄(炭) 기타 자재의 무질서한 채취로 인해 황폐화된 임야의 복구, 사방(砂防) 공사비 등
교통부 관계	-강제사용 중의 한국선박 파손 -강제사용 토지 피해 -부정 소각 도부(圖簿) 복구비 -전시 중의 공습, 폭발, 또 종전 직후 일본인에 의한 불법파괴, 방화 등으로 인한 시설(등대, 건물, 교량, 수도(隧道), 부두 등) 복구비 -철거 선로 복구비 -불필요한 방공시설 제거 비용 -소개 기타로 인하여 파괴 또는 이전된 시설의 복구비 -소개로 인하여 파괴 또는 분실된 물품 피해 -해방 직후 미군정으로서의 사무 인계 당시 장부와 대조하여 부족한 물품
서울시 관계	군기 제작 등을 위해 무상으로 회수한 철재(鐵材) 1504톤, 방공호 매설 공사비, 소개 건물 미불금
경기도 관계	교량단간(欄干), 시설물 철거로 인한 피해, 불필요한 방공시설 및 기타 공사 피해, 소개건물 대금 미불금
충청남도 관계	시설물 철거로 인한 피해, 불필요한 시설(부여신궁 참도) 및 공사 피해, 내선일체를 위해 신궁을 건설하고 부여시를 신도(神都)로 건설하기 위한 건물 강제 이전

16) 저자가 배상조서(1954, 359-489)에서 정리.

	으로 인한 피해
충청북도	교량시설물 철거로 인한 피해, 방공시설 철거 비용
전라북도	교량난간 시설물 철거 피해
전라남도	교량난간 철거 피해, 건물 철거 피해, 지방도로 개수(改修)공사 퀴지(潰地) 원상복구 비용, 기타(방공호, 신사 조성공사)
경상남도	군사 시설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비, 신사 축지(築地) 원상복구비, 방공호 공사 및 방공진지 원상복구비, 소개 건물 보상비, 교량난간 및 기타 철재 회수로 인한 피해
제주도	불필요한 도로 신설로 인한 피해

동 요구에는 구왕궁과 관련해 동물의 독살, 모기 축출에 따른 피해 요구 등, 일반적인 시설 파괴 이외의 피해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각 도 별로 정리된 동 항목 요구의 실태는 사실상 전쟁 수행을 위해 공출된 자원, 자재의 손실 비용, 불필요한 공사에 들어간 비용, 철거에 따라 잃게 된 자산 가치 등의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동 요구 역시 실질적으로는 전쟁으로 동원된 결과 손실된 실제 비용의 회수만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과오는 없다.¹⁷⁾

물론 배상조서가 동 요구에 즈음하여 “전부가 그들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불법 파괴 또는 소모”(배상조서 1954, 360)로 규정한 점이나, 충청남도 관련 청구에서 내선일체를 위해 부여신궁을 건설하고 부여시를 신도로 건설하기 위해 건물을 강제로 이전시킨 것 등을 문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그러나 표면상, ‘불법’이나 ‘내선일체’와 같은 정치적인 책임을 부각시킨 그들 요구도 실제 요구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공사, 기존시설의 철거, 또는 소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파괴의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또는 ‘내선일체’ 등의 기술들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 요구를 추진하는 의도에서 도출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¹⁸⁾ 동 요구 역시 그 의미에서 ‘반환’적 성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3) 기타

물적 피해와 관해 <기타>로서 정리된 세 번째 범주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 5>와 같다.¹⁹⁾

<표 5 물적 피해 중, 기타로서 정리된 피해 요구 항목들>

요구항목	추가 설명
수산관계 공공단체 피해	전쟁 중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수산관계, 공공단체, 회사 및 공장의 건물 및 비품 피해(1944~1945)
기업정비령에 의한 피해	군수품 확정을 목적으로 한 ‘기업정비령’으로 인해 해체된 해당 기업의 시설이 염가(廉價)로 처분된 것에 대한 피해와 ‘정비’ 이후 해방까지의 조업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
단양 광산 ‘리삼	한국인이 소유한 동 광산을 총독부가 주요 광물 생산량을 악용하고 일본기업인

17) 본론에서도 후술하나 동 요구에는 예를 들어 교통부 관계에서 ‘공습’이라는 ‘교전’ 피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은 미국의 공습에 따라 발생한 재산 피해를 일본에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동 ‘불법’은 예를 들어 교통부 관련에서 제기된 전후 일본인의 방화 등, 전쟁 동원 체제 하에서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일부 범죄행위에 대응한 개념이었던 가능성도 있다.

19) 저자가 배상조서(1954, 489-501)에서 정리.

운모' 광석 대금	'일본회유금속주식회사'에게 채취사업을 시켰으나 한국인 소유자는 그 부당성으로 이유로 그 대금 수령을 거절했다. 따라서 해방 후 그 광산은 귀속 재산으로 되었으나 1941년 7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이 불법적으로 채취한 광석의 대금
부산수산대학	동 대학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을 전액 일본기업에 선불했으나 해방으로 인해 공사가 미완료로 되었으므로 그 미완성 공사에 대한 피해 보상
교통부 관계	일본군에 대여한 물품 회수, 일본인에게 지급한 가공재료의 미납금(본사가 한국에 있는 기업은 제외)

첫째인 <수산업계 공공단체 피해> 요구는 폭격으로 인한 건물 및 비품 파괴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물론 한일 일체화란 조건 하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공습한 것이 아니므로 동 피해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미국의 폭격으로 인한 것을 의미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정부에 대해 청구하려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띤다. 물론 그것은 일체강점에 따라 일본이 개시한 대미 전쟁의 결과 동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에서 그 책임을 부각시킨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동 요구 내용 역시 파괴된 건물, 비품 비용을 회수하려는 것이며 폭격 등을 당하게 한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기업정비령에 의한 피해>는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이 취한 자의적인 정책을 문제로 삼은 것이었다. '기업정비령'은 전쟁 수행 중인 1942년 5월, 경제통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같은 업종의 기업들을 통합, 재편시킴으로써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동 법령은 동 년 6월 한반도에서도 적용되었다. 동 요구는 그 의미에서 자의적인 법령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이 입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점에서 일정한 정도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 요구 내용 역시 시세보다 염가로 처분된 것에 따른 차액과 기업 정리 이후 영업하지 못했던 것에 따른 소득 상실의 충당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법령의 시행과 그로 인한 사업 정리 자체를 추궁한 것이 아니었다.

또 세 번째 이하의 요구항목들의 내용은 사실상 제2부 <확정채권> 요구와 전혀 다른 바가 없다. <단양 광산 '리삼운모' 광석 대금>은 한국인 소유 광산의 광석을 일본이 채취한 것에 대한 대가 환불, <부산수산대학>은 건물 공사가 중단되었음에 따라 먼저 선불한 공사비의 회수, 그리고 <교통부 관계>는 물품 및 가공 재료의 미납금에 대한 환수 요구였다. 이들이 비교적 단순한 채권 회수 요구였음은 분명하다.

이상 물적 피해에 관해 세 번째 <기타>에 들어간 요구 내용 역시 피해를 겪은 전쟁 책임 자체를 추궁한 것이 아니라 전쟁 동원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의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환'적인 요구였다.

3) 8.15 전후 일본인 관리 부정행위에 의한 피해

인적, 물적 피해에 이어, 배상조서 제3부의 세 번째 요구항목은 해방 직후의 혼란 상황 속에서 관련 기관의 일본인 책임자가 일본인 직원들에게 각 종 명목으로 부정 지출한 공금, 및 관용 물품을 부정 매각하고 착복한 물품 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배상조서 1954, 502) 각 구체적인 요구 항목들은 <표6>과 같다.²⁰⁾

<표 6 8.15 전후 일본인 관리 부정행위에 의한 피해 요구 항목들>

20) 저자가 배상조서(1954, 327~328; 502~506)에서 정리.

요구항목	추가 설명
법무부 관계	부정 지출, 물품 매각
재무부 관계	부정 지출, 선불 급여 및 여비, 위영(慰榮)금, 기타
공보처 관계	부정 퇴직금 중, 미회수금
교통부 관계	공사대금, 물품대금, 보조금 기타, 해방 후 영춘(榮春)선 부정 매수를 위한 지불액
남선험동전기회사 관계	인양, 하물 정리 등의 가불금, 부정 지출금, 배급 쌀 대금, 여비 지출 등
수리조합연합회 관계	한국 내 수리 사업을 위한 국영기관인 동 연합회 회장이 자신 및 부하 직원들에게 특별상여 명목으로 지불한 것 중, 회수하지 못했던 것
농지개발영단 관계	일본인 직원에게 귀향 여비, 해방 기념품, 퇴직상여금 명목으로 부정 지출한 것

각 부처 및 기관 별로 정리된 동 요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고 무방하다. 그들은 해당 기관의 관리 및 경영자들이 물품의 매각 대금을 착복하거나, 각 기관의 공금을 ‘급여’, ‘상여’ 명목으로 지불한 것, 또 일본 귀환을 위한 여비, 하물 정리 비용, 심지어 ‘해방 기념품’ 명목으로 지출한 것들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배상조서는 동 요구에 즈음하여 ‘부정행위’임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 ‘부정’인지, 또 가령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왜 한국정부의 대일 요구가 될 수 있는지, 일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공금 횡령 같은 범죄행위를 문제로 할 경우도 그에 대한 반환 요구는 일차적으로 관련 기관이 횡령한 자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이며 원래 한국정부의 대일 배상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배상조서가 급여, 상여, 물품 구입 대금의 지출 등을 포함해, 그들을 일괄 ‘부정’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환불을 한국정부에 대해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바로 8월 9일의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총독부 권한이 정지되었다는 것, 및 군정령 33호로 인해 8월 9일자로 재한 일본인 재산이 모두 주한 미 군정청으로 귀속되고 그 후 한미협정으로 한국정부로 귀속되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한 요구로 보고 무방할 것이다. 즉 8월 9일 시점에서 이미 자신의 자산도 아니며 지출 권한도 없는 일본이 지출했다는 것 자체가 그 명목을 막론하고 모두 ‘부정’이며 그에 따라 일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구 권리가 생긴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따라서 동 요구는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취한 재한일본인 재산의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 요구가 자금을 유출시키거나 매각 자체를 행했다는 ‘부정’ 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공금, 물품 매각 대금 등의 환불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환’ 요구에 불과했음은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옳다.

실제 그 점은 한일회담 개시 후의 ‘청구권’ 교섭에서도 군정령 33호로 인한 일본인 재산의 귀속이라는 정치적이 논리가 몇 가지 대일 청구 항목 요구의 기초에 깔려 있었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3. 제4부의 분석

배상조서 마지막 제4부는 <일본 정부 저가 수탈에 의한 손해>였다. 배상조서는 동 제4부에 적용되는 통일된 요구 근거를 따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강제공출에 의한 손해”(배상조서 1954, 509)로서 묶고 있으므로 동 요구가 한국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 내 물품들을 강제적으로 반출했다는 입장에 의거한 요구임은 틀림없다. 동

요구의 세부 요구 항목들은 <표 7>과 같다.²¹⁾

<표 7 일본 정부 저가 수탈에 의한 손해 관련 피해 요구 항목들>

요구항목	추가 설명
축우(畜牛)	군수용, 지방 부대용, 만주·일본 수출 분에 관한 당시 시가와와의 차액(1941년~1945년까지의 실적)
우피(牛皮)	군수용에 한하며 당시 시가와와의 차액 (1939년~1945년)
군수용 건조(乾草)	군수용이며 생산비용와의 차액(1937년~1944년까지)
면화(棉花)	시가와와의 차액(1939년~1945년)
임산물	군수용에 제공하기 위한 임산물, 송근(松根), 탄유(炭油) 등 자재의 생산가격과의 차액.(요구 대상 시기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철기	조선인 가정에서 사용하던 철기를 전쟁 목적 수행에 사용하면서도 지불하지 않았던 대금이며 가격은 공출 당시의 공정 가격(1940년~1945년)

동 요구에는 판매 시가, 생산가격, 공정가격 등 차액 산출의 기준이 다른 것이 포함되고 있으나 전쟁 수행을 위한 공출에 따라 통상적인 상태와 비교해 한국인이 물품 가치의 감가를 겪었다는 것에 대해 그 감가 가치의 환부를 요구하려는 점에서 모두 같다. 동 요구는 비록 표면적으로 ‘저가 수탈’을 근거로 들었으나 동 요구 내용 역시 공출의 강제성 자체를 추궁한 것이 아니라 공출 시의 시장가격, 생산가격, 그리고 공정가격 등과의 결손 가치의 보충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반환’적인 요구임에 별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동 제4부에 관해 주의해야하는 것은 동 표제가 ‘저가 수탈’로 표현됨으로써 제3부와 달리 전쟁 피해에 그치지 않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 자체를 추궁하는 요구로 간주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역을 보면 동 요구 역시 전쟁 수행에 따른 피해에만 요구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진 각 세부항목의 요구 시기는 길어야 1937년의 중일전쟁 발발 이후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 배상조서는 임산물에 대해서는 직접 대상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 설명에는 군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구 역시 전쟁 수행에 따른 공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고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동 제4부 요구 역시 전쟁 관련 요구에 제기 내용을 한정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배상조서는 본격적인 전쟁 동원 체제 이전부터 시작되며 식민지 통치 자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쌀 등의 미곡 저가 반출 문제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가 수탈’을 문제로 삼으면서도 한국정부가 왜 전쟁 개시 이후만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배상조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미국의 대일 배상정책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큰 과오는 없을 것이다. 실제 미국의 배상정책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전에 발표된 이상덕 배상 구성에서는 ‘미곡’ 저가 반출 관련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일 정책이 무배상 정책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 배상요구는 ‘배상’이 아니라 ‘반환’을 강조해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도 2차대전 처리와 상관없는 식민지 통치의 행정적인 책임을 연합국에게 제기하는 것은 어려웠다. 요구를 전쟁 수행 기에 한정하고 또 그 내용을 차액 보충으로만 줄인 것은 바로 대일 요구를 ‘반환’적인 요구로 수렴시켜야 하는 사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21) 저자가 배상조서(1954, 507~516)에서 정리.

4. 배상 내용의 변용

이상 배상조서는 표면적인 ‘배상’ 요구와 달리 ‘반환’적인 요구로 재편성된 결과물이었음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성격은 실은 동 배상조서 제출에 즈음하여 한국정부가 그것을 ‘반환(Restitution)’ 요구로서 제출하고 있었다는 데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戰後補償問題研究会編集1993, 125-126)²²⁾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요구를 상기시키는 제3부, 제4부 역시 전쟁 해위나 식민지 통치 자체를 추궁하고 실제 생긴 피해 이상의 요구를 제기하려 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었다. 그 의미에서 동 요구들은 임병직이 말한 ‘진신적 손실’ 아니라 ‘반환’적인 요구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배상조서의 성격은 이상덕에 의해 발표된 당초의 대일 배상 구상과 비교할 때 보다 명확해진다. 이상덕이 발표한 대일 요구(=<표1>)와 배상조서의 내용들을 대조하면 <표8>과 같다.

<표 8 이상덕 배상구상과 배상조서 요구의 대조>

	이상덕 배상구상의 항목 내용들	배상조서 해당 항목
(1) 약탈에 의한 손해	a) 문화재 반환 또는 보상	제1부
	b) 군, 신사 건축 등에 헌납된 금전, 물건의 반환 또는 보상	제3부<(2)물적 피해>
	c) 공출, 금속회수령으로 인한 귀금속 등의 반환 또는 보상	제3부<(2)물적 피해> 및 제4부
(2) 강제로 동원된 금차 전쟁의 결과 피해 손해	a) 군인·군속의 사망, 질병, 불구 등에 대한 수당, 은급 및 보상	제3부<(1)인적피해> ²³⁾
	b) 직접적인 전투, 군사행위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손해	없음
	c) 징용 근로자 등 강제노동 손해	제3부<(1)인적 피해>
	d) 군사 목적을 위한 물적 파괴, 몰수, 훼손	제3부<(2)물적 피해>
(3) 학대강폭에 의한 손해	a) 민족 차별로 인한 대우 차별 손해	없음
	b) 가문, 인권, 창씨개명 등 손해	없음
	c) 종교, 신앙, 사상, 학문의 자유 억압 손해	없음
	d)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억압 손해	없음
	e) 이민, 인구 정책에 따른 추방 손해	없음
(4) 해방 직후의 시설·공장·부동산·재고품 등의 파괴, 소각, 매장, 훼손. 또 경비의 부정 지출, 급여 과불 손해	제3부<(3) 8.15 전후 일본인 관리 부정행위에 의한 피해>	
(5) 전시 중 작전 목적으로 사용된 선박·차량·기타 수송기관의 상실, 파괴, 훼손에 대한 보상	제3부<(2)물적 피해>	
(6) 미곡 강제 반출의 보상	없음	
(7) 일군 100만 명의 양병비	없음	
(8) 전시 중, 전비 염출 목적으로 강제 징수된 과세, 부금, 벌금 등	없음	
(9) 반출 지금의 현물 반환	제1부<현물>	
(10) 본방인의 해외 재산	제1부<현물>	

22) “RESTITUTION CLAIMS TO THE GOVERNMENT OF JAPAN”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설명 문서 속에서 한국은 대일배상(Reparations)에 대한 요구의 기본정신이 정서나 편견이라는 측면을 모두 억제하고 법적으로 엄격히 정당화되는 것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3) 한일회담 개시 후 동 2차 회담 기간 중인 1953년 5월 23일, 한국이 조회 요청으로 제시한 ‘청구권’ 요구 내용에 따르면 배상조서가 애매하게 제시한 인적 피해 중의 사망자 12,603명은 노무자 관련 수치임이 확인되므로(外務省日韓會談公開文書, 「請求權關係部會第一回會議狀況」(文書番号693), 36(쪽수는 표지에서 저자가 세었음)) 동 인원수로 판단해 배상조서에서는 군인·군속이 포함되지 않았던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이상덕

이상덕의 대일 배상 구상은 바로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체계화된 것이 아니므로 자료상 세부항목까지 들어간 정확한 대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상덕 배상 구상에 포함된 요구 중, 배상조서에서 요구 범위로부터 개념적으로 제외된 것은 결국(2)-b), (3)의 모든 항목, 그리고 (6), (7), (8)들로 보고 틀림없다.

일견 다양해 보이는 삭제 항목들을 신중히 고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b)는 전투 행위로 인한 사망, 부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그 전 항목인 (2)-a)가 군인·군속에 대한 동 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이외의 한국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군속의 전투 피해가 이른바 군인은급 제도 등으로 인해, 또 동 (2)-c) 항목이 제기한 노무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 역시 관련 법규가 존재한 것에 반해 전투 행위로 인한 일반시민의 피해는 일본 국내에서도 그 보상에 관한 관련 법규가 없다. 즉 (2)-b) 요구는 일본 국내적으로도 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에 따라 보상 권리에 기초한 반환 요구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대일 교전에 따라 전승국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전시 교전 배상으로서 요구할 수 있어도 미국의 대일 배상정책 자체가 전승국에 대해서조차 무배상 원칙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었다.

같은 것은 다음 <(6) 미곡 강제 반출의 보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요구는 원래 배상조서 제4부 <일본 정부 저가 수탈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 요구항목이었다. 그러나 배상조서가 전쟁 수행을 위해 강요된 공출에 따른 차액 요구에 한정된 것과 대조적으로 제외된 미곡 강제 반출은 전쟁 수행 이전, 1920년대에 이른바 산미증식계획 등에 따른 미국의 일본 수출을 문제로 삼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쟁과 직접 상관없이 합일 병합 하에 실시된 사회, 경제 정책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만큼 동 요구는 식민지 통치의 행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것을 전쟁 시기에 한정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의 회수만을 요구하는 ‘반환’적 요구로서 미국에게 제기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상덕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생활자원에 속하는 막대한 물자의 강탈적 보급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한 다음 <(7) 일군 100만 명의 양병비>가 제외된 것 역시 같은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상조서에서도 제3부 물적 피해에는 전쟁 중, 일본이 자의적으로 사용, 개조, 소개 등을 시킨 결과 발생한 비용의 회수라는 유사한 요구항목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양병비’는 전쟁 중, 일본이 임의로 이용한 물적 피해와 달리 한반도에 일본군이 존재하고 그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문제로 삼은 것이었다. 즉 그것은 일본의 한반도 병합 자체를 추궁하는 의미를 지녔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의 ‘반환’ 요구로서 미국에게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었음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은 <(8)전시 중, 전비 염출 목적으로 강제 징수된 과세, 부금(賦金), 벌금 등> 요구가 배상조서에서 제외된 데서 잘 나타났다. 이상덕은 동 요구에 관해 “전시 중 일본이 전비 염출의 목적으로 강제 징수한 과세, 부금, 벌금 기타 이에 유(類)하는 피해 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그 요구는 한국인이 징수당한 세금, 부금, 벌금 등을 요구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록 동 요구가 전시 중에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구상에 있었던 동 군인·군속 피해 요구가 배상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러나 동 요구는 한일 회담 청구권 교섭에 들어가 다시 포함된 것을 고려해도 배상조서의 성격 변용에 맞추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삭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그 의미에서 개념적으로 당연히 그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 배상조서 제3부 <인적 피해>를 해당 항목으로 표시했다.

과세, 부금 같은 것은 행정 권한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납부한 세금 등의 ‘반환’ 요구는 바로 일본의 한반도 통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외 성립되는 여지는 없었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삭제의 성격은 <(3) 학대강폭에 의한 손해>에 속한 요구항목들이 모두 삭제된 점에 상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족 차별’, ‘가문, 인권, 창씨개명’, ‘종교, 신앙, 사상, 학문의 자유 억압’,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억압’, ‘이민, 인구 정책에 따른 추방’으로 구성된 동 피해 보상 요구는 전쟁 수행에 따라 발생한 실제 비용의 보충 요구를 넘은 식민지 통치의 근간을 건드리는 요구였다. ‘대우 차별’을 문제로 삼은 동 a)항은 급여상의 차액을 요구하는 점에서 ‘반환’적인 측면을 가졌으나 그 차액의 원인은 ‘민족차별’이었다. 즉 그것은 일본의 지배의 부당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었으며 동원된 한국인의 미불 임금, 수당 등,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한 배상조서 제3부의 인적 피해 요구들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상 1948년 초 이상덕에 의해 공표된 배상 구상에 포함되고 있으면서도 그 후 배상조서에서 제외된 요구 항목들을 주의 깊게 고찰하면 그 변용의 배경이 드러났다. 삭제된 항목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쟁 또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 자체를 추궁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강하게 지닌 항목들이었으며 그 의미에서 ‘반환’적인 요구를 넘었다. 그것들은 미국의 무배상 원칙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반환’적인 요구로 재편성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항목들이었던 것이다. 그 점은 한일회담 개시 후의 ‘청구권’에서도 결국 그들 요구가 제기되는 일이 없었던 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V 결론

이상 청구권 개념과 대조되는 단일 개념으로서 이해되기 쉬운 한국의 대일배상 내용이 미국의 대일 정책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변용을 겪었음을 고찰했다.

종전 직후 먼저 초미의 과제가 된 재한일본인 재산의 취득은 적산물수론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적산론이 오히려 재한일본인 재산의 연합국 귀속을 강화하는 논리가 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에서는 식민지 피해를 상기시킨 응혈체론이 대두된다. 그러나 원래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시인하고 또 스스로도 식민지를 영유한 연합국이 식민지 통치의 책임 추궁으로서 일본인 재산의 한국 취득을 인정할 리가 없었다. 결국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라는 현실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한국의 담론은 미국의 애매한 정책과도 맞물려 동 재산의 한국 이양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확립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동 이양은 그 후 한일 간에 제기된 청구권 문제와 관련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선불 채권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중간배상계획과 연동해 한국, 및 일본 소재의 일본인 재산을 대일 피해의 대가로서 일방적으로 받는 것에 실패한 한국은 최종적으로 전후 처리 문제를 매듭짓는 대일평화조약에 기대를 걸었다. 그 과정에서는 이상덕에 의해 주목할 만한 구상이 밝혀졌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상 단계에 머무른 것이며 체계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아니었으나 창씨개명 등, 식민지 통치의 책임 추궁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 배상정책이 초기의 생산력 억제 정책으로부터 무배상 원칙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그와 같은 정책 전환의 영향을 차단하면서도 미국의 대일 처리의 일환으로서 배상 문제를 처리해야만했던 한국정부는 결국 대일배상의 내용에 큰 수정을 가했다. 바로 그 집대성이 배상조서였다. 표면상 전쟁 피해를 강조한 제3부, 또 식민지 통치의 피해와 관련될 수 있는 제4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 조서의 내용은 전쟁 책임이나 식민지 통치의 책임 자체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었다. 배상조서는 전쟁이나 식민지 통치를 배경으로 하면서

도 일본의 관련 법규에 기초해 이미 받을 권한이 생긴 수당, 보상 등의 회수나, 또 실제 발생한 물적 가치의 실손 부분만을 회수하려 한 것이었다.

그 의미에서 동 요구들은 연합국의 대일 배상 정책의 틀 안에서 처리하는 조건 하에서 표면상 ‘배상’이라고 칭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반환’이었다는 의미에서 ‘청구권’ 요구로 점근(漸近)적으로 수렴되어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1949. 『對日賠償要求調書 第1部: 現物返還要求』 .
- . 1949. 『對日賠償要求調書(續)』 .
 - . 1954. 『對日賠償要求調書』 .
- 國史編纂委員會. 1968. 『資料 大韓民國史 1』 .
- . 1969. 『資料 大韓民國史 2』 .
 - . 1972. 『資料 大韓民國史 5』 .
 - . 1999. 『資料 大韓民國史11』 .
 - . 1999. 『資料 大韓民國史12』 .
- 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 1976. 『韓國外交關係資料集<立法參考資料 第193號>』 . 서울:國會圖書館.
- 金南榕. 1948. 「對日賠償問題와 當行」. 『무궁』 2월호, pp.20-23.
-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 서울: 선인.
- 李相德. 1948. 「對日賠償要求의 正當性」. 『新天地』 1월호, pp.29-39.
- 임병직. 1964. 『任炳稷回顧錄』 . 서울: 女苑社.
- 장박진. 2008.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제1호, pp.209-241.
- . 2011.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형성과정 분석: 한일 간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배상’, ‘청구권’의 이동(異同)」. 『국제·지역연구』 (서울대) 제20권 3호, pp.1-42.
- 外務省. 2006. 「ドレーパー使節団と日本側関係者の会談について(1948年4月)」, 『日本外交文書: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準備対策』 . pp.347-354.
- 外務省日韓会談公開文書. 「請求権関係部会第一回会議状況」 文書番号693.
- 太田修. 2003. 『日韓交渉 請求権問題の研究』 . 東京:クレイン.
- 岡野鑑記. 1958. 『日本賠償論』 .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神谷不二. 1978. 『朝鮮問題戦後資料 第1卷』 .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 長澤裕子. 2011. 「戦後日本のポツダム宣言解釈と朝鮮の主権」.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 2011.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pp.129-156.
- 國史編纂委員會. 1996. 『大韓民國史資料集 28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1944-1948>』 .
- 大藏省財政室編. 1982.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20卷(英文資料).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戦後補償問題研究会編集. 1993. 『戦後補償問題資料集第8集: GHQ関連文書集』. 戦後補償問題発行.

“Peace Treaty with Japan” 1946. *Drafts of Treaty(Ruth Bacon)*, YF-A10, Box no.1; Folder no.15, R.01, pp.211~222.(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7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vol.VIII The Far East.

— 197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vol.VI The Far East.

3.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출발과 재일 조선인

토노무라 마사루 (外村大, 東京大学)

1. 문제 의식과 과제

재일 조선인을 둘러싼 역사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왔다. 그 중에서 사회운동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받고 차별을 당하면서도 생활과 문화를 지켜야했던 재일 조선인으로선 사회를 향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한 것이며, 이는 당연했다. 특히 중요한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이었다. 왜냐하면, 재일 조선인의 대부분은 그 형성 초기에 토지를 잃어버림으로써(혹은 잃어버릴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노동자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연구에서는 재일 조선인의 노동운동 혹은 일본 노동운동 속에서의 재일 조선인의 역할, 노동운동을 전개한 일본인과 재일 조선인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논고가 나와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전쟁 기간에 대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1930년대 말 이후는 전시체제였기 때문에 조직적인 노동운동이 부재했다. 또한 193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는 ‘재일 조선인=노동자’로 간주될 정도로(가령 당시의 신문 등은 ‘재일 조선인’이라는 용어도 사용했지만, ‘조선인 노동자’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 재일 조선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전후에는 자영업자가 증가하여 ‘재일 조선인=노동자’가 아닌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비율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재일 조선인 중에서 노동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외국인 등록에 의거한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1959년 시점에서 ‘기능공 생산 공정 근로자·단순 노동자’는 52.8%를 차지한다. 그 후 이 숫자는 계속 하락했지만, 1974년 시점에서도 42.3%로 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1974년 시점에는 34.2%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인과 재일 조선인을 비교했을 경우, 자영업자나 기업의 관리직, 사무직, 엔지니어 등이 아닌 말단 노동자로 일한 사람의 비율은 재일 조선인이 높았던 것이다.

또한 전후 일본 경제 부흥기로부터 고도 경제 성장기 초기에 걸친 시기에는 조선인의 대부분이 실업 내지 반(半)실업 상태였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일본인들 중에도 많이 존재했고 그들 사이에서 노동운동(공공 직업소개소에 대한 취업 요구 등)은 존재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후 재일 조선인의 노동운동이 전개된 조건 혹은 일본의 노동단체가 재일 조선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조직화를 진행토록 하는 조건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후에 재일 조선인의 노동운동 내지 일본 노동운동(혁명운동이 아님)과 재일 조선인의 관계를 논한 논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¹⁾

그렇다면 전후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의 노동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적어도 거의 눈에 띄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본고에서는 이 점을 생각

1) 그렇다고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在日高麗勞働者連盟. 1992. 『在日朝鮮人の就勞實態調査：大阪を中心に』(新幹社) 등.

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전전(戰前)·전중(戰中)과의 연속성을 의식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재일 조선인의 의식이나 처해진 지위, 재일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관계가 1945년 8월의 일본 패전을 경계로 크게 바뀐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일 조선인의 역사를 논할 때는 1945년 8월의 일본 패전 전과 후를 구분해 논해온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고는 그렇게 함으로써 안 보이게 되어 버린 사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II. 일본 제국 본국의 민족 관계와 전쟁 말기의 상황

전후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위한 전제로서, 간단하게 일본제국 시기의 재일 조선인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 점과 관련, 최근의 연구는 비교적 일본 제국에서의 다민족의 존재를 전제로 한 통합이나 그 사회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전에서는 일본이 다민족 국가임이 선전되어 왔고, 그것을 전제로 한 통합의 방안이 모색되었다는 점, 더욱이 일본 본토에는 많은 조선인이 있었고 조선인대의사(代議士, 국회의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는 한글로 기재된 표도 유효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조선 민족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받게 된 게 아니고, 일본인이 조선인을 평등한 존재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일본인은 일본인 중심의 사회를 바꾸려 한 적이 없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도 아마 없었다. 특히 ‘일본 내지(内地)=현재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역’에서는 원래 이민족인 조선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본인은 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술에 대해 위화감을 갖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식민지 시기에 많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향했고 (즉, 이를 필요로 하는 일본 내지의 고용주는 상당히 있었던 셈이다), 특히 전쟁 시기 일본인은 조선인을 억지로 일본의 탄광이나 건설 현장에 데려간 사실이 있다.

확실히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사실(史實)이 아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 내지에 있는 일본인 고용주와 행정 당국이 필요로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상태였던 싸고 온순한 노동력이며, 일본인과 조선인이 일본 내지에서 어떻게 함께 사회를 구성해 나갈 것인가를 구상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조선인이 일본 내지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일본인은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고, 비록 조선인이 지역에 다수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의식은 일본인 사이에서 희박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던 전쟁 시기에도 똑같다. 원래 전쟁 시기에 일본의 탄광 등에 조선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공성(商工省)와 탄광 경영자 등을 제외하면 부정적이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기한부(期限附), 즉 전쟁이 종료되고 노동력 부족이 해소되면 즉각 귀국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하면 노무 동원이 시작된 후에도 일부 탄광 경영자조차 노무 관리의 어려움과 치안상의 우려에 의해 조선인 노동자의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패색이 농후해진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일본 내지에 있는 일본인 민중

사이에서 조선인에 대한 비호의적인 감정이 점점 강해졌다. 이는 우선 일본 제국의 충성에 대한 의심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즉, 조선인이 연합국에 협력하여 일본을 패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와 불안을 일본인들은 가진 것이다.

이와 함께 점차 일본 내지에서 조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게다가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혐오감을 가진 일본인도 적지 않았다. 원래 조선인도 일본 제국의 명분상으로는나 동일한 ‘신민’(臣民)이며, 일본 내지에서 조선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그들 중에서 ‘상승’(上昇)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민족 차별이 없는 사회에 접근한 것으로서, 일본인도 이를 긍정적으로 파악해야 할 현상이었다. 그러나 일본 내지는 일본인이 사는 땅이고 조선인이 다수이면 안 되며, 어디까지나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통제 하에서 밑에 위치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일본인 사이에 뿌리 깊게 또 널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표명(表明)은 제국 의회에서조차 표출되고 있었다. 1944년 2월 1일 중의원의 어느 위원회는 조선인 인구 비율이 많은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의원인 이마이 요시유키(今井嘉幸;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는 보통 선거의 실현에도 진력한 경력이 있는 인물)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 사람들 [일본 내지 거주 조선인]은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리자면, 생활 상태는 저렇게 아주 ‘프리미티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노동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각 방면에서 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본의 노동자가 이들과 경쟁해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으면 고베(神戸)의 선박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일본인이면 쌀섬 하나 뿔 수 없는 한창 때의 사람이 전쟁으로 갔기 때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조선의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그가 쉽게 메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은 20엔 또는 25엔을 안 주면 일을 안 한다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본 노동자와의 문제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현재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 이렇게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올라와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우리 일본의 내지인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하는 자도 있습니다.²⁾

더욱이 전쟁 말기에는 민중 생활의 꺾박 속에서 조선인이 경제 교란자라는 소문도 퍼졌다. 전술한 제국 의회에서의 이마이 의원의 발언으로는 조선인에 대해 “경제 위반에 대해서도 태연하게 ... 이런 통제법과 같은 것을 마음대로 만들었으니 나쁜 것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진 자가 있으며,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있다.³⁾ 이것은 당시 확산되고 있던 통제 외의 경제 활동(소위 암흑가 물자 매매)을 엄두에 둔 발언이다. 물론 재일 조선인으로서 뒷거래 행위를 한 자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만이 그것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뒷거래 행위를 한하지 않은 민중은 생활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일 조선인과 암흑가 뒷거래 행위는 특별히 연결되어 거론되어 문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III. 전전 시기의 일본 노동운동·사회주의 세력과 재일 조선인

2) 1944년 2월 1일, 중의원 전시 특수손해보험법안위원회에서의 이마이 요시유키 의원의 발언. 이 의원은 조선인 인구 비율이 높은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3) 1944년 2월 1일, 중의원 전시 특수 손해 보험 법안위원회에서의 이마이 요시유키 의원의 발언. 이 의원은 조선인 인구 비율이 높은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 내지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는 양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것은 일본인의 차별 의식이 원인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운동 활동가나 사회주의자인 일본인 중에는 재일 조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제국주의의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고 투쟁을 지향한 사람들이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쟁 전 일본의 노동운동·사회주의 세력은 크게는 공산당계(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아 급진적인 혁명운동을 지향한 세력)과 사회 민주주의계(이하 사민계로 약기, 반(反)코민테른 또는 적어도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지 않고 노동자 생활향상 등의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세력)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산당계는 명확하게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고 조선 민족이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민족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에 반대했다. 또한 1929년까지 조선인이 독자적으로 민족별로 조직하고 있던 노동조합을 같은 해 말에 일본인과 합동으로 해소하는 조치도 취하는 등 조선·일본 두 민족의 공동 투쟁을 추진했다. 다만, 이 조치는 계급 문제를 강조하는 정책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재일 조선인이 직면한 차별과 독자적인 문화의 유지 등 민족 문제를 포기하는 활동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원래 급진적인 정치적 방침을 취한 공산당계의 제반 활동은 곧 탄압을 초래, 많은 조직원을 획득해 지속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얻는 것도 무리였다.

이에 대해 사민계는 공산계보다 큰 조직을 구축, 지속적으로 이에 관여한 활동가도 많았다고 할 수 있다(그들에 대한 탄압도 확실히 있었는데, 이 같은 탄압의 영향도 받아 전쟁 전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고가 된 시점에서 10%에 미치지 않았고, 게다가 우파·좌파·중간파가 분립하는 상태이었지만). 필자가 조사한 전시 체제기에 돌입하기 전에 발생한 재일 조선인이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더라도 공산계보다는 오히려 사민계 노조가 관여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로써 사민계 쪽이 공산당계보다 재일 조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쟁 시기의 노동 쟁의는, 그때까지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던 직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쟁의가 일어남으로써 비로소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가에게 연락을 취한다는 것도 드물지 않았다. 특히 재일 조선인이 많이 취업했던 토건 노동 분야에서 그랬다. 특고(特高)경찰이 파악한 재일 조선인 단체 중에서는 사민계 단체가 적은 것도(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공산당계이다) 사민계 세력이 재일 조선인과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사민계 정당이나 정치인, 노동단체의 주장을 보더라도 재일 조선인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인식에 기초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원래 한 국가내의 노동자 지위 향상, 정치적 개혁을 지향하는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식민지 영유(領有)와 피지배 민족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경향이 있는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조선으로부터의 노동력 이동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것이라면, 재일 조선인 노동자를 언급한 사민계의 사회주의자 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으로서 사회민주당·사회대중당 당수를 지낸 아베 이소오(安部磯雄)가 1930년에 출판한 『次の時代』(다음 시대)라는 저작 속에서 당시 심각했던 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일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언급한 문장이 있다.

이 가운데 아베는 “이미 우리나라에 입국한 조선인의 수는 30만 이상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이주자는 거의 5만에 이른다”면서 “일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는 완전히 조선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는 “우리들은 이

때문에 조선인을 배척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조선인은 일본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게다가 아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내가 이미 인구 문제를 논했을 때 말한 바와 같이, 언어를 달리하고 생활양식을 달리하는 인종이 잡거하는 것은 쌍방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물론 나는 결코 편협한 사상으로 이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이상형은 인류애에 있으니, 어떤 인종에 대해서도 어떠한 차별적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이러한 이상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인종의 잡거를 피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조선인 및 지나인이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서양인에 대해서도 같은 정책을 적용하려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외국에 이민하는 것도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다만, 브라질과 같은 우리 국민의 이주를 환영하는 경우는 전혀 예외이다. 만약 우리가 인구 문제의 입장에서 조선인의 이주를 방지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조선인의 이주를 금지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에 이주하는 것도 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환언하면 우리나라는 우선 조선의 자치를 허용하고 결국 그 독립도 허용한다는 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요컨대, 현상적으로는 다민족이 혼주하는 사회나 국가를 넘은 인구 이동은(아베는 조선과 일본을 다른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원문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일본, 일본인의 의미로 사용하며 조선인의 일본 내지로의 이동을 ‘입국’이라고 적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더욱이 조선에서의 노동력 이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인의 조선 이주도 인정 못하고, 조선의 독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베의 생각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단일 민족국가 이상적이며, 다민족 제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사민계 세력이 주장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같은 시기 사민계 우파의 일부는 군부에 접근하였으며, 더군다나 이 직후 만주 사변이 일어나자 이를 지지하면서 만주 이민에도 찬동하게 된다. 다민족 제국의 계속된 팽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민계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 군국주의적 사상에 반대해 온 사민계의 활동 모습으로부터 보면 아베의 전술과 같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법한 한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후 준(準) 전시체제 시기 및 전시체제 시기에는 실업이 아니라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는 조선 독립 허용을 언급하는 것은 어려워진 측면도 있어 아베는 이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다.

IV. 전시 하 노동과 일본인 및 조선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전의 노동운동·사회주의 세력 가운데 제일 조선인과 관계를 갖거나 그들을 둘러싼 문제에 일정한 언급을 한 일본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수의 사례였다. 원래 제일 조선인의 노동의 형태를 보면 민족별로 분리한 상태가 일반적이었다. 즉, 이 시기에는 거주 기간이 길고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 다른 조선인을 이끌고 취업해 일본인 노동자와의 접촉은 희박했다. 심지어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동분쟁에서 일본의 노동조합과 조선인 노동조합이 따로 행동하고 대립한 사례조차 보였다. 이는 일본인 노동자가 사업장의 ‘본공(本工)=직접 고용’인 반면, 조선인의 경우 집단적으로 도급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시 하에 들어서도 이러한 조건 - 노동조합이 지도해 쟁의를 전개하는 조건은 손실되었지만 -에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동원 계획에 의해 일본에 배치되게 된 조선인 노동자는 예외가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더욱 극심한 형태로 일본인과 격리되는 상태를 강요당했다. 이는 물론, 도망 방지 대책 및 노무 관리상 사업주와 행정 당국으로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성년 남자가 출정해 여성이나 노인·어린이만이 있던 지역 사회에 조선 청년 남자가 갑자기 다수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한 일본인 주민의 경계도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전쟁 중에 대량으로 일본 내지에 온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인간적인 교류가 발생할 여지는 적었다. 물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탄광에서 도망쳐온 조선인을 도와 준 일본인의 이야기 등도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상적으로 조선인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인은 적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전쟁 말기의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비호의적인 감정이나 풍설을 낳는 배경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것이 전후의 민족 관계의 전제가 된 것이다.

(본고는 미완성입니다. 이하 부분은 별첨하겠습니다.)

戦後日本労働運動の出発と在日朝鮮人

外村大（東京大学）

1、問題意識と課題

在日朝鮮人をめぐる歴史研究はこれまで多くの成果を得て来た。その中で社会運動史は非常に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る。権力の不当な弾圧を受け差別にさらされながら生活と文化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在日朝鮮人にとって、社会に働きかけ、権利を闘い取るために活動することは、特別なことではなく必要に迫られて日常的に行われていたことであり、これは当然であろう。なかでも重要な社会運動としてあったのが労働運動である。なぜならば、在日朝鮮人の大部分は、その形成の当初において、土地を失う（あるいは失う危機にさらされている）ことで労働者となった人びとであったからである。

こうしたことから、歴史研究においてはこれまで、在日朝鮮人の労働運動、あるいは日本労働運動のなかの在日朝鮮人の役割、労働運動を展開した日本人と在日朝鮮人とのかわりについて、さまざまな論考が出されている。しかしその多くは、1920年代から1930年代半ばまでの戦前期についてのものである。もちろんこれには理由がある。まず1930年代末以降はそもそも戦時体制下において組織的な労働運動は不在である。また1930年代半ばまでの時期には、在日朝鮮人イコール労働者と見なされるほどに（例えば当時の新聞などでは「在日朝鮮人」という用語も使われるが、「朝鮮人労働者」という語の使用も相当に多い）、在日朝鮮人人口のなかに占める労働者比率が高かったのに対して、戦後には自営業者が増えており、在日朝鮮人イコール労働者ではなくなっていたという事情もある。

だが、自営業者の比率が増えたといっても、在日朝鮮人のなかに労働者がいなくなったわけではない。外国人登録をもとにした法務省統計によれば、1959年時点で「技能工生産工程作業従事・単純労働者」は52.8%を占める。その後、この数字は低下を続けるが、1974年時点でも42.3%となっている。ちなみに日本全体について見れば、1974年時点で34.2%であり明確な差がある。つまり、日本人と在日朝鮮人を比べた場合、自営業者や企業の管理職、事務職やエンジニアなどではなく、末端の労働者として働く人の割合は、在日朝鮮人において高かったのである。

また、戦後の日本経済復興期から高度経済成長期の初期にかけては、朝鮮人の多くが失業ないし半失業状態であった。しかしそのような人びとは日本人の間でも多く存在し、彼らの間での労働運動（公共職業紹介所に対する就労要求等）はあった。

そのように考えると、戦後に在日朝鮮人の労働運動が展開される条件、あるいは日本の労働団体が在日朝鮮人に対する働きかけや組織化を進めるべき条件が存在し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前述のように戦後についての在日朝鮮人の労働運動ないし日本労働運動（革命運動ではなく）と在日朝鮮人のかかわりを論じた論考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⁴⁾。

では、戦後日本において在日朝鮮人の労働運動は不在だったのか。少なくともほとんど目立たないような状態であったとすればその要因は何であったのか。本稿ではこの点を考えて行くこととする。

4)とは言ってもゼロではない。例えば在日高麗労働者連盟『在日朝鮮人の就労実態調査：大阪を中心に』新幹社、1992年など。

その際には、戦前・戦中との連続性を意識して論じる。在日朝鮮人の意識や置かれている地位、在日朝鮮人と日本人との関係が、1945年8月の日本敗戦を境に大きく変わったことは確かであるが、すべてが断絶したわけ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これまで、在日朝鮮人の歴史を論じる際に、1945年8月の日本敗戦の前と後で切断して論じることがあまりにも一般的であり、そのことで見えなくなってしまう事実が多いと考えるためである。

2、日本帝国本国の民族関係と戦争末期の状況

戦後の状況について述べる前提として、簡単に日本帝国の時期の在日朝鮮人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ポイントとなることを押さえておきたい。この点について、近年の研究では比較的、日本帝国の多民族の存在を前提とした統合や社会のあり方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例えば、戦前においては日本が多民族国家であることが語られていたし、それを前提とした統合のあり方が模索されていたこと、日本内地には多数の朝鮮人がいたし、朝鮮人の代議士がいたばかりではなく選挙ではハングルで記載した票すら有効であったといったことが語られている。

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朝鮮民族が権利を持つ主体として尊重され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はないし、日本人が朝鮮人を平等な存在として迎え入れたわけではない。日本人は日本人中心の社会を変えようとしたことはなく、その必要があると考えたこともおそらくなかったのである。特に、日本内地＝現在の47都道府県の地域においては、そもそも異民族たる朝鮮人が流入することを基本的に日本人は歓迎していなかった。

このような記述に対しては、違和感を持つ人も多いだろう。歴史を振り返れば植民地期に大量の朝鮮人が日本に向かったし（つまり、それを必要とする日本内地の雇用主は相当にいたわけであるし）、特に戦時期には日本人は朝鮮人を無理やり日本の炭鉱や工事現場に連れていったという事実がある。

確かにこのことは無視できる史実ではない。だが、注意すべきは日本内地にいる日本人雇用主や行政当局者が必要としていたのはあくまで不足している安い従順な労働力であり、日本人と朝鮮人が日本内地のなかでどう共に社会を構成していくかを構想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異質な文化を持つ朝鮮人が日本内地に定着することには多くの日本人は警戒的な態度を取ったし、たとえ朝鮮人がある地域に多数定着するようになったとしても彼らを地域社会の構成員と見る意識は日本人の間で希薄であった。

そうした傾向は労働力不足が深刻化していた戦時期も同じである。そもそも戦時期に日本の炭鉱等に朝鮮人労働者を導入することについては商工省や炭鉱経営者などを除いて否定的であったし、それを行うことを決定したといっても当初は期限付き、つまりは戦争が終了し、労働力不足が解消したらすぐに帰国してもらうことを前提としての、導入だったのである。付言すれば、労務動員が始まった後も、一部の炭鉱経営者においてすら労務管理の難しさや治安上の警戒から朝鮮人労働者の導入への否定的な見解が述べられることもあった。

そして日本の敗色が濃厚となった第二次世界大戦末期には、日本内地にいる日本人民衆の間で朝鮮人に対する非好意的な感情はますます強まった。それはまず、日本帝国への忠誠への疑念とかかわって現れていた。つまり、朝鮮人が連合国への協力によって日本を敗戦に導こ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恐れや不安を日本人はいだいたのである。

これとともに、次第に日本内地で朝鮮人の人口が増え、しかも彼らが社会的にも重要な位置を占めるようになっていたことそれ自体に対する、批判や嫌悪感を持つ日本人も少なからずいた。本来、朝鮮人も日本帝国の建前としては同じ「臣民」なのであり、日本内地のなかで朝鮮

人人口が増えることも、そのなかから「上昇」を果たす人びとが現れたとしても、法的には問題はなく、建前から言えばむしろ民族差別のない社会に近づいたものとして日本人としてもこれを肯定的にとらえてしかるべき現象であった。しかし日本内地は日本人が住む土地であり朝鮮人が多数であってはならず、あくまで朝鮮人たちが自分たちの統制のもと下に位置すべき存在であるという意識は、日本人の間で根強くかつ広く存在していたのである。こうした意識の表明は帝国議会ですらなされていた。1944年2月1日の衆議院のある委員会では、朝鮮人人口比率の多い大阪を基盤とする議員である今井嘉幸（さらに付け加えれば大正デモクラシー期には普通選挙の実現にも尽力した経歴を持つ人物）が次のように発言していた。

是等ノ人々〔日本内地在住朝鮮人〕ハドウ云フ状態デアルカト申シマスト、生活状態ハアノ通り極メテ「プリミティヴ」ナ生活ヲシテ居ル、而シテ労働力ハ非常ニ強イ為ニ、労働者トシテ、各方面ニ於テ喜バレル場合モアリマス、又日本ノ労働者ガ是ト競争致シマシテモ迎モ及バナイ、例ヘバ神戸ノ船ノ人足デアリマス、日本人デハ米一俵到底担ゲナイ、盛りノ人ハ戦争ニ行ッテ居ルカラデモアリマセウガ、已ムヲ得ナイデ朝鮮ノ労働者ヲ雇ヒ入レル、ソレガ容易スク担イデ行ッテシマフ、サウシテ賃金二十円トカ二十五円トカヤラナケレバ動かヌト云ッテ状況が目ノ前ニ現ハレテ居ルノデゴザイマス、兎ニ角日本労働者トノ間ノ問題モソコニ起ッテ来ル、彼等ハ現在非常ナ金ヲ持ッテ居ル、…隋テ彼等ノ社会的地位ガ段々進ンデ来テ、甚ダシキニ至ッテハ我々日本ノ内地人ヲ馬鹿ニシテ居ルト云フ態度ヲ持ッテ居ル者ガアル⁵⁾

さらに戦争末期には、民衆生活の逼迫の中で朝鮮人が経済攪乱者となっているといった風説も広がっていた。前述の帝国議会での今井議員の発言では朝鮮人について「経済違反ニ付キマシテモ平気デ…コンナ統制法ミタイナモノハ勝手ニ作ツタノダカラ悪イコトヂヤナイト云フヤウナ観念ヲ持ッテ居ル者ガアツテ、平気デソナコトヲ言ッテ居ル」との語も見える⁶⁾。これは当時広がりつつあった、統制外の経済行為（いわゆる闇の物資の売買）を念頭に置いた発言である。もちろん、在日朝鮮人で闇行為を行っていた者はいたであろうが、しかし朝鮮人ばかりがそれを行っていたわけではない。またこの時期には闇行為なしでは民衆の生活維持が困難になりつつあった。しかし在日朝鮮人と闇行為はとりわけ結びつけて語られて問題視されていたのである。

3、戦前期の日本労働運動・社会主義勢力と在日朝鮮人

以上のように日本内地での日本人と朝鮮人の関係は良好であったとは言い難く、それは日本人の差別的な意識が原因となっていた。そのようななかにあっても、労働運動の活動家や社会主義者である日本人の中には、在日朝鮮人に関心を向けるとともに帝国主義の圧迫からの解放を求めて闘うことを志向した人びとがいた。

周知のように戦前の日本の労働運動・社会主義勢力は大きくは、共産党系（コミンテルンの指導を受けて急進的な革命運動を志向した勢力）と社会民主主義系（以下、社民系と略、反コ

5) 一九四四年二月一日、衆議院戦時特殊損害保険法案委員会での今井嘉幸議員の発言。同議員は朝鮮人人口比率が高い大阪府を基盤としていた。

6) 一九四四年二月一日、衆議院戦時特殊損害保険法案委員会での今井嘉幸議員の発言。同議員は朝鮮人人口比率が高い大阪府を基盤としていた。

ミンテルンあるいは少なくともコミンテルンの指導を受けず、労働者の生活向上等の経済要求を中心として活動した勢力)に分かれる。このうち、共産党系は明確に日本帝国の植民地支配を批判し、朝鮮民族がそこから解放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立場を取ったし、民族を理由とした賃金の差別にも反対していた。また1929年まで朝鮮人が独自に民族別に組織していた労働組合を同年末に日本人と合同解消する措置もとっており、日朝両民族の共同闘争を推進していた。ただし、この措置は階級の問題を強調した方針に基づくものであり、在日朝鮮人の直面する差別や独自文化の維持など、民族問題を捨象した活動傾向を生み出した。そしてそもそも急進的な政治方針を取る共産党系の諸活動は、すぐさま弾圧を招くものであり、多くの組織人員を獲得して持続的に社会に影響力を持つような位置を得ることも無理であった。

これに対して社民系は、共産系より大きな組織を築き、持続的にそれに関わっていた活動家も多かったとすることができる(彼らに対する弾圧もやはりあったのは確かであり、そのこともあって戦前の労働組合組織率は最高となった時点でも10%に満たず、しかも右派・左派・中間派が分立するような状態であったが)。筆者が調査した、戦時体制期突入以前に発生した在日朝鮮人が関係する争議について見た場合も、共産系よりもむしろ社民系労組が関与したケースが多数を占めている。

もっとも、これをもって社民系のほうが共産党系よりも在日朝鮮人との間で密接な関係を築いていたということとはできない。戦前期の労働争議は、それまで労働組合が存在していなかった職場で自然発生的に争議が起こってはじめてその労働者が労働組合活動家に連絡を取るということは珍しくなかった。特に在日朝鮮人の多く就労していた土建労働の分野ではそうである。特高警察の把握する在日朝鮮人団体中では社民系団体は少ない(圧倒的に多いのは共産党系である)ことも、社民系勢力が在日朝鮮人と関係を結んでいたわけではないことを裏付けよう。

また、社民系の政党や政治家、労働団体の主張を見ても、在日朝鮮人に対する明確な、一貫した認識に基づくものは確認できない。もともと一国内の労働者の地位向上、政治的改良を志向する社会民主主義においては、植民地領有や被支配民族への関心が薄くなる傾向があり、在日朝鮮人への差別や朝鮮からの労働力移動は重要視されなかったのであろう。ただし、個別的・断片的なものであれば、在日朝鮮人労働者に触れた社民系の社会主義者の言説はないわけではない。そのなかで注目されるものとして、社会民衆党・社会大衆党の党首を勤めた安部磯雄が1930年に上梓した『次の時代』という著作のなかで、当時深刻化していた失業問題の関連のなかで朝鮮から日本への労働力移動に触れた文章がある。

このなかで安部は「既に我国に入国した朝鮮人の数は30万以上に達して居る。而して毎年の移住者は殆ど5万に達する」ことをあげて「一面から見れば、我国の失業問題は全く朝鮮人のために生じて居ると言うことも出来る」とする。しかし安部は「私共はこれがため朝鮮人を排斥するといふことを考へて居るのではない。何となれば朝鮮人は日本国民の一部であるからである」とも述べる。そのうえで安部は次のように自身の考えを披瀝している。

私が既に人口問題を論じた時に述べた如く、言語を異にし、生活様式を異にする人種が雑居するといふことは、双方のため望ましきことではない。勿論私は決して偏狭なる思想から、斯くの如き意見を発表するのではない。私の理想は人類愛にあるのだから、如何なる人種に対しても何等差別的観念を有してゐない。然し人類は未だ斯くの如き理想境に達してゐないのだから、国際平和を維持するために、出来るだけ異人種の雑居をさけることにした

い。この意味に於て私は朝鮮人及び支那人の我国に移住することを防止するのみでなく、欧米人に対しても同様の政策を取りたいと思ふ。これと同時に私共は外国に移住するといふことも出来るだけ避けることにしたい。但しブラジルの如く我国民の移住を歓迎する場合は全く例外である。若し私共が人口問題の立場から朝鮮人の移住を防止することになれば当然此処に重大問題が生じてくる。それは果たして何であるか。

私共が朝鮮人の移住を禁止するといふことになれば、私共は当然我国人が朝鮮に移住することをも遠慮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ふ結論に達する。換言すれば我国は先ず朝鮮の自治を許し終にはその独立をも許すといふ決心がなくてはならぬ。

要するに、現状においては多民族の混住する社会や国家を超えた人口移動は（安部は朝鮮と日本とを別の国と捉えている。原文でも「我国」「我国民」を日本、日本人の意味で用いており、朝鮮人の日本内地への移動を「入国」と記している）望ましい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さらには朝鮮からの労働力移動を認めないとすれば、日本人の朝鮮移住も認められず、朝鮮の独立を許容すべきだというのが安部の意見である。一国一民族の単一民族国家が理想であり、多民族帝国は望ましくないという主張と見る事が可能であろう。

無論、社民系勢力がこの主張でまとまっていたというわけではない。むしろ同じ時期には社民系右派の一部は軍部に接近しており、さらにこの直後、満洲事変が起こるとそれを支持し満洲移民にも賛意を示していく。多民族帝国のますますの膨張を求める声は社民系にも存在したのである。しかし本来、軍国主義的な思想に反対してきた社民系の活動のあり方からは、安部の前述のような考えは自然に導き出されるはずの一形態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なお、これ以降の準戦時体制期・戦時体制期においては、失業ではなく人手不足が問題となったし、過程の話でも朝鮮独立の許容に触れることは難しくなったこともあってか、安部はこの主張を繰り返してはいない。

4、戦時下の労働における日本人と朝鮮人

前節で見たように、戦前の労働運動・社会主義勢力においては在日朝鮮人と関わりを持ったり、彼らをめぐる問題に一定の言及を行ったりしている日本人が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しかしそれはあくまで少数の事例であった。そもそも在日朝鮮人の労働の形態を見れば民族別に分離した状態が一般的であった。つまりこの時期においては居住時期が長い日本語に通じた者がほかの朝鮮人を率いて就労するのであり、日本人労働者との接触は薄かった。甚だしくは同じ事業所で起こった労働紛議において、日本人の労働組合と朝鮮人の労働組合が別々に行動し、対立するといったケースすら見られたのである。これは日本人労働者がある事業所の本工＝直接雇用であったのに対して、朝鮮人の場合は集団的に請負で作業を行っていたが多かったという事情も影響している。

戦時下に入ってもこうした条件—労働組合が指導して争議を展開する条件は失われていたが一に変化はなかった。そして、動員計画によって日本に配置されることとなった朝鮮人労働者は、例外はあるにせよ、通常はより一層はなはだしい形で、日本人と隔離された状態を強いられた。これはもちろん、逃亡防止対策や労務管理上、事業主や行政当局にとってそのほうが都合よかったためである。これとともに、成年男子が出征し女性や老人・子どもばかりになっていた地域社会に朝鮮人青年男子が突然多数存在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への日本人住民の警戒もいくぶん影響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いずれにしても戦中を通じて大量に日本内地にやってきた朝鮮人と日本人との間で人間的な交流が生まれる余地は小さかった。もちろん、皆無ではなく、実際に炭鉱から逃亡してきた朝鮮人を助けた日本人の話なども証言から確認できる。しかし多くの場合、日常的に朝鮮人と接触を保っていた日本人は少なかったであろう。そして、それが前述のような戦争末期における日本人の朝鮮人に対する非好意的な感情や風説を生み出す背景をなしたと見られる。同時に、そのことが戦後の民族関係の前提となったのである。

(本稿は未完成です。以下、別紙を添付いたします。)

**제3세션: 가지무라 히데키의
역사학과 한반도**

1. 「일한 (日韓) 체제」하의 민중과「의미로서의 역사」 - 가지무라 히데키 (尾村秀樹) 의 한국인식과 역사인식

강원봉 (東京外國語大學)

(국문 초록)

본고는 전후 일본 한국근현대사 연구자중의 한사람인 가지무라 히데키(1935-1989)에 주목하였다. 그는 탈 식민지주의적 문제의식에 기반 한 ‘내재적발전’ 론적인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또한 가지무라는 제일 한국인의 인권옹호 등 실천 활동의 장에서도 활약했던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다.

가지무라는 1970~80년대 한일관계를 ‘일한체제’ 라고 표현한 것에서 보이듯이 한국의 근대화를 일본과의 수직적 분업체제를 기반으로 한, 종속적 근대화로 보았다. ‘일한체제’ 하, 박정희 정권의 강압적 저임금정책등을 통하여 한국 민중은 열악한 생존환경에 놓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화정책을 통해 경제규모는 급성장했으나 민중은 이른바 ‘근대화된 모순’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한다.

가지무라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한국 민중의 노동환경위에서 천하태평한 일본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가지무라는 박 정권의 근대화사상에는 일본근대의 국가주의적 근대화사상과 유사성이 있으며, 베트남 파병의 사상속에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한편, 가지무라는 한국의 종속적 근대화의 모순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사상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함께 가지무라는 일본사회의 변영을 떠받치고 있는 한국 민중의 고난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일본사회를 고발한다. 그리고 발전하는 한국의 민중운동에 비하여 제국주의적 기득권에 안주하여 자기 성찰적 문제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일본사회와 일본민중에 대한 총체적 위기의식을 심화시키게 된다.

직면한 상황의 의미와 이의 극복을 위한 방향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일본사회의 정신적 위기 속에서 가지무라는 일본사회의 주체적인 사상혁명에 공헌하는 ‘실천적인 역사학’을 모색하며, 한국의 민족사학의 선구자인 신채호의 삶과 연구 자세에 공명하게 된다. 또한 역사 속에서 민중의 ‘고난의 의미’ 를 찾으려는 함석헌의 ‘의미(뜻)로서의 역사’ 론과 만나게 된다. 가지무라는 함석헌의 불굴의 정신자세에 공감하고, 한국 민중의 일본까지 구원의 대상에 포함하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평화를 제일의 가치로 하는 세계로 역전시켜, 세계를 구하는 세계사적 사명’에 주목하며, ‘일한체제’ = 선진-후진의 근대적 질서의 극복, 선진국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한다.

키워드: 일한체제, 근대화된 모순, 자기점검의 계기로서의 한국민중, 의미 상실시대의 역사인식, 가지무라 히데키, 신채호, 함석헌

머리말

1960년대초 일본의 한국사연구에 자생적으로 발전해 가는 역사, 이른바 ‘내재적발전(內在的發展)’의 한국 역사상(歷史像)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당시 일본사회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던 타율성과 정체성으로 상징되는, 식민지주의적인 한국사 인식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치열한 탈식민지주의적 문제의식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한편 일본의 패전 후(전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시기를 가지무라는 한국에 대한 일반적 무관심의 시대였다고 지적한다(梶村秀樹 1969(1993), 88-89). 식민지시대 한국사연구와 구별되는 일본인에 의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한국사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에서도, 1950년대는 한국사연구의 공백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¹⁾.

전후 십 수년이 경과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없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관심의 배경에는 전후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식민지 지배 책임의식 및 가해자의식 자체의 부재라는 사상적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책임의식의 부재는 한국에 대한 19세기말 이래의 식민지주의적 편견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존중할 만한 대상의 부재는 상대에 대한 자기중심적, 일방 통행식 대화·행동방식으로 이어졌다(米谷匡史, 124-127). 근대화를 위한 일시적 전술책의 하나로써 아시아 연대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유럽열강과 같은 아시아 침략의 길을 제창한 탈아론(脫亞入歐)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가 있겠다(梶村秀樹 1971(1992), 35-37)²⁾. 이러한 후쿠자와적 근대화주의는 전후 일본의 사상 속에서 근본적 변화없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식민지주의적 한국인식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과거의 한국역사 연구를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朝鮮史硏究會, 3)의 모색을 목표로 내걸며, 1959년 발족한 연구단체 『조선사연구회』와 ‘일본인의 손으로 일본인민을 위한’ 한국연구를 목표로 1961년 발족한 연구·운동단체 『일본조선연구소』이다³⁾.

본고에서는 이 두 단체의 회원이며, 전후 일본 한국사연구의 대표적 연구자중의 한사람인 가지무라 히데키(1935-1989)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지무라는 식민지시대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들과는 달리 한국어 문헌을 이해 할 수 있었던,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근현대사분야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다수의 평론을 남겼을 만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전반에 대해서도 다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가지무라의 연구에 대하여 ‘서구적 근대를 하나의 도달점’으로 하는 근대주의적 연구라는 비판도(並木真人, 19-20) 있었으나, 가지무라의 역사연구에는 일본 근대백년에 대한 비판이 동반된, 탈식민지주의적이며 근대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다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는 동시대 한국과 북한의 역사연구 성과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북한 역사연구자와 역사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가지무라는 재일 한국인의 인권옹호 등 실천 활동의 장에서 활약했던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다. 가지무라의 역사연구와 실천을 통한 한

1) 도오야마 (1963)는 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멸시감정은 중국에 대한 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은 것이며, 일본 국민사이에 존재하는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주의적 시각의 극복을 위해서도 한국인식의 변혁이 긴요함을 지적했다.

2) 후쿠자와의 정부주도에 의한 효율적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히로다(ひろたまさき, 1972)를 참조.

3) 『일본조선연구소』의 발족배경과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板垣竜太 (2010)을 참조.

4) 1960년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한국사연구에 있어서 ‘내재적발전론’의 전개와 가지무라의 탈식민지주의적-근대비판적 역사인식의 일단은 줄고姜元鳳 (2012)를 참조.

국 및 북한과의 대화에는, 근대이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 통행식 대화·행동에 대한 자각적 반성이 있었다. 이렇게 일본 근대백년에 대한 성찰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가지무라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과 관련한 많은 비판적 평론을 남겼다.

가지무라는 1965년 이후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일한체제’ (藤森一清(梶村秀樹筆名) 1975 b)라고 표현한 것에서 보이듯이 양국관계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종속적 분업관계로 보고 있었다. 동시에 한국 민중의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가혹한 노동환경위에 천하대평한 일본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가지무라는 한국의 종속적 근대화노선의 전개에 따른 모순과 이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사상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지무라는 1970년대 이후 성찰적인 문제의식이 희석화 되어가고 방향성을 상실해 가는 일본사회에 대한 총체적 위기의식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때 만나게 된, 역사 속에서 민중의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는 함석헌의 ‘의미(뜻)로서의 역사’ 론은 가지무라에게 충격적인 것이었고, 함석헌의 역사사상에 공명하게 된 가지무라는 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함석헌의 역사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정신자세를 배우려고 한 가지무라는 ‘일한체제’가 던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가면서, ‘일한체제’의 기득권속에 안주하며, 자기점검과 극복의 계기를 상실해 가는 일본사회를 고발한다. 한국 노동자의 기본적 요구를 억압하는 ‘일한체제’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끊임없이 확산되어 가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체의 ‘선진-후진’적 질서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한체제’적인 현실과 사상의 극복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던 가지무라의 사상적 격투는, 오늘날 우리의 참고항목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탈근대적인 연구·실천을 위한 또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지무라의 역사연구·실천은 한일관계사를 매개로 한 성찰적 역사대화의 선구라고도 볼 수 있겠다. 금일 역사문제가 동아시아의 첨예한 정치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가지무라의 사상을 오늘의 시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실천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을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1970~80년대 가지무라의 한국인식과 이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는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일한체제’=근대주의 극복의 곤란성속에서, 가지무라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공감한 함석헌의 역사의 의미(뜻)론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지무라의 식민주주의와 근대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것이다.

오늘날 근대주의 비판의 흐름 속에서 가지무라의 역사인식 또한 근대주의적 역사인식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와 비교하여 오늘날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근대 및 근대주의를 어느정도 상대화 시켰는가. 근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과 사상의 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축적이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간단히 답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 것이다.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근대와 직면하고 있는 속에서, 1970~80년대 ‘일한체제’에 맞선 가지무라의 사상적 격투는 오늘의 시점에서든 의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1. 박정희 정권과 ‘근대화된 모순’

1970~80년대 가지무라의 한국인식을 살펴보기 이전에 가지무라의 1960년대 한국인식을 간단히 살펴보자. 1960년대 중반이후의 한일관계에 대한 가지무라의 인식은 ‘일본의 한국진출·한국의 예측화’라는 말로 집약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당시 가지무라가 작성한

논문의 제목들을 보면 “「부정축제처리문제」와 남조선의 연속적독점자본”, “「일한경제협력」의본질”, “〈일한경제관계〉 종속경제 관계진행. 정치적 개입심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가 보는 한국경제는 일본과의 수직 분업적 관계속의 종속적경제이며, 비민중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⁵⁾. 특히 1967년의 논문 「한국경제의 구조와 현국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 20년간의 미국의 지배정책의 역사적 소산’인 식민지적 경제였다(吉永長生(梶村秀樹筆名)1967 a, 26).

국교정상화 이후 급속히 밀접하게 연결된 한일간의 경제관계는, 1970년대 ‘일한체제’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일체화 된 경제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가지무라가 인식한 ‘일한체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1960년대 일본자본주의 입장에서, 한국은 반공의 최전선이요, 값싼 노동력의 공급처로서 경제·군사 양면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하위 파트너였다. 그리고 1970년대 일본자본의 직접투자를 매개로 하는 경제관계의 밀접화는,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중층구조’라고 표현 될 만큼 한층, 일체화된 경제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일한체제’의 완성에는 박정권의 ‘외자의존 공업화정책’이 있었고, 동시에 일본자본의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임금문제 등의 제반요구를 봉쇄하는 강압적 노동정책이 있었다(藤森一清1975 a, 11). 가지무라는 이와관련 하여 박정권의 종속적 근대화정책의 리얼한 실상과 대중의 저항을 소개하고 있다(藤森一清1975 a, 12). 그러나 박정권은 오로지 체적만 동원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 근대화가 달성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는 ‘근대화의 비전’ 또한 제시하고 있었다(藤森一清1975 a, 13).

가지무라는 70년대 박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대중복지국가의 비전을, 기약할 수 없는 청사진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 짓고 있다.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대외의존적 종속경제의 불안정성에 비추어 볼 때, 대중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의 항상적인 안정성 확보 자체가 환상적인 기대라는 것이다(藤森一清1975 a, 9). 이러한 박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사회의 한국사회에 대한 암흑사회론적 이미지와 박정권 즉각붕괴론에 대해서 가지무라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였다. 당시 일본내 비판적 시각이 그리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절대공핍에 내몰린 민중’ 위에서 군림하는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가 있고, 이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억압하는 ‘가공할 폭력장치와 정보정치’의 박정권과, 이를 뒤에서 지원하는 미국과 일본이 있었다(藤森一清1975 a, 5).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 대한 단순하며 극적인 이미지로부터, 미국·일본의 박정권에 대한 원조를 차단하고, 국제여론을 통해 고립시켜 버리면, 독재정권은 즉시 붕괴하고 민중은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설 것이라는 식의 단순한 전망이 유포되기도 하였다(藤森一清1975 a, 6).

오늘날의 국제 시각에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현상타파론에 대하여 가지무라는 한국 민중의 주체적인 선택과 진정한 국제연대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갑신정변과 갑오농민전쟁을 통한 외세의 개입이, 한국근대사의 내재적 발전의 흐름에 복잡성과 고난을 가중시킨 예를 강조해 왔던 가지무라로서 자연스러운 문제제기였을 것이다(梶村秀樹1977 c, 110-124).

그러나 독재정권 즉각붕괴론에 대한 가지무라의 신중한 태도에는 한국민중의 주체적 선택에 대한 존중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박정권이 주도한 종속적 근대화노선에 의한 경제발전과 사회의식의 변화가 있었다. ‘천리마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북한’과 대비되는 ‘부패와 정체의 남한 자본주의’로 상징되는 일본의 1950년대 한국인식은 이미

5) 梶村秀樹(1964 a.1964 b.1965),吉永長生 (梶村秀樹筆名)(1966 a.1966 b.1966 c.1967 b) 참조

옛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객관적인 물량 지표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한국경제는 1981년도를 목표로한 수출 100억달러를 1977년도에 조기 달성할 정도로 압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정권 붕괴전야론은 빛이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지무라의 발언을 보자.

과거 1950년대, 우리들은 남북조선의 경제를 비교하는데, 단순히 GNP지표를 이용하였다. 천리마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북조선과 부패와 정체의 남조선 자본주의의 대조는, 그것만으로 일목요연하게 이치에 맞는 것으로 생각되었다.(梶村秀樹 1976 b,136)

확실히, 50년대에는 근대화라는 기준 자체를 가지고도 남한을 비판할 수 있었다. 물량적 지표를 보더라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우위를 실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근대화의 물량적 지표를 붙잡고 있어서는, 이제는 남한을 비판할 수 없는 곳까지 와있다. (藤森一清 1975 a,9)

한편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대중사이에 생활개선의 기대감을 형성하게 한 것도 사실이다. 1967년부터 상영된 근대화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영화 ‘팔도강산’ 시리즈⁶⁾가 국책 홍보영화 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중의 기대감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고속도로, 고층빌딩 건설, 새로운 공업제품 등장’을 통해 대중의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변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桜井浩·梶村秀樹 1971,10-11).

그러나 근대화주의 비판을 포함한 근대비판의 시각이 확산되어 가던 1970년대 일본의 사상 흐름 속에서, 남북한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1950년대식의 생산력(GNP)에 근거한 비교는 이미 래디컬(radical)한 비판이 될 수 없었다. 가지무라 역시 ‘고도성장’의 본질에 비판의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가지무라는 박 정권의 정책이 오로지 물량적 기준만으로 평가되는 근대화주의이며, 서유럽이나 일본적인 국가를 목표로 물리적인 강제를 동원, 악착같이 돌진하는 것에 박 정권의 리얼한 모습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대화는 인간성의 해체를 강요하는 것이며, 봉건적인 전근대사회의 모순보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평가한다(藤森一清 1975 a,8-9).

가지무라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근대화 정책과 그 지향점을 보며, 박 정권이 주도하는 근대화 노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근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박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궤적이 근대 일본 백여년의 궤적과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라는 것이다. 값싼 노동력에 의거한 가공 무역형 자본주의화라는 실패면에서부터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선진’국을 모방하는 그 의미부여 방식까지도 포함해서.(藤森一清 1975 a,13)

그러나 가지무라는 가공무역형 자본주의의 성격에서 일본과 한국은 비슷하지만, 식민지라는 모순 완화의 배출구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모순의 배출구가 없는 한국 민중의 삶은 더욱 처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박 정권의 근대화 노선에 대하여 가지무라는 ‘초 이코노믹 애니멀’적 가치관이며, 이를 정치적 레벨에서 ‘박체제’ (藤森一清

6) 1967년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팔도강산」을 필두로 1968년 「속 팔도강산」, 1971년 「내일의 팔도강산」이 제작·상영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 수출신장, 베트남과병 등 당시 박정권의 실적이 극적재미와 함께 홍보되고 있다.

1977,42)라고 부를 수 있다고, 박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2. 「자기점검의 계기」 로서의 한국민중

1960년대 전반, 일본에서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 혁신운동 측의 주요한 관심은, 한일간의 국교정상화가 한-미-일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여, 결국은 북한-소련-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군사-안보적 문제에 있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일본 사회속의 재일 한국인의 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제기한, 가지무라를 포함한 『일본조선연구소』의 입장은 ‘식민지 지배의 반성이라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일반 혁신세력의 운동 속에서 고립’ (和田春樹 2006,346)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본사회에 식민지 지배 책임을 제창한 가지무라였으나, 재일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자기고백하고 있다(梶村秀樹 1971(1992),63).

1968년2월에 발생한 김희로 사건⁷⁾을 통해 강렬한 충격을 받은 가지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재적발전의 한국역사상 연구 속에서 ‘순수화하고 이상화’ 시켰던 한국의 문화나 인간이미지에서 벗어나, 일본 사회속의 재일 한국인이 ‘인간해체’ 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梶村秀樹 1974(1993),122-125).

가지무라는 1971년 논문 「8.15해방 이후의 조선인민」의 서문을 통해 1970년대를 전망하고 있다.

70년11월,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의 노동자, 보세가공무역 제품으로 일본으로도 대량으로 수입되는 값싼 양복 등을 만들기 위해, 일한체제하의 최저변에서 최저한의 생활도 안 되는 임금조건 속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남조선의 노동자. 전태일씨가 충격적인 분신자살이라는 행동을 통해,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낸 모든 것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남조선의 학생운동은 새로운 질적 비약을 이루어 내고 있다.(梶村秀樹 1971(1990) b,190)

‘일한체제’ 하의 한국 민중에 대한 가지무라의 주목은 1970년 전태일 사건을 통해 본격화 된다. 가지무라는 1971년 평론 「전태일씨의 분신자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당시 한국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을 소개·고발하였다. 또한 이사건과 관련한 학생들의 활발한 인권옹호 활동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7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개’를 알리는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60년대 학생운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았음과 비교할 때,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의 조짐을 예고하고, 한국 민중운동에 있어서 70년대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내놓고 있다(吉永長生 1971,16-17).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을 통해서 가지무라는 무엇을 보았는가. 육체를 손상시킬 정도로 혹사당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상징되는 근대화의 실상이었다. 근대화를 통한 삶의 변화는 전근대적(농촌사회)인 사회 속에서 가난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삶으로부터, 장래에 대한 끊임 없는 불안과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는 삶으로의 이동인 것이다. 박정권의 고도경제성장 정책이 만들어낸 민중의 생존조건을 가지무라는 말

7) 김희로(金嬉老)사건은 1968년 2월20일 재일한국인 김희로가 폭력단원 2명을 사살하고, 시즈오카현 후지미여관에서 수십명을 인질로 잡고, 일본사회와 국가를 차별과 억압자로 고발한 사건. 가지무라는 「金嬉老公判對策委員會」에 참가하여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문제를 일본사회에 제기하였다.

한다(藤森一清 1975 a,11-12).

값싼 노동력을 유일한 무기로 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얼마나 처참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가 [중략]이와 같은 외화획득증액 대 정책은 또 베트남 파병과 ‘인력수출’ 로부터 기생관광에 이르기까지 아수라장속으로 대중을 몰아 넣고 있다. 공업화=국제수지 균형이라는 한 가지에 목표를 한정된 정책 강행은 단순히 물질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성의 황폐를 강요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이 박 정권이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 낸, 남조선 민중의 생존조건이다.(藤森一清 1975 a,12)

가지무라에게 있어 1970년대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육체적 손상과 함께 인간성의 황폐를 동반하는 가혹한 생존조건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무서울 정도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용’ 을 경험한 ‘일한체제’ 의 20여년을 가지무라는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한계’ 를 넘나드는 노동조건을 동반하는 ‘모순의 고도성장’ 이었다고 말하고 있다(吉永長生 1985 b,69).

그렇다면 가지무라는 1970~80년대 민중운동의 전개를 어떻게 보았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가지무라는 1970년대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지식인·학생들과 민중운동이 하나로 묶어지려고 하는 조짐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 민주화 투쟁의 저변이 확대되어 가면서, 가지무라는 70년대 초반 학생이 거의 유일한 민주화운동의 실행력이었던 것에 비해 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참가자 층이 현격하게 두터워 지고 있다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 참가자의 대부분은 학생·지식인 등의 인테리에 한정되어 있고, 노동자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吉永長生 1975,8). 그 이유로 가지무라는 박 정권이 민중의 대두를 능숙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운동세력은 민주화운동과 ‘민중간의 회로 탈환’ 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吉永長生 1975,8-9). 이러한 지식인과 학생에 한정된 70년대 민주화 운동은 ‘광주를 거쳐’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독자적인 운동주체로서 노동운동권 등 민중운동의 등장과 함께 군부정권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비약적인 변모를 보여주게 된다(吉永長生 1985 a,17). 주지하는 바와 같이 80년대 한국 민중운동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저력을 보이며, 그 정점을 맞이하게 된다(吉永長生 1987,10). 이러한 열려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같은해 7~8월에는 전국적으로 약 2500여건에 이르는 대규모의 노동쟁의가 발생한다(梶村秀樹 1988,108-109). 그리하여 가지무라가 고발하는 ‘일한체제’ 하에서 억눌렸던 민중의 모든 목소리가 분출하기 시작한다.

이상과 같이 가지무라는 70~80년대 ‘일한체제’ 하의 경제성장 이면에 가려진 가혹한 생존환경에 내몰린 민중과 저항을 목격했다. 동시에 가지무라는 박정권의 종속적 근대화 노선 속에 드리워져 있는 일본근대의 그늘과 한국 민중의 고난을 응시하며, 자신과 일본사회를 성찰하는 ‘자기점검의 계기로서의 한국’ 을 연구·실천한다(梶村秀樹 1971(1992),59).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젖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의식하며 자각하고, 끊임없이 자문하는, 그런 계기로서 조선문제 있다.(梶村秀樹 1971(1992),18)

일본근대 백년·일본국가에 대한 가지무라의 비판적 시각은, 일본의 명치유신과 같은 유형의 근대국가를 지향한 갑신정변의 개화파에 대한 연구로 연결된다. 또한 민중을 계몽과 동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남과 북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전개한다(梶村秀樹

1966). 1970년 동학운동사와 관련한 번역서의 해설을 통해서, 가지무라는 ‘동학운동을 조선민중의 근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오늘날 ‘근대세계의 퇴폐의 과도’를 집중적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한국 민중운동이 동학을 뛰어넘는 근대극복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吳知泳(梶村秀樹訳注) 1970,365,368).

가지무라는 1977년 논문 「한국·박 체제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한일간의 경제관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오늘날 ‘침략’의 양태는, 총체적인 국민경제가(또 다른) 국민경제위에 서서, 상대방의 국민생산력을 그 자발성도 포함하여 총동원하는 형태를 취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 스타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술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간의 고도로 발달한 국제분업’이 된다. (藤森一清 1977,39)

한마디로, 한국의 국민생산력이 총동원되어 일본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일간의 ‘고도로 발달한 국제분업’ 관계는 일본사회와 시민을 한국 민중을 짓밟는 위치로 내모는 구조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에 대하여 둔감한 일본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가지무라는 근대이래로, 일본사회가 고난의 한국 민중위에 서있는 구도를, 현재의 문제이자 자신의 문제로 자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노동자가 하루 몇 시간 일하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현상적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형편이 되었는가 라는 본질 부분까지 파고드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吉永長生 1985 a,19). 이러한 한국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통하여 일본사회의 삶의 방식, 일본자본주의의 본질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제적 차별-역압구조에 대한 일본사회의 무지와 무관심의 구조에 대하여, 가지무라는 이미 1970년경부터 일본사회의 ‘중대한 사상적 위기’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이익, 기득권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현재 존재양식에 대하여 무자각적으로 살도록, 우리들의 의식은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일 조선인의 전후 25년간을, 우리들이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온 것도, 이러한 의식 실태와 관계 있을 것이다. 중층구조가 일층 교묘하고 간접적으로 된 만큼, 무자각성이 일층 심화된 것은, 오히려 한층 중대한 사상적 위기라고 말해도 좋다.(梶村秀樹 1971(1992),46)

한편, 가지무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가. 그는 1960년대부터 어느 측면에서는 한국문제 이상으로 북한의 역사연구를 비롯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⁸⁾.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 북한이 경제통계를 일절 공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연구자들은 ‘김일성의 연설 등에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숫자를 모아서 지그소 퍼즐 처럼 전체상을 그려나갈 수 밖에’ 없었다. 지그소 퍼즐을 통해 그려진 북한의 국민상은 ‘오로지 생산하고 학습하는 사람들밖에’ 볼 수 없다(谷浦孝雄 1978,14-15)고 할 정도로 북한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직면하고 있었다. 가지무라 또한 북한의 극단적인 정보 통제 속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민중의 심상(心像)파악의 곤란성을 토로하며, 상상력을 동원하려고 해도 근거자료가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梶村秀樹 1976 a,31). 1960년대 북한사회의 개인숭배 강화, 사회의 다양성 상실과 정보의 극단적 통제는 북한민중의 삶에

8) 가지무라의 1960년대 북한의 역사 연구 및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즐고 姜元鳳 (2012)참조

대한 파악을 곤란하게 하였던 것이다. 가지무라는 북한사회의 경직화에 대한 일본사회의 비판에 대하여, 비판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의 북한사회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사적, 현재적 역할을 고려하는 ‘민족적 책임의 관점’ (梶村秀樹 1971(1990) a, 92-93)이 전제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국에 대한 시각에서도 보이는 가지무라의 자기점검의 계기로서의 북한인식이 엇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3. 일본사회의 가치관과 민중의 과제

1970년대 일본사회가 한국산의 값싼 수입의류를 아무런 의문점 없이 애용하는 상황의 이면에는 전대일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한국의 극한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저임금을 강요당하는 노동자가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규모의 희생과 차별구조위에 일본사회의 일상생활이 있다고 가지무라는 말한다(吉永長生 1971,19). 한편 가지무라는 노동자계급의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적 연대라는 이념도 이미 퇴색하고 말았으며, 일본의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제국주의적 기득권에 안주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고통을 같은 노동자로서 공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고발하고 있다(吉永長生 1971,19). 이와 함께 전술한 당시 일본사회의 독재정권 비판론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국 민중의 희생위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일본자본주의 체제안에 안주하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에서의 박 정권 비판은, 남의 눈 속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으로서 가지무라에게 비쳐 졌던 것이다. 한마디로 ‘일한체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독재정권 비판은 자기 기만적인 부조리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독재정권하의 한국사회에 대한 동정심과 대비되는 일본의 전후 ‘자유와 민주주의’ 에 대한 긍지는 더욱 년센스한 부조리일 수 밖에 없었다(藤森一清 1975 a,13). 여기에서 가지무라는 일본의 근대백년에 대한 부정과 근대화주의의 극복의 모색이 모순적인 한일관계의 근본적 해결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이 서야할 입장은 근대일본 백년의 궤적을 깨끗이 모두 부정함과 동시에, 그의 도달점인 현재의 ‘자유와 민주주의’ 의 비참할 정도의 기만성을 보여주는, 근대화주의를 극복 하려는 입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당분간 남조선 민중의 악전 고투속에서 획득된 감각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藤森一清 1975 a,13)

한국민중의 악전고투에서 가지무라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가지무라는 근대 일본백년의 추악함을 보게 된다. 가지무라는 1974년 논문 「베트남파병의 상흔(傷痕)」 을 통해서 박정권의 베트남 파병 정당화 논리중에서 ‘조국근대화’와 ‘국위선양’ 에 주목하였는데, 이를 통해 강렬한 ‘선진-후진’의식이 배경에 깔린, 베트남을 이용 아시아를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하고자 하는 욕망을 본다(吉永長生 1974(1993), 289-290). 그리고 타민족의 고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순의 배출구를 찾는, 가장 파렴치한 본보기를 제공한 일본의 근대백년을 본다.

근대백년의 일본이 창출해낸 사상과 똑같지 않은가. 아시아를 벗어나 아시아를 희생양으로 삼아 홀로 ‘선진’ 대열속으로 출세하려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과 닮은꼴이 아닌가? 객관 조건이 다를 뿐이다. [중략]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베트남 파병의 사상은 근대일본을 떠받치고 있던 사상의 추악함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吉永長生 1974(1993),291)

가지무라에게 후쿠자와의 탈아론적 사고방식은 베트남과병의 사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며, 근대적 세계체제의 구조적 잔혹성과 그 주역중의 하나인 일본국가의 부도덕성을 또 한번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누누이 설명하는 것도, 일본-한국-베트남이라는 축을 따라서, 마치 자연적인 경제현상처럼 생각되고 있는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체제가, 강요하는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들어내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일본국가의 부도덕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각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吉永長生 1974(1993),316)

한편 1975년 가지무라는 논문 「일한조약 체제 10년의 귀결」을 통해서 일본의 민중의식과 광범한 사회의식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일관계에 대한 10년전의 비판의식과 비교하더라도 ‘제국주의에 마비’되어, ‘일한체제’에 대한 의미있는 비판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게다가 근대주의적 감각에서 ‘박정권은 생산력 향상을 그 나름 잘 조직’하고 있다고 하는 박정권 재평가론마저 대두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를 허용한 일본내 비판적 사상의 ‘불철저성’을 언급하면서, ‘일한체제’의 실상에 대하여 대중이 실감하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사상의 창출이 시급한 과제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藤森一清 1975 b, 26-27).

일본사회속의 ‘일한체제’의 실상에 대한 무지와 비판의식의 희석화 현상, 한국민중의 고난에 대한 무관심에 직면하면서, 가지무라는 문제를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라. 경제유착을 끊어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슬로건에 대해서, 가지무라는 현상적이고 일반론적인 대응책으로는 이미 하나의 일체화된 경제체제 차원에까지 도달하고 있는 ‘일한체제’에 대한 래디컬한 비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본독점자본의 국내외에 걸친 지배체제와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藤森一清 1975 b, 28).

한국이라는 종속적 경제파트너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수직적 분업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한국민중의 희생위에서만 존립이 가능한 일본자본주의-국가체제와의 근본적인 차원의 대결을 가지무라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3세계 민중의 고난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일본사회의 삶의 방식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염두 해 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지무라의 비판은 일본의 민중을 향한다. 선진국 일본사회의 민중들이 ‘이미 획득하여 기득권이라고 믿고 있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각오’ 즉, 종속적 경제체제하의 한국 민중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성립되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각오가 없는 이상, 한일간의 ‘민중적 연대’ 라는 가치의 상실은 물론, 제국주의적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梶村秀樹 1976 b, 141).

그러나 일본의 노동조합이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본과 공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内海愛子·吉永長生等, 内海愛子발언 21-22)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구조이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일본사회는 이 구조속의 자신의 위치를 한국과 비교·확인하고, 그 지위를 안심하며 누리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가지무라가 이야기하는 일본사회와 민중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제국주의 체제가 가지무라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부평초와 같은 ‘번영’과 취약한 낭비경제, 여유없는 정신적 소모-이러한 생활방식은, 결국 길게 가지 못할 것이고,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제국주의 내부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삶의 방식

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희박해질 정도로 우리들은 방심상태에 있는것은 아닐까. [중략] 아마 적어도 남조선의 김지하⁹⁾는 이미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고 있는 전후의 일본적인 삶의 방식의 문제성이, 보다 확실히 보일것이다. (藤森一清 1977,44)

일본적 기득권은 가지무라에게 있어서 이미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한국의 노동환경위에서 ‘천하태평을 구가하는’(梶村秀樹 1987,72) 일본사회를 바라보면서,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기 힘들게 된, 즉 자기점검의 능력과 계기를 상실한 일본의 사상풍토에 대한 심각한 자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가지무라의 이러한 문제의식의 심화와 함께 1970년대 이후 민중운동의 차원에서, 한일간의 차이는 점점 명확해져간다. 70년대의 민중운동이 한국에서는 고양기에 접어들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침체일로를 걷는다. 한국의 민중운동은 70년대 지식인·학생중심의 운동에서 광주를 거쳐 기층 민중운동 중심의 길을 걸어간 반면, 같은시기 일본에서는 ‘대중의식은 평온무사’하였고, 지식인·대중들과 지배층간에는 긴장관계가 사라진지 오래였다. 가지무라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식인의 비판의 포기와 대량전향이라는 추세는, 지배층과 대중의 일체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吉永長生 1985 a,18).

80년대 들어서 일본의 민중운동과 한국의 민중운동간에는 더욱 큰 격차가 발생하는데, 가지무라에게는 간단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제적 번영속에서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성도 상실하고, 일종의 전향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저명한 지식인조차 문제의식을 상실해 가는 추세가 진행된다. 가지무라가 표현한 ‘전향’은 단순히 이념적 측면만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자기점검의 작업에 대한 포기를 상징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한국과 비교할 때, 더욱 더 선명하게 가지무라에게 비쳐졌다(吉永長生 1985 b,73).

또한 가지무라는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친다. 제국주의적 기득권에 안주한 속에서 문제의식을 상실하고, 기존국가와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한 경험이 그다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吉永長生 1985 b,73), 국가에 대한 상대화의 경험과 시점의 부재를 지적한다(梶村秀樹 1985 b,26-27). 이러한 일본사회에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는 국가지상주의와 비교하여 한국현대사속에는 이와는 대비되는 국가를 상대화하는 경험과 시점이 존재한다고 가지무라는 보고 있었다(梶村秀樹 1985 b,27).

이처럼 가지무라는 일본인과 다르게 국가와 자기의 관계를 상대화 시켜 보고 있는 재일 한국인(정주외국인)과의 공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梶村秀樹 1985 b,30). 그러면 가지무라는 일본사회의 사상의 정체상황을 타개할 열쇠를 어디에서 찾고 있었는가 다음장에서 살펴보자.

4. 의미상실시대의 역사인식

80년대 일본에서는 일본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근거가 되고 있던,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이 구시대적 사상으로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가지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을 고집스럽게 옹호한다. 물론 가지무라는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서 있었고, 교과서적인 역사발전 단계론에 얽매인 것도 아니었다. 가지무라가

9) 김지하의 한일관계 및 일본에 대한 비판은 (金芝河 1975)의 「櫻賊歌」, 「糞氏物語」, 「鎮惡鬼」 등을 참조

견지하고자 한것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분석틀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근대에 대한 비판 가능성과 약자에 대한 옹호에 있었을 것이다.

가지무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점점의 계기와 지향점을 잃어가는 일본 사회속에서 진보에 대한 믿음과 실천적인 힘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역사학이 재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梶村秀樹 1985 a,108-109). 이런 맥락에서 가지무라가 1960년대초 『일본조선 연구소』 시대부터 일본사회의 식민지주의적 한국인식 및 재일한국인 인권문제와 씨름하면서 연구자와 운동가로서의 삶을 병행해 왔으며, 그의 글에는 이러한 특징이 짙게 배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운동가도 아닌 영역에서—가능한 한 조선인과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걸어가는 작업을 계속할 셈입니다.(梶村秀樹 1985 a,117)

이러한 가지무라의 실천운동가로서의 문제의식과 시점은 일찍부터 한국의 근대민족사학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신채호에 대한 주목으로 연결된다. 그가 신채호에 대하여 주목한 것은 신채호가 아카데미 세계와는 다른 독립운동의 현장 속에서 역사연구를 하였기 때문이었고, ‘식민지적 상황과 정면으로 승부한 성실한 혁명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인텔리겐차’였기 때문이었다(梶村秀樹1977 a,54-55). 역사연구자 이면서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가지무라에게 있어서 신채호는 이상형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가지무라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역사학이 재건’을 위해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는 쪽은, 일본의 실증사학이 아니고 신채호의 민족독립을 위한 ‘민족사학’이었다(梶村秀樹1969,20,30).

가지무라는 1977년 논문 「일본제국주의의 문제」에서 식민지의 희생을 무시하고, 일본 근대백년을 문명의 진보로 자화자찬 하는 식의 일본사회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한다. 또한 진보적 일본역사학계의 제국주의 과악을 위한 역사방법론이 아무리 정밀하게 진행되더라도, 국민의 역사의식 변혁에 실제로 힘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신랄하게 발언하고 있다. 즉 아카데미속에서만 유효한 방법론의 정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 사회전체를 시야에 넣은 ‘역사의 의미를 우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이른바 총체적인 사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梶村秀樹1977 b,335).

한일 강제병합에 대하여 ‘약육강식의 시대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않았겠는가’라거나, ‘그런식으로 일본이 쳐들어간 것은 조선인이 야무지지 못해서다.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梶村秀樹1974(1993),117)이 주종을 이루는 당시 청년들의 역사인식을 보며, 가지무라는 제국주의적인 근대일본의 역사를 상대화·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사회를 재삼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가지무라는 상기 1977년 논문에서 역사의 의미의 영역을 중시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공통의 법칙적 이해에서 출발해도 역사에 대한 평가와 실천적인 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역사상은, 각각 주체적인 것임을 설명하며, 중시해야 할 것은 이러한 주체적인 역사의 의미의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가지무라는 갑신정변의 지도자 김옥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60년대 북한의 역사인식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는 내재적발전의 역사상의 강조와 한국역사에 있어서 강좌파적 시각, 즉 특수성=낙후성을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梶村秀樹1977 b,343-350). 가지무라는 1966년 논문 「조선근대사와 김옥균 평가」를 통해서 북한의 역사시각에 대하여 소개·비판하였다(梶村秀樹1966,). 이속에서 가지무라는 북한의

역사인식과는 다른 김옥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지무라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영원불변한 진리이자 단 하나뿐인 ‘과학적 역사상’이 아닌, 상황적 진리임을 재차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직면한 상황속에서, 주체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 역사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실증·분석을 전제로 한, 역사에 있어서 ‘의미의 영역’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역사’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지무라는 1984년 논문 「역사와 문학」에서 이러한 ‘의미로서의 역사’를 60년대 이후의 한일국 교정상화를 계기로 촉발된, 한국의 ‘민족사학’의 재인식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대주의에 맞서 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신채호의 ‘사실의 의미 있는 체계적 인식’이 보여주는 박력에 비해, ‘세밀(些末)주의’에 빠진 일본의 역사연구가 제시하는 역사상은 ‘의미로서의 역사’차원의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하고 있는 정도에서, 신채호를 능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梶村秀樹1984 a, 56).

한편, 1976년 미야지마 히로시는 해방 후 한국역사연구를 개관하면서, 민족사학의 선구인 신채호의 역사연구의 기초에는 노예상태의 굴욕속에서도 여전히 잃지 않은 ‘민족과 민중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宮嶋博史1976,14). 이러한 신채호의 민족과 민중에 대한 신뢰에 공감하던 가지무라는 지식인은 민중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함께, 민중의 감성에 궁극적 가치의 근거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梶村秀樹1984 b, 337).

이렇게 민중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지무라에게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金学鉉訳 1980)는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을 주게 된다. 함석헌의 역사관은, 원래 1934~35년에 걸쳐 잡지 『성서조선』에 연재되었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에서 처음 기본 시각이 등장하였고, 연재내용은 1950년 출간된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역사』에 수록되었다. 함석헌은 한국민중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본다. 그러나 그저 고난만의 역사는 아니다. 원래 고난속에 의미(뜻)가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한국민중의 고난의 역사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함석헌의 역사인식에 가지무라는 충격적인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는 단순히 한민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다(梶村秀樹1977 b, 353).

‘일한체제’를 피와 눈물로 떠받치고 있는 한국 민중과 함석헌의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민중의 고난은 가지무라에게 오버랩되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김옥균 평가와 신채호의 ‘민족사학’의 예를 통해 보여진 가지무라의 역사에 있어서의 ‘의미의 영역’ 또한 함석헌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함석헌은 이러한 고난의 세계사적 의미로서 ‘역사의 하수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다. [중략] 세계의 불의를 짊어짐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도덕적으로 한층올리는 일이다. 이것이 역사의 하수구가 아닌가. (梶村秀樹1977 b, 354)

가지무라는 이러한 세계의 불의를 짊어진 세계의 하수구인 한국과 제3세계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오버랩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을 세계의 하수구 역할로 내몬 일본사회를 직시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1980년 한국이 격동의 한복판에 있을 시기에 작성된 가지무라의 다음 글을 보자.

‘한국은 세계의 불의의 결과를 짊어진 세계의 하수구다’라고 한다. 비유는 충격적이나, 이러한 인

식은 우리들 역사과학적인 사실인식과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한국 민중이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는, 확실히 전후의 양체제간 모순과, 자본주의 세계속에서의 '선진국' - '후진국' 간의 모순에 크게 조건지워져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의 번영과 '풍요로운 생활'이 만들어 낸 모순이, 제3세계 전반, 그 중에서도 모순이 집중된 지역인 한국의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는구조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梶村秀樹 1980,50)

그리고 이러한 한국 민중의 고난과는 또 다른 차원과 의미에서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과제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민중의 고난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사회의 삶의 방식에 대한고발과 그 극복을 위한 물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제의 틀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난인 것이다. '하수구'에 스스로가 발생시킨 독소를 흘러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다. 독소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역할'을 한국민중에게 떠맡겨 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대량의 독소를 발산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실태 전체를 문제삼지 않아도 종단 말인가? (梶村秀樹1980,50)

이처럼 한국 민중과는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차원의 '고난'='시험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민중은 한국 민중의 '고난의 짐을 능동적으로 져온 정신의 실상'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梶村秀樹1980,49). 즉 독소를 발생시켜 한국으로 흘러 보내고 있는, 자신의 위치가 가지는 의미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주체적으로 찾아 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 주어진 고난과 시험은,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이른바 선진국의 영역에 도달한 나라와 미래의 선진국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에 놓여진 고난과 시험일지도 모른다. 당시의 가지무라는 '제국주의 내부의 인간'으로서 어쩌면 한국 보다 더 곤란한 사상혁명의 과제를 짊어지고, 고독하게 일본의 과제와 사명을 밝히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가지무라는 함석헌이 말하는 한국민중의 '약육강식의 세계를 평화로 제일의 가치로 하는 세계로 역전시켜, 세계를 구하는 세계사적 사명'(梶村秀樹1980,49-50)을 언급한다. 일본도 포함한 세계사적 과제의 제시를 보며, 가지무라는 자신과 일본사회에 주어진 역사의 의미와 사명을 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일한체제'의 기득권을 향유하며, 자기점점의 계기를 상실하고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해 가는 일본사회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던 가지무라에게, 이러한 '의미로서의 역사'는 방법의 차원을 넘어, 체감되고 공감되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읽어보니, 그것은 단순한 '가치중립적'인 사실의 나열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로서의 역사'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단적인 문제제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梶村秀樹1984 a ,53)

그러나 가지무라의 역사인식이 함석헌의 '의미로서의 역사'인식으로 일원화 된 것은 아니었다. 역사로부터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가지는 의미를 현실적·역사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보편적인 '사실로서의 역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梶村秀樹1984 a ,55).

맺음말

가지무라는 평생 역사연구자와 실천운동가의 삶을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두가지의 삶과 실

천을 통해서, 일반적인 역사연구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연구와 실천의 스타일을 낳았다고 생각된다. 보편적인 ‘사실로서의 역사’와 개성적인 ‘의미로서의 역사’의 긴장관계를 통해 과학적인 역사가 성립한다(梶村秀樹1984 a, 55)는 그의 만년의 역사론은 그의 삶의 도달점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1965년 가지무라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행로를 역사연구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적하겠다고 선언한다(梶村秀樹1966(1965),107). 가지무라의 역사연구와 실천은 1960년대 일본사회의 식민지주의적 한국(역사)인식과 대결한다는 자세로 시작되었다. 1970~80년대 ‘일한체제’와의 사상적 격투과정을 통해, 가지무라는 근대적 세계구조의 폭력적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근대의 폭력이 식민지적 관계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때, ‘일한체제’는 식민지적 근대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식민지적 근대=‘일한체제’는 가해자 일본에게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피해자 이상의 심대한 사상적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정신적 퇴보의 한복판에 있었던 가지무라는 ‘일한체제’의 근본적인 극복을 모색했다. 명치유신 이래 근대 일본의 백년을 전부 부정하며 선진국 일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외친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의 대결이기도 했다. 벗어나기 힘든 세계구조이며, 극복하기 힘든 현실일 수도 있었다. 당시 유일한 대항적 사고체계였던 마르크스주의 또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홀로의 탄식이며 반성’이고, 친구에 대한 ‘위로며 권면’이었던, 그리고 ‘우리의 기도요 신앙’이지 역사연구가 아니었던(함석헌1960,머리말2) 함석헌의 역사철학과 가지무라의 만남이 이루어 진다.

한국을 통해서 일본의 문제를 보는 가지무라의 시각을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일본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으로 다가온다. 1970~80년대 당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면에서 국제화된 오늘날, 한국사회는 자신의 변영의 기반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어느정도나 자각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성찰의 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서있는 위치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 가고 있는지. 오늘날의 한국적 삶의 방식은 가지무라의 비판을 견딜수 있는 것인가. 가지무라가 일본사회에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사회를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 문헌)

- 함석헌 1960(1950년 초판). 『성서적입장에서 본 한국역사』. 新生館
- 金芝河. 1975. 『金芝河全集』東京：漢陽社
- 梶村秀樹. 1964 a. “「不正蓄財處理問題」と南朝鮮の隷屬独占資本”. 『朝鮮研究月報』第26・27合併号
- 1964 b. “「不正蓄財處理問題」と南朝鮮の隷屬独占資本《二》”. 『朝鮮研究月報』第31号
1965. “「日韓經濟協力」の本質”. 『歴史学研究月報』第70号
- 1966(1965). “日韓条約のゆくえを追跡します”(1965年執筆).

- 『梶村秀樹著作集』第5卷.pp105-107.東京：明石書店
1966. “朝鮮近代史と金玉均の評価”. 『思想』第510号
1969. “申采浩の歴史学”. 『思想』第537号
- 1969(1993). “日本における朝鮮研究”. 『梶村秀樹著作集』第2卷. pp86-107.
東京：明石書店
- 1971(1992). “排外主義克服のための朝鮮史”. 『梶村秀樹著作集』第1卷.
pp13-77. 東京：明石書店
- 1971(1990) a. “朝鮮民族解放闘争史と国際共産主義運動”. 『排外主義克服のた
めの朝鮮史』. 青年アジア研究会
- 1971(1990) b. “8・15解放以後の朝鮮人民”. 『排外主義克服のための朝鮮
史』. 青年アジア研究会
- 1974(1993). “朝鮮史研究の方法をめぐって”. 『梶村秀樹著作集』第2卷.
pp108-125. 東京：明石書店
- 1976 a. “私の読んだ三十冊の本”. 『思想の科学』第59号
- 1976 b. “日韓体制の再検討のために”. 『三千里』秋号
- 1977 a. “申采浩の啓蒙思想”. 『三千里』春号
- 1977 b. “日本帝国主義の問題”. 『岩波講座 日本歴史24』. 岩波書店
- 1977 c. 『朝鮮史—その発展』. 東京：講談社
1980. “苦難を背負う—咸錫憲氏の『苦難の韓国民衆史』によせて”.
『福音と世界』第35巻第10号
- 1984 a. “歴史と文学”. 『歴史評論』第409号
- 1984 b. “語りはじめた労働者たち”. 『梶村秀樹著作集』第5巻. pp329-338.
東京：明石書店
- 1985 a. “歴史の発展は幻想だろうか”. 菅孝行編
『モグラ叩き時代のマルキシズム』. 東京：現代企画室
- 1985 b. “定住外国人としての在日朝鮮人”. 『梶村秀樹著作集』第6巻.
pp13-34. 東京：明石書店
1987. “韓国民衆運動の歩みと展望”. 『「朝鮮問題」学習・研究シリーズ』.
朝鮮問題懇談会
1988. “80年代韓国の労働経済と労働政策”. 神奈川大『経済貿易研究』第14号
- 藤森一清(梶村秀樹筆名). 1975 a. “朴政権の価値体系と韓国の民衆”. 『情況』第78号
1975 b. “日韓条約体制一〇年の帰結—日韓体制の軌跡と変革の視”.
『破防法研究』第24号
1977. “韓国・朴体制の光と影”. 『破防法研究』第32号
- 吉永長生(梶村秀樹筆名). 1966 a. “南朝鮮からの「労働力導入」の問題について”.
『朝鮮研究』第48号
- 1966 b. “日韓経済関係 従属経済関係へ進む”. 『東京大学新聞』1966. 4. 15日号
- 1966 c. “対韓経済進出の具体化状況”. 『朝鮮研究』第50号
- 1967 a. “韓国経済の構造と現局面”. 『国際問題』第88号
- 1967 b. “朴政権の経済政策の意味するもの”. 『朝鮮研究』第66号

1971. “全泰壹氏の焼身自殺の意味は何か?”. 『朝鮮研究』第103号
1974(1993) “ベトナム派兵の傷痕”. 『梶村秀樹著作集』第5巻. pp278-317.
東京: 明石書店
1975. “南朝鮮の民主回復闘争”. 『朝鮮研究』第146号
- 1985 a. “日本の対韓政策と民衆意識”. 『新地平』第127号
- 1985 b. “「日韓条約」二十年を考える”. 『クライシス』第24号
1987. “新局面きりひらいた韓国民衆運動”. 『世界から』第29号
- 朝鮮史研究会. 1959. “日本の学会”. 『朝鮮史研究会会報』第1号
- 遠山茂樹. 1963. “朝鮮にたいする民族的偏見について”. 『歴史評論』第152号
- 呉知泳(梶村秀樹訳注). 1970. 『東学史-朝鮮民衆運動の記録』. 東京: 平凡社東洋文庫
- 桜井浩・梶村秀樹. 1971. “南朝鮮民衆の意識と行動”. 『朝鮮研究』第105号
- ひろたまさき. 1972. “福沢諭吉における第三の転回”. 『思想』第580号
- 宮嶋博史. 1976. “韓国における「民族史学」について”. 『歴史学研究』第439号
- 内海愛子・吉永長生等. 1978. “座談会 韓国経済の「脅威」を論ず.” 『朝鮮研究』第183号
- 谷浦孝雄. 197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発展途上国研究』. アジア経済研究所
- 咸錫憲(金学鉉訳). 1980. 『苦難の韓国民衆史-意味から見た韓国歴史』. 新教出版社
- 並木真人. 1990.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研究の現段階-「内在的発展論」再考-”.
『歴史評論』第482号
- 米谷匡史. 2004. “アジア連帯論のコンテクスト 誰が誰に語るアジア連帯なのか”.
『理戦』第76号
- 和田春樹. 2006. 『ある戦後精神の形成-1938~1965』. 岩波書店
- 板垣竜太. 2010. “日韓会談反対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 『思想』第1029号
- 姜元鳳. 2012. “一九六〇年代梶村秀樹の朝鮮史認識”. 東京学芸大史学会 『史海』第59号

**People under the Japan–Korea system and its history as meaning
– Recognition of Korea and its history by Hideki Kajimura –**

This paper focuses on one of the Japanese history professors, Hideki Kajimura (1935–1989), who researched Korea's modern and the post-war Japan history. He was the person who represented the Korean modern historical research through the theory of immanent development theory based on the awareness of issues of a postcolonial liberal. Furthermore, he was a social activist who defended the human rights of Koreans in Japan and was active in the practical activities.

With respect to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70s and '80s, Hideki Kajimura viewed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colonial relationship with the nature of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system as presented under Japan–Korea system. Under the Japan–Korean system, the people of Korea worked under the system of a low–wage policy environment, through President Park's oppressive regime and were forced to survive the harsh living environment. However, even though the economic scale was fast–growing through modernization policies, the people faced the deconstructive labor environment that contradicted modernization.

Hideki Kajimura argued that Japan society could maintained the stability due to such deconstructive labor environment by the people of Korea. In addition, he believed that the modernization ideology of President Park's regime had similarities with the nationalistic modernization of Japan's modern ideology that verified in the idea of sending troops to Vietnam War. Hideki Kajimura had an extraordinary interest regarding the democracy movement and its ideology that against the contradictions of dependent modernization in Korea.

Hideki Kajimura accuses such ignorance and indifference of Japanese society toward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Korea underpinning the prosperity of Japanese society. Moreover, comparing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movement in Korea, it aggravates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crisis in Japanese society and makes the Japanese people to be settled under the imperialist authorities along with the diluted awareness of the issues.

Along with the mental crisis in the humanity of the Japanese society and the dismantling of Ethics, Hideki Kajimura was seeking practical historian contributing to the subject of Japanese society in the spirit of revolution and had focused on Chae–Ho Shin's life and his research, the pioneer of Korea's history of ethnic. In turn, it led to the meaning of the history as per Seok–Heon Ham who was seeking the meaning in the suffering of the people in history.

Hideki Kajimura sympathized Seok–Heon Ham's indomitable attitude and observed the

target of salvation to the people of Japan by reversing the law of the jungle to world peace toward world-historical mission. He is seeking a fundamental shift in the way of life to abandon the vested interests being as developed countries and overcoming of the modern order of advanced-underdevelopment order.

key word: Japan-Korea system. contradicted modernization. Chae-Ho Shin. Hideki Kajimura. Seok-Heon Ham. history as meaning

2.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한국 자본주의론

-내재적 발전론으로서의 '종속 발전'론-

홍종욱 (同志社大学)

1.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 자본주의

1960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한국사 연구에서는 후일 내재적 발전론으로 불리게 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게 된다. 전전 역사학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면서, '타율적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정체적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적 관점'(吉野 1987, 33)이 그것이다. 이후 내재적 발전론은 남북한의 연구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1960-70년대에 걸쳐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론이자 한국사를 바라보는 태도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가 바로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1935-1989)이다.

1980년대 후반 내재적 발전론을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으로 비판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나미키 마사히토(並木真人)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해 '전전기의 일본의 역사학계가 보편적인 발전단계설에 바탕하여 일본의 선진과 조선의 정체·후진을 주장한 것과 같은 틀로 단지 그것을 뒤집는 형태로 "정체"를 발전으로 바꿔 읽은 것'(並木 1990, 18)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요시노 마코토(吉野誠)는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내재적 발전론 일반에 대한 평가로서 타당하지만 가지무라의 그것에 대해 말한다면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吉野 1991, 166)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을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으로 보는 비판이 그 초기 단계였던 1960년대부터 줄곧 따라다닌 것이 사실이다. 이런 비판이 아니더라도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역사적 결과를 직시한다면, 아무리 내재적 발전을 강조해도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한 일본과 비교할 때 조선의 상대적 정체는 분명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적 궁지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지무라가 중시한 것은 외압이었다. 외압에 의해 내재적 발전이 왜곡되어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단순히 각국의 발전을 비교하는 평면적인 역사상을 넘어서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외압의 강조는 내재적 발전론의 근본을 무너트릴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여기서 가지무라가 주목한 것이 외압에 맞서는 민중의 존재였다. 민중의 희생과 저항에서 내재적 발전의 동력을 찾음으로써 경제결정론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렸다. 즉 가지무라는 '외압'을 중시하고 그에 맞서는 '민중'에 주목함으로써, 정체성론·타율성론을 배제하는 동시에 일국사적 발전단계론도 넘어선다고 하는 일견 상반되는 이중의 과제와 맞서고자 한 것이다(洪 2010).

가지무라의 작업은 줄곧 역사 연구와 현상 분석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상 분석에 관한 글들이 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는 가지무라가 이른바 생활면에서 분과 학문으로서의 역사학과 조금 거리를 두게 된 사정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969년 도쿄(東京) 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조수의 임기가 끝난 뒤 이른바 재야의 학자가 된 가지무라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 김희로(金嬉老) 사건의 재판 투쟁 지원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사회 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1973년부터 가나가와(神奈川) 대학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되지만 경제학부에 소속되어 아시아 경

제론 등의 과목을 담당하였다. 가지무라는 후일 '역사학의 세계로부터 어쩐지 쫓겨나 직업 상으로는 경제학의 세계'(梶村 1985, 106)에 있게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사 연구를 통해 가다듬어진 내재적 발전론이 현상 분석에 있어서도 관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는 가지무라 저작집 제5권 『현대 조선에의 시좌』에 부친 해제에서 '가지무라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을 중시하는 한편, 경제 발전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민중에게서 내재적인 역사 발전의 주체를 찾고자 하는 입장에 서서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작업을 행했다'(水野 1993, 428)고 평가하여, 현상 분석에 있어서도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역사 연구의 방법론이 옳이 살아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다키자와 히데키(滝沢秀樹)는 "'가지무라 사학'의 이 '내재적 시각'이 해방 후 남한 사회를 보는 경우에도 견지되어 남한에서의 '내재적 발전'이 파악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스스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남한 사회와 변혁 운동을 보는 눈은 어딘지 "외재적"인 것처럼 생각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滝沢 1996, 182). 본고에서는 가지무라가 해방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해 역사 연구와 현상 분석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엇갈린 평가를 본고 나름의 시각에서 검토해 가는 것 또한 주어진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본고의 제목과 부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먼저 제목에서 '경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말을 쓴 것은, 가지무라의 관심이 그 형성 과정에서 극복의 전망까지를 포함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라는 말을 통해 가지무라의 연구가 단순한 현상 분석에 머물지 않고 이론화의 시도를 포함하여 역사 연구의 축적이 그 속에 관찰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부제의 '종속 발전'은 가지무라 자신이 만든 말이다.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종속'과 '발전'이라는 두 개념을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그야말로 모순에 찬 길을 걸고 있던 한국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이다. 미즈노 나오키는 '가지무라의 한국 경제 이해의 기본은 "종속 발전"이라는 말에 나타난다'(水野 1993, 432)고 평가한 바 있다. 결론을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지만, 가지무라의 '종속 발전'론은 외압을 중시하고 민중에 주목하는 그의 내재적 발전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2. 남북한의 '민족주의'와 대중 의식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1960-70년대 가지무라의 역사 연구의 정수가 담겨 있는 작품으로서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1977a)를 들 수 있다. 조선 왕조 말기에서부터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쫓고 있는 이 연구는 1960년대의 한국에까지 서술의 범위가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 분석으로서의 성격 또한 띠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 장인 「1960년대 초두 남조선의 지배 구조와 이른바 예속자본」이라는 논문에 대해서는 가지무라 스스로 '70년대의 현상 분석의 출발점'(梶村 1977a, 274)으로 위치 지은 바 있다. 당초 1963년에 열린 조선사연구회 제1회 대회에서의 발표 요지로서 이듬해 『조선사연구회 회보』에 실린 글이라는 점에서 동시대의 한국의 상황을 그린 말 그대로 현상 분석의 성격이 짙은 글이다.

가지무라는 당시 한국의 '이른바 예속자본'에 대해, 이를 '매판자본'과 같은 것으로 보아 '민족자본'에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에 반대하고, 2차 대전 후의 '예속자본'의 특징

으로서 단순한 유통 과정의 기생자가 아니라 생산 수단의 독점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점, 그리고 매관자본처럼 외국 자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구를 매개로 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대자본을 '예속자본', 중소자본을 '민족자본'으로 파악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비판하고 둘 사이의 구별을 고도의 '정치적 범주'로서 이해했다(같은 책 1977, 137). 가지무라는 한국의 '독점 재벌'의 경우, 제국주의 국가 즉 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자본의 성장 요구 예컨대 중공업화를 억제 당함으로 인해, '예속적'이면서 '민족적'이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다고 보았다(같은 책, 154).

가지무라는 한국 '독점 재벌'의 '민족적' 성격을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민족주의'와 연결지어 이해했다. 1963년 10월 이른바 '민정 이양'을 위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와 윤보선(尹潽善)의 대결로 펼쳐졌다. 가지무라는 윤보선 측의 '미국 원조 증대 불가결론'에 대해 박정희 측이 '자립 경제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같은 책, 136), 결국 낡은 정치가의 노골적인 '대미 종속 노선'과 박 정권의 '일정한 반미적 노선'이 상호 보완하면서 '독점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같은 책, 154).

실제로 박 정권의 '민족주의'는 특히 정권 초기에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는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전략을 '내포적 공업화 전략'으로 규정하고, 1963년 이후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초기의 전략이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이후의 '잔여적 전략'으로 보았다(木宮 1994). 가지무라도 쿠데타 당시의 박 정권의 정책은 '국가사회주의'를 방불케 했지만, '부정 축재' 처리 실패 및 1963년의 '통화 개혁' 좌절을 계기로 급속히 자본에 대한 굴복·유착이 진행되었다고 분석했다(梶村 1967a, 27).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발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1970년대에 들어 한국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종속 발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종속 발전'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글에서 가지무라는 박정희 정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70년대 이후 박 체제의 '종속 근대화 노선'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어떠한 종속 관계도 꺼리지 않고 자기의 존립을 지켜 일본 경제의 하청이라는 형태로라도 GNP의 상승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노동자의 출혈적인 희생을 동반한 저가격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 수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의 발전이며 한국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노선'이다.(藤森 1975b, 19)(藤森一清는 가지무라의 필명 중 하나)

가지무라는 '존립'을 위해서라면 '종속'을 꺼리지 않으며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박정희 정권의 속성으로 보았다. 이처럼 모순에 찬 영위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종속 발전'이라는 개념은, 1977년의 저서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에서 역사 연구와 현상 분석을 잇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위에서 살핀 「1960년대 초두 남조선의 지배 구조와 이른바 예속자본」에서도 1964년의 초출 단계에는 보이지 않던(梶村, 1964b) '종속 발전'이라는 개념이 각주를 통해 몇 차례 등장하고 있고, 특히 「민족 자본과 예속 자본」이라는 글을 통해 '종속 발전'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65년 8월 국회에서 한일기본조약과 하루 차이로 비준된 베트남 파병은 한일 '경제 협력'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의 '종속 발전' 노선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였다. 가지무라는 베트남 파병이 박정희 정권의 '주체적 선택'이며 그 안에는 '조국 근대화'와 '국위

선양'이라고 하는 '사상성'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근대 일본을 지탱해 온 추악한 사상의 재판(再版)'이라고 비판했다(吉永 1974, 279-291)(吉永長生는 가지무라의 필명 중 하나). 자신이 밭 딛고 선 일본 근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한국의 근대를 비판할 시좌를 끌어내는 혼신의 사상적 영위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나아가 가지무라는 한국의 근대화는 참된 근대화가 아니라는 말은 더 이상 박정희 정권에 비판이 될 수 없다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의 현상을 '근대화된 모순'으로서 받아들일 것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근대 일본이 성취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만성을 포함하여 '근대화주의' 자체를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藤森 1975a, 10-13).

더욱이 이와 같은 '박 "근대화" 노선'(梶村 1976, 93)을 대중 의식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지무라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 예컨대 '해외 웅비'나 '국위 선양' 등의 구호가 '민중의 심정'에 호소하는 바가 있어, "'민족적 가치의 회복'이라는 환상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허위의 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듯한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같은 글, 94)라고 지적했다. '환상'이나 '허위'라는 말을 보고 계몽주의적 지식인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기서는 가지무라가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객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간파하고 그것을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점을 중시하고 싶다.

대중 의식을 중시하는 가지무라의 태도는 해방 직후의 '반탁 운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국의 외상 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거센 반탁운동이 일어났다. 그러한 가운데 좌익의 주류는 이에 거스르면서 찬탁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었다. 이를 놓고 한국의 민족주의적·통일지향적 역사 연구에서는 대중의 반탁운동을 우익의 여론 조작의 결과로 보고 좌익의 선택이 보다 현실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지무라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5년간 참는 쪽이 그나마 현명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객관주의'적인 입장을 비판하고, 신탁통치에 대해 '조선 인민이 커다란 의문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며(梶村 1976, 43) 대중의 의식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있던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었을까. 1963년 6월 12일자 북한의 노동신문은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가지무라는 이 사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제분업이라는 이름 아래 부등가교환을 강요하는 소련의 태도를 비판하고, 북한에서 '민족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소련의 '대국주의적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梶村 1969, 236).

주목되는 것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대중 의식이 결국은 김일성 정권의 선택을 규정'(같은 글, 225)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이다. 1956년 8월 북한 정권 내부에서는 각각 중국 및 소련과 연결된 연안파·소련파와 김일성이 이끄는 빨치산파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경제 노선으로 보자면 연안파 및 소련파의 그것은 국제분업론에 가까웠다. 가지무라는 중공업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소비재 생산의 우위를 주장한, 즉 내핍을 강요하기보다는 소비 생활을 생각하자는 연안파와 소련파의 '일견 상식적인 주장'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원인을 대중의 의식에서 구하였다. 즉 '먹지도 자지도 말고 힘을 내자'는 대중의 정서가 김일성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지탱했다는 분석이었다(梶村 1976, 79). 나아가 가지무라는 조선 사회의 봉건적 성격을 강조하던 역사학자 이청원(李清源, 본명 李靑垣)이 같은 시기 숙청된 것에 대해서도 '구래의 연구와 공화

국 민중에게 필요한 자국사 상(像) 사이에 어긋남이 생긴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梶村 1977c, 318).

이상의 가지무라의 분석에서 두 가지 특징을 추출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냉전을 상대화하는 시좌이다. 가지무라는 남북한을 비교할 때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측면보다 '종속 발전' 대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쪽을 보다 중시한 듯하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1960년대 초두 남조선의 지배 구조와 이른바 예속자본」에서도 1964년의 초출 단계에서는 박 정권의 '민족주의'를 '근로 대중이 요구하는 민족주의=사회주의'(梶村 1964b, 37)와 대비시키고 있던 것이 1977년의 같은 글에서는 '사회주의'가 빠지고 '근로 대중이 요구하는 민족주의'(梶村 1977a, 266)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또한 다른 글에서는 '금일 남한에서의 전면적인 "종속 발전" 하에서 굳이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민중의 민족주의 조류의 전개'(같은 책 1977, 240)를 전망한 바 있다.

또 하나는 대중 의식에 대한 천착이다.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정권이라는 두 개의 독재 정권을 꿰뚫는 '민족주의'에 대한 지향을 읽어내고 다시 이를 '대중 의식'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가지무라의 분석은, 냉전 이후 독재 혹은 전체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주목받은 '대중독재론'의 문제의식과도 통하는 시좌라고 할 수 있겠다¹⁾. 냉전의 상대화와 대중 의식의 존중은 모두 내재적 시각에서 남북한 사회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며, 외압을 중시하고 민중에 주목하는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의 문제의식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종속 발전'의 이론화 시도

1970년대 중반 한국 자본주의를 '종속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가지무라는 나아가 이를 세계사의 전개 속에 위치 짓는 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일국사적 발전 과정을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 조화시키려는 이와 같은 모색이 드러난 논문이 「구식민지 사회구성체론」(梶村 1981b)이다. 이 논문에서 가지무라는 1970년대 들어 식민지·종속국의 처지를 설명하는 틀로 각광을 받고 있던 종속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종속 발전'의 일반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동아시아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역사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이 존재했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은 맑스주의 역사 유물론을 식민지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모색의 결과였으며, 그 자체가 중국 혁명의 과정에서 동시대적으로 도출된 현상 분석이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사상·운동이 도달한 이론적 정점이라고 할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둘러싸고는, 그것이 역사 유물론에서 말하는 사회구성체론의 보완인가 아니면 그로부터의 일탈인가에 대해 줄곧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가지무라는 '식민지사회도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라는 공식주의 견해와, 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체로 보는 실용주의적 견해'(같은 글, 86)가 존재한다고 보고, 자신은 후자를 옹호함으로써 '공식주의 견해'와는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사미르 아민(Samir Amin)의 '주변부 사회구성체론'의 접합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역사 연구와 현상 분석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으

1)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부터 시작된 '대중독재론'의 문제의식은, 일본의 총력전체제 그리고 파시즘, 나치즘, 스탈린 체제 등 20세기 유럽의 독재체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권력의 폭력과 강제 뒤에 감춰진 대중의 독재에 대한 동의와 영합의 측면을 살피고 있다(임지현 외 2004).

로 평가할 수 있겠다.

아민의 '신이론'은 남미의 경험에 바탕한 기존의 종속이론을 아시아·아프리카 등을 포함시켜 보다 체계화하고, 특히 자본주의의 제문제들 중추(metropolis)-위성(satellite) 관계로만 환원하는 경향이 있었던 프랑크(A.G.Frank)와 달리 서로 다른 생산양식의 '접합(articulation)'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그 획기성이 인정된다. 가지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아민의 이론을 높이 평가했다. 먼저 '사회구성체'를 '생산양식'과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맑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1859)에서 언급한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근대부르주아적에 원시공산제와 공산주의를 더한 여섯 개의 생산양식=사회구성체밖에 상정하지 않는 '정통파' 사회구성체론의 '스콜라적 불모성'을 돌파한 점, 그리고 종속국의 사회 내부의 변화에 무관심한 기존의 종속이론의 한계를 넘어 중심부 자본주의의 임팩트에 의한 '상이한 생산양식의 이중혼합성'을 주변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특징으로 삼은 점이 그것이다(같은 글, 91). 위에서 사회구성체론의 '공식주의 견해'라고 부른 것에 대해 '스콜라적 불모성'이라고 보다 확실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상이한 생산양식의 이중혼합성'에 대한 주목으로부터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이라는 동아시아의 경험과의 소통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가지무라는 '전(前)자본주의 사회구성'이 중심과의 접촉을 통해 '주변자본주의 사회구성'으로 이행한다고 하는 아민의 이론에 대해 그 역사성의 부재를 비판했다. 먼저 '전자본주의 사회구성'의 역사 이론이 미완성이어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등의 '문화유형학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洋)의 동서를 꿰뚫는 일반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주변자본주의 사회구성'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정태론적·유형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주변부에도 독자적인 발전 법칙이 있음을 주장했다(같은 글, 93). 후일 다른 글에서는 '종속이론'은 '숙명론으로 흐르기 쉬운 "구조"론 고유의 함정'을 안고 있다면서, '내재적 발전'이 세계 자본주의의 역학 속에서 뒤틀리면서도 '종속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梶村 1985b, 160-161).

가지무라는 아민의 '주변자본주의 사회구성' 안에 '식민지반봉건'의 단계를 설정하여 '전(前)자본주의 사회구성체→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체→주변자본주의 사회구성체'(梶村 1981b, 94)라는 주변부에서의 '종속 발전'의 법칙을 제시했다. 또한 '중심부(본국)'와 '주변부(식민지)' 사이의 국제분업 체계를 ①'경공업(소비재 생산)-농업', ②'중공업(생산재 생산)-경공업', ③'기술지식집약산업-기타 제산업'의 세 단계로 나누고, '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체'와 '주변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각각 ①단계와 ②단계에 위치지음으로써(같은 글, 99),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천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민의 '주변부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서로 다른 생산양식의 '이중혼합'으로서 일단 완성된 후에는 그 성격이 강화될 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화석화'(本多 1985, 136)된 구조인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가지무라는 주변부의 '발전'이란 '모순의 확대·심화 과정'에 다름 아니므로, '종속 발전'과 종속이론에서 말하는 '저개발의 발전'에 따른 비자본주의 변혁이라는 전망이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梶村 1981b, 93). 또한 다른 글에서 '제3세계 각국 인민은 세계 자본주의의 전면적 붕괴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해방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계로부터의 일국적 상대적 이탈의 권리와 가능성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梶村 1986b, 167). 이런 문제의식 하에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 또한 세계를 '조감도' 식으로 바라보면서 '알맹이 없는 세계혁명'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되었다(梶村 1985a,

111-112). 가지무라는 「민족자본과 예속자본」에서 식민지·반식민지에서의 사회구성체론이 의의를 갖는 것은 '식민지 권력 붕괴 후의 민족 사회 내에서의 운동의 전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을 '모식화(模式化)'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梶村 1977a, 231). 「구식민지 사회구성체론」은 바로 이러한 모색의 결과였던 셈이다²⁾.

이상이 주변부에서의 독자적인 '발전'을 해명하기 위한 모색이었다면, 가지무라의 관심은 역시 당초 주변부는 어떻게 해서 주변부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에도 맞춰졌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글은 한중일 삼국이 각각 식민지, 반식민지, 제국주의로 '양극 분해'되는 과정을 고찰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국주의 체제로의 이행」(梶村 1981a)이다. 이 글에서 가지무라는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도야마 시게키(遠山茂樹)의 '동아시아지역사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한 위에 자신의 역사상을 제시한다. 도야마는 세계사와 일국사 사이에 지역사의 단위로서 동아시아를 설정한 뒤, 1860년대 서구로부터의 외압이 일시적으로 이완된 점에 주목하여, 1860년대부터 1894년경까지 일본과 중국이 기본적으로 '병행동질발전'해 왔다고 설명함으로써, 발전된 일본과 정체된 중국이라는 고정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한 바 있다(梶村 1981a, 61-62).

가지무라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도야마 쉼마(scheme)'에 한국을 포함시켜 보다 정치한 설명틀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먼저 가지무라는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내재적 발전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1861년 중국에서 양무파(洋務派) 정권이 수립되고 1867년 일본에서 메이지(明治) 유신이 있었다면,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움직임이 1884년의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나아가 도야마에 대해 1860년대 이후 중일의 발전 템포의 차이를 관계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내인(內因) 비교론자에게 길을 열어 주는 약점'(梶村 1981a, 62)을 갖고 있다면, '중국 전근대 사회의 구조적 특질이 양무파 정권밖에 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외압이 보다 광범한 민족적 역량의 결집을 방해한 것'(같은 글, 75)이라고 비판하였다. 외압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역으로 동일한 내재적 발전의 과정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막연하게 외압의 강약을 말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가해진 외압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무라는 전(前)자본주의 지역이 자본주의 세계와 접촉하는 과정을 ①개국(開國), ②개국 이후 민족적 위기를 거치면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정치 변혁의 시점, ③유약한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육성하여 후진자본주의 발전의 궤도에 오르는 시점 등의 세 시기로 나눈 뒤, 이 가운데 불가피적으로 내란 상태에 빠지는 ②의 '결정적인 정치 변혁의 시점'에서의 정치·군사적 외압의 크기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된다고 보았다. 즉 1860년대 서구로부터의 외압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으로써 중국의 양무파 정권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1884년 갑신정변의 시점에서 서구는 물론 일본 및 중국의 정치·군사적 외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내재적 자본주의 발전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내재적 발전이 외압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로의 '양극 분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쉼마를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 일반이론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서가 필요했다. 먼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즉 유럽의 후발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세계 자본

2) 가지무라의 이론은 종속 사회 내부의 정치적 다이내믹스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색의 종속이론가로 후일 스스로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 카르도소(F.H.Cardoso)의 '연합 종속적 발전론(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카르도소 1986)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일찍이 가지무라는 '한국 경제의 금후 전망은 대중의 지향이라는 정치적 요인에 가장 크게 규정'(梶村 1967b, 34)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종속이론의 정태론·구조론적 측면에 대한 카르도소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恒川(1980)를 참고할 것.

주의와 접촉을 가지면서도 늦게까지 비자본주의인 채 남은 서아시아·인도로부터 동남아시아 도서부에 걸친 지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가지무라는 이들 지역이 원축 단계형부터 산업자본 단계형 외압까지를 반복적·계속적으로 받은 점, 특히 원축 단계형 외압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약탈과 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던 점을 들어, '문화형태론'을 배격하고 '외압'의 차이로 주변부 지역 간의 발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같은 글, 76).

물론 에스키모와 유럽의 모험 상인이 만났을 때라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외압에 대항하면서 상품 경제를 발전시켜 가기 위한 '최저한의 내적 필요조건'으로서 '내발적 상품 경제의 경험'과 '국가 내지 주민족적인 결함'의 존재를 들기는 했다. 그리고 이상의 두 조건만 갖춰지면 '외압과 만나는 시점에서의 발전 정도'가 외래 자본주의 경제에 일단 포섭된 이후의 '변혁과 발전의 템포를 규정하는 조건'일 수는 있어도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같은 글, 78).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중일의 발전 템포의 차이를 관계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도야마를 비판했던 것과 다소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지무라도 외압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재적 발전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지무라의 「구식민지 사회구성체론」을 원용하면서 '한국 자본주의 논쟁'(5장 참조)에 참가한 이대근(李大根)은, '(반)식민지·반봉건사회'라는 새로운 역사 발전 단계를 설정한 자체가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자본주의 주변부로 편입되는 식민지 나라들은 어디서나 일단 (반)식민지·반봉건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는 논리에 대해 '얼마나 강한 보편적 규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한 '(반)식민지·반봉건사회'가 이후 어떠한 발전단계를 거치게 되는가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독립'이나 '토지개혁' 등을 '주변부자본주의' 조건으로 설명하는 입장을 든 뒤, '보편적 규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보았다(李大根 1985, 357).

물론 이대근은 주변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주변부성(저개발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상이한 "저개발성"'과 관련해서는 '주변화의 시점(時點)'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같은 글, 350-351). 가지무라 역시 오직 동아시아만이 '쇄국 체제 내부에서 각각 일국적 내재적 발전의 궤적이 순수한 형태로 지켜졌다'(梶村 1981a, 71) 혹은 '순수 배양적으로 내재적 발전의 궤도가 지켜진 동아시아 지역'(같은 글, 76) 등의 표현에서 보듯 동아시아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사실을 중시했다. 그리고 가지무라는 이를 하나의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로서 보고자 했다. 하지만 왜 유독 동아시아만이 19세기 중반까지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시점'의 문제는 결국 내재적 발전의 정도의 차이 즉 '유형'의 문제로 돌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지무라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종속 발전'의 법칙, 즉 내재적 발전이 외압에 의해 좌절되면서도 식민지반봉건 사회를 거쳐 주변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진다고 하는 설명 틀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를 일반이론화하려는 시도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는 가지무라 쉐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설명하기 위해 '유교적 에토스'(宮嶋 1984, 17) 등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변부에서의 발전 법칙의 일반이론화를 꾀한 가지무라의 시도가 역으로 동아시아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논의에 길을 열어 주게 된 셈이다. 미야지마가 강조한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을 연결하는 시각, 즉 '세계 체제에 대한 인식력이나 적응력을 내적 조건 가운데 포함시키는 시점'(같은 글, 21)은 동아시아의 특수성에 주목하

는 소농(小農)사회론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4. 'NICs형 종속 발전'론

미야지마 히로시는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로의 이행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의를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제1기는 전전기로서 핫토리 시소(服部之總)의 이른바 '젠마뉴'론(嚴マニユ,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매뉴팩처 단계가 존재했다는 이론)이 상징하듯 '앞선 일본, 뒤쳐진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지배했던 시기였다. 제2기는 1960년대 전반에서 후반까지의 시기로, 전전 핫토리의 이론과 전후의 오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의 비교경제사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앞선 중국, 뒤쳐진 일본'의 시기로 설명되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시와 전환은 중국 혁명의 성공 등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1960년대 이후의 변화된 현실 속에서 즉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중국 및 북한의 사회주의는 혼미를 거듭하는 반면 한국·대만·홍콩·싱가폴 등 이른바 NICs(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의 발전이 두드러진 가운데, 제2기의 문제의식은 빛이 바라게 되었다고 보았다(宮嶋 1984, 9-13).

미야지마는 1980년대 제3기를 맞아 두 번째 시와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NICs화 현상' 등의 변화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둘러싸고 와타나베 도시오(渡辺利夫)로 대표되는 개발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수출지향 드라이브가 성장의 원천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금후 정치체제의 비민주성도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반면 스미야 미키오(隅谷三喜男)는 고도성장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종속의 심화 과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대외 채무의 누적 및 세계 동시 불황 등에 의해 현재의 성장 노선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미야지마는 이와 같은 두 개의 대립적인 시각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면서, 1960년대와 같이 근대화론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금일의 근대화론이 제시하고 있는 역사상과의 학문적인 대화를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상을 모색해 갈 필요성을 제기했다(같은 글, 12-16).

그렇다면 가지무라는 한국의 NICs화를 어떻게 봤을까. 미야지마는 가지무라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국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해 제2기의 문제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같은 글, 14), 가지무라는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한국의 '근대화된 모순'에 주목하고 있었다(藤森 1975a, 10-13). 그리고 가지무라 역시 미야지마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와타나베와 스미야에 의한 양극단의 평가를 물리치고 나름의 시각에서 한국의 고도성장을 분석해 갔다. 먼저 와타나베가 한국의 '시장 자유화 정책'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정부의 역할 및 국가 자본의 비중이 인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큰 이른바 '국가자본주의'적인 체제 하에서 성장해 왔으며 아직도 '관 주도형 경제'를 탈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梶村 1984, 159). 이어 가지무라는 NICs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60-70년대 NICs 현상 재검토를 위하여-주로 한국의 사례로부터-」(梶村 1986a)에서 스미야의 '이중 경제'적 인식도 비판했다. '수출 지향 대기업'과 '내수 지향 중소기업'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후자의 '정체'를 강조하는 논리에 대해, NICs 자본주의의 종속 발전을 전구조적으로 해명하는 무기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같은 글, 244).

NICs 현상은 주변부의 경제 성장을 둘러싼 여러 논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후일 박일(朴一)은 한국에 대해 '관료적·종속적 발전의 프로세스'를 본 이는 있어도 'NICs적 발전'의 방향성을 본 이가 있는가라고 비판적으로 회고한 바 있다(朴 1991, 57). 가지무라

또한 'NICs 쇼크'라는 표현을 쓰면서, '역사 과학이 NICs 현상을 구체적으로는 거의 예측할 수 없었던 경위는 엄격하게 총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곧 이어 '추상도 높은 기존의 인식' 가운데 NICs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梶村 1986a, 230). 이는 다른 아닌 자신의 '종속 발전'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가지무라는 이 글의 결론부에서 '금일의 NICs 현상도 이러한 종속 발전의 논리 가운데 위치 지어 해명되어야'(같은 글, 254)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다른 글에서는 한국의 경우 '식민지반봉건 사회'로부터 'NICs형 종속 발전'으로, 북한의 경우 같은 출발점에서 '비자본주의적 발전 궤도'로 나아갔다고 설명하여 'NICs형 종속 발전'이라는 개념을 정식화하고 있다(梶村 1986b, 175).

「60-70년대 NICs 현상 재검토를 위하여」의 제1장의 제목은 'NICs 현상의 세계사적 규정 조건'이었다. 가지무라는 '선진국 측의 사정·요구·의도와 무관계로 NICs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梶村 1986a, 233)면서, 발전의 외재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이 NICs형 발전을 반긴 이유로서, 첫째 NICs와 같은 노동집약 부문에 특화된 발전은 기술 집약 부문에 중점을 두는 선진국과 경합할 우려가 없고 또 선진국으로부터 생산재를 항상적으로 수입하는 점, 둘째 자본·기술 집약재와 노동 집약재의 교환이라는 수직적 국제분업의 진전을 통해 선진국으로서는 값싼 소비재를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점, 셋째 NICs형 발전은 선진국 측에 과잉 자본 처리의 장을 제공하는 점 등을 들었다(같은 글, 234-235). 또한 이와 같은 발전이 비교적 소수의 특정한 국가에만 집중된 이유로는 먼저 많은 발전도상국 정부가 자립적 발전의 궤도로부터의 이탈을 꺼린 점과 더불어 한국이나 대만의 경우 미국의 반공 군사 원조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점이 들어졌다(같은 글, 236-237). 박정희 정권의 노선을 '냉전이용형 경제개발'로 평가한 기미야 다다시의 분석(木宮 2012)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야지마는 이 글에 대한 코멘트에서 '개개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개성적인 관계'를 밝혀야 하며 금후 이러한 '문화'의 문제까지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사 상(像)의 재검토'라는 주제를 보다 풍부하게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奥村 1986, 96). 각 사회의 내재적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실은 가지무라의 글의 제2장의 제목 또한 'NICs 현상과 내재적 체요인'이었다. 가지무라의 주장은 'NICs형 고도성장을 그 저변에서 지탱해 온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중의 고한(苦汗) 노동'(梶村 1986a, 238)이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가지무라가 생각하는 '내재적' 요인은 역시 '민중'의 희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분출되는 저항이었다. 이처럼 '세계사적 규정 조건'에 더해 민중의 희생과 저항이라는 '내재적 체요인'으로써 'NICs 현상'을 설명하는 가지무라의 틀은 외압을 중시하고 민중에 주목하는 그의 내재적 발전론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NICs 현상에 대한 주목의 끝에는 과연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늘 따라 다녔다. 가지무라는 '종속 발전'의 개념을 엄밀화할 필요성 제기하면서 '종속'을 세계의 레벨에서 정리하였다. ①다국적 기업이나 외부 세력에 의한 생산 과정의 커다란 부분의 직접 장악, ②공사(公私)의 채무에 의한 금융적 종속, ③산업 구조상의 종속이 그것인데, 이 가운데 ①이나 ②레벨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③레벨의 종속으로부터의 탈각 전망은 어둡다고 보았다(梶村 1986a, 240-241). 예컨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최첨단 산업의 체계 자체는 그것이 진부화할 때까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梶村 1985c, 16). 나카무라 사토시(中村哲)의 '중진 자본주의론'에 대해서도 본래 역사적 개념인 NICs 내지 중진국 개념을 과도하게 추상화하

여 초역사적 범주로 확대했다고 비판하고(梶村 1986a, 230), NICs 중에는 여러 경제 지표에서 이미 백 년 전의 선진국 수준을 넘은 국가도 있지만,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규정된 '산업 구조' 속에서 여전히 '중진국'(같은 글, 231)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탈중속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 이래의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주목되었다. 가지무라는 중화학 공업화는 선진국의 자본과 이해를 다투게 되는 면이 크므로 중화학공업화의 슬로건은 '환상'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며(梶村 1981c, 161), 중공업까지 구비한 '주변부 내의 상대적 선진국(중진국)'이라도 중심부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르게 곤란한 '비약'이 필요하다고(梶村 1981, 102) 지적한 바 있었다. NICs 현상을 다룬 글에서는 '자립적 중화학공업 체계의 확립'을 포기하고 'NICs의 위치에 안주'하는 대만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바탕하여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차이에 유념하였다. 그러나 국내적 산업 연관이 부족한 수출 지향적 중화학공업화는 거액의 누적 채무만을 남겼다고 평가하여(梶村 1986a, 243-244),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를 탈중속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후일 다키자와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탈중속'의 방향을 보았다면 가지무라의 한국 경제론이 어떤 전개를 보이게 되었을가를 되묻은 바 있다(滝沢 1996, 193). 다키자와는 한국 사회의 '탈중속'을 단정 짓고 있지만, 이 같은 평가가 1997년의 금융 위기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따라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연 탈중속에 성공했는지는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가지무라가 「구식민지 사회구성체론」에서 제시한 국제분업의 도식에 따르면,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중공업(생산재 생산)-경공업'의 제2단계로부터 '기술지식집약산업-기타 제산업'의 제3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할 뿐이지 '탈중속'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면 21세기 한국 자본주의는 부분적이거나 '기술지식집약산업'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탈중속'을 선언하는 일 뿐인가, 아니면 국제분업의 '제4단계'라도 설정할 것인가.

가지무라의 시대와 지금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개방'의 정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무역 개방의 압력을 받기 시작해, 1997년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개방 경제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가지무라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경제학자 박현채(朴玄埰, 1934-1995)가 말년에 남긴 경고를 떠올리게 된다. 박현채는 '개방'을 '중속'의 최종적 완성 단계로 보고(지상토론 1990, 522), '한·미간 경제 통합 과정으로서의 FTA'(박현채 1989, 739)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박현채의 경고를 음미한다면 21세기 한국은 탈'중속'이라기보다는, 아무도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었을 뿐이라는 의미에서 탈'중속론'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5. 한국 자본주의 논쟁 비판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찾아온 1980년의 이른바 '서울의 봄'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강렬한 경험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1982년 3월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상징되듯 광주의 비극을 미국의 책임으로 연결 짓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0년대까지의 미국에 대한 소시민적 환상은 깨져 나갔다. 1983년 1월 일본 나카소네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1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특히 1980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속출하는 가운데, 나카소네 총리의 방한과 동시에 4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협력 차관의 제공이 합의된 사실은 이른바 '중속'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말 이래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중속이론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열광적 수용'(조희연 1989, 17)의 양상을 보였다. '중속'을 화두로 한국의 '주변부'적 위치를 고민하는 논의가 확산되는 데 박차를 가한 것은 다름 아닌 가지무라에 의한 '주변자본주의 사회구성체론'의 제기였다(瀧沢 1988, 154). 실제로 가지무라의 「구식민지 사회구성체론」은 『한국근대경제사연구』(사계절, 1983)라는 논문집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국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나란히 번역·소개되었고, 이어 『식민지반봉건사회론』(미래사, 1984)에도 다시 한 차례 실렸다. 1983년 말 이후 일정한 '유화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1985년 2·12 총선에서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합작품인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또한 1985년 5월 대학생 73명에 의한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과,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연대 파업으로 기록된 6월의 구로동맹파업은, 이른바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날 것 그대로 사회에 던진 셈이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막 복간된 『창작과 비평』 지상에서 '한국 자본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1985년 10월의 『창작과 비평』에는 주변부 인식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 '주변부자본주의론'을 옹호한 이대근의 논문(李大根 1985)과 이를 사회구성체론으로부터의 일탈로 비판하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주장한 박현채의 논문(朴玄埰 1985a)이 실렸다. 이처럼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대 '주변부자본주의론'의 구도로 드러난 제1단계 논쟁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가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맑스주의 사회 과학의 단절로부터 막 벗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정통 이론에 목말라 있었다. 따라서 '주변부자본주의론'에 가해진 사회구성체론에 대한 '부정'이라는 비판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희연은 제1단계 논쟁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에 얼마나 충실히 입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조희연 1989, 23)이었다고 정리한 바 있다. 다른 하나 역시 맑스주의 사회과학의 확산과 관계되는 것인데, 바로 사회 변혁에서 노동 운동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흐름의 대두이다. 다키자와는 노동운동의 고양이라는 현실이 박현채로 하여금 '내적 모순'을 전면내걸게 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瀧沢 1992, 235-236).

그렇다면 가지무라는 '한국 자본주의 논쟁'을 어떻게 보았을까. 박현채의 논문과 이대근의 논문은 실은 서로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1984-85년에 걸쳐 계속되어 온 논의를 각자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총괄이란 동아시아의 경험에 바탕한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아민의 '주변부 사회구성체론'을 결합시킴으로써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던 가지무라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다름 아니었다. 가지무라는 흔히 박현채 대 이대근의 구도로 설명되는 '한국 자본주의 논쟁'에서 감추어진 채 전체를 통괄하는 숨은 주역이었던 셈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논쟁에 개입하기가 어려웠을 가지무라가 결국 체계적인 글을 남기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듣고 흘려주시면 고맙겠'(梶村 1989, 284)다는 '강연 유고'만을 남긴 채 세상을 뜬 것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결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지무라는 1970년대 이래 체제 측의 근대화론에 대해 한국 자본주의의 예측적 측면을 고발해 온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을 높이 평가했다. 1980년대 들어 민족경제론이 자본의 논

리를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쪽으로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직시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같은 글, 293)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했다. '주변부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이론체계로서 정통과적인 맑스 경제학과 비교하면 훨씬 미숙한 상태'(같은 글, 294)라고 지적하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대근의 '주변부자본주의론'이 가지무라의 주장을 원용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주변부자본주의론'이 비자본주의적 부문이 계속 남아있다는 식이 아니라 주변부적 특질이 자본-임노동 관계 자체에 전반적으로 관철되어 간다는 식으로 전개되어 갈 것을 기대했다. 가지무라는 제1단계 논쟁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지지를 얻은 이유, 즉 '급격한 사회 변동을 직시'하려는 태도와 '주변부자본주의론'의 이론적 '미숙'함이라는 두 가지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예컨대 '실증성 없이 곧바로 말로 튀어나왔다고 하는 당돌한 감'(같은 글, 296)이 있다는 식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희연은 제1단계 논쟁의 문제점으로, '주변부자본주의론'에서 강조한 종속성·예속성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서 강조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그로 인한 계급 모순이, 동일한 차원의 대립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상정된 점을 들었다(조희연 1989, 23). 실제로 이러한 자각하에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종속'의 문제를 고민하는 쪽으로 전개되는데, 박현채 본인도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박현채 1985b, 55)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주변부자본주의의 성격'이 '관료주의'로 드러난다면서 한국자본주의의 '매판성'과 '경제외적 성격'을 묶어서 '관료독점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대담 1987, 1066). 후일 다키자와는 원래 박현채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관료자본주의'와 겹치는 개념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滝沢 1992, 238).

가지무라 역시 제1단계 논쟁 이후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그 '한국적 특질'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예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등의 개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가지무라 또한 이미 1960년대 '예속적 독점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었다(梶村 1964a). 이에 대해 가지무라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개념 없이는 한국 자본주의를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梶村 1989, 296-297). 요컨대 '예속' 혹은 '종속'하에서도 '(국가)독점자본'의 성립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두 개념을 종합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가지무라와 박현채는 비슷한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논쟁의 제2단계로 넘어가면서 식민지기는 물론 해방 이후까지도 종속성 및 봉건성이 변함없이 지속된다고 보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이 맹위를 떨치기에 이른다. 제1단계에서의 '주변부자본주의론'의 퇴행적인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논의는 가지무라의 글을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 가지무라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론' 확산의 '원흉'(梶村 1989, 297)으로 지목되곤 했다. 이에 대해 가지무라는 '식민지반봉건'은 구식민지 체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유효하다고 했을 뿐이며, 전후의 한국에 대해서는 '주변부자본주의'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같은 글, 297). 실은 박현채 역시 식민지기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설명하고 있었다. 다만 식민지기라도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식민지반봉건'이란 '부차적 성격 내지는 특수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박현채 1986b, 369), 이를 '가지무라-안병직'처럼 사회구성체로 '승격'(박현채 1987, 904)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일 뿐이었다. '식민지반봉건론' 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론'의 구도로 전개된 제2단계 논쟁은, 이처럼 가지무라의 이론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박현채 역시 종속성·봉건

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식민지반봉건론'자로 비판받기도 하고 때로는 양 진영 모두로부터 자신의 우군으로 끌어당겨지기도 하는 등 자못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에 박현채는 '이론투쟁의 낭비성'(좌담 1989, 833)을 경계하면서 논쟁의 '휴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체'가 '주변자본주의 사회구성체'로 전화했다는 가지무라의 설명 통과, 식민지기를 '식민지반봉건사회'(기본모순=사회구성체가 아닌 주요모순=사회성격의 면에서)로 파악하고 해방 후의 한국 사회를 '관료독점자본주의'(매관성과 경제 외적 성격의 표현으로서)로 보는 박현채의 설명 틀은 과연 얼마나 다른 것인가. '식민지반봉건'이 사회구성체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는 남겠지만, '봉건과'라는 오해를 무릅쓰고 기본모순과 주요모순을 구분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성격과 변혁의 전망을 규명하고자 한 박현채의 노력과, '스콜라적 불모성'을 피하기 위해 '정통' 사회구성체론에 메스를 가한 가지무라의 '실용주의' 사이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가지무라는 '사회구성체'라는 개념 자체에는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다. 본고에서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논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6. <이념=실체>로서의 '민족경제'

마지막으로 가지무라의 히데키의 '민족경제'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그의 한국 자본주의론의 함의와 지향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많은 경우 박현채라는 경제학자 개인과 동일시되는 '민족경제론'은, 민족 문제를 정치경제학의 이론 체계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식민지 종속형 한국 경제의 문제를 '민중적 민족주의'라는 역사적 과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려 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이병천 2001, 45). 내용적으로는 식민지 종속국의 상황에서 국민경제와 동일시될 수 없는 민족의 재생산권으로서의 '민족경제'를 상정하고, 모종의 변혁을 통해 이를 자립적 국민경제와 일치시켜 가고자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지무라는 '식민지경제'와 '민족경제'가 '이중경제'로서 존재한 것은 아니지만, '일제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가 관철되는 "민족경제"라는 사회적 관계의 실체'(강조점-인용자)가 존재했다고 보았다(梶村 1986b, 174). 일본에서 '민족경제론'의 문제의식을 계승 발전시킨 연구자로는 니노 유타카(新納豊)를 꼽을 수 있다. 가지무라는 니노의 연구에 대해 "'민족자본'과 굳게 연결된 종래의 "민족경제"의 통념과는 달리 "식민지경제"와 상호 규정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고유한 논리를 가진 "민족경제"의 상을 제시"했다고 높게 평가했다(梶村 1983, 384).

이에 대해 다키자와 히데키는 자본주의 세계시장하에 편성된 상태에서 '민족경제권'을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滝沢 1988, 162). 또한 '실체'로서의 민족경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가지무라와 '이념'으로서의 민족경제'를 중시하는 자신과의 시점의 차이를 지적한 뒤(두 시점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滝沢 1996, 179), '민족자본'을 '정치적 범주'로 규정한 가지무라가 '민족경제'권을 '실체'로서 파악하는 것은 정합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같은 글, 187). 나아가 가지무라의 '민족경제' 이해는 한국의 '민족경제론자'들과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같은 글, 194)

박현채는 '존재로서의 민족경제'와 '당위로서의 민족경제'를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박현채 1986a, 453). 가지무라는 박현채가 처음에는 민족경제의 '실체'적 기초를 인정하였지만 점차 다키자와처럼 '당위로서의 민족경제'만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보인 뒤, 자신은 '

당위로서의 민족경제를 다키자와 씨와 같이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이념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된 형태로 생각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梶村 1989, 299). 즉 가지무라에게 있어 민족경제는 '실체'인 동시에 '이념'이었던 것이다. 다만 '실체로서의 민족경제'라고 해서 반드시 건전한 민족자본을 상징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이는 '만신창이'(座談 1969, 205)인 현실의 민중 가운데서 '이념형'(梶村 1977b, 217)으로서의 민중을 발견한 것과 같은 원리일 것이다. 다키자와는 가지무라가 한국 사회에서의 '민중경제'의 예로서 지방의 장시와 더불어 '사채(私債) 시장'을 든 것을 두고(滝沢 1996, 194; 梶村 1984, 219)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가지무라에게 있어 '사채 시장'은 어쩌면 '만신창이'로서의 '민중경제=민중경제'를 뜻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다키자와의 비판은 모두에서 언급한 "'가지무라 사학'의 이 "내재적 시각"이 해방 후 남한 사회를 보는 경우에도 견지되어 남한에서의 "내재적 발전"이 파악되고 있는가'(滝沢 1996, 182)라는 의문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이 '전(全)조선적 혁명의 과제'(같은 글, 182)를 중시한 결과, 남한 사회의 고유한 맥락 즉 아마도 경제 발전이라는 현실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가지무라의 '내재적 시각'은 '민중'에게 맞춰졌다. 그렇지만 가지무라는 한국의 'NICs형 종속 발전', 즉 고도성장을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더욱이 발전은 곧 모순의 심화 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가지무라의 시각은 자본의 성장만이 아니라 민중의 희생과 저항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시야를 제시하고 있다. 민중에 대한 주목이 발전이라는 현실을 가리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중은 발전으로부터 고립되어 소멸해 가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모순의 심화에 다름 아닌 '종속 발전'의 동력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가지무라의 역사관의 기저에 흐르는 것은 제국주의 혹은 자본의 전일적 지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가지무라는 식민지기를 논하면서 일제 자본의 논리가 기층 민중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장악했다는 관점은 '민중경제론'과는 양립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梶村 1986b, 174). 또한 해방 이후에도 민족경제=민중경제가 단순한 '유제'로서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梶村 1986a, 245). 제국주의와 자본의 외부로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사회적 관계의 실체를 가지무라는 '민중경제=민중경제'라고 본 것이다. 이렇듯 내재하는 외부라 할 '민중' 그리고 '민중경제=민중경제'의 존재로부터, '민중성'과 '예속성' 사이에서 동요하는 자본의 모습과 더불어 '민중의 민족주의'도 도출되었으며,³⁾ 나아가 '이념'으로서의 '민중경제'도 상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梶村秀樹. 1964a. "「不正蓄財處理問題」 と南朝鮮の隷屬的独占資本." 『朝鮮研究月報』 26·27.
- 梶村秀樹. 1964b. "南朝鮮の支配構造といわゆる隷屬資本." 『朝鮮史研究会會報』 8.

3) 조경달(趙景達)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적대적 공범성'을 지적한 연구로서 이타가키 유조의 'n지역론'(板垣 雄三 1973)에 대해 언급한 뒤, '가지무라 히데키의 식민지 민족자본론도 그러한 논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趙 2011, 45). 'n지역론'과 '적대적 공범성'의 관계에 대한 지적으로부터는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예컨대 식민지의 토착 자본이 '예속성'과 동시에 '민중성'을 갖는다는 가지무라의 인식은, '적대적 공범성'에 대한 강조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된다.

- 梶村秀樹. 1967a. "「第2次5ヵ年計画」と南朝鮮の經濟構造." 『朝鮮研究』 58.
- 梶村秀樹. 1967b. "韓国經濟の構造と現局面." 『國際問題』(日本國際問題研究所) 88.
- 梶村秀樹. 1969(1993). "朝鮮からみた現代東アジア."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朝鮮史の方法』. 東京: 明石書店.
- (座談). 1969. "座談 日本と朝鮮(そのまとめと展望)." 旗田巍 編. 『シンポジウム 日本と朝鮮』. 東京: 勁草書房.
- 吉永長生(梶村秀樹). 1974(1993). "ベトナム派兵の傷痕." 『梶村秀樹著作集 第5巻 現代朝鮮への視座』. 東京: 明石書店.
- 藤森一清. 1975a. "朴政權の価値体系と韓国の民衆." 『情況』 78.
- 藤森一清. 1975b. "日韓条約体制10年の帰結—日韓体制の軌跡と変革の視座—." 『破防法研究』 24.
- 梶村秀樹. 1976(1993). "八・一五以後の朝鮮人民." 『梶村秀樹著作集 第5巻 現代朝鮮への視座』. 東京: 明石書店.
- 梶村秀樹. 1977a. 『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 東京: 龍溪書舎.
- 梶村秀樹. 1977b. 『朝鮮史—その発展—』. 東京: 講談社現代新書.
- 梶村秀樹. 1977c(1993). "日本帝国主義の問題."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朝鮮史の方法』. 東京: 明石書店.
- 梶村秀樹. 1981a.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帝国主義体制への移行." 富岡倍雄・梶村秀樹. 『発展途上經濟の研究』. 東京: 世界書院.
- 梶村秀樹. 1981b. "旧植民地社会構成体論." 富岡倍雄・梶村秀樹. 『発展途上經濟の研究』. 東京: 世界書院.
- 梶村秀樹. 1981c. "従属的發展のもとで重化学工業化は可能か." 小田実・郭東儀 編. 『韓国に自由と正義を! 81韓国民主化支援緊急世界大会』. 東京: 第三書館.
- 梶村秀樹. 1983. "新納報告をめぐって."("「民族經濟」をめぐって.") 『梶村秀樹著作集 第3巻 近代朝鮮社会經濟論』. 東京: 明石書店.
- 梶村秀樹. 1984(1993). "韓国經濟における政府の役割—1960~1970年代—." 『梶村秀樹著作集 第5巻 現代朝鮮への視座』. 東京: 明石書店.
- 梶村秀樹. 1985a. "歴史の發展は幻想だろうか." 菅孝行. 『モグラ叩き時代のマルキシズム』. 東京: 現代企画室.
- 梶村秀樹. 1985b(1993). "'やぶにらみ'の周辺文明論."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朝鮮史の方法』. 東京: 明石書店.
- 梶村秀樹. 1985c. "日本の対韓政策と民衆意識." 『新地平』 127.
- 梶村秀樹. 1986a(1993). "60~70年代NICs現象再検討のために—おもに韓国の事例から—." 『梶村秀樹著作集 第5巻 現代朝鮮への視座』. 東京: 明石書店.
- 梶村秀樹. 1986b(1993). "朝鮮近代史研究における内在的發展的視角."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朝鮮史の方法』. 東京: 明石書店.
- 梶村秀樹(정재정 역). 1989. "강연 유고: 한국의 사회과학은 지금." 『창작과 비평』 66.
- 朴玄採. 1985a. "현대 한국 사회의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연구(I)." 『창작과 비평』 57.
- 박현채. 1985b(2006). "정부 주도 경제 개발과 민간 주도론." 『박현채 전집 3 1986~

- 1985』. 서울: 도서출판 해밀.
- 박현채. 1986a(2006). "민족경제와 국민경제." 『박현채 전집 3 1986~1985』. 서울: 도서출판 해밀.
- 박현채. 1986b(2006). "민족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현채 전집 3 1986~1985』. 서울: 도서출판 해밀.
- 박현채. 1987(2006). "민족경제론, 민족민주운동의 경제적 기초를 해명한다." 『박현채 전집 2 1988~1987』. 서울: 도서출판 해밀.
- (대담). 1987(2006). "1980년대의 민족사적 의의." 『박현채 전집 2 1988~1987』. 서울: 도서출판 해밀.
- 박현채. 1989(2006). "분단의 고착화 과정." 『박현채 전집 1 1993~1989』. 서울: 도서출판 해밀.
- (좌담). 1989(2006). "사회적 실천에서 사상의 문제." 『박현채 전집 1 1993~1989』. 서울: 도서출판 해밀.
- (지상 토론). 1990(2006). "오늘의 한국 경제 과연 위기인가." 『박현채 전집 1 1993~1989』. 서울: 도서출판 해밀.
- 李大根. 1985.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붙여-." 『창작과 비평』 57.
- 이병천. 2001. "다시 민족경제론을 생각한다-국민경제와 민주주의의 정치경제학-." 『동향과 전망』 48.
- 임지현·김용우 편. 2004. 『대중독재-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서울: 책세상.
- 조희연. 1989.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 서울: 한울.
- 카르도소, 페르난도 헤리크. 1986. "연합 종속적 발전: 이론적·실천적 함축성." 이각범 편. 『제3세계 사회 발전 논쟁』. 서울: 한울.
- 本多健吉. 1985. "종속이론과 국가자본주의론-생산양식의 이론을 중심으로-." 本多健吉·조용범. 『제3세계 국가자본주의론-마르크스·국가자본주의·남북문제-』. 서울: 한울.
- 板垣雄三. 1973. "<全体会 歴史における民族と民族主義> 民族と民族主義." 『歴史学研究 別冊特集 歴史における民族と民族主義—1973年度歴史学研究会大会報告—』. 東京: 青木書店.
- (奥村哲). 1986. "「梶村秀樹報告」討論要旨." 『歴史評論』 432.
- 木宮正史. 1994. "韓国における内包的工業化戦略の挫折—5・16軍事政府の国家自律性の構造的限界—." 『法学志林』 91(3).
- 木宮正史. 2012. 『国際政治のなかの韓国現代史』. 東京: 山川出版社.
- 許滌新(山下龍三 역). 1953. 『官僚資本論』. 東京: 青木書店.
- 滝沢秀樹. 1988. "民族經濟論の新たな展開—「韓国資本主義論争」の過程での批判と展望—." 『韓国社会の転換—変革期の民衆世界—』. 東京: 御茶の水書房.
- 滝沢秀樹. 1992. "「韓国資本主義論争」と民族經濟論." 『韓国の經濟發展と社会構造』. 東京: 御茶の水書房.
- 滝沢秀樹. 1996. "「内在的発展論」と「内在的視角」." 『歴史としての国民經濟』. 東京: 御茶の水書房.

- 趙景達. 2011. "「韓国併合」の論理とその帰結—アジア主義と同化主義の行方—."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9.
- 恒川恵市. 1980. "従属アプローチの発展と現状—A.G.フランクをこえて—." 『思想』 673.
- 並木真人. 1990.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研究の現段階." 『歴史評論』 482.
- 朴一. 1991. "韓国における資本主義発展の性格をめぐる論争—韓国資本主義分析への理論構築に向けて—." 『経済学雑誌』 99(2).
- 洪宗郁. 2010. "内在的発展論の臨界—梶村秀樹と安秉珩の歴史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8.
- 水野直樹. 1993. "「現代朝鮮への視座」解説." 梶村著作集刊行委員会・編集委員会 編. 『梶村秀樹著作集 第5巻 現代朝鮮への視座』. 東京: 明石書店.
- 宮嶋博史. 1984. "方法としての東アジア—東アジア三国における近代への移行をめぐる—." 『歴史評論』 412.
- 吉野誠. 1987. "朝鮮史研究における内在的発展論." 『東海大学紀要 文学部』 47.
- 吉野誠. 1991. "梶村秀樹の朝鮮近代史研究."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8.

3. 日本 <戰後 歴史學>의 展開와 未完의 梶村史學

- 국가와 민중은 어떻게 (재)발견되었는가 -

토베 히데아키 (戸邊秀明, 東京經濟大学)

(국문 초록)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1935-89)의 연구 과제나 방법적 視點의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후반 일본의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戰後歴史學>이라 불리는 학문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보고는 앞서 발표한 바 있는 史學史的 研究를 바탕으로 가지무라의 근대 조선사 연구가 동시대 일본의 역사 연구 동향 안에서 지니는 위상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가지무라는 전후 역사학 운동을 견인한 歴史學研究會가 1960년대 동아시아세계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것을 다시 자신의 조선사 연구에서 활용했다. 또한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가지무라가 민중사 구상을 심화시킨 배경으로는 동시대 한국의 민중운동으로부터 받은 자극과 함께, 같은 시기 일본 역사학의 중요 흐름인 人民鬪爭史 연구 및 民衆思想史 연구의 융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지무라는 죽음 직전까지, 방법적 視座의 자기 혁신을 꾀했으며 국가와 민중이라는 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조선 근대사의 全體像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런 점들을 史學史的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지무라가 주장한 <內在的 發展論>의 심화가 일본이나 세계의 역사학 동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는지를 밝히고, 자칫 조선사 안에 갇힌 체계로 이해될 수도 있는 가지무라의 역사학을 그것이 수행한 史學史的 意義, 더 나아가 오늘날 되짚어보아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이번 세션의 마지막에 놓인 제 보고의 과제는 가지무라 히데키가 생산한 역사 연구의 의미를, 그가 태어난 20세기 후반 일본의 역사학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조류라고도 할 수 있는, <戰後歴史學>이라 불리는 학문 운동 안에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제 전문 영역은 일본사라는 틀 안에서 오키나와 근현대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다소 어색합니다. 가지무라 사학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이 연구회에서 저에게 참여를 권한 것은, 제가 저의 전문 영역 이외에도 전후 일본의 ‘역사학의 역사’, 다시 말해 史學史에 대해 몇 편의 논문을 썼기 때문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음의 두 가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지무라의 역사 연구를 ‘전후 일본의 역사학 운동 전체 안에 자리매김한다’는 視點입니다. 제가 만약 조선사 연구자라면 이런 시점을 취하지는 못하겠지요. 가지무라는 더

할 나위 없이 친근한 선행연구이고, 그는 저 자신도 그 계보 안에 있을 일본의 조선사연구 안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존재일 테니까요. 가지무라에 관한 사학사적 검토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 연구를 史學思想史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일본에서의) 조선사 연구 안의 가지무라>라는 위상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가지무라 연구의 독특한 스타일이나 방법 의식은 지역 연구로서의 조선사라는 틀만으로는 결코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무라의 방법적 혁신은 전후 역사학의 조류와 만나는 과정에서 형성됐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후 역사학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확립되는 1960년대에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가 가지무라였습니다. 따라서 가지무라가 전후 역사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신이 전후 역사학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선사연구에 대한 공헌을 척도로 가지무라를 평가하기보다는 가지무라가 朝鮮史家라는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20세기 후반 일본의 역사학을 起案한 역사가 중의 한 명이라는 점, 다시 말해 가지무라가 동시대의 다른 역사학 동향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 그에 대해 어떤 생산적 발언을 수행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런 검토를 굳이 이곳 한국에서 하는 의의는 무엇인지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심포지움의 전체 테마인 ‘日韓關係’를 생각하더라도, 가지무라의 지적 궤적이 (공동의) 귀중한 유산이라는 점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컨대 가지무라에 대한 한국의 기존 인식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두 편의 보고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제 발표는 일본 내부에 갇힌, 혹은 일본 내부를 향한 보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후 역사학이라 불리는 일본의 비판적 사회과학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인문·사회과학자들에게 하나의 양식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저는, 이 자리가 전후 역사학이라는 학문 운동의 지향이 전형적으로 체현된 결과로 가지무라 사학을 인식하는 것, 더 나아가 가지무라 사학을 동아시아의 비판적 사회과학의 중요한 지적 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I 가지무라는 어떻게 잊혀졌는가

제가 가지무라를 이렇게 내세운 탓에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가지무라가 제법 유명한가보다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젊은 세대 역사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사를 전공하는 게 아니라면, ‘가지무라’라는 이름은 들어봤어도 정작 그의 연구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뿌리에서 연유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뿌리라는 것은 가지무라가 1989년 5월 53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1935년생이니,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좌장으로서 기조 강연이라도 할 법한 나이입니다. 역사가의 작업이란 것이 오랜 시간의 성숙을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이제부터’라고 해도 좋을 시기에 돌연히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 그의 저명함에 비해 가지무라는 자신의 체계적인 저작을 별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그가 출간한 단독 저서는 3권으로, 그 중 2권은 비교적 짧은 논문들을 묶은 논문집과 통사적으로 조선사를 개설한 책입니다. 나머지 한 권이 그의 대표작인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龍溪書舍, 1977)입니다. 그러

나 이것 역시 체계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저술한 것은 아니고 몇 편의 논문을 다시 고쳐서 묶은 것이었습니다. 고쳐 묶는 작업을 통해 역사가 가지무라의 혁신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가지무라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가지무라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6권으로 된 『가지무라 히데키 저작집 (梶村秀樹著作集)』 (明石書店, 1992~93年) 이 간행되었습니다. 이 저작집이 대표적인 논문을 망라하고 있다고는 해도, 수록된 문헌은 가지무라의 논문이나 발언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선사 연구자로서 그가 직면하고 있던 ‘일한관계’ 및 재일조선인 문제 등에 성실하게 임했던 가지무라는, 스스로를 서재 앞에 묶어두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남긴 말들 중에는 사회운동으로부터 요청받았던 발언이나 문헌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단편적, 혹은 논점을 제한한, 비교적 짧은 논문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지무라 사학의 전체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집에서 빠진 비교적 짧은 문장까지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보고에서는 역사 연구와 관련된 짧은 논고들도 헤집어 보고 또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이론이나 歴史像의 체계성보다는 가지무라의 시대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가지무라 사학을 재검토할까 합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1977년에 간행된) 주저를 상재한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지무라는 그 자신의 주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조선 근대 경제사에 관한 논문을 불과 몇 편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이 시기 그는 재일조선인 지문날인 거부운동 등을 있는 힘껏 지원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이 단축되었고 그의 연구마저 지체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에 대해, 혹은 현대 아시아 경제의 현상 분석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늘었다는 점도 그의 조선 근대경제사 연구를 지체시켰던 것 같습니다. 가지무라 사학을 이야기하면서 1977년의 주저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죽음 직전까지도 ‘새로운 전개’를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제 발표의 후반부에서는 1980년대에 나온 가지무라의 저작을 집중적으로 재독해하고 다시 그것을 전후 역사학의 추이와 나란히 펼쳐 놓는 것으로, ‘너무 빨랐던 만년’의 ‘새로운 전개’에 함축된 사학사적 의의를 명료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셋째, 그가 죽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가 죽은 1989년 5월 29일은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기 6일전이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5개월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죽음은 세계적인 냉전의 붕괴와 그 후의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새로운 적대관계의 세계가 시작되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유물사관적 발전단계론을 전제로 한 가지무라의 연구, 특히 내재적 발전론이라 불리는 그의 방법론적 태도가 그의 사후 펼쳐진 세계사적 변화로 인해 얼마나 옹색하게 보였을까하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열세에 몰린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은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오늘날의 국제적 지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 경제의 <從屬 發展>을 줄곧 강조해 온 가지무라의 현상 분석은 급격하게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론적 반성을 포함하여 크게 논쟁을 벌였을 테지만, 죽음은 그런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지무라가 죽은 다음 해에 발표된 나미키 마코토(並木真人)의 논문은 그러한 부정적 평가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並木, 1990) 나미키는 현재 일본의 조선 근대사 연구를 대표하는 중견 역사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전후 일본의 조선 근대사 연구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향후 자신의 연구가 서 있는 지점을 명확히 하

려고 했습니다. 연구사의 시기를 구획하는 일종의 ‘매니페스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미키는 이 논문에서 조선 정체성론·타율성 사관에 근거한 패전 이전의 조선사 연구를 제1단계로 규정하고, 제1단계와의 격투를 거쳐 1960년대 후반 이후 내재적 발전론을 확립하는 제2단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지금도 꽤 유명한 계보를 굽직하게 그려 보입니다. 이어서 그는, 대만이나 한국의 고도성장이 현저해진 1970년대 이후 내재적 발전론이 동요를 보이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단계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바로 새로운 단계에 서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요를 일으킨 것인가. 나미키는 내재적 발전론이 “보편적 발전법칙에 근거한 서구적 근대를 전제로 하는 역사상”이고 “근대주의 지향”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전개되는 한국의 고도성장에 비판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발전” 예찬으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3세계”인 한국을 추월했어야 할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가 부진과 혼미에 빠져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과의 역전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유품사관 公式의 한계성도 지적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나 요시노 마코토(吉野誠)가 제기하는 “조선의 고유한 것, 전통적인 것 안에서 근대 극복의 계기를 발견하자”는 시점을 향후 연구의 축으로 제시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조선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의 定位”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이상, 並木 1990:20, 26)

나미키는 현상을 추수한 것도 아니고, 포스트모던의 우쭐함으로 앞 세대를 비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고도성장이라고 하는, 종래 예상할 수 없었던, <‘저개발국가’의 고도성장>에 영향을 받아 한국 군사정권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풍조를 강하게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나미키의 내재적 발전론 비판은 다소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재적 발전론=梶村秀樹>라고 하는 도식이 강했던 당시, 나미키의 총괄은 후속 연구자가 가지무라 사학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제 생각에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나미키의 견해는 가지무라의 역사 연구에 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비판은 가지무라 사학의 전체상을 시야에 넣을 기회가 결여된 상태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사학사적 견해였습니다. 실제로 나미키는 가지무라가 1970년대 후반 이후 더욱 관심을 쏟았던 <발전>에 관한 복합적인 이해와 그 <발전>의 담당자로 <민중>을 주목했던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 보고에서는 가지무라의 80년대의 업적을 실마리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할 생각입니다.

II <내재적 발전론>과 戰後歷史學

가지무라 사학의 형성을 이야기할 때면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설명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視點의 발생에 대해서는, ① 일본의 조선사에 내장된 정체성론 비판 ② 남북한 양국에서의 주체적 역사학의 발흥이라는 두 흐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姜 2012 참조) ②의 영향, 그 중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조선)의 역사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오해도 있기에 ①의 자생적 요소에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통해 새로운 역사상을 세우려고 할 때 무엇이 유효한 자원이 되었는가, 그 경로가 무엇이었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두고 싶은 것은, 일본의 역사 연구를 크게 규정했던 전후 역사학이라는 연구 조류와의 관련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의 여러분을 고려하여, 전후 역사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맑스주의적 방법, 특히 사적유물론을 방법적 기초로 삼는 역사연구에서 1945년의 패전 후/제국 붕괴 후=<전후> 일본의 역사학을 주도한 특정한 경향과 연구자 집단(예컨대 후술하는 歷史學研究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연구 조류가 의거하는 사고 양식을 니노미야 히로유키(二宮宏之)의 정식화(二宮 2000:125-128)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① 변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역사의식, ② 세계사를 보편적 발전 법칙의 관철로 보는 인식, ③ 국민적 類型을 기초로 한 發展段階論, ④ 계급과 민족을 주축으로 삼는 主體形成論, ⑤ 內的 一貫性을 중시하는 단힌 構造 分析.

이런 경향은 역사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후 일본의 사회과학 일반을 비슷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속에서 근대 일본의 역사를 반성하고 미래 변혁의 주체를 창출하려고 하는 기운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특정한 역사 연구 경향이 <전후 역사학>이라는 포괄적 명칭을 지금까지 고유명사처럼 사용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줄곧 전후 역사학의 중심은 구조론적인 사회구성체사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발전단계를 상정하는 이상, 구성체가 변화하는 이행기의 설정과 그 담당자, 즉 역사를 추진하는 <변혁 주체>를 어떻게 검출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 역사학은 구조만이 아니라 주체(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양자의 긴장 관계가 새로운 연구 영역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등, 전후 역사학이 자기 경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체의 검출이라고는 해도 실제로는 변혁의 담당자=주체의 성격 규정이나 변혁 주체에 적합한 사회 계층을 계급 구성 안에서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구조 분석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 동향과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나미키의 정리를 빌리자면, “일국사의 발전 원동력으로서 국내의 계기가 중요하다는 점”(반면 바깥으로부터의 계기는 “외압”으로 파악됩니다), “그 발전 과정에서는 서구적 근대를 하나의 도달점으로 여기는 보편적 합법칙성의 관철”을 논증하기 위해, 특히 “조선 내부에 존재하는 서구적 계 요소-부르주아적인 것-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정리되는 내재적 발전론의 특징은, 확실히 위에서 말한 전후 역사학의 전개와 같은 시기에 전개되었고 전후 역사학의 格律을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한 방법적 태도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並木 1990: 18-19)

그러나 이런 규정은 추상화된 강령 같은 것이기에, 가지무라 자신의 역사 연구에서 실제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그의 주저인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에서 <내재적 발전>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에 특유한) 자본주의> 형성 과정을 개항기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기 중 몇 개의 時點에 한정하여 검증한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일관되게 주목한 점은, 근대 세계의 변혁 주체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부르주아지가 조선 근대사에서는 <뒤틀린>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무라가 이 <뒤틀림>으로 내재적 발전의 좌절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상황이라는 <뒤틀림> 속에서 관철되는 자본주의 <발전> 및 그런 조건에서 출현하는 경제 주체(부르주아지)의 주체성과 종속성이라는 양면성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과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梶村 1977의 이론적 정리입니다) 세계사적 발전법칙의 관철을 증명하는 ‘구조론’과 구체적·개성적인 변혁 주체의 析出을 추구하는 ‘주체론’ 사이의 긴장·알력은, <식

민지하의 강권적 개편 아래에서 조선의 부르주아지 등의 ‘중속적’ 계기와 ‘민족적’ 계기의 對抗과 葛藤·消長(梶村 1986a:56)으로 표현됩니다. 가지무라의 마지막 논문에서 정식화된 표현을 빌리자면, <내재적 발전의 제 계기>가 <改編>으로 <歪曲>되면서도, 여전히 <貫徹>되어 가는 과정(梶村 1990b:189)을 경제 주체의 행동에 맞춰 해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내재적 발전>이라 함은 보편법칙적인 <발전>을 **조선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기보다는 <변혁 주체의 ‘중속 발전’>이라고 하는 형용 모순적 표현에 함축된 조선근대의 복잡한 동태를 보다 주체에 초점을 맞춰 그려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관철>되는 것은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합법칙성이 아니라 여하한 형태일지라도 <발전>을 담당했던 **조선의** 주체의 모순에 가득 찬 존재 양태 그 자체입니다. 경제발전론적 인 시점에서는 크게 멀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특히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이 처음부터 이런 시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지무라는 1970년에 행해진 어느 강연에서 <이른바 경제 과정이 土臺라는 圖式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른바 사회경제사를 정밀하게 훑어 나가면 된다고 하는 발상이 바로 우리가 ‘내재적 발전’이라는 말에서 처음 끄집어 낸 의미였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梶村 1990a:54) 77년에 발표된 주저는, 그런 경제결정론적인 <사회경제사주의>를 극복하는 自己更新 과정에서 정리된 논문집이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이 처음 실릴 때, 즉 개별 논문의 時點과 저작집 안에서의 配列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77년판의 時點 사이에서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읽고 난 뒤의 느낌 또한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의 발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우리가 무엇을 이어 받고 무엇을 비판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III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의 深化·變容을 재촉한 두 가지 요인

사정이 그렇다고 할 때,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을 가장 정리된 형태로 표현한 그의 주저에는 이미, 나미키가 정리한 내재적 발전론의 틀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지무라의 視點 變化가 보다 구체적인 계기를 경유한 ‘방법적 혁신’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1) 맑스주의 역사학·사회과학의 혁신과 궤적을 공유하며 - <세계사> 속에서

앞장에서는 가지무라 사학의 성립에 미친 전후 역사학의 역할과 의의를 약간 정태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사정을 보면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이 그 형태를 갖추는 1960-70년대는 전후 역사학의 변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론의 변모 과정에 주목하는 동적인 파악도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전후 역사학에 대해서는 戸邊 2012 등을 참조)

가지무라는 1960년대 전반 歷史學 硏究會의 위원이 됩니다. 역사학 연구회는 1933년에 창립되어 현재 일본에서 역사연구자들이 모인 민간단체로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전문으로 다루는 지역이나 시대를 따지지 않는, 전후 역사학의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지무라가 그 중심 멤버로 활동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당시 역사학 연구회는 50년대까지의 기계적·교조적인 법칙 적용에 근거한 역사 연구, 그리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공산당의 정치 방침에 밀착된 연구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적인 모색에 진력했습니

다. 그 가운데 제출된 세 개의 문제제기는 이후 가지무라의 연구를 크게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가지무라를 비롯한 위원들이 공동 토의를 통해 역사학 연구회의 종합 기획으로 제출한 <동아시아 세계론>의 제창입니다. (板垣 2012) 당시의 정세적인 측면에서는 북조선, 중국,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을 목도하면서 일본 사회의 <후진적 아시아>상을 극복하고 공통의 틀로 아시아의 역사를 논의하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의 발전 단계를 개별 국가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19세기 유럽의 외압에 반응하여 각국의 근대화가 분기해 가는 과정을 전체적이고 정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자는 연구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연구 초기의 가지무라가 제기한, 내재적 발전론에 근거하여 조선근대사의 시대를 구분하려고 했던 문헌은 동아시아 세계론을 준비하는 위원 토의를 위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梶村 1964) 동아시아 세계론은 그 후 사회주의 중심의 정세파악이나 선진/후진이라는 틀, 나아가 <외압> 이해의 단순함 등으로 비판을 받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파산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宮嶋 1984·1988) 저는 그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고립감을 느끼던 당시의 젊은 아시아사 연구자들에게 일국사를 넘어서는 인식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60년대 중반부터 크게 연구가 진전된 <밑으로부터> 혹은 <저변부터>의 시점을 중요하게 여긴 사회운동사입니다. 여기에는 人民鬪爭史와 民衆思想史라고 하는 두 개의 조류가 있었습니다. 전자의 인민투쟁사는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른 피지배 계 집단의 다양한 운동과 연대하는 실태나 그 가능성을 <인민항쟁>이라는 이름의 통일성으로 이해하는 연구를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흐름은 당시의 革新自治體 등을 만들어 낸 주민운동의 성장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정치실천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戶邊 2012) 민중사상사도 피지배층에 주목했지만, 각각의 운동이나 담당자를 변혁 주체의 역량 여하에 따라 평가하는 인민투쟁사의 태도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중사상사는, 변혁 주체여야 할 <인민>이나 <계급>이 아니라, <민중> 독자의 세계관이나 논리를 드러내고 맑스주의와 근대화론이 공유하는 근대적 가치 그 자체의 문제성을 비판합니다. (戶邊 2009, 2010) 이 시도는 동시대의 다양한 마이너리티들이 제기하는 항의들에 공명하면서 계급이나 민족에 회수되지 않는 다양한 주체를 역사 서술 안에서 회복시키려는 흐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지무라의 사회운동사 서술을 편년적으로 통람할 때 이런 연구 조류들의 영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가지무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역사학 연구회의 위원을 역임한 젊은(아직 조수급) 연구자가 내세웠던 ‘새로운 연구’와의 절차탁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조선사 연구자로도 유명한 러시아사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나 이슬람사의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등 새로운 世界史像을 모색하던 이들과의 교류는 조선사 내부만의 논의로는 얻을 수 없는 연구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본래 <동아시아 세계론>이라는 문제제기도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자들에 한정되지 않는, 일국사의 집합을 넘어선 <세계사>를 지향하며 각 지역을 연구하던 연구자의 융합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류를 통해 가지무라가 습득한 것 중 매우 중요한 것이 내셔널리즘의 파악입니다. 이타가키 유조가 이론화한 민족주의와 민중운동의 관계는 이를 가장 명확하게 정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板垣 1973) 구미의 위협에 대항하는 형태로 형성된 내셔널리즘은, 그러나 민족주의자의 담론에 자주 보이듯이, 대항관계 속에서 침략자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민중을 계몽·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민족주의자의 반제국주의는 민중의 解放 願望을 이끌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

히러 그 전면적인 해방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근대세계에서의 기본적인 대항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와의 어떤 共犯關係를 비판하고 국민국가 틀에 갇히지 않는 민중의 反근대적·非근대적인 願望이나 實踐의 의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인도 근대사 연구자들의 서발턴 스터디 또는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ies)론의 선구라고도 할 수 있는 이타가키의 논의는, 독립 후 생겨난 제3세계의 고투나 혼미를 複眼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까닭에 내셔널리즘 분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타가키의 문제제기는 사학사적으로는 <n지역론>으로 정리되었는데, 실제로는 보다 다양한 논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했습니다.)

역사학 내부의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1970년대 종속론과의 조우는 가지무라의 사고를 심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지무라는 1973년 가나가와(神奈川) 대학에 자리를 얻었는데, 경제학부에서 아시아 경제를 가르치는 강좌를 갖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맑스주의 경제학의 혁신, 특히 종속론이나 세계시스템론 등의 논쟁으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물론 이들은 순수 경제이론이라기보다도 식민화된 지역의 역사와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 조류였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지무라도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홍종욱 씨의 보고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대 한국과의 對峙 - <민중>의 발견을 향하여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수의 방법적 혁신을 받아들인 가지무라가 대상을 분석할 때 그것들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활용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이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가지무라가 왜 특정한 이론이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채택했으며 그 필연성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필연성은, 이들 새로운 방법과 대화를 하던 바로 그 시점부터 가지무라가 본격적으로 현대 한국의 민중을 발견했다는 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지무라는 70년대에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한 한국의 사회운동이나 민중 생활의 실정 보고를 접하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른 가치관이나 정동을 지닌 살아 있는 인간, 말하자면 자신이 연구하는 지역의 '현재' 속에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지무라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강원봉 씨의 보고가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대 한국을 바라보는 가지무라의 시선, 특히 종속 경제 아래에서 고통을 강요받던 민중에 주목하고자 한 가지무라의 태도가 1980년대에 구상된 <민중사>, 다시 말해 조선 근현대사의 <原象>을 주조해냈다는 점만 덧붙일까 합니다. 이런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맑스주의적 사회과학의 방법적 혁신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현대 한국과의 대치는 '고도성장'하 인간들의 정신구조까지 포함한 한국 사회의 全機構的 變容에 대한 가지무라의 관심도 촉발시켰습니다. <변용>에 착목한 가지무라는, 이른바 정통적인 근대화 패턴을 따라 전개되지 않는, 전통과 근대의 갈등을 직시했습니다. 신채호나 함석헌에 대한 가지무라의 지속적이고도 깊은 관심은, 조선 민족의 전통문화 일반이 아니라 민중세계에 뿌리를 내린 전통, 혹은 근대 비판적 지향을 전통 안에서 고안하려는 논리에 주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梶村 1984)

IV 1980년대의 심화 - 미완의 가지무라 사학

(1) 민중운동사에서 민중사의 전체상으로

이들 동향에 자극을 받아 간행된 1977년의 주저 이후, 가지무라의 역사 연구는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될까요. 이 발표문의 부제인 ‘국가와 민중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가지무라 자신의 언어를 빌리자면,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현상 분석을 포함하여 “<중속 발전>의 특질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방법론의 확립과, 극복의 가능성을 잉태한 민중운동의 특질 해명”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됩니다. (梶村 1986a:56) 이 발표에서는 전개 순서를 둘로 나누고, 순서를 뒤집어 나중 것부터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이라는 측면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길게 논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표된 연도가 다른 두 개의 논문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1968년에 발표된 「신간회 연구를 위한 노트」(梶村 1968)입니다. 이 논문은 그 당시 까지도 평가가 분분했던 신간회를 “조선 민족해방 투쟁의 이니셔티브가 부르주아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로 이행되는 큰 역사적 흐름의 일환”으로 위치 짓고, 그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공동전선”으로 그 역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료를 다루는 것부터 선구적인 연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梶村 1968:293, 312) 또 하나의 논문은 20년 후에 씌어진 「1920-30년대의 민중운동」(梶村 1987)입니다. 짧은 논문이기는 하지만, 가지무라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두 논문을 비교하면 운동사를 서술할 때의 주체 표현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8년 시점에는 조선인의 주체성을 최종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구현인 <당>(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으로 표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진정한 주체>는, 당시의 조선 맑스주의자들도 아니고, 법칙성이 조선에서 관철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60년대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을 지배하던 <사회경제사주의>가 사회운동사에 대해서도 법칙성의 검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후 역사학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선 근대사에서 인민 투쟁의 실태(가지무라는 신간회를 “통일전선체”라고 부릅니다)와 그 사상적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한 논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7년의 논문에서는 사람들의 주체성·내발성은 <민중>이라는 집합 표상으로 표현되고, 분석 단위도 개별 투쟁으로 하강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거나 평가됩니다. <민중>을 쓰게 된 것은, 사상적으로 각성된 인텔리 청년 또는 농민 등의 ‘민중운동자’의 개별적인 행동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지무라의 평가축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지무라는 70년대 말부터 단편적인 사료를 취합하여 개별 투쟁 이상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논문도 몇 편 발표합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1929년에 일어난 甲山火田民事件에 관한 실증적 논문입니다. (梶村 1979) 서술의 변화는 개별 투쟁을 검토하는 사료적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가지무라 내부에서 평가축이 크게 이동한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은 <전위=당 조직> 또는 <프롤레타리아=노동자>의 성장을 운동 발전의 지표로 간주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관점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동시대 한국의 <민중적 민족주의>의 발상을 받아들이고 <식민지적 영세농>을 역사의 주체로 발견하는 과정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중적 민족주의>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광범위한 민주주의와 인간해방 그리고 자기실현을 희망하기 때문에 식민지 권력과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민중의 集團的 願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무라는 광주 항쟁 얼마 뒤에 쓴 「조선민중의 1930년대」에서 이미 <민중적 민족주의>와 거의 같은 뜻의 어휘로 “토착화된 <사회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굳이 규정하자면 일반민주주의의적인 것”이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梶村 1980:25) 이러한 <主義>는 1968년의 논문이 전제로 하는 운동사의 발전 단계로 보자면 불충분한 단계일 수밖에 없지만, 이 논문에서는 <식민지적 영세농>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조선 민중을 그 담당자로 높이 평가합니다. 가지무라는 1977년의 주저에서 이미 “민중운동을 정치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의 민족주의와 식민지 민중의 민족주의를 준별하는 시점을 확립할 필요”(梶村 1977:351)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준별>이 이타가키 유조의 내셔널리즘 분석과 상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視點의 변화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가 뜨거운 애정을 갖고 지켜본 동시대 한국의 “민주 회복 투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80년대의 민주화 투쟁은 곧장 “30년대에 싹을 틔운 민중사상의 정통 계승자”라고까지 평가됩니다. (梶村 1980:25) 이 視點에 입각하여 북조선의 사회주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30년대 토착사회주의를 계승한 [북조선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오히려 지금부터의 과제일 것이다. 조선사에서 이 문제는 통일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梶村 1980→1982:288-289) 여기서 북조선의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은 맑스주의 정통성에 얼마나 합치하는가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민중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실현되어 있는가이며, “지금부터의 과제”라는 부분은 가지무라의 비판적 시점을 보여 줍니다. 게다가 민중적 민족주의가 통일의 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천적 관심을 드러낸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1987년 논문이 운동사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서 <민중운동>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민중의 生活史와 精神史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전시켜 “민중 개개인마다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 방식(生きざま)을, 이것을 중시 여기는 관점으로 깊이 이해하는 작업을 많이 축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민중사의 전체상”으로 나가자는 것으로 그 이후의 연구를 전망합니다. (梶村 1987:367) <정신사>, <생활 방식> 또는 <이해>라는 어휘는 앞서 말한 민중사상사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梶村 1979:322에서는 <민중사상사>라는 용어도 사용됩니다)

경제결정론적인 좁은 의미의 내재적 발전론이나 60년대의 인민투쟁사적 시점과 다른 가지무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회주의·민족주의 등의 대립적인 개념들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오히려 <민중운동>이라는 형태로 조선 근대사 전체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운동사>는 이제 발전 단계의 증명 도구가 아니라, <민중사의 전체상>을 귀착점으로 하는 全體史的 志向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연구됩니다.

(2) 국가와 제도를 고려한 全機構的 把握으로

<사회경제사주의>를 극복하고 “조선 민중의 해방 투쟁 사상과 그 내적인 발전의 경과를 진정한 흐름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梶村 1990a:56)고 1970년에 예고했던 것처럼, 가지무라는 과연 운동사 연구에 조선사의 <발전>과 주체성의 표현을 의탁하는 형태로 자

기 연구를 수렴시켰을까요. 흥미롭게도 1980년대 후반의 가지무라는 자기 연구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실증적인 경제사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금 단순화시키자면, 이는 민중사 연구로의 지향을 더욱 고취시키는, 국가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제도성을 향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 이르는 <중속 발전>의 역사를 시야에 넣고 그 전제가 되는 근대 경제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국가와 그것이 만드는 제도에 대한 고려 없이 자본의 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생적인 자본주의 발전, 자주적인 근대의 창조라는 “본래 있었어야 할 발전”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본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 검토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가지무라는 그 <본래>라고 상정되었던 단일한 <발전>관 자체를 再考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전>은 점차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1980년대 전반만 해도 국가나 제도에 주목하는 연구 과제의 설정은 어느 정도 공유된 문제였습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1980년대 초두에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19세기 후반의 조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재적 발전론의 “방법적 약점”으로 “변혁의 대상이 되는 해당 시기의 국가 권력 분석이 결정적으로 빈약한 점”, “지향하고자 하는 근대적 변혁의 내용 자체를 규정하는” 外壓이라는 세계사적 규정성의 위상이 불충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宮嶋 1983:318) 그리고 80년대에 발표된 가지무라의 경제사 관계 논고는 흡사 미야지마의 물음에 답하는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우선 이론적인 면에서 1981년에 2편의 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는 19세기 후반의 <외압>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빚어낸 동아시아 차원의 지배/피지배라는 <양극 분해>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논문입니다. (梶村 1981a) 또 하나는 그 이후의 식민지기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구성체에 관한 중속 이론을 轉用하는 방식으로 식민지 사회의 사회구성체 규정을 검토합니다. (梶村 1981b)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는 홍종욱 씨 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논문에 대해 잠시 언급을 할까 합니다. 식민지 근대성론이나 <유교적 근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식민지 지배하의 사회 구성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 논문은 다시금 조명되어야 할 귀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지무라가 식민지화로 전통 사회가 재구성되고 존속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전근대(봉건제)/근대(자본제)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식민지 근대성론이 문화론·표상론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늘고 있는 요즘, 식민지하 사회 구조의 생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근대성의 실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전개’에도 불구하고 가지무라가 일관되게 <일국사적 발전> 틀에 집착했던 것은 국가의 기능과 그에 따른 “국민경제의 제 조건의 창출과 보호”를 수행할 수 있는 일국 규모의 제도가 지니는 의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80년대 후반의 가지무라는 몇 편의 실증적인 경제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들이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대한제국기부터 1910년대의 식민지기 초기에 걸쳐 있습니다. 1977년의 주저에서는 간략하게 다루었던 시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지무라는 자신이 주저에서 전개했던 모티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의 갱신을 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86년의 歷史學硏究會 대회 近代史 部會에서 행해진 보고(梶村 1986b)는 이 시기 가지무라의 관심을 집약한 논문입니다. 가지무라는 이 보고에서 商權 문제를 발판 삼아 “근대국가가 확립되지 않은 틀 안에서의 상인자본의 동태”를 통해 “일국적 부르주아적 발전”을 보증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국가

의 역할>이라 함은 “강력한 국민적 통합”이자 “모든 정치권력의 민족적 결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가지무라는 국가의 역량으로부터 민족의 우열을 가늠하려고 하는 안이한 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민족적 결집>을 곤란하게 하는 저해 요인이 “단순한 내적 요인의 발현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의 内部 轉化 형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부 전화>는 가지무라가 조선사를 이해할 때 줄곧 유지했던 관점인데, 여기서는 그 이상의 의미, 즉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약된 제도의 유무와 국가 혹은 제도가 국내의 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야지마가 비판한 <방법적 약점>에 대해 가지무라 역시 사회경제사의 관점에서 극복을 시도한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식민지화(국가의 단절)에 의해 무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식민통치 권력 아래에서도 제도성의 차원에서 扶植되고 사회에 스며들어 한국이 <종속 발전>하는 시점에서 국가의 內實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온 두 편의 실증적인 경제사 논문도 1981년의 이론적 재설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梶村 1990b, 1990c) 그 중에서도 국지적인 지역 경제의 자율성과 역외 관계를 따진 논문(梶村 1990c)은 다소 이채롭게 보입니다. 당시 주목되던 <민족경제>론을 역사적으로 직접 증명하려고 했던 연구라기보다는, 식민지 사회구성체에 포섭되는 복수의 경제·사회시스템의 존재와 그 상호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그것이 <국가의 역할>과 적대한다든가 모순된다든가 하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민중에 視點을 두고 각 시스템의 자립성·토착성과 상호 연관을 새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가지무라 사학의 위치와 미완성의 평가

가지무라가 말하는 <발전>의 내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논의함으로써 만년의 가지무라가 <발전>에 대해 얼마나 복합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梶村 1986c가 이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명확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연구에서는 <발전>이라는 어휘는커녕, 단계론적 지향 내지 시기 구분을 하는 것조차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서술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역사적 사실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 없이는 어떤 설명이나 분석도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발전 단계를 비판한 후에도 여전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岸本 2002) 그런 의미에서 가지무라의 <발전> 개념을 둘러싼 사고의 심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숙고해야 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對關係로 문제영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은 넓은 의미에서 전후 역사학의 전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전후 역사학의 경직된 사적 유물론 이해나 사회경제 과정을 지상 과제로 삼는 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모색이 활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중사상·민중운동의 역사적 실태를 구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사의 동향과 융합된 민중사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의 동향과 대치하는 국가 권력의 제도·운용 실태를 해명하는 국가사(제도사)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역사가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가령 인민투쟁사로부터 민중사상·민중운동사로 이행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후 역사학의 <흐름>에는 세대나 방법적 태도의 측면에서 다양한 균열이나 단층이 새겨져 있습니다. (戶邊 2012:210-216)

경이롭게도 가지무라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展開의 兩方’을 그 혼자서 체현하여 조선근대사의 전체상을 새롭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일본사(=자국사) 연구자를 포함한 일본사회의 비판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적 혁신’과 한국의 현실이 던지는 충격을 진지하게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自己革新은 전후 역사학을 일관했던 역사가들 중에서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가지무라의 새로운 시도는 아쉽게도 그 자신이 제기한 과제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채 도중에서 끝났습니다. 자기 혁신에 내재된 이론적 문제와 직면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민중사적 접근 방식의 추구하고 민중과 적대적 혹은 긴장관계에 놓인 국가(혹은 국가만이 만들 수 있는 제도성)의 의의, 이 두 영역이 얼마나 정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는 가지무라가 목표로 삼았던 조선근현대사의 ‘전체사적인 파악’에서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가 추구했으나 쉽게 해결될 수 없었던 역사 연구의 과제는 여전히 <미완>인 채 우리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본어로 된 조선사 연구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1990년대 이후 이 과제를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조선 근대사의 새로운 상을 세우려는 연구가 등장합니다. 예컨대 제일조선인 연구자인 조경달(趙景達)의 정력적인 연구는 주로 전통 사회로부터 에너지를 끌어 올리는 민중 운동의 측면에서 조선 근대사를 재구성하려고 했습니다. (趙景達 1998, 2002, 2008) 다른 한편 미야지마 히로시의 연구는 동아시아 小農社會論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유교적 근대>론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장기 변동을 일관되게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宮嶋 1994, 2004, 2010) 이들의 연구는 내재적 발전론의 극복을 자기 과제로 명언합니다. 하지만 만년의 가지무라를 어느 정도나 시야에 넣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경달이 그려낸 조선 민중과 가지무라가 도달한 민중상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민중사>라고 하는 역사 서술 방법을 참고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미야지마가 근년 제기한 <유교적 근대>의 <근대>는 가지무라가 도달한 <발전>관과 어느 정도의 비판적인 대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민중>이나 <근대> 그 어느 것도 조선 근대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무라가 남긴 연구의 궤적을 따라가며, <(일본의) 조선사 연구>라는 틀에 제한됨 없이, 가지무라와의 가상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며

서둘러서 살펴본 탓에 꽤나 도식적인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가지무라의 역사 서술이 지닌 본래의 풍부함을 전달하지 못한 점은 유감입니다. 그래도 가지무라의 연구가 심화되는 과정은 대략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지무라 히데키는 일본의 조선사 연구를 혁신한 연구자일 뿐 아니라, 전후 역사학의 취지와 방법을 가장 철저하게 일관해 온 연구자였습니다. 가지무라가 도달한 지점에서 보면 그의 역사 연구는 간단하게 “근대주의 지향”으로 정리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무라 사학의 재검토라는 이번 프로젝트가 지닌 현재적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에서도 글로벌한 연구 환경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연구 분야가 세계적으로 동일한 경쟁 구조 속에서 논의의 방향도 점점 하나로 수렴되거나 단일화하는 경향도 생겨났습니다. 그 국제적인 鬪技場에서는 대상국의 네이티브 연구자와

동등한 어학력·사료 해독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그 테마에 대해서도 공통의 의식이 배양됩니다. 이런 시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40대 후반까지 조선 반도에 건너가는 일 없이 일본 사회의 조선 인식을 비판하는 <일본인에 의한 조선사 연구>에 집착했던 가지무라의 역사 연구처럼 낡아 보이는 것이 또 있을까요. ‘글로벌 히스토리’를 선전하는 요즘, ‘외국사/자국사’라는 사고를 자체가 인식의 감옥처럼 보이는 일도 종종 있는 법이니까요.

이런 추세는 연구 환경의 고도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한 경기장은 특정 연구를 지배적인 의견으로 무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도 만들어 냅니다. 각각의 연구자가 처한 사회 환경의 차이에서 생기는 視點의 複數性이라는 存在被拘束性의 문제를 보지 못한 채, 자국사(반드시 국가를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대상 영역의 역사나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타자 이해의 감각’마저 무더질 위험성 또한 생겨납니다.

가지무라가 살았던 냉전기 동아시아는 그런 추세와 대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연구 대상 국가나 지역에 유학하는 것조차 생각만큼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연구를 낡은 것으로 간주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사료적·학설적으로는 이미 극복된 연구라 하더라도, 그 연구의 자기 혁신에서 드러나는 방법적 태도나 타자 감각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3PC의 시대(post-colonial, post-communism, post-cold war)인 오늘날이야말로 그 비판적 계승의 가능성의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포스트’라는 것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끝내야 한다>는 당위의 다른 이름에 가깝습니다. 그 당위의 가능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공유하는 재산을 보다 풍요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연구가 생성된 역사적 조건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가지무라 사학을 <일본의 역사학> 속에 가둬둘 필요는 없습니다. 전후 역사학이라는 고유의 조건에 주의하면서도, 가지무라를 동아시아의 사상·학문 전개 안에서 그 위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선 知의 連鎖나 동시대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양한 장소에 묻혀 있는 가지무라(와 같은 위치의 존재)의 발견을 재촉하는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집약됐던 20세기 동아시아의 비판적 사회과학의 고투를 서사화하는 지적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가지무라 사학이 현대의 동아시아를 향해 다시 발신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덧붙이며 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崔 泰源)

[참고문헌]

* 본문 안에서 가지무라의 문헌을 저작집에 수록된 논문으로 인용할 때는 저작집의 페이지를 표시했다.

* 가지무라의 문헌 중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문헌 끝에 ★표를 붙였다.

趙景達1998 『異端の民衆反乱：東学と甲午農民戦争』 (岩波書店、1998.)

趙景達2002 『朝鮮民衆運動の展開：士の論理と救済思想』 (岩波書店、2002.)

趙景達2008 『植民地期朝鮮の知識人と民衆：植民地近代性論批判』 (有志舎、2008.)

- 板垣雄三1973 「民族と民主主義」 (『歴史学研究』別冊特集「歴史における民族と民主主義：1973年度歴史学研究会大会報告」、1973.11) pp.2-8
- 板垣雄三2012 「歴史家 遠山茂樹と〈東アジア〉歴史像」 (『歴史学研究』895号、2012.8) pp.2-13
- 梶村秀樹1964 「朝鮮近代史の若干の問題」 (『歴史学研究』288号、1964.5) pp.55-63,11→著作集Ⅱpp.36-59.
- 梶村秀樹1968 「新幹会研究のためのノート」 (労働運動史研究会編『米騒動50年〈労働運動史研究49〉』1968.12) pp.181-212 →著作集Ⅳpp.292-319 ★
- 梶村秀樹1977 「『民族資本』と『隷属資本』：植民地体制下の朝鮮ブルジョワジーの政治経済的性格解明のためのカテゴリーの再検討」 (梶村『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龍溪書舎、1977年) pp.213-242 →著作集Ⅲpp.328-353. ★
- 梶村秀樹1979 「甲山火田民事件(1929年)について」 (旗田巍先生古稀記念会編『朝鮮歴史論集』下巻、龍溪書舎、1979.) pp.381-409 →著作集Ⅳpp.321-349 ★
- 梶村秀樹1980 「朝鮮民衆の1930年代」 (『世界』412号、岩波書店、1980.12) pp.22-25. →梶村『朝鮮史の枠組と思想』(研文出版、1982.) pp.288-289 *収録にあたり、一部改稿あり
- 梶村秀樹1981 a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帝国主義体制への移行」 (富岡倍雄・梶村秀樹編『発展途上経済の研究』世界書院、1981) pp.53-79 →著作集Ⅱpp.275-301 ★
- 梶村秀樹1981 b 「旧植民地社会構成体論」 (富岡倍雄・梶村秀樹編『発展途上経済の研究』世界書院、1981) pp.81-108 →著作集Ⅲpp.237-264 ★
- 梶村秀樹1984 「歴史と文学：朝鮮史の場合」 (『歴史評論』409号、1984.5) pp.53-60 →著作集Ⅱpp.361-371
- 梶村秀樹1986 a 「〈報告予告概要〉近代朝鮮の商人資本等の外圧への諸対応」 (『歴史学研究』554号、1986.5) pp.56-57
- 梶村秀樹1986 b 「近代朝鮮の商人資本等の外圧への諸対応：甲午以後(1894~1904年)期の『商権』問題と生産過程」 (『歴史学研究』560号、1986.10) pp.148-158 →著作集Ⅲpp.135-156
- 梶村秀樹1986 c 「朝鮮近代史研究における内在的発展の視角」 (勝維藻ほか編『東アジア世界史探究』汲古書院、1986.) pp.575-588 →著作集Ⅱpp.164-178
- 梶村秀樹1987 「1920~30年代の民衆運動」 (旗田巍ほか『朝鮮の近代史と日本』大和書房、1987.) pp.254-266. →著作集Ⅳpp.357-367
- 梶村秀樹1990 a 『排外主義克服のための朝鮮史』(青年アジア研究会、1990) →著作集Ⅰpp.13-76
- 梶村秀樹1990 b 「1910年代朝鮮の経済循環と小農経営」 (中村哲ほか編『朝鮮近代の経済構造』日本評論社、1990.) pp.203-248 →著作集Ⅲpp.188-234 ★
- 梶村秀樹1990 c 「旧韓末北関地域経済と内外貿易」 (『商経論叢』26巻1号、神奈川大学、1990.9) pp.297-326 →著作集Ⅲpp.159-187 ★
- 姜元鳳2012 「1960年代梶村秀樹の朝鮮史認識：戦後朝鮮史研究における内在的発展論の展開と分岐」 (『史海』59号、東京学芸大学、2012.6) pp.27-41.
- 岸本美緒2002 「時代区分論の現在」 (歴史学研究会編『歴史学における方法的転回〈現代歴史学における成果と課題1980-2000Ⅰ〉』青木書店、2002. →岸本美緒『風俗と時代観

- 〈明清史論集 I〉』研文出版、2012.)
- 宮嶋博史1983 「近代 (I)」 (『アジア歴史研究入門2 中国Ⅱ・朝鮮』同朋舎出版、1983.) pp.313-344.
- 宮嶋博史1984 「方法としての東アジア：東アジア三国における近代への移行をめぐる」 (『歴史評論』412号、1984.8) pp.9-39
- 宮嶋博史1988 「光武改革論」 (『歴史学研究』586号、1988.10) pp.12-22
- 宮嶋博史1994 「東アジア小農社会の形成」 (宮嶋ほか編『アジアから考える6 長期社会変動』東京大学出版会、1994) pp.67-96
- 宮嶋博史2004 「東アジアにおける近代化、植民地化をどう捉えるか」 (宮嶋ほか編『植民地近代の視座：朝鮮と日本』岩波書店、2004.) pp.167-192
- 宮嶋博史2010 「儒教的近代としての東アジア『近世』」 (『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通史 1』岩波書店、2010.) pp.53-78.
- 並木真人1990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研究の現段階：『内在的發展論』再考」 (『歴史評論』482号、1990.6) pp.15-30.
- 二宮宏之2000 「戦後歴史学と社会史」 (歴史学研究会編『戦後歴史学再考』青木書店、2000.) pp.123-147
- 戸邊秀明2009 「'민중사상사' 연구의 출발—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의 방법적 혁신」 (윤해동 외 편, 『역사학의 세기: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휴머니스트、2009.) pp.397-439.★
- 戸邊秀明2010 「戦後史学史のなかの安丸民衆史：ある全体性のゆくえ」 (安丸良夫・磯前順一編『安丸思想史への射程』ぺりかん社、2010.)pp.53-79.
- 戸邊秀明2012 「社会運動史としての戦後歴史学研究のために：史学史の再検討にむけたいくつかの提言」 (『日本史研究』600号、2012.8) pp.194-218.

日本「戦後歴史学」の展開と未完の梶村史学

——国家と民衆はいかに（再）発見されたか——

戸邊秀明（東京経済大学）

[要旨]

梶村秀樹（1935～89年）の研究課題や方法的視点の変遷を捉えるには、20世紀後半の日本の社会科学、なかでも「戦後歴史学」とよばれる学問運動に対する一定の理解が必要となる。報告者は、これまで発表してきた史学史的研究をふまえて、梶村の近代朝鮮史研究を同時代の日本の歴史研究の動向に位置づけ、再検討を試みる。

実際、梶村は、戦後歴史学の運動を牽引した歴史学研究会が1960年代に提起した東アジア世界論の創造に重要な役割をはたし、それを自身の朝鮮史研究の展開に活かしている。また1970年代後半以降、梶村が民衆史の構想を深めていった背景には、同時代の韓国の民衆運動からの刺激に加えて、同時期の日本歴史学の一大潮流である人民闘争史研究・民衆思想史研究の隆盛との関係を指摘できる。これらを前提として、梶村は死の直前まで、方法的視座の自己革新を図り、国家と民衆という2つに焦点を結ぶ、朝鮮近代史の全体像の追究をめざした。

こうした点を史学史的に跡づけることで、梶村における「内在的発展論」の深化が、日本や世界の歴史学の動向とどのように関連していたのかを明らかにし、ともすれば朝鮮史に閉じた体系と捉えられがちな梶村の歴史学がはたした史学史の意義、ならびに現在顧みられるべき意義について、問題提起をしたい。

はじめに

このセッションの最後に位置する私の報告は、梶村秀樹が生み出した歴史研究の意味を、彼が生きた20世紀後半の日本の歴史学、とりわけそのもっとも特徴的な潮流といえる戦後歴史学とよばれる学問運動のなかに位置づけることを課題とします。ではなぜそうした視角が必要と考えるか、そこから報告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

実は、私は日本史という枠のなかでも沖縄近現代史を専門としており、そもそもここに座る資格がありません。梶村史学の再検討を志すこの研究会に誘われた理由は、私がかた方で、戦後日本の歴史学の歴史、つまり史学史についても若干論文を書いているからだったと記憶しています。そのような者が、このような場で報告することに、どのようなメリットがあるのでしょうか。少なくとも2つのことが言え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ひとつは、梶村の歴史研究を、戦後日本の歴史学運動全体のなかに位置づける、という視点です。私が朝鮮史研究者であれば、このような視点はとりません。なぜなら梶村は、もっと身近な先行研究として、自らもその系譜の中にある、日本の朝鮮史研究のなかで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存在のはずだからです。そして、梶村に関する史学史の検討は、基本的にはこうした視点でなされてきました。しかし、彼の歴史研究を史学史の視点から捉えかえすには、「（日本における）朝鮮史研究のなかの梶村」という位置づけでは不十分です。なぜなら、梶

村の研究の独特のスタイルや方法意識は、地域研究としての朝鮮史の枠組みのなかだけには決して生まれなかったからです。梶村の方法的革新は、戦後歴史学の潮流と交わるなかで形成されました。いやより正確に言えば、この戦後歴史学が実質的に確立する1960年代に、その重要な一翼を担ったのが梶村であり、梶村は戦後歴史学に影響を受けたという以上に、彼が戦後歴史学をつくったのでした。そこで、朝鮮史研究に対する貢献を尺度として梶村を評価するよりも、朝鮮史家という専門性を持ちつつ、同時にそれを越えて20世紀後半の日本の歴史学の創造に参画した歴史家の一人として、梶村が同時代の他の歴史学の動向とどのように結びつき、かつ生産的な発信を行っていたかに注意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しかし、そうした検証を、ここ韓国とする意義はなんでしょうか？ もちろん本日のシンポジウム全体のテーマである日韓関係を考えた際、梶村の知的軌跡が貴重な遺産であることはもちろんです。これまでの2本の報告は、その点で、韓国における梶村認識を是正することにつながると期待しています。それに対して私の、一見日本内部に閉じた内向きな報告内容にどのような意義があるのでしょうか。それは、戦後歴史学とよばれる日本の批判的社会科学の位置づけを捉え直すことが、グローバル化のなかであえぐ私たち人文・社会科学者の糧になると考えるからです。戦後歴史学という学問運動の志向を典型的に体現するとも言える梶村史学を、東アジアにおける批判的社会科学の重要な知的遺産として認知していただく機会となれば幸いです。

I. 梶村はどのように忘れられたのか

これだけ梶村を強く売り出そうというのですから、日本の歴史学界では梶村は相当有名なのだろう、と思われるでしょう。ところが、必ずしもそうではありません。率直に言えば、日本の若い世代の歴史研究者では、朝鮮史を専攻するのでもなければ、その名は知っていても、研究の内容を知る人は少ないと思われまます。

それはなぜでしょうか。ひとつの根本から発する、3つの理由が考えられます。ひとつの根本とは、彼が1989年5月に53歳で亡くなっていることです。1935年生まれですから、今日、この場で大御所として基調講演をしても、それほど不思議ではない世代なのです。歴史家の仕事長い時間をかけた成熟を必要とする以上、これからというときに急逝したと言うべきでしょう。そのため、次のような問題が生じました。

第一に、その著名さに比べて、梶村は体系的な著作をあまり残せませんでした。生前彼が出した単著は3冊、うち2冊は比較的短い論文を集めた論文集と朝鮮史の通史的概説書です。残る1冊が彼の代表作である『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龍溪書舎、1977年）ですが、これも体系的な見通しのもとに書き下ろされたものではなく、いくつかの論文をまとめなおしたものです。もっとも、そのまとめなおす作業のなかに、梶村の歴史家としての革新がうかがわれるのですが、それでも、梶村の全体像をこれだけで知ることはできません。

梶村が亡くなってすぐ、6冊にわたる『梶村秀樹著作集』（明石書店、1992～93年）が刊行されました。代表的な論文を網羅しているとはいえ、収録された文献は、梶村の論文や発言総体の何分の一かにすぎません。眼前の日韓関係や在日朝鮮人にかかわる問題などに朝鮮史研究者として真正面からとりくんだ梶村は、書齋の人に収ま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のため、遺された彼の言葉のうち、社会運動のなかで請われて発言・執筆したものが相当量を占めます。いきおい断片的、ないしは論点をしばった比較的短い論考が多くなりました。したがっ

て、梶村史学の全体像を再構成するには、著作集に洩れた比較的短い文章も視野に収めなくてはなりません。この報告では、歴史研究にかかわる短い論考も拾い上げ、つなぎあわせることで、理論や歴史像の体系性よりも、梶村の時期的な変化に注目して再検討を加えていくことにします。

第二に、梶村は先ほど挙げた1977年刊行の主著を上梓した後は、彼のもっとも専門とする朝鮮近代経済史に関する論文は、亡くなるまでに数点しか書いていません。その間、彼は在日朝鮮人の指紋押捺拒否運動などへの支援を惜しみませんでした。おそらくそれが彼の人生を短くさせ、この分野の研究を遅らせたことは事実でしょう。また他方で、1980年代には韓国の経済成長とかかわって、現代アジア経済の現状分析として韓国を語る機会が増えたことも理由としてあげられるでしょう。その結果、梶村史学を語る際、1977年の主著に言及して終わることが多い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しかし、彼の研究は死の直前まで新たな展開を遂げていました。そこで報告の後半では、特に1980年代の梶村の著作を再読し、それと戦後歴史学の推移とを両睨みすることで、「早すぎた晩年」の新たな展開が宿す史学史的意義を、明確にしてみましよう。

第三に、彼が亡くなった時期が大切です。89年5月29日ですから、天安門事件の6日前、ベルリンの壁が崩壊する5ヵ月ほど前にあたります。つまり、彼の死は、世界的な冷戦の崩壊とその後のグローバル化や新たな敵対関係の世界が開ける時期と、ぴったり一致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唯物史観にもとづく発展段階論を前提とした梶村の研究、なかんずく内在的発展論と言われる彼の方法的立場は、この世界的趨勢のなかでは、たいへん旗色が悪か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しかも、イデオロギー的に劣勢に立たされ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韓国経済の発展は80年代以降、世界的に注目を浴び、今日の国際的位置を確かなものにしていきます。これに対して、韓国経済の「従属発展」を強調し続けた梶村の現状分析は、急速に省みられなくなりました。存命ならば、理論的反省を含めて大いに議論を闘わせたところでしょうが、死によってそれも中断してしまいました。

おそらく、こうした否定的評価を決定づけたのが、梶村の死の翌年に並木真人が著した論文でしょう（並木1990）。並木は、現在、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研究を中堅でになる代表的な歴史家ですが、この論文は、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研究の流れを大きく3つの段階に分け、今後の自己の研究が拠って立つところ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研究史上に画期をしるしたマニフェスト的な論文であるといえます。

並木はそこで、敗戦以前の朝鮮停滞論・他律性史観にもとづく朝鮮史研究を第一段階とし、これとの格闘を経て1960年代半ば以降、内在的発展論が確立する第二段階を迎えるという、今日でもよく知られた太い系譜を引いた上で、台湾や韓国の高度成長が顕著になった1970年代以降、内在的発展論は動揺を見せ始め、80年代の後半に至って、その克服をめざす新たな段階に来た、と自分の立つ位置を確認しています。

なぜ動揺をきたしたのか。内在的発展論が「普遍的発展法則にもとづく西欧的な近代を前提とする歴史像」であり、「近代主義志向」のために目の前で展開する韓国の高度成長に批判的に対峙できず、「発展」礼賛に終わ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からだ、と言います。ここでは同時に、「第三世界」である韓国を追い抜いていたはずのアジアの社会主義国家が不振と混迷に陥り、経済成長なった韓国との逆転現象をうまく説明できない、唯物史観の公式の限界性も念頭に置かれています。そこで並木は、宮嶋博史や吉野誠が提起する「朝鮮における固有なもの、伝統的なものの中に近代克服の契機を見出そう」とする視点を、今後の研究の軸として提示

し、それこそが「真の意味での朝鮮における内在的發展論の定立」につながると確認するので
す（以上、並木1990：20, 26）。

並木は、現状に追隨したのでも、ポストモダンの高みに立って、前世代を批判したのでもあり
ません。むしろ韓国の高度成長という、従来予想されていなかったく「低开発国」の高度成
長に引きずられて、韓国軍事政権を評価する風潮を強く牽制するためでした。にもかかわら
ず、今日からすると、並木の内在的發展論批判は、いささか単純にすぎたように思われます。

〈内在的發展論＝梶村秀樹〉という図式が強かった当時、並木の総括は、後続の研究者が梶村
史学を自分なりに捉える機会を妨げる効果を生みました。しかし、私の見るところ、並木の内
在的發展論に対する見解は、梶村の歴史研究には当てはまりません。それは、梶村史学の全体
像を視野に収める機会を欠いたまま、見切り発車された史学史的見通しでした。実際、並木
は、梶村が1970年代後半以降ますます関心を注いだ、「発展」に関する複合的な理解と、その
「発展」の担い手としての「民衆」への注目とについて、言及していません。報告では、この
2点について、梶村の80年代の業績を手がかりに検討してみます。

II. 「内在的發展論」と戦後歴史学

梶村史学の形成を語る際、内在的發展論の説明は欠かせません。従来、この視点の発生につい
ては、①日本の朝鮮史における停滞性論批判、②朝鮮半島の南北両国における主体的歴史学の
勃興、という2つの流れが指摘されてきました（その詳細は姜2012参照）。②の影響、とりわ
け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北朝鮮）の歴史研究の受け売りと誤解されることもありま
すので、①の自生的要素を重視することは大切です。けれども、批判のうえで新たな歴史像を
立ち上げようとするとき、何が有効な資源となったか、その径路の説明が必要でしょう。ここ
で確認すべきなのが、戦後歴史学という日本の歴史研究を大きく規定した研究潮流との関連で
す。

そこでまず、韓国のみなさんを念頭において、戦後歴史学について簡単に説明させてくださ
い。この言葉は一般に、マルクス主義的方法、とりわけ史的唯物論を方法的基礎に据えた歴史
研究で、1945年の敗戦後/帝国崩壊後＝「戦後」の日本の歴史学を主導した特定の傾向と研究
者集団（たとえば後述する歴史学研究会）を指す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の歴史研究の潮流が
依拠する思考様式は、どのようなものでしょうか。二宮宏之の定式化（二宮2000：125-12
8）を参照すれば、それは、①変革を志向する目的論的歴史意識、②世界史を普遍的な発展法
則の貫徹と見る認識、③国民的類型を基礎とした発展段階論、④階級と民族を基軸とする主体
形成論、⑤内的一貫性を重視する閉じた構造分析とまとめ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うした傾向は、歴史研究だけに限らず、戦後日本の社会科学一般に似たような方向性が強ま
りました。そこには、近代日本の歴史を反省し、未来を変革する主体を創り出そうとする気運
が長く保たれており、だからこそ、特定の歴史研究の傾向が、「戦後歴史学」という包括的な
名称を固有名詞然と使うことで、今日に至るのです。

戦後歴史学の中心は、1960年代まで一貫して構造論的な社会構成体史の研究でした。しかし
発展段階を措定する以上、構成体が変化する移行期を設定すれば、その担い手、歴史を推進さ
せる「変革主体」をどのように検出するかという課題は避けられません。その意味では、戦後
歴史学は構造と同時に主体（性）にも強い関心を寄せてきました。この両者の緊張関係が、新
たな研究領域の発見など、戦後歴史学の自己更新の原動力ともなっています。ただし実際に

は、主体の検出といっても、それは担い手である変革主体の性格規定や主体にふさわしい社会階層を階級構成のなかからつかみだそうとする点で、構造分析に従属していました。

では、こうした研究動向と梶村の内在的發展論とよばれる歴史研究とは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のでしょうか。並木のまとめ方を借りれば、「一国史の発展の原動力として国内の契機が重要であること」（対する外からの契機は「外圧」として把握されます）、「その発展の過程においては西欧的近代を一つの到達点とする普遍的な合法則性が貫徹すること」を論証するために、特に「朝鮮の内部に存在する西欧的発展の諸要素——ブルジョア的なもの——の発見に努める」とされる内在的發展論の特徴は、確かに上記の戦後歴史学の展開と時を同じくして展開し、戦後歴史学の格律をもっとも典型的に表現した方法的態度であるときえ言えます（並木1990：18-19）。

しかし、こうした規定は抽象化された綱領のようなものですから、実際には梶村自身の歴史研究に即した検証が必要です。たとえば、主著である『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では「内在的發展」とはどのように理解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本書は、1970年代の現代に至る「朝鮮（に特有な）資本主義」の形成過程を、開港期から1960年代までのうち、いくつかの時点に絞って検討した論文をまとめたものです。そこで一貫して注目されたのが、近代世界において変革主体としての役割が期待されるブルジョワジーが朝鮮近代史においては「歪んだ」かたちでしか存在しえないことです。ただ、誤解してはならないのは、梶村はこの「歪み」によって内在的發展の挫折を論証しているのではなく、植民地状況という「歪み」のなかを貫徹する資本主義「発展」と、そうした条件下で現れる経済主体（ブルジョワジー）の主体性と従属性の2面性を把握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です（そのもっとも重要な成果が、同書で初めて発表された梶村1977の理論的整理です）。世界史的発展法則の貫徹を明証する構造論と具体的・個性的な変革主体の析出を求める主体論との緊張・軋轢は、「植民地下の強権的改編のもとでの朝鮮のブルジョワジー等における『従属的』契機と『民族的』契機の対抗と葛藤・消長」（梶村1986 a：56）として表現されることとなります。梶村の最後の論文での定式化を借りれば、「内在的發展の諸契機」が「改編」を被り「歪曲」されながらも、なお「貫徹」していく過程（梶村1990 b：189）を、経済主体の行動に即して解明したものと言えます。したがって、本書において「内在的發展」とは、普遍法則的な「発展」を朝鮮で証明するというよりは、〈変革主体の「従属発展」〉という一見矛盾した表現に込められた朝鮮近代の複雑な動態を、より主体に即したかたちで描き出そうとすることでした。つまり、ここで「貫徹」しているのは、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発展の合法則性ではなく、どのようなかたちであれ「発展」をになった朝鮮の主体の矛盾に満ちたあり方そのものであり、経済決定論的な視点からは大きく離れていると言えるでしょう。

もっとも、梶村の内在的發展論が最初からこのような視点を持っ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梶村は1970年に行ったある講演のなかで、「いわゆる経済過程が土台だという図式に暗黙のうちにささえられながら、いわゆる社会経済史を精密にたどってゆけばよいのだという発想が、僕たちが『内在的發展』という言葉から最初に引き出した意味だった」と反省しています（梶村1990 a：54）。77年に発表された主著は、そうした経済決定論的な「社会経済史主義」を克服する自己革新の途上でまとめられた論文集でした。したがって、それぞれの論文の初出、つまり単体の論文の時点と、配列によって新たな意味づけを与えられた77年版の時点とでは、各論文の意味づけが微妙に違っており、読後感も異なります。梶村の内在的發展論の発展を慎重に検討して、何を受け継ぎ、何を批判するのか、今後はよりはっきり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でしょう。

Ⅲ. 梶村の内在的發展論の深化・変容を促した2つの要因

このように見るとき、梶村の内在的發展論をもっともまとめたかたちで表現している彼の著書が、すでに1977年の時点において、並木がまとめた内在的發展論の枠組みには収まらない側面を持つことが読みとれます。では、そうした彼の視点の変化を、より具体的な契機を通じた方法的革新として捉え返すには何に注目したらよいでしょうか。ここでは次の2点に注目したいと思います。

1. マルクス主義歴史学・社会科学の革新と歩みをともして——「世界史」のなかで

前節では、梶村史学の成立に果たした戦後歴史学の意義について、やや静態的に描きました。ですが実際のところ、梶村の内在的發展論がそのかたちを整える1960～70年代は、戦後歴史学の変動期にあたっているため、理論の変貌過程を捉えた動的な把握が必要になります（この時期の戦後歴史学については、戸邊2012等を参照）。

梶村は1960年代前半、歴史学研究会の委員となっています。歴史学研究会とは、1933年に創立され、現在日本で最大級の歴史研究者の民間の団体で、専門とする地域・時代を問わず、戦後歴史学の方法を支持する人々のセンターですが、梶村はその中心的なメンバーとして活動した時期があります。当時の歴史学研究会は、50年代までの機械的・教条的な法則適用による歴史研究、そしてその背後にある共産党の政治方針と密着した研究のあり方を乗り越えようと、方法的な模索を積み重ねていました。そこから生まれた3つの問題提起が、梶村のその後の研究を大きく刺激したと考えられます。

第一には、梶村ら委員の共同討議によって歴史学研究会の総合的企画として打ち出された「東アジア世界論」の提唱があります（板垣2012）。状況的には、当時の北朝鮮・中国・ベトナムなどの社会主義国の興隆に直面して、日本社会の「後進的アジア」像を乗り越え、共通の枠組みでアジアの歴史を論じようとする問題提起でした。具体的には、東アジア各国の発展段階を各国ごとに議論するのではなく、19世紀のヨーロッパの外圧に反応する中で、各国の近代化過程が分岐していく過程を全体として整合的に把握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か、という研究課題が提起されました。梶村が、研究の初期に提起した内在的發展論にもとづく朝鮮近代史の時代区分の試みは、この東アジア世界論を準備する委員会討議のために書かれたものです（梶村1964）。東アジア世界論はその後、社会主義中心の情勢把握や先進/後進という枠組み、さらには「外圧」理解の単純さなどが批判され、1980年代以降、破産を宣告されています（宮嶋1984・1988）。ここでは、その批判をふまつつも、孤立気味であった若いアジア史研究者たちに一国史を越える認識枠組を提起したことの重要性に着目したいと思います。

第二に、60年代半ばから大きく研究が進んだ「下から」あるいは「底辺から」の視点を重視した社会運動史です。これには、人民闘争史と民衆思想史という2つの潮流がありました。前者の人民闘争史は、労働者階級の階級闘争を中心としつつも、他の被支配者諸集団による多様な運動との連携の実態や可能性を「人民闘争」とよんで統一的に理解する研究をめざしました。これは、当時の革新自治体などを生み出した住民運動の盛り上がりとの呼応をめざして、強く政治実践と結びついたものでした（戸邊2012）。これに対して、民衆思想史は、同じように被支配層に着目しつつも、人民闘争史が各運動や担い手を変革主体としての力量如何によっ

て評定する態度に異議を唱えました。変革主体であるはずの「人民」や「階級」ではなく、「民衆」独自の世界観や論理を明るみに出し、マルクス主義と近代化論が共有する近代的価値そのものの問題性を批判していきます(戸邊2009, 2010)。この試みは、同時代のさまざまなマイノリティたちの異議申し立てと共鳴し、階級や民族に回収されないさまざまな主体を歴史叙述に回復させる先触れとなります。梶村の社会運動史叙述を編年的に通覧するとき、これらの研究潮流の影響が色濃く見られます。

第三に、梶村とほぼ同じ時期に歴史学研究会の委員を務めた当時若手(まだ助手クラス)の研究者が打ち出した新しい研究との切磋琢磨が挙げられます。現在では朝鮮史研究者としても著名なロシア史の和田春樹やイスラム史の板垣雄三など、新しい世界史像を模索していた彼らとの交流は、朝鮮史内部での議論では得られない研究の広がりや梶村に与えました。そもそも東アジア世界論という問題提起も、東アジア地域の研究者だけでなく、彼らのように一国史の集合ではない「世界史」を志向していた各地域を対象とする研究者の融合が可能にしたものです。そうした交流から、梶村が特に学んだと思われるのが、ナショナリズムの把握です。それをもっとも明確に定式化しているのが、板垣雄三による民族主義と民衆運動の関係をめぐる理論化です(板垣1973)。欧米の脅威に抗するかたちで形成されたナショナリズムは、しかし民族主義者の言説によく現れているように、対抗関係のなかで侵略者と同じ価値観を共有し、民衆を啓蒙・指導しようとしします。そのため、民族主義者の反帝国主義は民衆の解放願望を引き出しつつ、しかしその全面的な解放をかえって抑圧する方向にはたります。そこで、近代世界における基本的な対抗関係を理解するために、帝国主義と民族主義とのある種の共犯関係を批判し、国民国家の枠に囚われず、民衆の反近代的・非近代的な願望や実践の意義を捉え返す必要を提起しました。インド近代史研究者によるサバルタン・スタディーズやいわゆる植民地近代性(colonial modernities)論の先駆とも言えるこの議論は、独立後の第三世界の苦闘や混迷を複眼的に捉えることを可能にしたため、ナショナリズム分析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なお板垣の問題提起は、史学史的には「n地域論」としてまとめられており、実際にはより多様な論点を持っていますが、ここでは簡略化して紹介しています。)

こうした歴史学内部の問題提起とともに、梶村の思考を深めるのに大きな役割を果たすのが、1970年代における従属論との出会いです。梶村は1973年、神奈川大学に職を得ますが、経済学部でアジア経済を教える講座を持つ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をひとつの契機として、当時のマルクス経済学の革新、とりわけ従属論や世界システム論などの論争から強い刺激を受けています。もちろん、これらは純粋な経済理論というよりも、植民地化された地域の歴史と現状をトータルに把握しようとする実践的課題を意識した研究潮流でしたので、梶村としても注目する理由があったのです。この点は洪宗郁報告の内容とも重なりますので、指摘だけに留めません。

2. 現代韓国との対峙——「民衆」の発見にむかって

ただし、ここで重要なのは、こうした複数の方法的革新をふまえて、梶村が対象の分析にいかにか創造的に活かされた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さらには理論をどれだけ正確に理解し、適用できたかではなく、梶村がなぜ、ある理論や見方を自己のものとしていったのか、その必然性はどこに求められるのか、が重要になります。

その必然性は、これらの新しい方法との対話と同時期に、梶村が初めて本格的に現代韓国の民衆を発見したことが大きくかかわっているでしょう。70年代に入って飛躍的に増加した韓国の

社会運動や民衆生活の実情報告を通じて、梶村は、同じ時代を生きる、しかし異なる価値観や情動を持つ、生きた人間を、自分が対象とする地域の「現在」のなかに具体的な形象をもって見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そこから梶村が何を得たかについては、姜元鳳報告が丁寧分析していますので省略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こでは、梶村の現代韓国へのまなざし、とりわけ従属経済下に辛苦を強いられる民衆への接近が、すでに述べた同時代のマルクス主義的社会科学における方法的革新を自らのうちに引き寄せ、1980年代に「民衆史」として構想される梶村の朝鮮近現代史の「原像」をかたちづくった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同時に、現代韓国との対峙は、「高度成長」下における人々の精神構造まで含めた韓国社会の全機構の変容に対する梶村の関心を掻きたてます。そのとき、「変容」への着目は、正系とされる近代化のパターン通りにはいかない伝統と近代との葛藤に梶村を直面させることにもなりました。梶村の申采浩や咸錫憲に対する強い持続的関心は、朝鮮民族の伝統文化一般ではなく、民衆世界に根ざした伝統、あるいは近代批判的志向を伝統のなかから編み出した論理について注目する過程で書かれている点に注意が必要でしょう（梶村1984）。

IV. 1980年代における深化——未完の梶村史学

1. 民衆運動史から民衆史の全体像へ

ではこれらの動向に刺激を受けて、1977年の主著刊行後、梶村の歴史研究はどのような軌跡をたどるのでしょうか。それは、サブ・タイトルに掲げた国家と民衆の再発見、新たな捉え直しでした。梶村自身の言葉を借りれば、韓国の経済発展に関する現状分析をふまえて、「『従属発展』の特質と限界を具体的に明らかにする方法論の確立と、これを克服する可能性をはらむ民衆運動の特質の解明」が課題となりました（梶村1986a : 56）。展開の順序から、ここではこの2つの順序を逆にしてお話しします。

まず「民衆」の面について検討します。ここでは、議論を簡略化するため、発表された年代の異なる2つの論文を対比させてみましょう。ひとつは1968年に発表された「新幹会研究のためのノート」です（梶村1968）。これは、当時まだ評価が定まっていなかった新幹会について、「朝鮮民族解放闘争のイニシアティブがブルジョワジーからプロレタリアートへ移行していく大きな歴史の流れの一環」として位置づけ、その過渡期に必然的に現れた民族主義者と社会主義者の「共同戦線」としてその歴史的役割を積極的に評価するもので、史料の駆使からも先駆的な研究といつてよいでしょう（梶村1968 : 293, 312）。もうひとつは、20年後に書かれた「1920~30年代の民衆運動」（梶村1987）で、短い概説ながら、かえって梶村の主張が明確に現れています。

両者を対比すると、運動史を叙述する際の主体表現が決定的に変化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68年の時点では、朝鮮人の主体性の表現は、最終的には労働者階級の政治的顕現である「党」（またはそれに準じた組織）によって表象されることが当然と考えられています。よりはっきり言えば、この論文における「真の主体」は、当時の朝鮮マルクス主義者たちでさえなく、朝鮮における法則性の貫徹そのものです。ここには、60年代までの梶村の内在的发展論がもっていた「社会経済史主義」が、社会運動史についても、法則性の検出を重視する方向に作用し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先ほどの戦後歴史学の展開との関係では、朝鮮近代史における人民闘争の実態（梶村は新幹会を「統一戦線体」とよんでいる）とその思想的可能性を証明しようとした論文と言えます。

しかし、87年の論文では、人々の主体性・内発性は「民衆」という集合表象によって表され、個別闘争へと分析の単位を降ろしたところで叙述・評価がなされています。「民衆」を用いるようになったのは、思想的に覚醒したインテリ青年や農民のような「民衆運動者」の個別の行動の歴史的意義や役割を積極的に評価する方向へと、梶村の評価軸が変化したからです。ここに至る過程で、梶村は70年代末から、断片的な史料をつなぎ合わせて、個別闘争にとどまらない歴史的意義を明らかにする論文をいくつか発表しています。もっとも良い実例が、1929年に起きた甲山火田民事件に関する実証的な論文です（梶村1979）。叙述の変化は、個別闘争を検討する史料的条件が整った結果ではなく、梶村のなかで評価軸が大きく移動したことが決定的に重要です。

その変化の原因は、梶村が、〈前衛=党組織〉や〈プロレタリア=労働者〉の成長を運動発展の指標とみなし、それに固執する観点を放棄したことに拠ります。それは、同時代の韓国の「民衆的民族主義」の発想を取り入れ、「植民地的零細農」を歴史の主体として発見する過程と表裏一体の関係にあります。梶村は

「民衆的民族主義」とは、ごく単純にまとめれば、広汎な民主主義的規定の実現による人間解放と自己実現を望むために植民地権力と鋭く対立せざるをえない民衆の集団的願望と表現できるでしょう。すでに梶村は、光州事件のすぐ後に書いた「朝鮮民衆の1930年代」で、「民衆的民族主義」とほぼ同義の言葉として「土着化した『社会主義』」を用いていました。これは「あえて規定すれば一般民主主義的なもの」であり、「社会主義のイデオロギーにふれてはいない人々と課題を共有しうる領域」とされています（梶村1980：25）。このような「主義」は、1968年の論文が前提とする運動史の発展段階からすれば、不十分な段階にすぎませんが、ここでは「植民地的零細農」を中心とする当時の朝鮮民衆を担い手とする思想として、積極的に評価されています。梶村は1977年の主著において、すでに「民族運動を政治的に理解するためには、われわれは、ブルジョアジーの民族主義と、植民地民衆の民族主義とを峻別する視点を確立することが必要」（梶村1977：351）と指摘していますが、この「峻別」が板垣雄三のナショナリズム分析の視点と通じているのは、偶然ではありません。

こうした視点の変化は、韓国における同時代の「民主回復闘争」に対する彼の熱い注目に支えられていた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1980年代の民主化闘争は、直接的に「30年代に芽生えた民衆思想の正統の継承者」と考えられるまでになっていました（梶村1980：25）。同時に今度は、この視点から北朝鮮の社会主義が問い糾されることとなります。「[北朝鮮においては] 30年代土着社会主義を継承して次の段階をどう選択していくかは、むしろこれからの課題であろう。朝鮮史においては、それを統一問題と切り離して考えることはできない」（梶村1980→1982：288-289）。ここでは、北朝鮮の「発展」を評価する基準は、マルクス主義の正統にどれだけ合致しているかではなく、民衆的民族主義がどれだけ実現できているかにかかれており、「これからの課題」としているところに、梶村の批判的視点が現れています。しかも、この時点では民衆的民族主義をもって統一のビジョンに相当するものと想定されており、極めて実践的関心に裏打ちされた概念だったのです。

興味深いことに、1987年の論文の短い「おわりに」では、運動史の論文の末尾にもかわらなく、「民衆運動」という語を一度も使っていません。むしろそこでは、「民衆の生活史と精神史の掘り起し作業」を進め、「民衆個々人のそれぞれに個性的な創造的人間としての生きざまを、そこに価値をおく観点から深く理解する多くの作業の積み重ねを経て、より具体的な民衆史の全体像」へ迫ろうと、今後の研究を展望しています（梶村1987:367）。「精神史」「生き

ぎま」や「理解」という語彙は、先ほど述べた民衆思想史研究で特徴的に用いられたものです（実際、梶村1979：322では「民衆思想史」という用語も使われています）。

経済決定論的な狭義の内在的發展論とも、60年代の人民闘争史的視点とも異なる梶村が、ここに現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そこでは社会主義・民族主義などの対立的な概念枠組は背景に退き、むしろ「民衆運動」というかたちで朝鮮近代史の総合が図られています。「民衆運動史」は、発展段階の証明の道具であることをやめて、「民衆史の全体像」を帰着点とする全体史的志向のための基礎作業として探究されていたのです。

2. 国家・制度を視野に入れた全機構的把握へ

では梶村は、「社会経済史主義」を克服して、「朝鮮民衆の解放闘争の思想と、その内的な発展の経過を本当に流れとしてつかむように努力したい」（梶村1990 a：56）と1970年に予告していたとおりに、運動史の研究に朝鮮史の「発展」と主体性の表現を託すかたちで、自己の研究を収斂させていったのでしょうか。興味深いことに、1980年代後半、彼は自分が研究を出発させたフィールドに立ち戻り、実証的な経済史研究を発表します。これをどのように考えたらよいでしょうか。あえて単純化すれば、それは民衆史研究への志向ゆえにいつそうせり上がってくる、国家ないしは広い意味での制度性への関心と言えるように思われます。現代韓国に至る「従属発展」の歴史を視野に収めたとき、その前提となる近代の経済過程を再構成するためには、国家とそれがつくる制度との関係を抜きに資本の運動は捉えられません。自生的な資本主義発展、自主的な近代の創造という「本来ありえたはずの発展」への展望を手離さないためにも、その「本来」を可能にする制度とはなにか、を具体的につかまえる必要が生じてきたのです。さらにそうした検討のなかから、「本来」と想定されてきた単一的な「発展」観自体が、梶村のなかでやがて再考に付され、複合的な性格を帯び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国家や制度に注目する課題設定は、1980年前後には、ある程度共有されていたように思われます。宮嶋博史は1980年代初めに研究史を整理した際、19世紀後半の朝鮮史を対象とする内在的發展論の「方法論的弱点」として、「変革の対象となる当該時期の国家権力の分析が決定的に弱いこと」、「目指されるべき近代的変革の内容自体を規定する」外圧という世界史的規定性の位置づけが不十分であることをあげています（宮嶋1983：318）。80年代に発表された梶村の経済史関係の論考は、あたかもこの宮嶋の問いに答えるように展開していきます。

まず理論的な面では、1981年に2編の長い論文が発表されました。ひとつは、19世紀後半の「外圧」への対応の相違が東アジアにおける支配/被支配の「両極分解」を生み出した展開を理論的に整理した論文です（梶村1981 a）。もうひとつは、続く時期である植民地期の理解について、社会構成体に関する従属理論の議論を転用するかたちで植民地社会の社会構成体的規定について検討しています（梶村1981 b）。その内容の詳しい検討については洪宗郁報告に譲り、ここでは特に後者の論文について指摘します。植民地近代性論や「儒教的近代」論（後述）が提起されている今日、植民地支配下の社会構成をどのように考えるかという点から、この論文はあらためて光を当てるべき貴重な作業だと思えます。とりわけ梶村が、植民地化によってこそ伝統社会が再構成されて存続する点に注意を促し、単純な前近代（封建制）/近代（資本制）の二分法を批判している点が重要です。植民地近代性論に対して、文化論・表象論に墮しているとの批判が増す今日、あらためて植民地下の社会構造の生成・展開の観点から近代性の実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からです。なお、こうした新たな展開にもかかわらず、梶村が一貫して「一国史的発展」の枠組みにこだわったのは、国家機能とそれによる「国民経済の

諸条件の創出・保護」を遂行しうる一國規模の制度の意義を重視したがゆえの固持だったことに注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うした検討を下敷きにして、80年代後半にいくつかの実証的な経済史論文が書かれます。それらが対象とする時期は、大韓帝国期から1910年代の植民地初期にわたっています。1977年の主著では検討が簡略化されていた時期に集中していることから、梶村が主著で展開したモチーフを維持したまま、なおかつ更新を図ろうとする姿勢がうかがわれます。それらのうち、1986年の歴史学研究会大会近代史部会での報告（梶村1986b）は、この時期の梶村の関心を集約した論文です。梶村はそこで、商権問題を切り口として、「近代国家が確立しなかった枠組の中での商人資本の動態」を通じて、「一國的ブルジョアの発展」を保証する「国家の役割」を強調しています。ここで「国家の役割」とは「強力な国民的統合」であり「政治諸勢力の民族的結合」を指しますが、梶村は国家の力量から民族の優劣を図ろうとする安易な議論に与しないことを明言しつつ、問題は、「民族的結集」を困難にした阻害要因が「単なる内的要因の発現ではなく、政治的外圧の内部転化形態でもあった」と指摘します。「内部転化」は、梶村が朝鮮史を理解する際に持論としていた見方ですが、ここではそれに加えて、「国家の役割」という言葉に集約された制度の有無とそれが国内の主体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関心を強くしています。宮嶋が批判した「方法的弱点」について、梶村はなお社会経済史の観点から克服を試みました。「国家の役割」は植民地化（国家の断絶）によって無に帰すのではなく、植民地統治権力のもとでも制度性として扶植されて社会に埋め込まれ、韓国の「従属発展」における国家の内実にもまでつながっていくと考えられたからです。

続く梶村の2本の実証的な経済史論文も、1981年における理論的再設定にそって、書き継がれたものです（梶村1990b, 1990c）。なかでも、局地的な地域経済の自律性と域外連関を追究した論文（梶村1990c）はやや異色に見えますが、当時注目された「民族経済」論を歴史的に直接証明しようとした研究というよりは、植民地社会構成体へと包摂される複数の経済・社会システムの存在とその相互の関係を見極めるための準備作業だったように思われます。したがってそれは、「国家の役割」と単純に敵対したり、矛盾するものではなく、民衆に視点をおいてみたときに、それぞれのシステムの自立性・土着性と相互連環があらためて問題となります。

3. 梶村史学の位置と未完性の評価

以上からは、内在的発展という際の「発展」の内実について、梶村が晩年、いかに複合的な理解に達していたかがわかります（梶村1986cが方法論的に明確に整理している）。今日の歴史研究では、「発展」という語彙はおろか、段階論的志向ないしは時期区分をすることさえ、忌避される傾向にあります。しかし、歴史を叙述する際、私たちは何かを基準に歴史的事実を秩序立てることなしに説明や分析は不可能でしょう。その点は、発展段階論を批判したあとに、なお考え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として残っています（岸本2002）。その意味で、梶村における「発展」概念をめぐる思考の深まりは、今日あらためて顧みる意義が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国家と民衆という対関係として問題領域をあらためて設定する作業は、大きく見れば、戦後歴史学の展開とも軌を一にしていました。1970～80年代には、戦後歴史学の硬直した史的唯物論理解、社会経済過程を至上とする分析方法に対する批判が高まり、これを克服する模索が強まりました。それは一方で、民衆思想・民衆運動の歴史的事実の究明から出発し、やがて社会史

の動向と融合した民衆史の流れとなります。他方でこの民衆の動向と対峙する国家権力の制度・運用の実態を解明する国家史（国制史）研究が本格化します。もっとも、歴史家個人を単位とすれば、たとえば人民闘争史から民衆思想・民衆運動史へと簡単に移行できるわけではなく、戦後歴史学の「流れ」には世代や方法的態度の面でさまざまな亀裂や断層が走っています（戸邊2012：210-216）。

そのようななかで梶村が驚異的なのは、彼が上に見た展開の両方を一人で実現し、朝鮮近代史の全体像を描き直そうとしていたからです。それは、日本史（＝自国史）研究者を含む日本社会に対する批判的危機意識にもとづいて、前章で取りあげた方法的革新や韓国の現実からのインパクトを真剣に受けとめた結果でもあります。このような自己革新は、戦後歴史学を生き抜いた歴史家のなかでもまれなことでした。

しかし、以上のような新たな試みも、残念ながら、梶村自身は課題を充分究明できず、道半ばに終わりました。これは、梶村の自己革新が抱えていた理論的問題に、彼自身は直面する機会を逸したということでもあります。実際、民衆史的アプローチの追究と、民衆と敵対的ないしは緊張関係に立つ国家（あるいは国家しか作り得ない制度性）の意義とをいかに整合的に把握するかは、梶村がめざしていた朝鮮近現代史の全体史的な把握にとって難問のはずです。彼が取り組んだ歴史研究の課題は、そうした意味で容易に解決できないものである以上、いまも「未完」のまま私たちに鋭く問いかけ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日本語による朝鮮史研究に限って言えば、1990年代以降、この課題に正面から応えるかたちで新たな朝鮮近代史像を打ち立てようとする研究が現れています。たとえば在日朝鮮人の研究者である趙景達による、主として伝統社会からエネルギーをくみ出した民衆運動から見た朝鮮近代史の再構成をめざす精力的な研究があります（趙景達1998・2002・2008）。他方で宮嶋博史による、東アジア小農社会論から出発して今日の「儒教的近代」論に至る、東アジアの長期変動に関する一貫した解釈が提起されています（宮嶋1994・2004・2010）。これらの研究は内在的発展論の克服を自己の課題として明言していますが、梶村の晩年までの展開をどこまで視野に入れているのかは、実ははっきりしません。趙景達が見出した朝鮮民衆は、梶村が到達した民衆像と比較したとき、どのように違うのでしょうか。これは「民衆史」という歴史叙述の方法を考えるうえで、具体的な検討の場を提供してくれるでしょう。また宮嶋が近年提起している「儒教的近代」というときの「近代」について、梶村が到達した「発展」観はどのように批判的に対峙するのでしょうか。「民衆」も「近代」も、いずれも朝鮮近代史に限った問題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梶村が遺した研究の足跡を通じて、「（日本の）朝鮮史研究」という枠にとらわれずに、彼とのこうした仮想対話を続けていく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おわりに

以上、駆け足となったためにずいぶん図式的な整理となり、梶村の歴史叙述の本来の豊かさを伝えられず、申し訳ありません。それでも、梶村の研究が深まっていく道筋は、おおよそご理解いただけたかと思えます。それをふまれば、梶村秀樹は、単に日本における朝鮮史研究の革新者であるのみならず、戦後歴史学の志と方法をもっとも徹底して考え抜こうとした研究者であったと言えます。梶村が到達した地点からすれば、彼の歴史研究を「近代主義志向」として簡単に片づ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それでは最後に、この梶村史学の再検討というプロジェクトが持つ今日的意義についてお話し

して、拙い報告の結び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今日、人文・社会科学においても、グローバルな研究環境が整いつつあります。それは同時に、ある分野の研究が、世界的に同じ競争の構造に投げ込まれ、議論の方向がますます収斂、ないしは単一化する傾向を生みだしています。その研究者たちの国際的な闘技場では、対象国のネイティブの研究者と同等の語学力・史料読解力が求められるのはもちろん、そのテーマにおいても、共通の意識が醸成されます。そうした時代にあっては、40歳代後半まで朝鮮半島に渡ったことがなく、日本社会の朝鮮認識を批判する「日本人にとっての朝鮮史研究」にこだわった梶村の歴史研究は、古めかしいものと映るでしょう。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が喧伝される現在では、外国史/自国史という思考枠組み自体が認識の檻と映ることも少なくありませんから。

こうした趨勢は、研究環境の高度化としては望ましい面もあります。ですが、単一の競争場は、往々にして支配的な意見へと研究を領導しがちです。それは同時に、研究者が依拠する社会環境の違いに由来する視点の複数性という存在被拘束性の問題を見失わせ、自国史（もちろん国を単位とする必然性はありませんが）との緊張関係のなかで、対象地域の歴史や社会を捉えようとする他者理解のための感覚を鈍らせ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梶村が生きた冷戦期の東アジアは、そうした趨勢と対極にあったとも言えます。確かに当時は対象とする国や地域への留学すらままならない時代でした。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彼らの研究が古いという理由にはなりません。史料的・学説的にはすでに克服された研究であっても、その自己革新に現れた方法的態度や他者感覚については、むしろ3つのPCの時代（post-colonial, post-communism, post-cold war）である今日においてこそ、批判的継承が可能となる条件がようやく整ってきたと言え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もちろん、この場合のポストとは、「終わった」ことを意味するのではなく、とりわけ東アジアにおいては、「終わらせねばならない」という当為として名づけられています。その当為の可能性を押し広げるには、私たちの共有財産をもっと豊かにする必要がありますが、その際に重要なのは、それぞれの研究が生成した歴史的条件を含めて理解することだと思われれます。

そうであるならば、梶村史学を「日本の歴史学」のなかに押し込める必要はありません。戦後歴史学という固有の条件に注意しつつも、梶村を東アジアの思想・学問の展開のなかに置き直すことは、国境を越えた知の連鎖や同時代性を見出し、いわばさまざまな場所に埋もれている梶村（と同様の位置にある存在）の発見を促進する呼び水にな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今日の間を契機として、戦争と革命の時代の焦点であった20世紀の東アジアにおける批判的社会科学の苦闘を物語る知的資源として、梶村史学を現代の東アジアにむけて送り出したい、との希望を添えて、この報告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

[参照文献]

*本文中、梶村の文献で著作集に収録されている論考からの引用については、著作集の頁数を示した。

*梶村の文献のうち、すでに韓国語に翻訳されている文献の末尾には、★印を付けた。

趙景達1998『異端の民衆反乱：東学と甲午農民戦争』（岩波書店、1998.）

趙景達2002『朝鮮民衆運動の展開：士の論理と救済思想』（岩波書店、2002.）

趙景達2008『植民地期朝鮮の知識人と民衆：植民地近代性論批判』（有志舎、2008.）

- 板垣雄三1973 「民族と民主主義」 (『歴史学研究』別冊特集「歴史における民族と民主主義：1973年度歴史学研究会大会報告」、1973.11) pp.2-8
- 板垣雄三2012 「歴史家 遠山茂樹と〈東アジア〉歴史像」 (『歴史学研究』895号、2012.8) pp.2-13
- 梶村秀樹1964 「朝鮮近代史の若干の問題」 (『歴史学研究』288号、1964.5) pp.55-63,11→著作集Ⅱpp.36-59.
- 梶村秀樹1968 「新幹会研究のためのノート」 (労働運動史研究会編『米騒動50年〈労働運動史研究49〉』1968.12) pp.181-212 →著作集Ⅳpp.292-319 ★
- 梶村秀樹1977 「『民族資本』と『隷属資本』：植民地体制下の朝鮮ブルジョワジーの政治経済的性格解明のためのカテゴリーの再検討」 (梶村『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龍溪書舎、1977年) pp.213-242 →著作集Ⅲpp.328-353. ★
- 梶村秀樹1979 「甲山火田民事件(1929年)について」 (旗田巍先生古稀記念会編『朝鮮歴史論集』下巻、龍溪書舎、1979.) pp.381-409 →著作集Ⅳpp.321-349 ★
- 梶村秀樹1980 「朝鮮民衆の1930年代」 (『世界』412号、岩波書店、1980.12) pp.22-25. →梶村『朝鮮史の枠組と思想』(研文出版、1982.) pp.288-289 *収録にあたり、一部改稿あり
- 梶村秀樹1981 a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帝国主義体制への移行」 (富岡倍雄・梶村秀樹編『発展途上経済の研究』世界書院、1981) pp.53-79 →著作集Ⅱpp.275-301 ★
- 梶村秀樹1981 b 「旧植民地社会構成体論」 (富岡倍雄・梶村秀樹編『発展途上経済の研究』世界書院、1981) pp.81-108 →著作集Ⅲpp.237-264 ★
- 梶村秀樹1984 「歴史と文学：朝鮮史の場合」 (『歴史評論』409号、1984.5) pp.53-60 →著作集Ⅱpp.361-371
- 梶村秀樹1986 a 「〈報告予告概要〉近代朝鮮の商人資本等の外圧への諸対応」 (『歴史学研究』554号、1986.5) pp.56-57
- 梶村秀樹1986 b 「近代朝鮮の商人資本等の外圧への諸対応：甲午以後(1894~1904年)期の『商権』問題と生産過程」 (『歴史学研究』560号、1986.10) pp.148-158 →著作集Ⅲpp.135-156
- 梶村秀樹1986 c 「朝鮮近代史研究における内在的発展の視角」 (勝維藻ほか編『東アジア世界史探究』汲古書院、1986.) pp.575-588 →著作集Ⅱpp.164-178
- 梶村秀樹1987 「1920~30年代の民衆運動」 (旗田巍ほか『朝鮮の近代史と日本』大和書房、1987.) pp.254-266. →著作集Ⅳpp.357-367
- 梶村秀樹1990 a 『排外主義克服のための朝鮮史』(青年アジア研究会、1990) →著作集Ⅰpp.13-76
- 梶村秀樹1990 b 「1910年代朝鮮の経済循環と小農経営」 (中村哲ほか編『朝鮮近代の経済構造』日本評論社、1990.) pp.203-248 →著作集Ⅲpp.188-234 ★
- 梶村秀樹1990 c 「旧韓末北関地域経済と内外貿易」 (『商経論叢』26巻1号、神奈川大学、1990.9) pp.297-326 →著作集Ⅲpp.159-187 ★
- 姜元鳳2012 「1960年代梶村秀樹の朝鮮史認識：戦後朝鮮史研究における内在的発展論の展開と分岐」 (『史海』59号、東京学芸大学、2012.6) pp.27-41.
- 岸本美緒2002 「時代区分論の現在」 (歴史学研究会編『歴史学における方法的転回〈現代歴史学における成果と課題1980-2000Ⅰ〉』青木書店、2002. →岸本美緒『風俗と時代観〈明清

- 史論集 I>』研文出版、2012.)
- 宮嶋博史1983 「近代 (I)」 (『アジア歴史研究入門2 中国Ⅱ・朝鮮』同朋舎出版、1983.) pp.313-344.
- 宮嶋博史1984 「方法としての東アジア：東アジア三国における近代への移行をめぐって」 (『歴史評論』412号、1984.8) pp.9-39
- 宮嶋博史1988 「光武改革論」 (『歴史学研究』586号、1988.10) pp.12-22
- 宮嶋博史1994 「東アジア小農社会の形成」 (宮嶋ほか編『アジアから考える6 長期社会変動』東京大学出版会、1994) pp.67-96
- 宮嶋博史2004 「東アジアにおける近代化、植民地化をどう捉えるか」 (宮嶋ほか編『植民地近代の視座：朝鮮と日本』岩波書店、2004.) pp.167-192
- 宮嶋博史2010 「儒教的近代としての東アジア『近世』」 (『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通史 1』岩波書店、2010.) pp.53-78.
- 並木真人1990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研究の現段階：『内在的發展論』再考」 (『歴史評論』482号、1990.6) pp.15-30.
- 二宮宏之2000 「戦後歴史学と社会史」 (歴史学研究会編『戦後歴史学再考』青木書店、2000.) pp.123-147
- 戸邊秀明2009 「戦後日本における『民衆思想史』研究の出発：安丸良夫による方法的革新を中心に」 (尹海東ほか編『■』■社、2009.) pp.397-439.★
- 戸邊秀明2010 「戦後史学史のなかの安丸民衆史：ある全体性のゆくえ」 (安丸良夫・磯前順一編『安丸思想史への射程』ぺりかん社、2010.) pp.53-79.
- 戸邊秀明2012 「社会運動史としての戦後歴史学研究のために：史学史の再検討にむけたいくつかの提言」 (『日本史研究』600号、2012.8) pp.194-218.